

#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Justice Policies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Mediation in Korea

김한균 · 김명수 · 박노형 · 김세준 · 조수혜 · 송병준

KICJ



#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Justice Policies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Mediation in Korea

김한균 · 김명수 · 박노형 · 김세준 · 조수혜 · 송병준

A large, semi-transparent watermark of the letters 'KICJ' is positioned in the lower right quadrant of the cover. The letters are rendered in a bold, sans-serif font. The background behind the watermark consists of a dark, curved, brush-stroke-like shape on the left that transitions into a grey, low-poly geometric pattern on the right.



##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연구책임자

김 한 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김 명 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노 형 고려대학교 교수

김 세 준 경기대학교 교수

조 수 해 전주대학교 교수

송 병 준 변호사

### 연구지원

김 태 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위원



2021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의 새출발은 법무정책에 대한 연구수요가 급증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법무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지원 기능을 확대 강화해 나아가기 위함이라는데서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특히 법무정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22년도 제1차 법무정책연구·조사 사업의 하나인 본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는 선진국가 제도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중재 및 조정 제도개선 정책수요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와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진은 2022년 중에 정기적으로 중재 및 조정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국내외 학자, 법조인, 기업인, 실무전문가들을 모셔서 우리나라 중재 및 조정 법제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적극 경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중재 및 조정분야 실증조사분석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는 사건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중립적 이해조정자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우리 사법부의 국제적 역량 제고 및 관련 법리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며 당사자를 존중하는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제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본 연구는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로서, 이론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국제중재 및 조정 제도와 산업의 현실과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적극 후원해 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님, 국제조정센터

ii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박노형 이사장님, 한국조정학회 최재석 회장님께 연구진을 대표하여 감사말씀 드리고  
자 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김 한 균





# 목 차

국문요약 ..... 1

## 제1장 김한균·박노형

서 론 ..... 29

제1절 정책현안과 연구의 필요성 ..... 3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5

제3절 연구의 열개와 방법 ..... 36

1. 연구의 열개 ..... 36

2. 연구의 방법 ..... 37

## 제2장 조수혜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발전 성과 ..... 39

제1절 1966년 중재법 제정 ..... 41

1. 1966년 중재법 제정 배경 ..... 41

2. 중재법 제정 및 대한상사중재원 설립 ..... 44

3. 뉴욕중재협약 가입 및 중재법 개정 ..... 47

제2절 1999년 중재법 전부개정 ..... 49

1. 개정배경 및 개정경위 ..... 49

2. 전부개정의 주요내용 ..... 51

3. 전부개정 성과 ..... 61

제3절 2016년 중재법 일부개정 ..... 61

1. 개정배경 및 경위 ..... 61

2. 개정의 주요내용 ..... 65

3. 개정 성과 .....	71
제4절 중재진흥법 및 2019~2023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	71
1.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71
2. 중재진흥법에 의한 기본계획 (2019~2023) .....	76
3. 성과 및 비판 .....	79
제5절 조정제도 .....	80
1. 국내 조정제도의 현황 .....	80
2.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조정의 이용 .....	87

### 제3장 조수혜

#### 뉴욕중재협약에 따른 국제중재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	89
--------------------	----

제1절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중재협약) .....	91
1. 제정배경 .....	91
2. 가입현황 .....	92
3. 주요내용 .....	97
제2절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 .....	102
1. 제정배경 .....	102
2. 가입현황 .....	103
3. 1985년 모델중재법 채택 당시 주요내용 .....	106
4. 2006년 모델중재법 개정의 주요내용 .....	117
제3절 국제중재의 국내 현황 .....	124
1. 국제중재사건의 해결 현황 .....	124
2.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협조 현황 .....	131
제4절 국제중재의 발전과제 .....	140
1. 국제중재를 위한 물적 여건의 마련 .....	140
2.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	141
3. 중재법 및 중재규칙의 지속적인 개정 .....	141
4. 우리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역할 강화 .....	142
5. 국제중재의 중재인 및 대리인 자격의 완화 .....	144

## 제4장 김세준

###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조정 체계 발전과

####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 147

제1절 2018년 UNCITRAL 조정모델법 .....	149
1. 제정배경 .....	149
2. 성립과정 .....	150
3. 주요내용 .....	153
제2절 2019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싱가포르조정협약”) .....	160
1. 제정배경 .....	160
2. 성립과정 .....	160
3. 주요내용 .....	162
4. 서명 및 비준 현황 .....	166
제3절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 이행 논의 현황 .....	168
1. 비준 및 이행법률에 관한 논의 현황 .....	168
2. 상사조정기본법제의 신설에 관한 논의 현황 .....	171
제4절 국제상사소정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도 발전 방향 .....	173
1. 집행력의 확보와 실현에 대한 체계 정립 .....	173
2. 상사조정기본법의 제정 방안 .....	174
3. 조정의 저변 확대 .....	178

## 제5장 김명수

### 국제중재 및 조정 선진국가 제도 및 정책 동향 ..... 181

제1절 싱가포르 .....	183
1. 개관 .....	183
2.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	184
3.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	194
제2절 홍콩 국제중재센터(Hong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	199

1. 홍콩 국제중재 현황과 기반시설 .....	199
2. 중재인의 선정과 확정 .....	202
3. 수당 및 경비 등 중재비용 .....	206
4. 국제중재 및 조정의 허브로서 홍콩 .....	209
제3절 상하이 국제중재센터(Shangh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HIAC) .....	212
1.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현황 .....	212
2. 중재인의 선정 및 구성 .....	214
3. 수수료 등 중재비용 .....	216
제4절 국제중재 및 조정허브의 성공 및 한계요인 분석 .....	217
1. 취약한 중재산업 기반 .....	217
2. 국내·국제 중재제도 인식 및 이용률 저조 .....	218
3. 국제 법률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	220
4. 외국어 번역 중재판정문과 법령 등 데이터 구축 .....	221
5. 국내 민간 조정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	221

## 제6장 김한균·박노형·김세준·조수혜·송병준

###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 수요의

#### 실증적 분석 .....

제1절 국제상사중재 또는 국제상사조정 전문가 조사 분석 .....	233
1. 설문조사 취지와 구성 설계 .....	233
2. 전문가 설문결과 .....	235
3. 분석 및 평가 .....	281
제2절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발전적 보완과 문제개선 .....	294
1. 국제상사중재의 홍보 필요성 .....	294
2. 중재절차의 공정성·효율성 향상 .....	295
3. 중재인 자격 규제의 완화 .....	296
4. 중재기관 개선 방안 .....	297

**제7장** 김한균·김명수·박노형

**결론** ..... 301

    제1절 논의의 정리 ..... 303

        1. 국제중재 체계의 국내 현황과 문제 ..... 303

        2. 국제조정 체계의 국내 현황과 문제 ..... 304

        3. 국제상사중재 및 국제상사조정 실증조사 결과 비교 ..... 306

    제2절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효과와 정책과제 ..... 310

        1. 국제 중재의 활성화 정책과제 ..... 310

        2. 국제 조정의 활성화 정책과제 ..... 313

    제3절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과제 ..... 315

        1. 양 제도에 관한 인식 고취 및 이해도 증진 필요 ..... 315

        2. 조정인·중재인의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 ..... 315

        3. 분쟁해결기관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 요소 분석 필요 ..... 315

        4. 「조정산업진흥법」 제정에 관한 논의 ..... 316

**참고문헌** ..... 319

**Abstract** ..... 327

**부록** ..... 331

    부록. 중재 및 조정 전문가 설문 ..... 331



## 표 차례

[표 2-1] 제정 중재법의 조문별 내용 .....	46
[표 2-2] 1966년 중재법과 1999년 중재법의 주요내용 비교 .....	50
[표 2-3] 1999년 중재법과 2016년 중재법의 주요내용 비교 .....	63
[표 3-1] 뉴욕협약 가입국 현황 .....	93
[표 3-2] 모델중재법의 수용 현황 .....	103
[표 3-3] 모델중재법 개정 주요내용 .....	117
[표 3-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연간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	127
[표 3-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사건 주요 국가별 현황 .....	127
[표 3-6] 최근10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건수 .....	128
[표 4-1] 2002년 조정모델법과 2018년 조정모델법의 조문리스트 비교 .....	151
[표 4-2]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의 상응 규정 .....	152
[표 4-3]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서명 및 비준국가 현황(2022년 6월 27일 현재) .....	166
[표 5-1] 2021년 SIAC 사건 통계 .....	186
[표 5-2] 2021~2022년 SIAC Academy 일정 .....	187
[표 5-3] SIAC 관리비용 .....	189
[표 5-4] 중재인 수수료 .....	190
[표 5-5] 평가 또는 과세 수수료 .....	191
[표 5-6] 임시중재인 선정수수료 .....	191
[표 5-7]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패널 구성(국가별) .....	192
[표 5-8] 조정인 패널(2014년~2022년) .....	196
[표 5-9] (사)국제조정센터 국제조정인(국가별) .....	196
[표 5-10] 2021~2022년 전문가 프로그램(2021.10.~2022.9.) .....	198
[표 5-11] 중재인의 출신 또는 국적 .....	204
[표 5-12] 중재인 수당 .....	206
[표 5-13] HKIAC의 관리비용 .....	207
[표 5-14] 홍콩의 주요 국제법 기구 및 분쟁 해결 기구 .....	211
[표 5-15]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패널 구성(국가별)(2021.8.1.~2026.4.30.) .....	215
[표 5-16] 국제중재사건의 수수료 및 비용 .....	217

[표 5-17]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현황 .....	218
[표 5-18]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위촉기준 .....	218
[표 5-19] 분쟁금액별 중재비용 및 중재인 수당 .....	219
[표 5-20] 행정형 분쟁조정기관 현황 및 조정의 효력 .....	222
[표 6-1] 국제상사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문 조항 .....	234



## 그림 차례

[그림 3-1] SIAC 접수건수 .....	130
[그림 3-2] 2021년 SIAC 외국 이용자 국적 .....	131
[그림 5-1] 국제상업회의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런던국제중재센터, 홍콩국제중재센터 사건수 비교 .....	184
[그림 5-2] 2021년도 SIAC 외국이용자 수(「SIAC Annual Report 2021」, p.20) .....	185
[그림 5-3] 최근 10년간 SIAC 처리 사건 수(「SIAC Annual Report 2021」, p.18.) .....	186
[그림 5-4] 2021년도 SHIAC 사건수 및 분쟁금액 .....	212
[그림 5-5] SHIAC 분쟁유형 .....	213



## 제1장 서론

- 1.1.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는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로서, 이론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국제중재 및 조정 제도와 산업의 현실과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1.2. 본 연구는 국내 상사중재제도 및 산업의 발전 성과와 한계를 법무정책적 관점에서 개괄적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의 문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이는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관한 기업인, 법조인과 일반인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중재산업 활성화 지연 문제임.
- 1.3. 본 연구는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추진함. 이와 같은 실태파악 및 문제현실 분석을 통해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과 예상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1.4. 본 연구는 2019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선도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동 협약은 국제상사조정으로 도출이 된 합의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며 당사자를 존중하는 분쟁해결절차로 이용될 것이 기대되기 때문임.
- 1.5. 본 연구는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관련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연구인력자원 적극 활용하여 연구수행 및 향후 연구과제 개발과 연구인력풀을 확충하는데 장기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체계의 적극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문기관인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 (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KIMC)와 공동연구로 수행하였음.

## 2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1.6. 본 연구는 국제중재 및 조정 분야 기업인, 법조인,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수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전문가 대상 조사를 설문 형식으로 수행하며, 연구수행과 성과확산 뿐만 아니라 법무정책 연구사업의 향후 지속적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기획 진행하였음.

### 제2장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발전 성과

- 2.1. 중재는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조정과 달리, 일응의 법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판단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집행력이 있는 ADR 임.
- 2.2. 중재는 구속력이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과 유사하나,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자치성이 분쟁해결에서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본안판단에 적용될 법을 결정할 뿐 아니라 판단주체를 정하는데 참가할 수 있음.
- 2.3. 1958년 뉴욕중재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건이 충족될 경우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어 현대적인 의미의 중재제도가 완성됨.
- 2.4.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분쟁해결 편의를 도모하면서 중재의 자국 유치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이같은 배경에서 중재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자 UN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85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채택하였음.
- 2.5. 1999년 전부개정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는바, 이는 중재법의 국제화와 국제거래당사자에게 우리 중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임. 다만 모델법이 상정한 국제중재실무의 기준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법제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모델법 조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음.
- 2.6. 1999년 중재법은 중재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을 마련하면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함께 규정한 점도 특징임. 또한 국제중재와

- 국내중재, 민사중재와 상사중재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중재법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였음.
- 2.7. 1999년 전부개정법상 정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중재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임. 다만중재가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 법령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2.8. 1999년 중재법 전부개정으로, 국제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중재법의 적용을 기피하던 외국 기업 및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음.
- 2.9. 1970년대 이후 중재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소송절차의 보전처분과 같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임시적 처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IT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반영하여 2006년 개정 UNCITRAL 모델중재법은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완화하고 임시적 처분을 실효적으로 규정하였음.
- 2.10. 2006년 모델중재법이 개정배경 외에도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중재법 개정이 추진되었음. 특히 국제중재 유치인수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리면 중재활성화로 인하여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중재지 선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중재지의 중재법이라는 점에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로 도약하고자 중재법 개정이 진행되었음.
- 2.11. 2016년 개정 중재법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해진 전자적 의사표시의 기록을 반영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완화하여 국제상사중재에서 우리나라가 중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국제상사중재의 특징을 고려하였음. 또한 중재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바탕으로 중재제도를 활성화하여 국제중재사건의 유치로 인한 경제활성화라는 측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법치주의 확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임.
- 2.12. 중재진흥법은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산업 진

#### 4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함. (제3조 1항) 기본 계획에는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 분쟁해결의 시설 및 운영, 중재 전문인력 양성,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가 포함됨.

- 2.13. 중재진흥법은 법무부장관이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제7조 제1항)과 중재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중재산업 전문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의 협력활동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 제2항).
- 2.14. 2019년 법무부가 중재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9~2023)'은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 연관 효과가 큰 중재산업을 육성하여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획임.
- 2.15.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취약한 중재산업 기반을 지적하며, 이는 우수한 법률가가 많음에도 중재분야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중재인력이 부족하고, 중재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미비하여 중재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중재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2.16. 2019년 기본계획은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중재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를 설정하였으며,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서 중재심리 시설 개선, 중재기관 사건해결 역량 강화, 신규 중재 분야 발굴을 설정함. 국제중재 유치 확대전략으로서 국제중재사건 유치 전략 수립과 국제중재사건 유치 지원을 목표로 함.
- 2.17. 중재진흥법 및 이에 따른 기본계획은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중재진흥법 제정 이후에도 국제중재 유치 건수 등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중재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임.
- 2.18. 중재진흥법 및 이에 따른 기본계획은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여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중재선진국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중재진흥법 제정 이후에도 국제중재 유치 건수 등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아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중재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함.

- 2.19.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 간의 합의도출을 돕는 것으로 유연하고 비정형적인 절차이며,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간이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됨.
- 2.20.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간형 조정은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긍정되며, 우리나라의 과중한 법원 업무와 상당한 사법불신을 고려하면 민간형 조정에 대한 잠재적 수요 및 필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2.21. 민사조정법에 의한 사법형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 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조정불성립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음.
- 2.22. 행정형 조정은 행정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소관사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조정으로서 행정사건에서의 조정과 구분됨. 행정형 조정의 경우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행정형 조정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절차와 효력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함.
- 2.23. 우리 법제에서 민간형 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제상사조정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국제상사조정의 승인 및 집행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제정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은 국제상사조정의 개념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2.24. 싱가포르협약상 국제상사분야에서의 조정은 국내의 경우 좁은 의미의 조정,

즉 민간형 조정 중에서도 국제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은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을 구분하고 규정하는데 비해 조정규칙은 국내와 국제사건의 구분 없이 하나의 규칙을 두고 있음.

- 2.25.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은 민사조정외 하나인 법원연계형 조정의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대다수이며, 무역분쟁조정으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율한 선적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출상과 검사기관 간의 분쟁을 위한 지정 조정기관으로서의 조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국제상사조정의 이용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무역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국제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 조정사건 유치를 위한 조정기관의 관심 부족, 전문성을 갖춘 국제조정인의 부족 등이 지적됨.

### 제3장 뉴욕중재협약에 따른 국제중재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 3.1. 1958년 뉴욕중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국제협약으로 평가받으며, 뉴욕협약에 의하여 협약 가입국 어디서든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이 보장되게 되었고, 이러한 집행력은 국제상사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국제중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확고한 계기가 됨.
- 3.2. 우리나라도 뉴욕중재협약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뉴욕중재협약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유보선언과 우리 법에 의하여 상사성이 있는 분쟁에 뉴욕중재협약을 적용하는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하였는데, 이는 뉴욕중재협약 적용범위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상사성에 대한 판단에서 국내법이 개입될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임.
- 3.3. 중재합의의 서면성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해석이 갈림에 따라 UNCITRAL 2006년 중재모델법에서 명문으로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서면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에 의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논란을 종결함.
- 3.4. 뉴욕중재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중재합의와 중재판정문 등의 제출만을 규정하여 당사자 부담을 경감하였음. 뉴욕중재

- 협약은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식으로 규정하여, 그 이외의 사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집행지 법원의 중재판정의 본안 내용에 대한 심사를 금지함.
- 3.5. 뉴욕중재협약 성공 이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 등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었으나,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등의 상당부분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였으며, 국제중재의 투명성과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법이 규율하는 중재절차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표준화를 이루는 이원적 접근(two-track) 정책에 따라 1985년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이 제정됨.
- 3.6. 2006년 모델중재법의 개정의 주된 이유는 중재합의 방식의 완화와 임시적 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의 도입이며, 또한 중재판정분의 승인·집행에 대한 적극적인 요건으로 중재합의문 제출 요건을 폐지함.
- 3.7. 대한상사중재원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총 7,660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중재 사건은 500건이며 국제중재는 50건임. 2020년과 비교하여 중재사건 전체는 405건에서 500건으로 23.5% 증가하였으나, 국제중재 접수건수는 69건에서 50건으로 27.5% 감소하였음. 국제중재의 신청금액 합계는 2020년 1,684억 원에서 2021년 511억 원으로 69.7% 감소하여 접수 건수뿐만 아니라 신청금액에 있어서도 감소하였음.
- 3.8.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중 가장 접수건수가 많은 분야는 무역분쟁으로, 2020년은 국제중재사건 69건 중 39건, 2021년 국제중재사건 50건 중 28건이 무역분쟁사건임. 신속절차의 경우 2020년은 국제중재사건 69건 중 31건, 2021년에는 국제중재사건 50건 중 27건이 신속절차를 이용하였음.
- 3.9.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세계경제의 불황실성으로 분쟁이 증대하면서 국제상사중재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은 점은 검토 필요가 있음. 중재산업은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시장원리도 정책적 고려 요소임.
- 3.10. 국제중재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중재 이용자들이 국제 교역을 통하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바탕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및 법조 인력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선호되는 중재지는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조사되는 것을 볼 때, 아직 국제상사중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3.11. 지리적·경제적 기반은 국제상사중재 유치에 위한 중요한 요소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수, 무역규모 등을 고려하고 인접국인 중국, 일본 등의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중재시장을 뒷받침하는 지리적·경제적 기반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국제중재를 활성화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3.12.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지의 법원은 절차 전반에 관하여 중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협조·지원을 하게 되며, 중재의 결과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할 권한도 가지므로,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 법원의 역할은 중요함.
- 3.13.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중재합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우리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에 이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3.14.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하여 중재판정으로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관할을 집중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중재판정부의 관할결정권한에 대한 당사자 합의의 무효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됨.
- 3.15. 우리 법원이 국제상사중재에서 가장 많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구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쟁점은 뉴욕중재협약에 규정된 승인·집행거부사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문제가 될 것임.
- 3.16. 우리 법원은 중재합의의 효력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중재조항 독립성을 인정하고, 중재판정 이유기재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등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음.



- 3.17.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서 집행국 법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가장 큰 승인·집행거부 사유는 공공질서 위반인바, 우리 법원은 공공질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국제적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3.18. 우리 법원의 태도 및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일반적 관여 금지 조항을 둔 중재법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법원의 개입정도에 대하여 최소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됨. 국제중재는 국제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각 법체계의 차이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재절차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최소적 접근법은 해당 국가에 대한 중재지로서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3.19. 다만 실제로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단심제인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이 중재절차 진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관여 기준 및 협조의 방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제상사중재절차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재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20. 우리나라를 선호되는 중재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재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이 중재에 호의적이고, 우리 중재인들이 국제적 명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지로 적합한 환경 및 시설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3.21.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상사중재의 필요에 부응하여 2018년 국제중재에 적합한 설비를 갖춘 국제중재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는바, 국제중재센터는 외적으로 규모와 시설 면에서 물적 설비를 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 시설이 분산되어 관리가 어렵고 당사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는 바,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3.22. 필요설비의 운영,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규칙 등은 중재기관이 담당하고, 국제중재는 전문성을 갖추고 국제적 명성이 있는 중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중재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무역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 중재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정부의 지원 외에 자유시장에

서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중재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 등이 존재가능한 중재환경 조성도 검토 필요함.

- 3.23. 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재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중재절차의 질은 우수하고 전문적인 중재인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인을 모집하고 일반대학원에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수한 중재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 3.24.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질서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사중재절차를 이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법률교류를 하면서 최신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3.25.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중재의 지연과 비용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속중재절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속중재절차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에는 동일하게 구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므로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속중재의 적용범위, 심리기간, 중재판정부 재량권 등에 대하여 국제중재실무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3.26. 홍콩과 싱가포르가 영미법계 이점을 살려서 미국과 영국 등이 아시아 국가의 기업과 분쟁이 있을 때 중재사건을 유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중국과 일본 등 인접한 대륙법계 국가들과 유럽 소재 기업들과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재규칙 마련에 있어서 대륙법계 국가들에게 익숙한 중재규칙 검토가 필요할 것임.
- 3.27. 중재는 소송을 대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진행되는 절차이나, 그 성격상 법원의 협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법원의 적절한 감독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를 선택할 때에도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당사자자치를 존중하고 중재판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중재친화적인 중재지 법원은 중요한 요소임.
- 3.28. 아직 국제상사중재지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국 당사자들에게 우리 법원의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함. 또한 우리 법원의 중재친화적 실무처리를 국제상사중재 이용자들에게 알려져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3.29. 우리 변호사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가 중재대리를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바,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중재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3.30. 외국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변호사에게도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우리의 변호사법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법률개정을 통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였는 바,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인증받은 분쟁해결기관에서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것이 허용하고 있음.

#### 제4장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조정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 4.1.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과 함께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CITRAL 조정모델법의 준비가 동시에 진행된 이유는 상이한 관할권에서 조정에 관한 서로 다른 경험의 수준을 수용하고 각 국가에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의 국경 간 집행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양자는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 4.2. 싱가포르조정협약에서는 ‘조정(mediation)’을 “이용된 표현이나 절차가 수행되는 근거와 무관하게, 분쟁당사자들에게 해결을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는 제3자 또는 제3자들(조정인)의 지원을 받아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도록 시도하는 절차”로 정의함. 동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대체적 분쟁해결(ADR)수단으로서 조정의 의미와 비중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그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립되었음.

- 4.3.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주요취지는 ①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의 자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되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중에 제3자가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제상사분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조정의 가치를 국제거래에서 인정, ② 국제 및 국내의 상사관계에서 재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주목, ③ 조정제도의 활용을 통해 분쟁으로 인한 거래관계의 단절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국제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입장에서는 법집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상당한 장점을 고려, ④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가 실제 분쟁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화로운 국제경제관계의 발전을 기대함.
- 4.4. 조정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 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국제분쟁의 조정, 그리고 민간조정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의 효력은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기여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음.
- 4.5. 싱가포르조정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및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화해합의를 집행”하여야 하며, “일방 당사자가 화해합의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동 사안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은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및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동 당사자가 동 화해합의를 원용하게 허용하여야 함.
- 4.6. 분쟁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라 화해합의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구체절차를 이행하는 협약 당사국의 소관 당국에 당사자들이 서명한 화해합의, 화해합의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4.7.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그리고 동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집행하고 그 원용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한국이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당사

- 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절차규칙’에 해당하는 법률이 필요할 것임. 이에 법무부는 2021년 3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T/F를 출범하였음.
- 4.8.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자국의 집행제도가 협약이 규정하는 집행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정제도의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제상거래 규범형성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조정산업 등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 한국의 주요 교역국 상당수가 참여한 결과 제도적 유사성과 무관하게 서명의 필요성이 있음.
- 4.9. 싱가포르조정협약상 화해합의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법에 관한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중재의 경우와는 달리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가입을 계기로 하여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추진하며, 이와 함께 일반법의 제정을 장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4.10.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의 내용과 형식은 ①싱가포르조정협약의 본래 취지인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집행 등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안(가칭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한 법률’), ②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은 물론 동 협약과 함께 UNCITRAL 조정모델법 및 UNCITRAL 조정규칙에 규정된 조정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있음.
- 4.11.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이 발효됨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제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분쟁해결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 협약 및 조정모델법의 자국 내 수용을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임. 특히 국제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국내 집행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집행을 위한 실무적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 입법 작업이 필요함.

- 4.12.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동 협약의 효력에 따라 조정모델법을 기초로 하는, 가칭 '상사조정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국내법제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국내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한 국제상사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그 근거로서의 관련 기본법이 필요함. 이러한 기본법은 법제도 측면에서 조정 및 분쟁해결제도 자체에 관해서도 바람직한 조정절차의 방향을 모범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음.
- 4.13.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에서는 화해합의의 승인(recognition)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와 같은 승인절차의 필요 여부에 관해 국내 논의는 필요할 것임. 즉 승인은 법원이 화해합의에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화해합의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기판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정에서도 역시 관련 승인절차가 필요할 것임.
- 4.14.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의 집행절차에 차이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재법에 준하여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원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국내조정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논란이 예상될 수 있으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이 야기될 우려도 제기됨.
- 4.15. 분쟁해결방식의 선택에 당사자의 자율성이 중시된다면, 절차의 진행과정 역시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은 조정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법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상사조정기본법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절차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4.16.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은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적법 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까지 고려하여 그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조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4.17. 당사자의 자율성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상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분쟁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분쟁 해결의 사적자치가 바람직하므로 정부 등 기관의 개입 없이 민간 주도로 진행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상사조정기본법 역시 민간형 조정의 발전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4.18. 민간형 조정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인의 양성을 담당할 수도 있음. 특히 조정인의 양성에 관하여 대공공기관이 학회나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조정인 교육 및 인증업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그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4.19. 국내에서는 조정을 당사자 주도의 자율적 분쟁해결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지 실정에 따라 분쟁의 대상에 관한 액수를 조정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감액하는 것, 또는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시키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정인의 중립성이나 당사자가 절차상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등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 4.20. 조정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새로운 법제의 도입 또는 신설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국제조정수행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제도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기능 수행이 기대됨.
- 4.21. 다만 조정의 제도적 확장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결국 현재의 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민사조정, 행정형 조정 및 형사조정과 같이 정부가 개입하는 관제식 조정제도에 그치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함. 따라서 국제조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그 수행에 필요한 조정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조정인 명부를 비치하며, 외국의 유사 국제조정기관과 협력 및 경쟁할 수 있는 등 국제조정이 가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조정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4.22.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질적 향상이 필수적임. 특히 국제경쟁력과 평판이 중요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 영역에서는 조정 수행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조정을 통한 성공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음.
- 4.23. 조정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의미가 있는 바,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질서를 존중하며 해결되어야 함. 이러한 이념을 반영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체제에서 한국이 국제조정 의 허브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평판과 신뢰를 가지고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조정 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제5장 국제중재 및 조정 선진국가 제도 및 정책 동향

- 5.1. 싱가포르는 홍콩이나 상하이 등의 국제중재센터와 달리 별도의 국제조정센터를 두고 있는 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는 1991년 설립된 국제분쟁 중재기구로서 아시아 최대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이며, 특히 2010년 아시아 중재기관 최초로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를 도입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긴급임시 처분의 신청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음.
- 5.2.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er, SIMC)는 2014년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으로 2014년 싱가포르를 국제 상사 조정을 위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음.
- 5.2. 싱가포르 2016년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인의 자격에 관하여 중재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지역 및 국제적으로 국제중재 및 그 밖의 대안적 분쟁 해결의 활용을 촉진하고, 젊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 걸쳐 법률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직면한 고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5.3. 싱가포르의 상사조정은 법원연계형(court-based)이거나 사적 조정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사에 의해 수행되고 후자는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 (SIMC)나 싱가포르 조정센터(SMC)에 회부됨.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는 세계적인 규모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중재-조정-중재” 절차가 활용되기도 함.
- 5.4.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1980년대에 설립된 홍콩 자체 중재기관으로 정부의 간섭 없는 독립 기관임. 홍콩의 사법부는 중재 친화적인 접근법으로 국제 분쟁 해결의 영역에서 탁월하며, 중재절차의 전반적인 유연성 및 무결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홍콩 중재 판결은 뉴욕 협약에 따라 150개 이상의 계약국에서 집행될 수 있음. 또한 HKIAC는 홍콩을 아시아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분쟁해결서비스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 5.5. 홍콩 조정 조례(Hong Kong Mediation Ordinance)는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조정의 광범위한 활용과 발전을 장려하며, 홍콩 당국은 홍콩을 훈련 및 역량 강화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 조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5.6. 법률서비스 및 분쟁 해결 서비스를 위한 국제 법률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홍콩정부는 특정 지역을 ‘법률 허브’로 개발하였고 홍콩 내 20개 이상의 법률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UNCITRAL 중재모델법 체계를 도입해 중재친화적인 법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우리나라 중재법제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므로, 상사중재판정문과 관련 법령에 대한 다양한 외국어 번역이 필요함.
- 5.7. 특히 기업 간 상사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절차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민간조정절차가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연계(또는 법원주도)형 중심의 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조정제도 본연의 장점을 살려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 제6장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 수요의 실증적 분석

- 6.1. 본 연구의 국내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등의 파악을

- 위한 조사는 국제중재 및 조정 관련 기업인, 법조인,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수행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서면 면접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쟁당사자인 기업과 관련 사내변호사 등 'client user'와 조정을 담당하는 변호사 등 'legal user' 및 국제중재/조정 유관기간 및 연구자 세 그룹 총 81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6.2. 국제상사조정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근소한 차이로 신속성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바, 주목할 점은 비용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임.
  - 6.3. 국제상사조정기관의 선택에서 소속 조정인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또한 효율성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바, 주목할 점은 비용을 기관의 선택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임.
  - 6.4. 조정인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 및 분쟁 관련 전문성이며, 조정 관련 교육 여부를 조정인 선택 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보고 있는 점이 주목됨.
  - 6.5. 국제상사중재에 대하여는 69.5%의 응답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국제상사중재가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30.5%)의 두 배가 넘는 인원들이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국제상사조정에 비하여는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진 비율이 높으나, 중재법이 1966년 제정된 이후 UNCITRAL 중재모델법 등을 활발하게 수용하고 대한상사중재원도 국제중재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국제상사중재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점, 중재산업진흥법이 2016년 제정되어 중재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 6.6.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 응답자 중 국제상사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복수응답하도록 한 조사에서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22.3%),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16.2%), 상소제도 부재 등 절차적 한계(14.2%),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12.2%), 전문성에 대한 우려(9.6%), 공정성에 대한 우려(6.6%), 법제도상의 미비(6.1%), 기타 및

무응답(12.7%) 등의 순으로 이유가 제시됨. 이는 여전히 국제상사중재는 낯선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일반적 홍보와 더불어 대한상사중재원 등 상설중재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홍보하여 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재기관 및 중재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6.7. 중재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담보하여 상소제도 등의 부재로 인한 절차적 한계로 인한 불안감을 제거할 필요와 더불어, 최근 국제상사중재에서 문제가 되는 기간 및 비용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운영 및 진행을 통하여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6.8.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국제상사중재가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음. 국제상사중재제도 발전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인식 제고로 나타나는데, 이는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서의 1위, 2위를 차지한 항목과 동일함.
- 6.9.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국제상사중재의 국내·외 주요법제인 뉴욕중재협약과 중재법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 제정된 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하여는 인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보면 중재산업 지원방안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6.10. 실제로 중재제도에서 공동중재인을 구성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거의 30%에 달한다는 점, 그리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국제상사중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와 로펌의 국제중재팀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그렇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임. 공동중재인이 단일중재인보다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공동중재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동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 6.11.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 후보자가 분쟁당사자들의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단일중재인의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단일중재인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53.7%이고, 공동중재인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과반수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경우 신속성이 담보되는 단독 중재인을 선임하는 수요도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함.

- 6.12. 중재인의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여부에 관하여, 73.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이 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사실상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하다는 점과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취급할 수 없는 사무로서 '중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보인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인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이가 24.4%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함.
- 6.13.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응답자 34.7%이 해당 사건의 실무 전문가, 24.5%이 학계 전문가, 20.4%이 소정의 중재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을 수여받은 사람, 10.2%이 외교관이나 기업인 등 협상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응답함. 실제로 국제상사중재 사건이 전문 분야에 관한 분쟁임을 고려할 때 중재의 대상인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전문성을 위하여 분쟁대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우 등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재인으로서의 수요가 있음을 시사함.
- 6.14. 중재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에 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자가 64.6%인 결과는 조정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물은 설문 결과와 동일한 바, 이처럼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에 대한 전문가의 관심 자체가 높다는 점은 국제 중재 및 조정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6.15.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 중재의 중립성 및 공정성, 비용, 신속성, 중재인 선택 등 절차적 유연성이 상위 5개 요인으로 제시됨. 국제상사중재의 집행 가능성이 국제상사중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뉴욕중재협약으로 표상되는 국제상사 중재판정의 집행력의 국제적 보장이 국제상사중재의 기초임을 시사함.

- 6.16. 중재판정부의 중립성 및 공정성은 중재절차 비용과 신속성보다 근소하게 앞서며 중재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는데, 중재절차 및 판정의 공정성과 더불어 중재절차의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함. 국제상사중재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모순되는 가치를 달성할 필요가 있어서, 신속중재규칙이나 임시적 처분 등 중재절차 설계가 실무의 요구에 대응하여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미임.
- 6.17.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지 선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고려한 요소는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인바, 국제상사중재의 가장 큰 특징인 구속력 또는 집행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뉴욕중재협약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이 되고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으로 국제상사중재절차가 국제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재지와 집행지의 사법기관의 해석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이 좌우되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함.
- 6.18. 설문결과 중재지의 전통적인 평판이나 인지도, 위치보다는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중재법과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중재친화적인 법원의 소송실무의 중요성을 시사함.
- 6.19. 국제상사중재기관 선택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효율성,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 비용으로 중재기관의 사무처리 및 중재절차에 대한 보조가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 적절한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이 담보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음.
- 6.20. 설문결과에 따르면, 중재기관으로 선택을 받기 위하여 중재기관의 인지도와 평판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중재산업진흥법에 의한 중재산업 지원 및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건 유치를 통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평판을 높일 필요가 있고, 중재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중재 당사자의 수요에 맞는 신속중재절차, 긴급중재인 등 적절한 중재규칙을 마련,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6.21.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상사중재사건 유치를 위하여 적극

적인 홍보와 함께 적절한 중재규칙의 마련, 전문성 있는 중재인의 확보와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비용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전문인력을 두고,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 6.22. 설문결과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중재 등 분쟁해결 경험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이전에 중재인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중시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중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에 대하여는 중요성이 낮다고 응답하여,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 경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도 비용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중재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시사함.
- 6.23. 중재 언어에 대한 이해도 실무상 중요한 요소로, 이는 분쟁 당사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담보하는 요소로 중요하며, 중재인의 윤리성 또한 실무상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함. 현재 우리 중재법은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 제공하는 것은 중재인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재 당사자들의 중재인의 윤리성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임.
- 6.24.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중재 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제상사중재에서도 비대면방식의 심리운영 또는 IT 활용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 국제상사중재기관 선택에서 IT 지원의 중요성은 제한적인 역할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계각국에서 전자소송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전자증거 등의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상사중재에서도 전자증거 제출 및 조사는 유용할 것으로 보임.
- 6.25. 다만 AI를 이용한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재인 추천 등 중재인 또는 대리인 선임의 분석이나 청구의 강점 또는 예상 결과 예측 등 예측 분석 도구에 대하여는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미 각 당사자들이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 수요가 높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유용도 응답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됨.

- 6.26. 설문결과 실제 국제상사중재나 조정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서 국내에서의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의 의견의 상당한 일치를 보이며,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 가장 큰 요소임.
- 6.27. 집행가능성 등 분쟁해결효과에 관한 내재적 한계 문제는 국제상사중재와 비교할 때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일종의 '프레임'이 사회적으로 특히 법조계에서도 만연되어 있음을 시사함. 중재판정과 달리 조정합의는 법적으로 계약으로서 그 자체로서 집행력은 없지만, 집행력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조정에 의한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조계에서도 조정에 의한 합의는, 중재판정과 달리, 집행력이 없어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로서 합당한 수단이 아니라고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6.28. 한국이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하면 별도의 이행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54.9%의 응답자가 이행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한국은 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의 이행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단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협약의 국내 이행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음.
- 6.29. 현행제도와 같이 법원의 민사조정, 검찰의 형사조정 및 행정부의 행정형 조정이 만연한 국내에서 조정을 산업으로서 진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겠지만, 조정산업진흥법의 입법 필요에 대한 과반이 넘는 응답(64.6%)은 그만큼 국내에서도 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됨.
- 6.30. 현재 국내 법무법인은 대체로 국제중재팀을 두고 있는데,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제중재팀과 별도의 국제조정팀이 설치될 필요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3%인데, 이는 국제중재팀이 국제상사분쟁을 종래와 같은 중재에 의한 해결과 함께 조정에 의한 해결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됨.
- 6.31. 국제상사조정에서 2인 이상의 공동조정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과

반수가 넘는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일단 확인되며, 국제상사조정에서 공동 조정인의 지정이 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됨.

- 6.32. 변호사로서 조정을 선택할 유인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재와 비교할 때 조정의 시간이 훨씬 적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응답자가 수입료 등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선택하겠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수입료 등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선택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임을 시사함.
- 6.33. 국제상사조정에서 중요한 요소 관련, 설문결과에서는 '집행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바, 집행가능성 등의 내재적 한계를 국제상사조정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및 중요요소로 비중 있게 판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됨. 이어서 '신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조정제도의 장점으로서 신속한 분쟁해결에 대하여 응답자들 역시 많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조정절차에서 신속성이 요구 혹은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 6.34. 국제상사조정기관 선택 시 중요한 요소 관련, 설문결과에서는 국제상사조정기관의 선택 시 '소속 조정인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바, 이는 기관의 전문성이 합리적인 분쟁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는 것으로 결국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분쟁해결이라는 본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조정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6.35. 조정인 선정 시 중요한 요소 관련 설문결과에서는 '산업·분쟁 관련 전문성' 조정인의 '분쟁해결 경험', '언어구사력'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비해 '조정 관련 교육 여부'를 조정인 선택 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봄. 이는 교육보다는 실제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을 통해 다양한 조정 기법 및 의사소통기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건이나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 외에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자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제7장 결론

- 7.1. 국제상사중재 및 국제상사조정 실증조사 결과 비교결과, 국제상사조정의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양 제도 모두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일치함. 국제조정과 국제중재 모두 사회적 인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와 분쟁해결수단으로 양 제도 모두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일치함.
- 7.2. 국제상사조정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① 사회적 인식의 제고, ② 집행가능성 등 내재적 한계의 극복, ③ 기관 또는 조정인의 신뢰도 제고, ④ 기본법 등 법제도 마련, ⑤ 전문성 제고로 나타남. 국제상사중재제도 발전에 필요한 요소는 ①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 제고, ② 사회적 인식 제고, ③ 내재적 한계 극복, ④ 전문성 제고, ⑤ 효율성 제고로 나타남.
- 7.3. 따라서 양 제도 모두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보아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각각의 제도가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 극복과 신뢰도 제고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
- 7.4.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의 관계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응답자가 75.6%인데, 이는 국제중재의 경우 통상 중재합의를 할 때에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등을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다툼의 소지를 없애도록 주된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인데 반해, 조정은 아직까지는 분쟁 전에 계약서 작성시 분쟁해결수단으로 명시하는 관행은 흔하지 않고 주로 갈등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조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 관행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국제조정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다면 계약체결 시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
- 7.5. 조정은 반드시 변호사이여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68%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재의 경우에도 73% 정도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함. 전반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응답자 대부분(전체 84%)이 변호사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7.6. 국제조정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① 집행 가능성, ② 신속성, ③ 중립성·공정성, ④ 기회비용 순으로 선택하였고, 국제중재절차에서는 ① 집행 가능성, ② 중립성·공정성, ③ 비용, ④ 신속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양 절차 모두에서 집행 가능성을 절차수행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 이는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임을 감안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양 절차 모두 궁극적인 실현 단계인 집행 단계에서 일방당사자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여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임.
- 7.7.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국제상사조정기관이나 국제상사중재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① 소속 조정인(또는 중재인)의 전문성, ② 효율성, ③ 비용 순으로 양자 동일하다. 특히 응답자들은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소속 조정인(또는 중재인)의 전문성을 들었는데, 소속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됨.
- 7.8. 조정과 중재 모두 전문성과 관련 분야의 경험을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한데 비해, 중재교육 또는 조정교육 요소에 대해서는 양 쪽 모두에서 최하위로 선택되었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사내변호사, 로펌변호사 포함, 84% 정도)이므로 교육을 통한 법적 지식을 취득한 조정인이나 중재인보다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를 분쟁해결조정자로 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 7.9. 국제상사조정절차와 국제상사중재절차 모두 IT 활용에 대해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와 비대면 심리 운영 플랫폼 등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팬데믹 사태 기간 중에 원격심리절차가 일반화되고 대량의 증거를 제출하여 심리를 지연·방해는 것을 예방하고자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 등이 민·형사절차에 도입됨에 따라 국제조정절차나 국제중재절차에서도 유용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
- 7.10.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설문결과, 일부만 알고 있고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8.5%인 바,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사내변호사, 로펌변호사 포함 전체 응답자의 84%)임을 고려할 때 동협약이 변호사 실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협약의 효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함.

- 7.11.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략 70%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협상이나 분쟁해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일정한 협상기법이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한 해박한 전문지식도 요구되고 있으므로 조정인·중재인의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학계, 실업계)로 확대를 검토할 필요있음.
- 7.12.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모두 소속 구성원(조정인, 중재인 등)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제시한바,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는 중재나 조정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비용 절감이나 절차적 효율성보다는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내놓는 결론(판단)에 대한 신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7.13.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재의 경우에 중재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정산업진흥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5%에 달하는바, 적극적 입법정책 추진이 필요함.



## 제 1 장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서 론

김한균·박노형



## 제1절 | 정책현안과 연구의 필요성

대안적 분쟁해결절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중재와 조정의 사회적 효용은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 사건의 적체로 인한 법원의 과부하를 경감해 주어 사법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으며, 당사자 또는 사회적 요청에 맞는 분쟁해결절차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당사자 또는 사회적 요청에 부합하는 분쟁해결 결과 도출,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지역사회 관여도 제고 또한 기대된다.<sup>1)</sup>

이처럼 분쟁해결제도도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기초자산이며, 제3자(전문가)개입 방식 제도로서 조정과 중재를 비교해 보면, 중재인에게는 최종적인 판단권한 있으나 조정인은 권한 없고, 소송과 중재는 대체적, 양립불가 하나 조정은 소송·중재와 양립 가능하다. 중재제도 및 중재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신뢰성의 확보(절차적 공정성, 당사자 선정주의 도입),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에 즉응하는 중재인 풀 확보, 셋째, 이용률 제고(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인식 전환-홍보강화), 넷째, 심리절차의 보완(문서 제출명령 등 법원과 협조)공적 기능의 확대(소공인, 지역서비스 제공)<sup>2)</sup>과 같은 과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정책적 변화로서 특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2020년 9월 12일

1) 윤남근, 우리나라 중재·조정(ADR) 법제 발전을 위한 법정책 과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년도 제1차 중재·조정 법정책 세미나, 2021년 4월 11일)

2)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과 중재산업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년도 제2차 중재·조정 법정책 세미나, 2021년 5월 26일)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다.

동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 등을 통하여 동 합의를 집행할 의무를 가진다. 동 협약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중재협약과 유사하게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해결에 집행력을 추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동 협약의 적용을 받는 화해합의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조정절차에 따르면서 중재판정과 같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점에서, 조정과 중재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화해합의는 반드시 협약 당사국에서 결과할 필요가 없다. 또한, 동 협약에 따른 화해합의는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협약 당사국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는 점에서 조정을 통한 합의로서 일반적 성격의 계약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 등 국제경제 비중이 큰 국가들이 협약 당사국이 되면, 조정은 중재와 함께 국제상사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도 2019년 8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서명식에서 서명한 원서명국인 점에서 조만간 동 협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상사분쟁 해결에서 조정은 중재와 함께 재판의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고안된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정을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과를 도출하는 중재나 재판이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조정은 중재와 재판에 대하여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조정에서 제3자인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한 해결을 도와주는 점에서, 조정은 '확장/촉진된 협상' (extended/facilitated negotiation)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협상이 조정의 중심인 점에서, 조정인이나 분쟁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Win-Win 협상'의 기본 개념과 원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과 중재와 달리, 조정절차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주역이 되고 조정인은 조역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싱가포르 국제분쟁 해결 아카데미' (Singapor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cademy)의 분석에 따르면, 분쟁해결제도의 이용자들 중에서 변호사 등 법적 이용자 (legal user)와 기업 중역과 사내변호사 등 기업 이용자 (client user)는



국제상사중재, 국제상사재판, 복합해결, 국제상사조정 순으로 선호하였다. 304명의 응답자 중 법적 이용자는 집행력을, 기업 이용자는 중립성/공평성을 가장 중요시하였는데, 조정에 관하여 비용과 시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만족하였다.<sup>3)</sup>

무엇보다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되면,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및 동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집행하고 그 원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한국이 동 협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려면, 관련 절차규칙이 필요하다. 마침 법무부는 2021년 3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다.<sup>4)</sup>

싱가포르조정협약 당사국은 동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특히 적용 범위, 집행과 원용 및 구제 거부 등에 관하여 국내법에서 구체적 기준을 채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협약 당사국들 사이에서 화해합의의 집행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적용에 관한 국가실행(State practice)이 집적될 필요가 있는데, 중재판정에 관한 뉴욕중재협약에 따른 법원의 집행의 선례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제정에서 중요한 문제는 국제상사 조정의 수행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다. '국제상사조정의 허브'가 되겠다는 명목으로 자칫 정부 주도로 국제상사조정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려 할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제상사중재의 허브'가 되겠다는 큰 노력이 있지만,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와 홍콩과 비교할 때 점점 실적과 영향력 등에서 비교가 되지 않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sup>

국제상사조정기관은 국제상사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정절차에 관한 규칙을 구비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조정인 명부를 비치하며, 해외의 유사 국제상사조정 기관과 협력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등 국제조정을 '촉진하는'(facilitate) 역할을 하는

3) Singapor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cademy, SIDRA Survey 2020, paras. 4.2.10, 4.2.13.

	국제상사조정	국제상사중재	국제상사재판
비용만족도	65% 62% (법적 이용자) 72% (기업 이용자)	25% 23% (법적 이용자) 31% (기업 이용자)	48% 51% (법적 이용자) 39% (기업 이용자)
시간만족도	68%	30%	45%

4) 법무부, '싱가포르 조정 협약 이행 법률 제정 TF' 발족 (법률신문 2021년 3월10일자)

5) 박노형,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법률신문 2021년 4월 19일자)

것이다. 이러한 국제상사조정 of 촉진적 역할에는 상시적으로 많은 인력과 재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는 중재와 달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협상을 도와주는 조정의 자율적 성격을 고려할 때 조정의 활용과 경쟁력 제고에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sup>6)</sup>

향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이 어떤 내용과 형식이 되더라도, 형식적이거나 실질적으로 법원의 민사조정, 행정형 조정 및 형사조정과 같이 정부가 개입하는 '관제'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조정을 포함한 분쟁해결제도는 공공재로서 간주하여 이용자인 국민의 접근 문턱을 낮추려고 한다. 그러나, 조정인에 대한 대우가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은 등의 문제로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신뢰할 만한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의 성격과 규모,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조정인에 의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즉, 조정의 수행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조정을 통한 성공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해야 이용자인 국민과 기업의 신뢰가 높아진다. 특히 국제 경쟁력과 국제적 평판이 중요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sup>7)</sup>

조정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게 도와주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고,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질서를 존중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조정협약체제에서 한국이 '국제상사조정 of 허브'가 되려고 한다면, 국제적 평판과 신뢰를 가지고, 자율적 경쟁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조정기관이 활동하여야 한다. 조정이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임의적 성격을 가진 점에서, 특히 한국의 국제경제와 통상에서의 높은 수준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때, 다수의 국제조정기관이 국내에 설립되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정부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조정인의 윤리적 기준을 포함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조정기관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설비의 이용을 지원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효과적이고 충실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8)</sup>

조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으면 중재나 재판 등 법적으로 강제적인 분쟁해결이

6) 박노형,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법률신문 2021년 4월 19일자)

7) 박노형,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법률신문 2021년 4월 19일자)

8) 박노형,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 이행법안 추진 방향과 과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박법계 의원실·국제조정센터·한국조정학회 입법정책세미나 자료집, 2022년 11월10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서 중재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중재는 활용되어야 한다. 다만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한 현 시점에서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고 또한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 제2절 | 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상사중재제도 및 산업의 발전 성과와 한계를 법무정책적 관점에서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현실적으로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중재 허브(hub)와의 격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런던 등 국제상사중재 허브는 국제상사중재 사건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의 진흥, 고용 창출, 외화 획득 등의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 반면, 서울은 한국 기업이 일방 당사자인 사건 외에는 국제중재 사건을 거의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7년부터 중재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고, 법무부 주도의 연구 및 교류, 대한상사중재원 주도의 교육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나, 이러한 활동이 중재사건 유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또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관한 기업인, 법조인과 일반인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중재산업 활성화 지연 문제다.

셋째, 본 연구는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추진에 목적이 있다. 이는 종래 ADR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족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종래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12) 등에 불과한데 비해, 주요 외국의 경우 실증적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sup>9)</sup>

넷째, 이와 같은 실태파악 및 문제현실 분석을 통해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9) The Singapor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cademy,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Survey: 2020 Final Report: Attitudes to Mediation (June 2001) [http://www.cedr.co.uk/library/articles/CEDR\\_PCB\\_survey.pdf](http://www.cedr.co.uk/library/articles/CEDR_PCB_survey.pdf), Mistelis, Loukas. "ADR in England and Wales: a successful cas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ADR Bulletin 6.3 (2003): 53-55. Alkon, Cynthia. "Lost in translation: Can exporting ADR harm rule of law development." J. Disp. Resol. (2011): 165.

필요성과 예상 효과에 대해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2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업 간 분쟁 절차를 해결하는 데 중재가 소송 절차보다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나 홍콩의 사례와 같이 국제 중재를 많이 유치해 기업에 도움이 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 중재 경험과 역량을 두루 갖춘 중재인 육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각 분쟁 분야의 전문가 참여도 중요하다” “한류에 대한 관심과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력이 국제 중재 사건 유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한바 있다.<sup>10)</sup> 국제중재사건 심리를 서울로 유치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거둬도 동시에 중립적 이해조정자로서의 국가 위상 제고도 꾀할 수 있으며, 서울을 중재지로 하는 중재사건의 경우 한국 법원이 취소소송 등 관련 소송의 관할법원이 됨으로써 사법부의 국제적 역량 제고 및 관련 법리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2019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선도적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동 협약은 국제상사조정으로 도출이 된 합의의 집행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며 당사자를 존중하는 분쟁해결절차로 이용될 것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로서, 이론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국제중재 및 조정 제도와 산업의 현실과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도 실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둔다.

### 제3절 | 연구의 열개와 방법

#### 1. 연구의 열개

서론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 목적과 범위, 열개와 방법을 제시하고, 이어서 제2장에서는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 제도 발전 성과를 개관함으로써 본격적 연구를 전개하는

10) “대한상사중재원 찾은 박범계 “중재인 육성·확보 중요”(조선 비즈 2022년 1월 27일자)

기초를 제시한다. 1966년 중재법 제정, 1999년 중재법 전부개정, 2016년 중재법 일부 개정, 2017년 중재진흥법 및 2019~2023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국내 조정제도의 현황과 국제상사조정 국내사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뉴욕중재협약에 따른 국제중재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이어서 국제중재의 국내 현황과 발전과제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조정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2018년 UNCITRAL 조정모델법, 2019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 이행 논의 현황 및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도 발전 방향을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국제중재 및 조정 선진국가 제도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의 유관 제도와 정책을 살펴 국제중재 및 조정허브의 성공 및 한계요인을 분석한다.

특히 제6장은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 수요의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국제상사중재·조정제도에 대한 발전적 보완과 문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관련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연구인력자원 적극 활용하여 연구수행 및 향후 연구과제 개발과 연구인력풀을 확충하는데 장기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상사중재 및 조정체계의 적극 활용을 위한 연구 및 정책자문기관인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 (Korea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KIMC)와 공동 연구로 수행되었다.

또한 국제 중재 및 조정 관련 논문, 발표문 등 학술 자료 분석과 주요 국제중재 및 조정 관련 기관, 단체, 학회의 정책성과 및 정책분석 자료 검토를 기초로 하고, 국제중재 및 조정 분야 기업인, 법조인,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 수행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내 국제중재 및 국제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 파악을 목적으로 전문가 대상 조사를 설문 형식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본 연구수행과 성과확산 뿐만 아니라 법무정책 연구사업의 향후 지속적 개발을 위해 본 연구의 관심주제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국내 및 국제 세미나를 기획하였다.<sup>11)</sup>

11)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본 연구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각종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일시	발표	
4월 11일	윤남근 교수	
5월 26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6월 9일	이선재 박사 (코어건축 대표)	김홍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6월 23일	김용섭 교수(전북대)	황덕남 변호사 (前 상임조정위원)
7월 14일	정경화 변호사 (Covington & Burling LLP)	백윤재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7월 28일	김명안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서동희 변호사 (법무법인 정동국제)
11월 10일	입법정책세미나 -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 (박노형 교수)	
11월 29일	한중일 국제상사조정포럼 (KIMC·일본국제조정센터·상하이상사조정센터)	

## 제 2 장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발전 성과

조 수 혜





## 제2장

# 국내 상사중재 및 조정제도 발전 성과

### 제1절 | 1966년 중재법 제정

#### 1. 1966년 중재법 제정 배경

##### 가. 중재제도의 의의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이면서도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중재는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데, 첫째로 중재는 ADR의 하나로 사인(私人)인 제3자가 분쟁해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조정과 유사하나, 당사자 간의 화해를 촉진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조정과 달리, 중재는 일응의 법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들은 그 판단에 구속된다<sup>13)</sup>는 점에서 구속력, 나아가 집행력이 있는 ADR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중재는 구속력이 있는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과 유사하나, 보편적인 재판권에 기반하여 진행되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sup>14)</sup>, 중재합의에 의하여 당사자의 자치성(autonomy)이 분쟁해결에서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본안판단에 적용될 법을 결정할

12) 김갑유 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7, 3면.

13) 김갑유 외, 위의 글, 3면.

14)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6면.

뿐 아니라 판단주체를 정하는데 참가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중재는 소송과 달리 판단의 공정성보다는 당사자들의 비밀보호를 중시하여 중재 심리는 비공개한다<sup>16)</sup>는 점에서 사적 분쟁해결절차라고 할 수 있다.

## 나. 중재법 제정 이전의 중재제도

### (1) 중재제도의 연혁

중재제도는 역사가 오래되어 최초의 중재제도의 기원은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sup>17)</sup> 고대 페니키아와 그리스 상인 간의 분쟁은 중재로 해결하였다고 하며,<sup>18)</sup>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에서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는 보편적 관행이었다고 한다.<sup>19)</sup> 중재는 국제분쟁해결에도 활용되어, 기원전 600년경 아테네와 메가라는 살라미섬(Salamis Island)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5명의 스파르타인에게 중재로 판단을 받았다는 기록이 존재한다.<sup>20)</sup> 유럽 중세시대에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해상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한 자치적인 해상재판소와 상공업 발달로 자주권을 획득한 신흥 도시 내의 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한 상사재판소는 중재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21)</sup> 근대에 이르러서도 중재는 성행하였으며, 16세기 이후 길드 등 실업 단체에서 중재가 성행하였다.<sup>22)</sup>

현재 대다수의 국가들은 중재관련법을 제정하여 상사중재를 제도화시키고 상설중재기관을 설치하였는데, 중재제도의 법제화는 유럽에서 19세기 후반부터 관찰이 된다.<sup>23)</sup> 영국은 무역·해운·금융 중심지의 전통을 바탕으로 런던중재법원(London Court of Arbitration)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는 중재기구가 있으며, 중재법의 제정은 1889

15) 목영준·최승재, 위의 글, 8면.

16) 목영준·최승재, 위의 글, 8면.

17) 목영준·최승재, 위의 글, 12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50년사』, 대한상사중재원, 2016, 15면.

18) Frank D. Emerson, History of Arbitration Practice and Law, 19 Clev. St. L. Rev. 155, 156 (1970).

19) Fabricio Fortese & Lotta Hemmi, Procedural Fairness and Effici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3(1) Groningen J. Int'l L. 110, (2015).

20) Frank D. Emerson, History of Arbitration Practice and Law, 19 Clev. St. L. Rev. 155, 156 (1970).

21) 목영준·최승재, 앞의 책, 13면.

22)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책, 17-19면.

23)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책, 24면.

년에 이루어졌다.<sup>24)</sup> 한편 대륙법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이 1877년 민사소송법 제정시에 제10편 중재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어 법제화하였으며, 양모나 커피 등 무역단체에 의한 상설중재기관의 이용이 활발하다.<sup>25)</sup> 20세기에 이르러 상설적인 중재기관이 출현하고<sup>26)</sup>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이하 '뉴욕중재협약'이라 한다<sup>27)</sup>)<sup>28)</sup>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면서 국제상사중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sup>29)</sup>

## (2)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도 사인 간의 분쟁을 국가공권력에 의하지 않고 사인(私人)인 제3자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통은 고조선 시대 이전부터 확립되어 있었다.<sup>30)</sup>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분쟁해결제도는 비록 중재, 조정, 화해 등의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공동체 규범으로 자리 잡으며 장려됐다.<sup>31)</sup> 우리나라에서 중재제도가 최초로 법제화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 1조 제13호에 따라 구 일본 민사소송법이 우리나라에 의용된 때이며, 구 일본 민사소송법은 제8편에서 중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sup>32)</sup> 광복 이후에도 조선민사령은 군정법령 제21호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었으나, 실제로 중재제도가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 중재절차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1966년 중재법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 법제에는 중재제도가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sup>33)</sup>

24)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책, 25면.

25)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29면.

26)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3면.

27) 뉴욕중재협약의 상세내용은 제3장에 후술함.

28) UNCITR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 (2022. 9. 6. 최종방문).

29) Fortese & Hemmi, supra note 8, at 112.

30)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33면.

31)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4면.

32)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4면;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35면.

33)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4면;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35면.

## 2. 중재법 제정 및 대한상사중재원 설립

### 가. 중재법 제정 경위

1955년 홍콩에서 개최된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는 상사중재를 촉진하는 지역 내 최초의 권고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이는 우리나라의 상사중재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 되었다.<sup>34)</sup> 1956년 서울에서 조인된 한·미우호통상조약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상사중재에 관한 절차규정을 삽입하였다.<sup>35)</sup> 한편,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증가하는 무역분쟁해결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및 중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sup>36)</sup> 이에 대응하여,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도하여 1963년부터 중재법제정과 중재기관 설치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sup>37)</sup> 1963년에는 상공회의소 사업계획으로 중재기관의 설치를 채택하고, 1964년에는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업계, 학계, 법조계 권위자들을 망라하여 국제상사중재제도 창설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sup>38)</sup>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재법 제정과 상사중재위원회 설립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1965년 상공부는 상역검 제1313호와 대한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6항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하여 연구하도록 요청하였다.<sup>39)</sup> 그 결과 1965년 중재법안이 마련되어<sup>40)</sup> 1966. 3. 16. 법률 제1767호로 중재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중재법은 총 18개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제정되었으며,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중재법을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법으로 제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sup>41)</sup>

34)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36면.

35) 대한상사중재원, 위의 글, 36면.

36) 대한상사중재원, 위의 글, 36면.

37)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4-15면.

38)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37면.

39) 대한상사중재원, 위의 글, 37면.

40)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5면.

41)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41면.

## 나. 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1966. 3. 16. 법률 제1767호로 제정되고 1973. 2. 17. 법률 제2537호 개정되기 이전의 구 중재법(이하 '제정 중재법' 또는 '1966년 중재법'이라 한다)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언하였다(제1조).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로, 당사자가 중재를 합의한 서면에 기명·날인하거나, 계약 중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경우에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중재계약이 성립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중재판정에 따라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제3조). 중재인은 당사자가 정한 방법 또는 중재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제4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은 중재인이 될 수 없다(제5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사유나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중재인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6조).

중재절차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필요한 경우 법원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제9조).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중재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판정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의 서명·날인과 이유,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판정 정보를 송달하고 그 원본은 송달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보관한다(제11조).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12조), 중재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등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13조).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내릴 수 없다(제14조).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그 취소의 이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한편, 상사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 합의가 없거나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제7조 제3항),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제18조).

» [표 2-1] 제정 중재법의 조문별 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중재계약
제3조	직소금지
제4조	중재인의 선정
제5조	중재인의 결격사유
제6조	중재인의 기피
제7조	중재절차
제8조	당사자·증인·감정인의 심문
제9조	법원의 협조
제10조	중재절차 위법의 주장과 중재인의 판정권
제11조	중재판정
제12조	중재판정의 효력
제13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14조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
제15조	집행판결 후의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16조	소제기간
제17조	관할법원
제18조	중재규칙의 승인

#### 다. 대한상사중재원 설립 경위

대한상공회의소는 1966. 3. 22. 상사중재업무를 관할하는 산하기구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1966. 10. 13. 대법원장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규칙을 제정하여 중재법 제정 및 중재기구 설치가 완료되었다.<sup>42)</sup>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중재업무 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해체되고 1970. 3. 16.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설립되었고, 상공부에 사단법인 허가신청을 제출한 결과 1970. 3. 22. 상공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허가되어 상설전문중재기관이 출범하였다.<sup>43)</sup> 대한상사중재협회는 기존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권리, 의무 및 상사중재업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나, 법규상 근거가 없어 무권대리상태가 계속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이 논의되어, 1973. 2. 17. 법률 제2537호로

4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 안내, 연혁,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ro/history.jsp](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ro/history.jsp) (2022. 9. 21. 최종접속).

43)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37면.

중재법이 개정되었다.<sup>44)</sup> 1973년 개정 중재법에 의하여 대한상사중재협회는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설중재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었다.<sup>45)</sup> 대한상사중재협회는 1980. 8. 29. 명칭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변경하면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sup>46)</sup>

### 3. 뉴욕중재협약 가입 및 중재법 개정

#### 가. 뉴욕중재협약 가입

국제연합(UN)은 국제상사분쟁해결제도로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외국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의 통일적인 승인 및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뉴욕중재협약을 채택하였다.<sup>47)</sup> 뉴욕중재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요건이 충족될 경우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어 현대적인 의미의 중재제도가 완성되었다.<sup>48)</sup> 뉴욕중재협약의 성공 이후 국제상사분쟁에서 중재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분쟁해결절차로 확고하게 자리잡으면서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뉴욕중재협약 가입을 추진하여 왔다.<sup>49)</sup> 그러나 1970년 당시 국회 외무위는 우리나라의 뉴욕중재협약 가입을 시기상조라고 하며 가입을 보류하여,<sup>50)</sup> 뉴욕중재협약 가입이 즉시 성사되지는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신인 대한상사중재협회는 1970년대 이후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함께 증가한 무역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뉴욕중재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sup>51)</sup> 그 결과 1973. 2. 국제연합에 뉴욕중재협약 가입서류를 제출하고, 5. 9. 뉴욕중재협약 가입이 발효하였다.<sup>52)</sup>

44) 대한상사중재원, 위의 글, 64면.

45) 대한상사중재원, 위의 글, 64면.

4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 안내, 연혁,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ro/history.jsp](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ro/history.jsp) (2022. 9. 21. 최종접속).

47) UNCITR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 (2022. 9. 15. 최종방문).

48) Fortese & Hemmi, supra note 8, at 112.

49)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70면.

50)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70면.

51)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69면.

52)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69면.

### 나. 1973년 중재법 개정

대한상사중재협회는 1970. 3. 27. 발족하면서 중전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권리, 의무, 업무를 사실상 승계하였으나, 법규상 근거가 없어 당시 구 중재법 제14조의 소정의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 부칙 제2항의 소정의 국고보조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sup>53)</sup> 또한 상사중재규칙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국제상사중재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서 상사중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sup>54)</sup> 이를 해결하고자 대한상사중재협회는 뉴욕중재협약 가입 추진과 동시기에 중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sup>55)</sup>

대한상사중재협회는 1970. 12. 21. 중재관계법령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안의 작성·심의·건의를 위임하였고, 초안이 1971. 1. 6. 채택되었다.<sup>56)</sup> 이 초안은 1971. 2. 17. 제1차 이사회에 상정되어 의결되었으며, 1971. 3. 16. 상공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각 제출하여 법무부에 회부되었다.<sup>57)</sup> 그러나 중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속 계류되다가 1973. 2. 9. 비상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었고, 1973. 2. 17. 법률 제2537호로 중재법이 개정되었다.<sup>58)</sup>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① 상사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사중재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추정한 것(제4조 제3항, 제7조 제3항), ② 중재인의 결격사유(제5조), ③ 중재판정의 형식(제11조 제3항), ④ 중재판정취소사유(제13조 제1항) 등이 있다.<sup>59)</sup>

중재법 개정과 더불어, 1966. 10. 13. 대법원이 승인한 상사중재규칙 중 불분명하거나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사중재규칙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개정 상사중재규칙은 1973. 4. 3. 대법원의 승인을 받았다.<sup>60)</sup>

53)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70면.

54)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5면.

55)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70면.

56)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70면.

57)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70면.

58)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5면;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70면.

59)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5면.

60)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71면.



## 제2절 | 1999년 중재법 전부개정

### 1. 개정배경 및 개정경위

#### 가. 개정배경

198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분쟁해결 편의를 도모하면서 중재의 자국 유치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중재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자국 중재법을 국제중재실무기준에 맞추어 정비하였다.<sup>61)</sup> 그 구체적인 예가 프랑스 1980년 중재법 개정, 네덜란드 1986년 중재법 개정 등이다.<sup>62)</sup>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재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자 UN국제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이라 한다)는 1985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이하 '1985년 모델중재법'이라 한다)을 채택하였다.<sup>63)</sup> 세계 각국은 1985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자국 중재법을 정비하면서 대외적으로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중재법이 있음을 홍보하였으며, 이러한 각국의 국제중재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중재절차의 통일이 가속화되었다.<sup>64)</sup> 모델중재법의 수용 형태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우리 중재법이 1966년 제정 당시 모델로 삼았던 독일의 경우, 1985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민사소송법 제10편 중재절차를 전면 개정하고 개정법은 1998. 1. 1. 시행되었다.<sup>65)</sup>

#### 나. 개정경위

1966년 제정된 중재법은 1877년의 독일 민사소송법의 중재에 관한 규정을 모델로 하여 독일 구 민사소송법에 기초하고 있었다.<sup>66)</sup>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61)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6면.

62)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6면.

63)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 (2022. 9. 15. 최종방문). 모델중재법의 상세내용은 제3장 제2절에 후술함.

64)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6면.

65)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172면; 장문철, 앞의 글, 17면.

이루어진 우리 실무는 독일법과는 다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제중재센터 실무에 따라 운영되어 중재법과 중재실무 간에 괴리가 있어왔다.<sup>67)</sup>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재법을 갖추기 위하여 중재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1990년 초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sup>68)</sup> 1990. 10. 한국중재협회 창립총회에서 모델 중재법을 수용한 외국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모델중재법의 수용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우리 중재법과 모델중재법, 다른 나라의 중재법과의 비교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sup>69)</sup>

법무부는 1998. 12. 중재법 개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모델중재법을 수용하면서도 우리 법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한 중재법개정초안을 만들었다.<sup>70)</sup> 위 개정초안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 및 법제처의 보완작업을 통하여 개정안으로 확정되었고 1999. 12. 2. 국회를 통과하였고 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공포되었다.<sup>71)</sup>

#### ▶▶▶ [표 2-2] 1966년 중재법과 1999년 중재법의 주요내용 비교

1999년 중재법 조문별 내용	1966년 중재법의 대응 조항
제1조 목적	제1조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정의	제2조(중재계약)
제4조 서면의 통지	-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
제6조 법원의 관여	-
제7조 관할법원	제17조
제8조 중재합의의방식	-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3조(직소금지)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
제11조 중재인의 수	-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제4조(중재인의 선정), 제5조(중재인의 결격사유)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제6조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

66)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0, 14면.

67) 장문철, 앞의 글, 14면.

68)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171면.

69)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171면; 장문철, 앞의 글, 16면.

70)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6면.

71)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172면; 장문철, 앞의 글, 17면.

1999년 중재법 조문별 내용	1966년 중재법의 대응 조항
제15조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 종료	-
제16조 보결중재인의 선정	-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제10조(중재절차 위법의 주장과 중재인의 판정권)
제18조 임시적 처분	-
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
제20조 중재절차	제7조
제21조 중재지	-
제22조 중재절차의 개시	-
제23조 언어	-
제24조 신청서와 답변서	-
제25조 심리	제8조(당사자·증인·감정인의 심문)
제26조 일방 당사자의 해태	-
제27조 감정인	-
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제9조(법원의 협조)
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
제30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
제31조 화해	-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제11조(중재판정)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
제34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제12조
제36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14조(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
제38조 국내중재판정	-
제39조 외국중재판정	-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18조

## 2. 전부개정的主要内容

### 가. 1985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전면수용

1999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우리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sup>72)</sup> 이는 중재법의 국제화와 국제거래당사자에게 우리 중재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

72)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173면; 장문철, 앞의 글, 12면.

기 위한 것이다.<sup>73)</sup> 다만 1999년에 전부개정되고 2016년 일부개정되기 전의 구 중재법(이하 ‘1999년 중재법’이라 한다)은 모델법을 문언 그대로 채용하지 않고, 모델법이 상정한 국제중재실무의 기준을 고려하면서도 우리 법제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모델법 조항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sup>74)</sup> 종래 중재법은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중재절차의 대부분을 당사자자치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1999년 중재법은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당사자자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위하여 중재절차의 기본사항을 모델중재법을 참조하여 상세히 규정하였다.<sup>75)</sup> 그 중 특기할 개정부분으로, 중재가능성(제3조), 중재합의 방식, 즉 서면성에 대한 부분(제8조),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제17조), 임시적 처분(제18조), 중재절차에서 당사자 동등대우(제19조)와 중재지(제21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제28조), 중재판정에서 분쟁 실체에 적용될 법(제29조), 중재판정 취소사유(제36조),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제37조) 등이 있다.

### (1) 중재가능성

1973년에 개정된 구 중재법 제2조는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1999년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제3조 제2호 중재합의에 대한 정의조항으로 “‘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처분가능성을 삭제하였다.<sup>76)</sup> 이 개정에 의하여 계약상 분쟁뿐만 아니라 계약관계를 침해하는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이나 불공정경쟁으로 인한 침해 등도 중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게 되었다.<sup>77)</sup>

73) 이호원, 『중재법연구』, 박영사, 2020, 51면.

74) 이호원, 위의 글, 52면; 장문철, 앞의 글, 15면.

75)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174면; 장문철, 앞의 글, 14면.

76) 중재법에서 중재가능성을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 의견으로 석광현 2017, 앞의 글, 218면 참조.

77) 장문철, 앞의 글, 22면.

## (2) 법원의 관여 금지

1999년 중재법 제6조는 중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중재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관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은 모델중재법 제5조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종전의 우리 중재법에는 없는 내용이다.<sup>78)</sup> 이는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중재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현대 중재법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sup>79)</sup> 이 조항에 의하여 법원은 중재인의 선정, 증거조사를 위한 협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등 중재법에 규정한 경우에만 중재절차에 개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sup>80)</sup>

## (3) 중재합의 서면요건

1999년 중재법은 뉴욕중재협약과 1985년 모델중재법 제7조 제2항을 수용하여,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①양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포함된 계약에 서명한 경우, ②각종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③당사자 간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있음을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고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 서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81)</sup> 또한 ④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문서를 인용한 경우에도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종전의 중재법에는 없던 규정이나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등 우리 법원에서 인정하여 오던 것을 입법화한 것이다.<sup>82)</sup>

1999년 중재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모델법 제7조 제2항이 '신청서와 답변서의

78) 장문철, 앞의 글, 24면.

79) 장문철, 앞의 글, 24면.

80) 장문철, 앞의 글, 24면.

81) 1999년 중재법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에 한다.

82) 장문철, 앞의 글, 28면.

교환에 의하여 일방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고 규정한 데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당사자간에 교환된 문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서면성이 있다고 보아 모델중재법보다 완화된 서면성 요건을 규정하였다.<sup>83)</sup> 모델중재법은 뉴욕중재협약의 서면성 요건보다 완화된 서명성 요건을 요구하므로, 결과적으로 1999년 중재법은 뉴욕중재협약의 서면성 요건보다 허용하는 중재합의 방식이 넓고, 이로 인하여 1999년 중재법에서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뉴욕중재협약에 의해서는 무효로 볼 여지가 발생하였다.<sup>84)</sup>

다만 1999년 중재법은 서면청약을 구두로 승낙하거나 구두청약을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구두합의를 사후에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서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sup>85)</sup> 즉, 중재합의의 서면요건은 중재합의에 관한 서면증거의 요구가 아니며 합의 자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한다.<sup>86)</sup> 이는 뉴욕중재협약의 입법태도와 일치하는 것으로,<sup>87)</sup> 서면성 요건이 기본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88)</sup>

#### (4) 법원의 보전처분

1999년 중재법 제10조는 모델중재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중재합의 당사자가 중재절차 개시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종전 중재법에서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 중재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이에 대한 사무를 행한다고 규정하여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협조의 일반적 규정을 두었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sup>89)</sup> 법원의 보전처분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제18조)보다 넓으며, 본안문제를 보존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처분, 그리고 압류 또는 가치분의 경우 그 집행까지 포함한다.<sup>90)</sup> 법원의 보전처분은 중재절차와 양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중재합의로

83) 이호원, 앞의 글, 57면.

84) 이호원, 앞의 글, 58면.

85) 석광현 2017, 앞의 글, 229면.

86) 석광현, "중재법의 개정방향 - 국제상사중재의 측면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42면(이하 '석광현 2012'로 인용한다).

87) 석광현 2012, 앞의 글, 542면.

88) 장문철, 앞의 글, 28면.

89) 장문철, 앞의 글, 30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도록 약정하였더라도 보전처분의 공익적 성질 및 사정 변경 등을 고려하여 보전처분 신청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sup>91)</sup>

#### (5) 중재판정부 구성

1999년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인 수를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3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1조), 중재인 선정방식에 대하여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인 선정절차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되(제12조 2항),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3인 중재인에 의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의하여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였다(제12조 제3항). 중재인의 기피사유는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잠재적 중재인이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당사자들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였다(제13조). 이는 종전 중재법에서 중재인의 기피사유로 민사소송법의 제척·기피 조항을 준용하였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sup>92)</sup>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에 관하여 종전의 구중재법이 법원에 기피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반하여, 1999년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원칙적으로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를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기피신청은 우선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도록 하고, 중재판정부에서 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4조).<sup>93)</sup> 한편, 종전의 구중재법은 중재인 권한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중재관행과 판례로 인정했으나, 1999년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권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명문으로 인정하였다(제17조).<sup>94)</sup>

90) 장문철, 앞의 글, 30면.

91) 이호원, 앞의 글, 58면.

92) 장문철, 앞의 글, 34면.

93) 장문철, 앞의 글, 36면.

94) 장문철, 앞의 글, 39면.

### (6) 임시적 처분의 신설

1973년에 개정된 구 중재법에는 임시적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1999년 중재법은 모델중재법 제17조를 수용하여 임시적 처분의 근거규정을 도입하였다(제18조).<sup>95)</sup> 법원의 보전처분과는 별도로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sup>96)</sup> 다만 1999년 중재법 제18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에 대한 신문 없이 일방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하는 일방적 임시적 처분은 양 당사자의 중재절차에서의 동등한 대우와 변론 기회의 충분한 보장이라는 중재의 이념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sup>97)</sup>

일반적으로 국제중재에는 손해를 회피하기 위한 처분, 장래 중재판정의 집행을 위한 처분, 중재절차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처분, 증거보전을 위한 처분 등을 임시적 처분으로 할 수 있으나, 1999년 중재법은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만을 도입하였다.<sup>98)</sup>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 특히 독일의 경우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시처분의 집행에 대한 규정을 두었으나,<sup>99)</sup> 1999년 중재법은 중재판정만을 승인 및 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임시적 처분의 집행방법은 규정하지 않아 집행력이 없었다.<sup>100)</sup>

### (7) 중재절차 규정

중재절차에 대하여 1966년 중재법은 당사자자치에 의한다고 하여 4개 조문만을 두었으나 1999년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10개의 조문을 두었다.<sup>101)</sup> 우선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절차에서 양당사자의 동등대우 원칙을 신설하였다(제19조).<sup>102)</sup> 중재절차가 소송절차에 비하여 유연하고

95) 1999년 중재법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임시적 처분에 같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96) 이호원, 앞의 글, 60면.

97) 석광현 2012, 앞의 글, 546면.

98) 석광현 2012, 앞의 글, 547면.

99) 장문철, 앞의 글, 40면.

100) 석광현 2012, 앞의 글, 548면; 이호원, 앞의 글, 60면.

101) 장문철, 앞의 글, 41면.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의의 기본원칙인 양당사자의 동등대우 원칙은 준수되어야 함을 선언한 것이다.<sup>103)</sup> 한편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1999년 중재법 개정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모델중재법에 따라 우리 중재법에 중재지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sup>104)</sup> 1999년 중재법은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모두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중재지 개념이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도涉外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중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우리 중재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어 중요하다.<sup>105)</sup>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중재법은 중재지에 대하여 당사자 합의로 정하되,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중재지를 정한다고 규정하였다.<sup>106)</sup>

한편 1999년 중재법은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요청 절차, 방법, 법원의 조치 등을 1966년 중재법과 모델중재법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다(제28조).<sup>107)</sup> 이는 중재판정부가 공권력이 없어 증인출석이나 문서제출 등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협조를 얻어 중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이다.<sup>108)</sup>

## (8) 중재판정

1999년 중재법은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에 대한 모델중재법을 수용하면서도, 특정국가의 법이 아닌 상인법(*lex mercatoria*) 등 무국적 법원칙의 적용을 허용할 경우 우리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델중재법을 그대로 수용하

102) 장문철, 앞의 글, 40-41면.

103) 이호원, 앞의 글, 61면.

104) 이호원, 앞의 글, 61면.

105) 장문철, 앞의 글, 42면.

106) 1999년 중재법 제21조 (중재지)

① 중재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편의와 당해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지를 정한다.

③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간의 협의, 증인·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 물건·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107) 1999년 중재법 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조서에 기재할 사항 기타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탁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등본·검증조서등본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없이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08) 이호원, 앞의 글, 61-62면; 장문철, 앞의 글, 52면.

지 않고 우리 법체계에 맞추어 규정을 도입하였다.<sup>109)</sup> 이에 따라 1999년 중재법 제29조는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으로 당사자 합의로 정한 법을 적용하되,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제29조 제2항). 모델중재법에서 상정하였던 우의적 중재(amicable compositeur)의 경우는 우리 법체계에서 낯설다고 보아,<sup>110)</sup> 형평과 선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였다(동조 제3항). 한편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모델중재법을 그대로 수용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하였다(제30조).

1999년 중재법은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제정 중재법에는 없었던 중재절차 중 당사자 화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1조).<sup>111)</sup> 이에 의하여 중재절차 진행 중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에 중재절차가 종료되고(제31조 제1항), 화해중재판정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이 명시되었다(동조 제3항).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에 대하여는 1966년 중재법을 토대로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sup>112)</sup>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서면성과 중재인 전원의 서명, 작성일자과 중재지 기재 등을 요구하고(제32조 제1항, 제3항), 중재판정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 (9)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승인·집행

1999년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모델중재법에는 없는 내용이나 1966년 중재법의 내용을 이어받아 중재판정이 당사자 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규정하였다(제35조).<sup>113)</sup>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1966년 중재법에도 있던 제도이나 취소요건은 모델중재법 제34조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규정하였다.<sup>114)</sup> 1999년 중재법은 민사소송법을 취소 사유로 준용하던 규정을 없애고 취소사유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109) 이호원, 앞의 글, 62-63면.

110) 장문철, 앞의 글, 54면.

111) 장문철, 앞의 글, 56면.

112) 장문철, 앞의 글, 57면.

113) 장문철, 앞의 글, 61면.

114) 장문철, 앞의 글, 63면.

취소사유는 뉴욕중재협약 제5조의 승인·집행거부사유와 동일한 모델중재법 제34조의 규정을 수용하여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만을 취소 사유로 인정하였다.<sup>115)</sup>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하여 1999년 중재법은 뉴욕중재협약 제4조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목록과 동일한 모델중재법 조항을 그대로 수용하고(제37조 제2항), 다만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1966년 중재법의 입장을 유지하였다.<sup>116)</sup> 승인·집행 요건에 대하여는 국내중재판정의 경우(제38조)와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제39조)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국내중재판정의 경우 뉴욕중재협약 제5조와 동일한 내용인 중재판정취소사유가 없는 한 승인 또는 집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승인·집행 요건에서 뉴욕중재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요건과 다르지 않다.<sup>117)</sup> 뉴욕중재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은 외국중재판정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대한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하였다(제39조 제2항).

## 나. 중재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 및 지원 등

### (1) 중재제도에 대한 통합적 규율

1999년 중재법은 중재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규율을 마련하면서,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 등을 함께 규정한 점도 특징을 볼 수 있다. 우선 적용범위 측면에서 모델중재법은 국제상사중재를 적용범위로 하였으나, 1999년 중재법 제2조 제1항은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였다.<sup>118)</sup>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일원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중재법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성하였으며,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sup>119)</sup> 이는 1998. 1. 1. 개정된 독일 민사소송법 중 중재편과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독일 민사소송법은

115) 장문철, 앞의 글, 64면.

116) 장문철, 앞의 글, 66면; 이호원, 앞의 글, 66면.

117) 장문철, 앞의 글, 67면.

118) 이호원, 앞의 글, 52면; 장문철, 앞의 글, 15면;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174면.

119) 석광현, “개정중재법의 몇 가지 문제점 -국제상사중재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5호, 2000, 214면(이하 ‘석광현 2000’으로 인용함).

모델중재법을 전면수용하면서도 국제중재와 국내중재를 일원적으로 규율하였다.<sup>120)</sup>

국제중재와 국내중재의 구별이 필요한 대표적인 부분은 중재판정의 집행으로, 국내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39조에서 규정하였다.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는 뉴욕중재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제1항)와 받지 않는 경우(제2항)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1999년 중재법 제39조 제1항은 뉴욕중재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뉴욕중재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뉴욕중재협약의 내용을 조문화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였다.<sup>121)</sup>

1999년 중재법의 적용대상에서 또 하나 특기할 점은 민사와 상사를 구별하지 않은 점이다.<sup>122)</sup> 우리나라는 뉴욕협약 가입 당시 상사분쟁에만 뉴욕협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상사유보를 하였음에도, 1999년 전부개정된 구 중재법 제1조와 제3조 제1호는 중재법 적용대상으로 '사법상의 분쟁'일 것임을 규정하여 민사와 상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였다.

## (2) 중재제도에 대한 지원 등

1999년 전부개정에서는 제40조와 부칙 제3항에서 정부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였다. 이는 중재기반이 약한 우리나라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한 것이나, 중재가 국가권력에서 독립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의 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규정을 중재법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별도 법령에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sup>123)</sup>

또한 제41조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전부개정 전의 구 중재법 제4조 제3항의 내용을 승계한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사적인 중재기관의 중재절차 제정에 법원이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하였다.<sup>124)</sup>

120) 석광현 2000, 214면.

121) 이호원, 앞의 글, 67면.

122)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6면.

123) 이호원, 앞의 글, 68면.

124) 이호원, 앞의 글, 69면.

### 3. 전부개정 성과

1999년 전부개정은 법 제정에 가까울 정도의 개혁적인 개정으로 평가받았다.<sup>125)</sup> 모델중재법의 전면적인 수용으로 우리 중재제도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국제거래 당사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sup>126)</sup> 1999년 중재법 전부개정으로, 국제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중재법의 적용을 기피하던 외국 기업 및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sup>127)</sup>

## 제3절 | 2016년 중재법 일부개정

### 1. 개정배경 및 경위

#### 가. 개정배경

국제중재실무에서 뉴욕협약을 기반으로 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과 1985년 모델법의 성공으로 인한 중재절차의 표준화로 국제중재가 활성화되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중재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소송절차의 보전처분과 같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임시적 처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IT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2006년 개정 UNCITRAL 모델중재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이하 '2006년 모델중재법'이라 한다)<sup>128)</sup>은 중재합의 서면성을 완화하고 임시

125) 이호원, 앞의 글, 51면.

126) 노태약,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112면.

127)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174면.

128)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 (2022. 10. 24. 최종접속).

적 처분을 실효적으로 규정하였다. 2006년 모델중재법이 개정된 이후 국제중재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였고, 이를 우리 중재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129)</sup>

한편, 모델중재법 개정이라는 직접적인 개정 배경 외에도 중재 실무상 중재친화적 제도환경을 위하여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제기되었다.<sup>130)</sup> 이에 중재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중재법 개정이 추진되었다.<sup>131)</sup> 국제중재 유치건수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리면 중재활성화로 인하여 연간 6,000억 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중재지 선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중재지의 중재법이라는 점<sup>132)</sup>에서 중재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10년대 아시아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로 도약하고자 중재법을 개정하게 되었다.<sup>133)</sup>

#### 나. 개정경위

법무부는 중재법을 중재친화적인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2012. 7. 중재법 개정작업반을 구성하고, 2012. 7.부터 동년 9.까지 약 2달 간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 착안점을 선정하였다.<sup>134)</sup> 이를 토대로 법무부는 여러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2013. 3. 중재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sup>135)</sup> 한편 법무부는 중재법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내외 중재전문가 100여 명을 초빙하여 국제중재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중재법 개정

129)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241면.

130) 석광현 2017, 앞의 글, 217면.

131)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241면.

132) 법무부,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재법 선진화” (2015. 8. 3.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TjJGbW9qTjGMTgyTjGMjJzMTU5TjJGYXJ0Y2xWY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lM0QlMjZpc1ZpZXdnNW5lJTNEZmFsc2UlMjZwYWdlJTNEU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TjNEJUVDJUE0JTksJUVDJlFjUFDJTI2> (2022. 9. 29. 최종방문).

133) 이호원, 앞의 글, 72면.

134) 석광현, “2016년 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법학연구, 통권 제5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16면 (이하 ‘석광현 2017’으로 인용한다).

135)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241면. 중재법 개정위원회는 이호원 연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강태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경배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김세연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병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허해관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당시 직위 기재, 위의 글, 241면).

방향 모색작업을 진행하였다.<sup>136)</sup> 개정위원회는 2013. 3. 29.부터 2014. 10. 31.까지 20차에 걸쳐 개정내용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2015. 5. 중재법 개정초안을 마련하였다.<sup>137)</sup>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5. 8. 4. 입법예고하였고,<sup>138)</sup> 2015. 10. 8.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2016. 5. 19. 통과됨에 따라,<sup>139)</sup>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일부개정되고 2016. 11. 30. 시행되게 되었다(이하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일부개정된 중재법을 ‘2016년 중재법’이라 한다). 2016년 중재법은 2020. 2. 4. 법률 제16918호로 개정되는데, 2020년 개정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제40조) 그 이외의 부분은 2016년 중재법 내용을 유지하였다.<sup>140)</sup>

### ▶▶ [표 2-3] 1999년 중재법과 2016년 중재법의 주요내용 비교

1999년 중재법 조문	2016년 중재법 개정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정의	중재대상의 확대

136) 법무부, “아시아 중재허브 도약을 위한 중재법 개정방향 모색”, (법무부 보도자료, 2013. 9. 24. 배포),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TjGMTgyJTjGMjIyODI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lM0QlMjZpc1ZpZXdnNW5lJTNEZmFsc2UIMjZwYWdlJTNEUyNmJic09wZW5XcmRTZXEI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kxJUVDJTlFJUFDJTl2> (2022. 9. 29. 최종방문).

137) 이호원, 앞의 글, 72면;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241면.

138) 법무부,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재법 선진화” (2015. 8. 3.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TjGMTgyJTjGMjIzMTU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lM0QlMjZpc1ZpZXdnNW5lJTNEZmFsc2UIMjZwYWdlJTNEUyNmJic09wZW5XcmRTZXEI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kxJUVDJTlFJUFDJTl2> (2022. 9. 29. 최종방문).

139) 법무부, “새로운 분쟁해결 패러다임 중재! 대한민국을 국제중재 중심지로!(법무심의관실)” (2016. 5. 19.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TjGMTgyJTjGMjIzMTU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lM0QlMjZpc1ZpZXdnNW5lJTNEZmFsc2UIMjZwYWdlJTNEUyNmJic09wZW5XcmRTZXEI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kxJUVDJTlFJUFDJTl2> (2022. 10. 6. 최종방문).

140)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재법 (2020. 2. 4. 법률 제1691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정·개정 이유.

1999년 중재법 조문	2016년 중재법 개정 주요내용
제4조 서면의 통지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제6조 법원의 관여	
제7조 관할법원	법원 관할의 조정
제8조 중재합의의방식	중재합의 서면성 요건 완화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제11조 중재인의 수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 선정에 중재기관 포함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제15조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 종료	
제16조 보결중재인의 선정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법원이 중재판정부 판정권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 중재절차 속행 등에 대한 규정 신설
제18조 임시적 처분	임시적 처분의 내용과 요건, 변경, 정지, 취소 등의 절차 신설(제18조~제18조의6) 임시적 처분의 승인·집행방법을 신설(제18조의7~제18조의8)
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제20조 중재절차	
제21조 중재지	
제22조 중재절차의 개시	
제23조 언어	
제24조 신청서와 답변서	
제25조 심리	
제26조 일방 당사자의 해태	
제27조 감정인	
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중재판정부의 촉탁으로 법원이 증거조사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참여 보장 중재판정부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증인 출석, 문서제출명령 등 근거규정 신설
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제30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제31조 화해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중재판정 원본의 법원 보관 규정 완화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제34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중재비용의 분담규정 등 신설(제34조의2~제34조의3)



1999년 중재법 조문	2016년 중재법 개정 주요내용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이 승인·집행이 거절된 경우의 효력 규정
제36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를 집행결정으로 간 이화(제37조 제1항, 제2항) 중재합의원본 등 서류제출의무 폐지(제3항) 집행결정의 이유기재, 불복방법 등 신설(제5항~제 8항)
제38조 국내중재판정	승인·집행 요건 정비
제39조 외국중재판정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2020년 개정으로 법무부장관의 경비보조 권한 삽입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 2. 개정의 주요내용

### 가. 중재대상의 확대

2016년 개정 중재법은 제1조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 가능한 분쟁으로 '사법상의 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호에서 중재를 정의하며 중재 대상으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확대는 국제적 추세로, 이를 통하여 중재대상 적격이 있는지 논란이 되었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효력에 관한 분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중재로 해결가능하게 되었다.<sup>141)</sup>

### 나. 중재합의 서면성 완화

2016년 개정 중재법은 2006년 모델중재법 제7조가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 중 서면요건을 폐지한 Option II 대신 Option I을 선택하여,<sup>142)</sup> 서면성 요건을 폐지하지 않았으나 서면성 요건을 완화하였다.<sup>143)</sup> 서면성 요건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를 명확한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지되었다.<sup>144)</sup>

141)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242면.

142) 석광현 2017, 앞의 글, 232면.

143)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제69호, 2013, 216면 참조.

144)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242면.

Option I 방식도 뉴욕협약보다 서면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중재의 이용이 빈번하고 중재제도가 친숙하게 이용되고 있는 환경에서 과거와 같이 중재합의시에 당사자에게 재판받을 권리의 포기를 경고하는 기능이 크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었다.<sup>145)</sup> Option I 방식을 수용한 한 제8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① 구두나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제3항 제1호), ② 전보·전신·팩스·전자우편·그 밖의 통신수단 등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고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제3항 제2호),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제3항 제3호)를 인정하고,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제4항)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여 1999년 중재법에서는 서면성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선하증권의 서면성이 충족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sup>146)</sup>

## 다. 임시적 처분제도의 실효화

### (1) 임시적 처분의 내용

2016년 개정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9년 중재법에서 임시적 처분의 근거조항을 도입한 데에서 나아가,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에 따라 임시적 처분절차를 도입하였다.<sup>147)</sup>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과 예비적 명령(preliminary order)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중재법은 이 중 예비적 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시적 처분에 관한 부분만을 수용하였다(제18조 제1항).<sup>148)</sup> 그 결과 2016년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의 내용으로 ①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제18조 제2항 제1호), ② 중재절차

145) 석광현 2017, 앞의 글, 230면.

146) 석광현 2017, 앞의 글, 232면.

147) 대한상사중재원, 앞의 글, 242면.

148) 석광현 2017, 앞의 글, 236면. 일본의 중재법개정요강안도 우리 법제를 참고로 하여 모델법의 임시적 처분에 관한 부분만을 도입하였다.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협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협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동항 제2호), ③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동항 제3호), ④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동항 제4호) 등을 규정하였다.

## (2) 임시적 처분의 요건, 변경·정지·취소, 비용 등

증거보전 이외의 임시적 처분은 ①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②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신청당사자가 소명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부가 내릴 수 있다(제18조의2조 제1항). 다만 두 번째 요건의 본안의 합리적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본안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다(동항 제2호 단서). 증거보전을 위한 임시적 처분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위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신청 당사자는 위 요건을 소명해야 하며,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법원의 보전처분을 위하여 소명을 요구한 것과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sup>149)</sup> 한편, 2016년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8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 2)),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릴 때 당사자를 심문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을 심문하지 않고 하는 임시적 처분, 특히 일방적(ex parte) 임시적 처분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sup>150)</sup>

임시적 처분은 일방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직권으로 변경·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변경·정지·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제18조의3). 2016년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담보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고(제18조의4), 당사자에게 임시적

149) 석광현 2017, 앞의 글, 237면.

150) 석광현 2017, 앞의 글, 237면.

처분이나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리도록 하는 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였다(제18조의5). 임시적 처분이 부당한 경우에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위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중재판정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효성을 담보하였다(제18조의6).

### (3)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2016년 중재법은 2006년 모델중재법의 구조와 내용을 모두 수용하였다.<sup>151)</sup> 제18조의7에서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법원에 승인 및 집행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sup>152)</sup> 이어서 제18조의8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한 거부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하여 승인 또는 집행을 보장하였다.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거부사유는 뉴욕협약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를 수용한 우리 중재법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와 유사하게 규정하여 통일적 규범을 도모하였다.<sup>153)</sup> 다만 2016년 중재법은 제2조에서 그 적용

151) 석광현 2017, 앞의 글, 238면.

152)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53)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1.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1) 제3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실  
2)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3)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

범위로 중재지가 한국인 경우로 한정하므로, 2006년 모델중재법에서 중재지와 뉴욕 협약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sup>154)</sup>

### 라.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강화

1999년 중재법에서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었고 이는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sup>155)</sup> 2016년 중재법 제28조는 중재판정부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제28조 제1항).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에 기재할 내용 등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법원에 증거조사에 중재인이나 당사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참여기회를 보장하였다(동조 제3항). 중재판정부의 촉탁으로 법원이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은 중재판정부에 지체없이 보내야 하고(동조 제4항),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 협조를 요청한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하도록 명하거나 문서소지자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내도록 규정하였다(동조 제6항).

될 수 있다.

- 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다.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8조의7에 따라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하여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의 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을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154) 석광현 2017, 앞의 글, 238면.

155) 이호원, 앞의 글, 89면.

### 마. 중재비용 분담규정 신설

중재비용 상승 등 변화하는 중재실무를 고려하여 2016년 중재법은 중재비용 분담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관한 비용의 분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4조의2). 또한 중재판정이 즉시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면서 상당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제34조의3).

### 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의 간이화

1999년 중재법에서는 집행절차를 집행판결로 규정하였으나, 2016년 중재법에서는 뉴욕중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을 제외하고, 집행결정의 방식에 의하도록 전면적으로 변경하였다.<sup>156)</sup> 중재판정의 집행절차를 집행판결에 의하도록 한 데 대하여 학계에서는 중재판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다.<sup>157)</sup> 이에 2016년 개정에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방법으로 승인결정과 집행결정으로 개선되었다. 이 중 승인결정에 관한 부분은 중재판정의 승인에 대한 불분명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문언 정정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제37조 제1항)<sup>158)</sup> 특기할 점은 집행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결정의 방식을 취하여 일률적인 변론을 지양하고(동조 제2항),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에 대한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동조 제5항), 승인 또는 집행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를 규정하여(동조 제6항)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게 되었다.<sup>159)</sup> 승인 및 집행 절차의 결정절차로의 전환 외에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제출요건을 완화하여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의 제출요건을 삭제하였다(동조 제3항).

156) 이호원, 앞의 글, 94면.

157) 윤진기,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2016), 6면.

158) 윤진기, 앞의 글, 7면.

159) 윤진기, 앞의 글, 7면.

### 3. 개정 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법적 시스템의 구축과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의 조성은 국제 중재 활성화의 필수조건이다.<sup>160)</sup> 이러한 측면에서 모델중재법을 수용하고 국제중재 실무를 반영한 중재법 개정은 의의가 크다. 2016년 중재법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해진 전자적 의사표시의 기록을 반영하여 중재합의 서면성을 완화하여 국제상사 중재에서 우리나라가 중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sup>161)</sup> 국제상사중재의 특징을 고려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국제무역 현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아시아권과 영미권 국가 간의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제적 수준의 중재법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재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바탕으로 중재제도를 활성화하여 국제중재 사건의 유치로 인한 경제활성화라는 측면 외에도 우리 사회의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법치주의 확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sup>162)</sup>

## 제4절 | 중재진흥법 및 2019~2023년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 1.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가. 제정 경위 및 입법 목적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재진흥법'이라 한다)은 2016. 12. 27. 법률 제 14471호로 제정된 것으로, 중재의 유치 및 심리를 위한 분쟁해결시설, 중재전문가, 중재제도 관련 법률 등 중재산업의 기반을 확충하여 국내적으로 대체분쟁해결수단으

160) 노태약, 앞의 글, 112면.

161) 김정환 외,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사법정책연구원, 2018 152면.

162) 법무부,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재법 선진화” (2015. 8. 3.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MjIzMTU5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 CUyNmJic0NsU2VxJTNEJTl2cmdzRW5kZGVtdH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USUyNmJic09wZW5XcmRTZXE1M0QlMjZzcmNoQ29sdW1uJTNEc2o1MjZzcmNoV3JkJTNEJUVDJUE0JTkxJUVDJTlFJUFDJTl2> (2022. 9. 29. 최종방문).

로서 중재를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참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거래당사자에게 매력적인 중재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에 관한 법제도 정비 외에 중재절차를 위한 시설, 중재전문인력 등 환경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sup>163)</sup>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경제성장동력으로서 중재를 활성화하고, 중재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재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재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5. 8. 17. 입법예고하고,<sup>164)</sup> 같은 해 10. 14.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sup>165)</sup> 중재진흥법 제정안은 2016. 8. 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sup>166)</sup> 2016. 8. 18. 국회에 제출되었으며,<sup>167)</sup> 2016. 12. 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sup>168)</sup> 중재산업은 중재의 유치·심리 등에 필요한

163)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7면.

164)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2015. 8. 24.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TjGbw9qJtjGmTgyJtjGmJlzMTc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NCUyNmJic09wZW5XcmRTZXEI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xJUVDJtJFJUFdJTI2> (2022. 10. 6. 최종방문).

165) 법무부,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개최”, (2015. 10. 14.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TjGbw9qJtjGmTgyJtjGmJlzMTc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NCUyNmJic09wZW5XcmRTZXEI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xJUVDJtJFJUFdJTI2> (2022. 10. 6. 최종방문).

166) 법무부, “[상사법무과] 분쟁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재!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2016. 8. 9.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TjGbw9qJtjGmTgyJtjGmJlzNDIz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NCUyNmJic09wZW5XcmRTZXEI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xJUVDJtJFJUFdJTI2> (2022. 10. 6. 최종방문).

167) 법무부, “[상사법무과]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허브 만들기 본격 시동!”, (2016. 8. 29.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TjGbw9qJtjGmTgyJtjGmJlzNDMz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yUyNmJic09wZW5XcmRTZXEI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xJUVDJtJFJUFdJTI2> (2022. 10. 6. 최종방문).

168) 법무부, “[상사법무과] 이제 국제중재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중재산업 활성화를 토대 구축!” (2016. 12. 8.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TjGbw9qJtjGmTgyJtjGmJlzNDg2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yUyNmJic09wZW5XcmRTZXEI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xJUVDJtJFJUFdJTI2> (2022. 10. 6. 최종방문).



시설, 서비스 등 각종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법률서비스 산업의 영역 중 하나이다.<sup>169)</sup> 중재산업을 통하여 국제중재사건 유치시 법률분야 외에 교통, 숙박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발생이 기대된다.<sup>170)</sup>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주무관청이 2016. 6. 15.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고, 중재진흥법이 제정되어 법무부장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규정하기 위한 중재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171)</sup>

## 나. 주요내용

### (1) 기본계획 수립

중재진흥법 제3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한다. 이 계획에는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 분쟁해결의 시설 및 운영, 중재 전문인력 양성,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가 포함된다(동항 제1~5호).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및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중재사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4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중재제도 이용 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중재 관련

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xxJUVDJTIFJUFDTI2 (2022. 10. 6. 최종방문).

169) 윤진기,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중재연구 제28권 제4호, 2018, 6면.

170) 한중규, "국제중재산업의 국가 지원에 관한 연구 - 홍콩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5호, 2016, 102면.

171)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재법(2020. 2. 4. 법률 제16918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정·개정 이유: 법제처,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17-161호),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39668&lawCd=0&lawType=TYP E5&pageIndex=17&rowIdx=162> (2022. 9. 29. 최종방문).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중재산업 실태 및 통계 조사,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정부·공공기관의 중재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중소기업·소상공인·저소득층에 대한 중재제도 이용의 지원 등을 의미한다(동법 제4조 제3호; 시행령 제4조).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위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분쟁해결시설의 설치·운영,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운영, 분쟁해결시설의 홈페이지 구축·운영, 분쟁해결시설의 모니터링 및 평가, 분쟁해결시설 관련 국제교류·협력, 분쟁해결시설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해외 분쟁해결시설에 대한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호~제6호). 이 법에서 의미하는 분쟁해결시설이란 심리실, 회의실, 그 밖에 분쟁 해결을 위한 심리의 진행을 위한 장소를 반드시 갖추고, 중재 유치를 위한 전문적인 활동에 제공되는 사무실 또는 홍보실, 분쟁 해결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시설 등을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2조).

### (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규모, 교육요원의 확보 여부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만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동조 제4항),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지원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 (4) 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법무부장관은 중재사건 유치를 위한 시책 마련(제7조 제1항)과 중재산업 관련 국제 협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중재산업 전문인력 및 중재산업 정보의 국제교류, 해외설명회·부대행사의 개최 및 해외 중재기관과의 협력활동 등 사업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그 밖에 국제중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국제중재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 중재기관 및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 국제중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국제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국제중재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동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제5호).

#### (5) 재정지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하는 사업, 교육 주관기관이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하는 사업, 그 밖에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 중재활성화 산업에 대하여 법무부는 2016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며, 예산 규모는 2016년 약 19억원, 2017년 약 15억원, 2018년 약 37억원, 2019년 약 26억원, 2020년 약 25억원이다.<sup>172)</sup>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 국제중재의 유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그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업무를 위탁한 비영리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2항).

한편, 중재진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법인 및 단체는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고(제10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이에 따라 기관·법인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2항),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였다.

172) 황현영,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정책분석 모델개발 보고서 2019-6, 국회 입법조사처, 2019, 4면.

## 2. 중재진흥법에 의한 기본계획 (2019~2023)

### 가. 기본계획 제정 배경

법무부는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법조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재진흥법 제3조에 따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2019. 1. 1.부터 시행하였다.<sup>173)</sup>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 연관 효과가 큰 중재산업을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계 5대 중재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밝혔다.<sup>174)</sup> 구체적인 추진 전략은 중재산업 기반 강화, 국내 중재 활성화,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국제중재 유치 확대 등이다.<sup>175)</sup>

### 나. 주요내용

#### (1) 중재산업 기반 강화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취약한 중재산업 기반을 거론하면서, 우수한 법률가가 많음에도 중재분야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중재인력이 부족하고, 중재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미비하여 중재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중재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173) 법무부, [상사법무과]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018. 12. 31. 보도자료), [174\)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공고\(공고 제2018-313호\),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480\]\(https://www.moj.go.kr/moj/223/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0JTJGNDIxNzEx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xJUVDJTFJUFJDI2I2 \(2022. 10. 6. 최종접속\). 법무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9~2023\)은 다음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사법무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018. 12. 31. 법무부, <a href=\) \(2022. 10. 6. 최종접속\) \(이하 ‘기본계획’으로 인용함\).](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DIxNTU1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l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I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UE0JTkxJUVDJTFJUFJDI2I2 (2022. 10. 6. 최종방문).</a></p>
</div>
<div data-bbox=)

175) 기본계획, 앞의 글, 1면.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sup>176)</sup>

중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는 중재인력 저변 확대와 중재인력 전문화 계획을 수립하였다.<sup>177)</sup> 중재인력 저변 확대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등 교육기관과의 연계 교육, 기업 실무자 대상 중재 전문교육, 부처별 계약 담당 공무원 대상 중재 교육 등을 2020년부터 단계별로 실시하기로 하였다.<sup>178)</sup> 한편, 중재인력 전문화와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산하에 중재 전문인력 양성 전담 교육기관을 2019년 설치하고, 이 중재교육원을 중재진흥법 제6조의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sup>179)</sup> 한편, 2019년부터 중재인 등급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2021년부터 중재교육원 내 온라인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중재인 정보의 효율적 관리·제공을 위하여 2022년에는 ‘중재인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였다.<sup>180)</sup> 이 외 중재 서기, 전문 속기사, 감정 보조인 등 지원인력을 확충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sup>181)</sup>

중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재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국내외 중재 정보를 수집하고 뉴스레터 발간, 종합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정보제공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자문위원회, 연구용역, 학술대회 등을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중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2019년 이후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sup>182)</sup> 구체적으로 중재 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투자분쟁 모니터링센터를 중재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기관으로 발전시켜 외국 중재법과 중재규칙 개정 동향, 최신 중재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기로 하였다.<sup>183)</sup> 정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설문조사 및 통계 자료, 연구 결과물, 공개된 국제 중재 판정문의 한글 번역본 제공 등을 포함하는 종합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중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기로 하였으며, 2022년에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sup>184)</sup> 중재제도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하여는 2019년부터 중재기

176) 기본계획, 앞의 글, 6면.

177) 기본계획, 앞의 글, 8면.

178) 기본계획, 앞의 글, 8면.

179) 기본계획, 앞의 글, 8면.

180) 기본계획, 앞의 글, 9면.

181) 기본계획, 앞의 글, 9면.

182) 기본계획, 앞의 글, 9-10면.

183) 기본계획, 앞의 글, 9면.

관, 학계, 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기로 하였다.<sup>185)</sup>

## (2) 국내중재 활성화

기본계획은 국내중재 활성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중재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를 설정하였다.<sup>186)</sup> 첫째로 중재제도 인식 개선을 위하여, 기업·정부부처·공공기관 등의 계약 담당자, 사내변호사,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중재절차를 소개하고 국제중재사건의 국내 유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재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국내 포털의 법률섹션 내에 중재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언론, 인터넷,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대한상사중재원 견학이나 모의 중재제도 개최 등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sup>187)</sup>

둘째로 중재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는 중재조항이 포함된 표준 계약서를 배포하여 중재조항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공공사업 영역에서 중재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sup>188)</sup> 중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재절차 매뉴얼,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매뉴얼, 주요 국가별 중재판정 강제집행제도의 소개 등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중재 이용자들이 중재사건 진행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2023년 이후 예정되어 있다.<sup>189)</sup>

## (3)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

기본계획의 세 번째 추진전략은 중재산업 경쟁력 확보로,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은 중재심리 시설 개선, 중재기관 사건해결 역량 강화, 신규 중재 분야 발굴이라는 3가지 세부 전략을 설정하였다.<sup>190)</sup> 세계적 수준의 분쟁해결시설 운영을 위하여 우선 서울중재센터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의 분쟁해결시설 운영 정보를 공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심리시설 개선을 위한 서울중재센터 운영위원회를 2019년 이후 운영하기로 하였으

184) 기본계획, 앞의 글, 10면.

185) 기본계획, 앞의 글, 10면.

186) 기본계획, 앞의 글, 11면.

187) 기본계획, 앞의 글, 11면.

188) 기본계획, 앞의 글, 11면.

189) 기본계획, 앞의 글, 12면.

190) 기본계획, 앞의 글, 13면.

며, 서울중재센터 및 대한상사중재원 사무국에 2020년 이후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고, 선진적 심리 진행을 위한 설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sup>191)</sup> 다음으로 중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사건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2019년 이후 구축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전문인력을 2021년 이후 충원하기로 하였다.<sup>192)</sup> 마지막으로, 신규 중재분야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는 IT, 엔터테인먼트, 미디어·문화 콘텐츠 등 특성화 가능 분야를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하고, 2020년 이후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국제투자분쟁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로 하였다.<sup>193)</sup>

#### (4) 국제중재 유치 확대

기본계획의 마지막 추진전략은 국제중재 유치 확대로, 이를 위하여 국제중재사건 유치 전략 수립과 국제중재사건 유치 지원을 목표로 제시하였다.<sup>194)</sup> 국제중재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하여 2019년부터 국제중재 현황,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 수, 분쟁규모, 사건 유형, 당사자 국적, 유치 요인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중재기관, 실무계·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중재 유치 전략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sup>195)</sup>

한편, 국제중재 유치 지원을 위하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외국 사무소 개소 및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의 국제중재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각도의 홍보를 계획하고, 중재 관련 법령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주요 중재판정례, 해설서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중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sup>196)</sup>

### 3. 성과 및 비판

법무부는 2016년부터 중재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종합

---

191) 기본계획, 앞의 글, 13면.  
 192) 기본계획, 앞의 글, 13면.  
 193) 기본계획, 앞의 글, 13면.  
 194) 기본계획, 앞의 글, 15면.  
 195) 기본계획, 앞의 글, 15면.  
 196) 기본계획, 앞의 글, 16면

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장기적 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중재진흥법을 제정하고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재진흥법 및 이에 따른 기본계획은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여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중재선진국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중재진흥법 제정 이후에도 국제중재 유치 건수 등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아<sup>197)</sup>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중재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sup>198)</sup>

## 제5절 | 조정제도

### 1. 국내 조정제도의 현황

#### 가. 조정제도의 의의

조정(調停)은 독립적인 사인(私人)인 조정인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을 돕는 것으로 유연하고 비정형적인 절차이므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sup>19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이라 한다)의 하나로<sup>200)</sup>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sup>201)</sup>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간섭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sup>202)</sup> 등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p>203)</sup> 조정이 현대적인 의미의 ADR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미국으로, 당시 소송 사건 수가 폭증한 결과,

197) 국제중재 유치건수 등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국제중재 현황에 대한 부분에서 후술함.

198) 황현영, 앞의 글, 5면.

199) Yun Zhao,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A Vers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for Mediation?, 17 (3) J. Private Int'l L. 538, 550 (2021).

200) Christina G. Hiourea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A New Way Forward?, 37 Berkeley J. Int'l L. 215, 217 (2019).

201) Nancy A. Welsh, The Place of Court-Connected Mediation in a Democratic Justice System, 5 Cardozo J. Conflict Resol. 117, 135 (2004).

202) James Scott Sledge, Mediating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6 No. 1 Lanslide 48, 50 (2013).

203) 조수혜, "사법정의접근권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정제도 활성화를 관점에서-",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20, 165면.



소송 지연 및 소송비용 증가가 일반 시민의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 또는 사법접근성(access to justice)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조정의 이용이 제안되었다.<sup>204</sup> 조정은 미국 사회 각계에서 활용이 되나, 법적 분쟁에 대한 활용으로는 1976년 파운드 회의(Pound Conference)에서 샌더(Frank E.A. Sander) 교수가 다중법원기능(multi-door courthouse)<sup>205</sup>을 주장하고, 그 결과 법원에서 조정서비스를 연계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조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한 법원연계형 조정(court-connected mediation)이 도입되면서 ADR의 하나로 정착하였다.<sup>206</sup>

조정 첫 번째 특징은 당사자 합의의 존중이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들은 절차 진행방식, 시간, 장소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 대하여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sup>207</sup> 또한 당사자들은 조정절차의 개시와 진행뿐만 아니라 절차의 종료에 대하여도 결정할 수 있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정절차 중 언제든지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소송 등 다른 분쟁해결방식에 의할 수 있다.<sup>208</sup> 중재와 달리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만 하므로, 조정은 순수하게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를 도출하며,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는 전통적으로 계약상 효력이 인정된다.<sup>209</sup> 두 번째 특징은 비밀보장으로,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분쟁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서 공유한 정보는 재판절차 등 기타 분쟁해결절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이 보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210</sup> 세 번째 특징은 조정인의 중립성으로, 조정인은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조정절차 단계마다 당사자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을 촉진한다.<sup>211</sup>

204) Jacqueline Nolan-Haley, Does ADR's "Access to Justice" Come at the Expense of Meaningful Consent?, 33 Ohio St. J. on Disp. Resol. 373, 374 (2018).

205) Nolan-Haley, supra note 26, at 381.

206) 조수혜, 앞의 글, 165면.

207) Sledge, supra note 25, at 50.

208) Sledge, supra note 25, at 51.

209) Zhao, supra note 185, at 549.

210) Id.

211) Stephen P. Anway, Mediation in Copyright Disputes: From Compromise Created Incentives to Incentive Created Compromises, 18 Ohio St. J. on Disp. Resol. 439, 442 (2003).

## 나. 조정제도의 분류

### (1) 좁은 의미의 조정(민간형 조정)

민사조정법이나 개별법에 근거를 둔 행정형 조정과 같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사인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형 조정은 좁은 의미의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형 조정은 사인인 조정인이 분쟁해결권한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이를 규율하는 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그 이용현황도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가 없다.<sup>212)</sup> 다만 조정은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분쟁해결에 참여하며, 간이하고 유연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므로 소액분쟁 또는 소비자분쟁 등에서 장려되고 있다.<sup>213)</sup> 우리나라의 항시적인 사회적 갈등 고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간형 조정은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긍정되며,<sup>214)</sup> 우리나라의 과중한 법원 업무와 상당한 사법불신을 고려하면 민간형 조정에 대한 잠재적 수요 및 필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sup>215)</sup>

### (2) 민사조정법에 의한 사법형 조정

우리 법원은 1990. 1. 13. 법률 제4202호로 제정된 민사조정법에 의하여 사법형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원 홈페이지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사법형 조정(이하 '민사조정'이라 한다)을 평화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로 소개하고 있다.<sup>216)</sup> 조정은 당사자 신청으로 개시가 되며(민사조정법 제5조),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제6조).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 등에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효가 없다(제35조). 조정기관은 원칙적으로

212) 민간형 조정활성화를 위한 민사조정법 제정 등 논의의 소개와 한계점, 극복방안을 제시한 논문으로, 오재창, "민간형 조정 활성화를 통한 소송과 조정의 균형 모색", 저스티스 통권 제 182-2호, 2021, 497면 참조.

213) 소비자분쟁과 조정에 대하여는, 송양호, "IT거래와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제29권 제1호, 37-66면 참조.

214) 오재창, 앞의 글, 490면.

215) 오재창, 앞의 글, 490면.

216)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민사조정 개요,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 (2022. 10. 19. 최종접속).

조정담당판사이거나(제7조 제1항),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을 처리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는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제11조 제2항).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제20조), 필요한 경우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제22조), 조정절차에서의 진술 등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는 것이 금지된다(제23조). 한편, 조정전담판사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신청으로 현상의 변경이나 물건 처분의 금지 또는 그 밖에 조정의 내용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를 조정 전의 처분으로 명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조정전담판사는 분쟁대상이 조정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6조).

민사조정 특징은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효력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8조, 제29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에는 조정불성립으로 보아 사건을 종결시킨다(제27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제34조 제1항),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동조 제4항).

민사조정사건은 2021년도에 10,174건이 접수되어 10,347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 성공률((조정성립건수+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건수-이의신청-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취소건수)÷조정처리건수×100)은 31.7%이다.<sup>217)</sup> 2021년도 민사조정사건 중 조정담당판사 처리건수는 55,717건이며 수소법원 처리건수는 22,651 건이다.<sup>218)</sup> 2021년 지방

217)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690면. 원문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한민국 법원, 2022 사법연감,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gubun=719> (2022. 10. 19. 최종접속).

218) 법원행정처, 앞의 글, 690면.

법원 민사본안사건 중 조정(조정회부·수소법원조정)으로 처리되는 비율((조정성립건수+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건수-이의신청·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취소건수)÷본안처리건수×100)은 4.2%이다.<sup>219)</sup> 민사조정사건은 1월 이내에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이 14.7%이며, 2월 이내의 경우 34.4%, 3월 이내의 경우 26.1%로 총 75.2%의 사건이 접수 후 6월 이내에 처리되어 신속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준다.<sup>220)</sup> 한편 6월 이내에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21.1%, 처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민사조정사건의 처리는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21)</sup>

### (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형사조정

형사조정제도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사건과 의료·명예훼손, 지적재산권 침해범죄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sup>222)</sup> 전통적인 형사절차가 국가주도의 사법체계 안에서 운영된 바와 달리, 형사조정제도는 지역사회가 사건 해결에 참여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유연하고 당사자중심의 사법체계를 지향한다는 특징이 있다.<sup>223)</sup>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①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②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③ 그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④ 고소 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위에 준하는 사건 등이다(동조 제2항 본문; 동법

219) 법원행정처, 앞의 글, 690면.

220) 법원행정처, 앞의 글, 691면.

221) 법원행정처, 앞의 글, 691면.

222) 법무부,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http://www.moj.go.kr/cvs/2726/subview.do> (2022. 6. 24. 최종접속).

223) 김잔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법학연구 제62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39면.

시행령 제46조,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 제1항). 다만,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단서).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두고(동법 제42조 제1항),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동조 제2항).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하며(동조 제3항),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동조 제5항).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동법 제45조 제1항).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동조 제3항).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으나,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조 제4항).

#### (4) 행정형 조정

행정형 조정은 행정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소관사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조정을 의미한다.<sup>224)</sup> 행정형 조정은 행정사건에서의

224) 최계영, 강수미, “행정형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5권 제4호, 2015, 98면; 강수미, “행정형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5권 제4호, 2015, 57면.

조정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사건에서의 조정은 행정작용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로, 행정주체 또는 행정기관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sup>225)</sup> 반면, 행정형 조정은 사인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조정절차의 운영주체가 ‘...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표시되는 행정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인 경우를 의미한다.<sup>226)</sup>

조정의 개시 요건, 소멸시효 중단 여부, 비밀유지의무, 소송과의 관계 등에서 개별 법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하여 행정형 조정의 절차를 일의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행정형 조정은 대개 민간형 조정과 중재의 성질을 겸하고 있다.<sup>227)</sup> 다만 행정형 조정도 조정 성립을 위하여는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조정안에 대한 동의(동의 또는 수락 의제 포함)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sup>228)</sup> 행정형 조정은 당사자의 자발성에 바탕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sup>229)</sup> 행정형 조정의 경우 민사조정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관찰된다.<sup>230)</sup>

행정형 조정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 절차와 효력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공식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행정형 조정에 대한 실태조사가 어렵다.<sup>231)</sup>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 발간 보고서는 당시 행정형 조정을 약 60개로 추정하였고,<sup>232)</sup> 현재 행정형 조정은 65개로 파악이 된다.<sup>233)</sup> 행정형 조정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의 조정신청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상위 5개 분쟁조정기관의 신청건수가 집계된 바 있다.<sup>234)</sup> 이 통계에 의하면 신청건수 상위 1위를 기록한 분쟁조정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위 기간 동안 총 140,31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225) 최계영, 앞의 글, 98면.

226) 최계영, 앞의 글, 98면; 강수미, 앞의 글, 57면.

227) 강수미, 앞의 글, 63면.

228) 강수미, 앞의 글, 65면; 최계영, 앞의 글, 111면.

229) 김봉철, “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2021, 75면.

230) 최계영, 앞의 글, 112면.

231) 강수미, 앞의 글, 67면. 한편, 행정형 조정을 이용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은 조정법을 제정하여 조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독일 조정법은 모든 유형의 조정에 적용되므로 행정형 조정에도 적용이 된다. 김봉철, “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2021, 65면.

232) 최계영, 앞의 글, 100면; 박문모,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서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 제시”, NARS 현안분석 제9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17~19면.

233) 자세한 내용은 후술함.

234) 최계영, 앞의 글, 102면.

뒤를 이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38,591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8,249건, 언론중재위원회 17,430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306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12,293건 등이 상위권을 기록하였다.<sup>235)</sup>

## 2.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조정의 이용

우리 법제에서 민간형 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제상사조정의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국제상사조정의 승인 및 집행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 12. 20. 제정된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조정협약’이라 한다)은 국제상사조정의 개념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sup>236)</sup>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제2조 제3항에서 조정에 대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해결을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는 제3자 또는 제3자들(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그들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sup>237)</sup>

위 정의에 의하면, 국제상사분야에서의 조정은 국내의 경우 좁은 의미의 조정, 즉 민간형 조정 중에서도 국제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쟁해결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은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을 구분하고 규정하나,<sup>238)</sup> 조정규칙은 국내와 국제사건의 구분 없이 하나의 규칙을 두었다.<sup>239)</sup> 대한상사중재원은 매년 중재, 알선, 상담 건수 등을 통계로 제시하고 있다. 2021년 통계에서 국내알선사건 484건을 접수하고 국제알선사건 28건을 접수하여

235) Id.

236) UNCITRAL,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New York, 2018)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https://uncitral.un.org/en/texts/mediation/conventions/international\\_settlement\\_agreements](https://uncitral.un.org/en/texts/mediation/conventions/international_settlement_agreements) (2022. 6. 27. 최종접속).

237) 싱가포르조정협약 번역은 법무부, UN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2020을 참조함. file:///C:/Users/%EC%A1%B0%EC%88%98%ED%98%9C/Downloads/UN\_%EC%A1%B0%EC%A0%95%EC%97%90\_%EA%B4%80%ED%95%9C\_%EC%8B%B1%EA%B0%80%ED%8F%AC%EB%A5%B4\_%ED%98%91%EC%95%BD\_%EA%B5%AD%EC%A0%9C%EC%97%B0%ED%95%A9].PDF

238)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국문)\_2016. 6. 1. 이후 접수된 국제사건,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112?seq=46&clsf=1&pageno=2&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112?seq=46&clsf=1&pageno=2&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 (2022. 6. 24. 최종접속).

239)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112?seq=6&clsf=1&pageno=3&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112?seq=6&clsf=1&pageno=3&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 (2022. 6. 24. 최종접속).

총 512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40)</sup> 이는 전년대비 31.5%가 감소한 수치이며, 알선사건 발생원인은 계약조건 해석(105건), 품질불량 및 수량부족(168건), 대금결제(97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sup>241)</sup>

조정 이용실태에 대한 분석연구에 의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은 민사조정외 하나인 법원연계형 조정의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대다수이며, 무역분쟁조정으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율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출상과 검사기관 간의 분쟁을 위한 지정 조정기관으로서의 조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국제상사 조정의 이용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sup>242)</sup> 무역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국제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 조정사건 유치를 위한 조정기관의 관심 부족, 전문성을 갖춘 국제조정인의 부족 등이 거론된다.<sup>243)</sup>

240) 대한상사중재원, 2021년 클레임 통계,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512?seq=119&clsf=1&pageno=1&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512?seq=119&clsf=1&pageno=1&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 (2022. 6. 24. 최종접속).

241) Id.

242) 유병욱, “국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활용에 관한 고찰 -조정과 중재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80권, 2018, 281면.

243) 오현석, “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연구”, 법제 제689권, 법제처, 2020, 38면. 한편,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한 논문으로, 김세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2020 참조.



## 제 3 장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뉴욕중재협약에 따른 국제중재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조 수 혜



## 제3장

# 뉴욕중재협약에 따른 국제중재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 제1절 |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뉴욕중재협약)

#### 1. 제정배경

국제상사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국제중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재합의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통일적인 국제기준의 정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sup>244)</sup>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 1923년 체결된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가 있었으나,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체약국에 속한 경우에 한하여 체약국으로 하여금 현재 및 장래의 분쟁에 관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승인하도록 한 것이었다.<sup>245)</sup>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국제연맹은 1927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 of 1927)’을 만들어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보장하고 중재판정집행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다.<sup>246)</sup>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냉전체제에서 국가로

244)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 (2022. 6. 25. 최종접속).

245)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40면.

246)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40면. 뉴욕협약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소개로 다음 웹사이트 참조.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ther Relevant Conventions, <https://www.newyorkconvention.org/other+relevant+conventions> (2022. 10. 17. 최종접속).

부터 독립된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다국간 국제조약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sup>247)</sup> UN 경제사회이사회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회람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후 1958. 6. 10. 뉴욕중재협약을 성립시켰다.<sup>248)</sup> 뉴욕중재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이 국내 중재판정과 비교하여 차별없이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도록 계약국은 국내중재판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승인 및 집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의 소제기가 아닌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절차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였다.<sup>249)</sup>

## 2. 가입현황

뉴욕중재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국제협약으로 평가받으며,<sup>250)</sup> 2022. 10. 현재 170개국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51)</sup> 우리나라는 1968. 3. 4. 뉴욕중재협약 가입을 위한 서명을 하고, 1973. 1. 30. 당시 비상국무회의에서 위 협약가입 동의안이 의결되고 같은 해 2. 8. 협약 가입문서를 UN 사무총장에 기탁하여 같은 해 5. 9.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sup>252)</sup> 뉴욕협약에 의하여 협약 가입국 어디서든 중재판정에 대한 강제집행이 보장되게 되었고, 이러한 집행력은 국제상사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국제중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확고한 계기가 되었다.<sup>253)</sup> 가입국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sup>254)</sup>

247) 이호원, 앞의 글, 9-10면.

248) 이호원, 위의 글, 10면.

249)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 (2022. 6. 25. 최종접속).

250) 김준기,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 국제상사법원, 국제투자법원 및 국제중재의 비교고찰과 그 함의-", 비교사법 제28권 제3호, 2021, 305면.

251) UNCITRAL, Statu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status2](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status2) (2022. 10. 17. 최종접속).

252) 1973. 2. 19. 다자조약 제471호 (발효일 1973. 5. 9.); 이호원, 앞의 글, 11면.

253) 황현영, 앞의 글, 2면 참조.

254)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Contracting States - List of Contracting States, <https://www.newyorkconvention.org/list-of-contracting+states> (2022. 10. 17. 최종접속).

» [표 3-1] 뉴욕협약 가입국 현황

Participant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a), Succession(d)
Afghanistan		30 Nov 2004 a
Albania		27 Jun 2001 a
Algeria		7 Feb 1989 a
Andorra		19 Jun 2015 a
Angola		6 Mar 2017 a
Antigua and Barbuda		2 Feb 1989 a
Argentina	26 Aug 1958	14 Mar 1989
Armenia		29 Dec 1997 a
Australia		26 Mar 1975 a
Austria		2 May 1961 a
Azerbaijan		29 Feb 2000 a
Bahamas		20 Dec 2006 a
Bahrain		6 Apr 1988 a
Bangladesh		6 May 1992 a
Barbados		16 Mar 1993 a
Belarus	29 Dec 1958	15 Nov 1960
Belgium	10 Jun 1958	18 Aug 1975
Belize		15 Mar 2021 a
Benin		16 May 1974 a
Bhutan		25 Sep 2014 a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28 Apr 1995 a
Bosnia and Herzegovina <sup>2</sup>		1 Sep 1993 d
Botswana		20 Dec 1971 a
Brazil		7 Jun 2002 a
Brunei Darussalam		25 Jul 1996 a
Bulgaria	17 Dec 1958	10 Oct 1961
Burkina Faso		23 Mar 1987 a
Burundi		23 Jun 2014 a
Cabo Verde		22 Mar 2018 a
Cambodia		5 Jan 1960 a
Cameroon		19 Feb 1988 a
Canada		12 May 1986 a
Central African Republic		15 Oct 1962 a
Chile		4 Sep 1975 a
China <sup>3</sup>		22 Jan 1987 a

Participant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a), Succession(d)
Colombia		25 Sep 1979 a
Comoros		28 Apr 2015 a
Cook Islands		12 Jan 2009 a
Costa Rica	10 Jun 1958	26 Oct 1987
Côte d'Ivoire		1 Feb 1991 a
Croatia <sup>2</sup>		26 Jul 1993 d
Cuba		30 Dec 1974 a
Cyprus		29 Dec 1980 a
Czech Republic <sup>4</sup>		30 Sep 1993 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5 Nov 2014 a
Denmark		22 Dec 1972 a
Djibouti		14 Jun 1983 d
Dominica		28 Oct 1988 a
Dominican Republic		11 Apr 2002 a
Ecuador	17 Dec 1958	3 Jan 1962
Egypt		9 Mar 1959 a
El Salvador	10 Jun 1958	26 Feb 1998
Estonia		30 Aug 1993 a
Ethiopia		24 Aug 2020 a
Fiji		27 Sep 2010 a
Finland	29 Dec 1958	19 Jan 1962
France	25 Nov 1958	26 Jun 1959
Gabon		15 Dec 2006 a
Georgia		2 Jun 1994 a
Germany <sup>5,6</sup>	10 Jun 1958	20 Feb 1975 a
Ghana		9 Apr 1968 a
Greece		16 Jul 1962 a
Guatemala		21 Mar 1984 a
Guinea		23 Jan 1991 a
Guyana		25 Sep 2014 a
Haiti		5 Dec 1983 a
Holy See		14 May 1975 a
Honduras		3 Oct 2000 a
Hungary		5 Mar 1962 a
Iceland		24 Jan 2002 a
India	10 Jun 1958	13 Jul 1960

Participant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a), Succession(d)
Indonesia		7 Oct 1981 a
Iran (Islamic Republic of)		15 Oct 2001 a
Iraq		11 Nov 2021 a
Ireland		12 May 1981 a
Israel	10 Jun 1958	5 Jan 1959
Italy		31 Jan 1969 a
Jamaica		10 Jul 2002 a
Japan		20 Jun 1961 a
Jordan	10 Jun 1958	15 Nov 1979
Kazakhstan		20 Nov 1995 a
Kenya		10 Feb 1989 a
Kuwait		28 Apr 1978 a
Kyrgyzstan		18 Dec 1996 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7 Jun 1998 a
Latvia		14 Apr 1992 a
Lebanon		11 Aug 1998 a
Lesotho		13 Jun 1989 a
Liberia		16 Sep 2005 a
Liechtenstein		7 Jul 2011 a
Lithuania		14 Mar 1995 a
Luxembourg	11 Nov 1958	9 Sep 1983
Madagascar		16 Jul 1962 a
Malawi		4 Mar 2021 a
Malaysia		5 Nov 1985 a
Maldives		17 Sep 2019 a
Mali		8 Sep 1994 a
Malta		22 Jun 2000 a
Marshall Islands		21 Dec 2006 a
Mauritania		30 Jan 1997 a
Mauritius		19 Jun 1996 a
Mexico		14 Apr 1971 a
Monaco	31 Dec 1958	2 Jun 1982
Mongolia		24 Oct 1994 a
Montenegro <sup>7</sup>		23 Oct 2006 d
Morocco		12 Feb 1959 a
Mozambique		11 Jun 1998 a

Participant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a), Succession(d)
Myanmar		16 Apr 2013 a
Nepal		4 Mar 1998 a
Netherlands	10 Jun 1958	24 Apr 1964
New Zealand		6 Jan 1983 a
Nicaragua		24 Sep 2003 a
Niger		14 Oct 1964 a
Nigeria		17 Mar 1970 a
North Macedonia <sup>2,8</sup>		10 Mar 1994 d
Norway		14 Mar 1961 a
Oman		25 Feb 1999 a
Pakistan	30 Dec 1958	14 Jul 2005
Palau		31 Mar 2020 a
Panama		10 Oct 1984 a
Papua New Guinea		17 Jul 2019 a
Paraguay		8 Oct 1997 a
Peru		7 Jul 1988 a
Philippines	10 Jun 1958	6 Jul 1967
Poland	10 Jun 1958	3 Oct 1961
Portugal <sup>9</sup>		18 Oct 1994 a
Qatar		30 Dec 2002 a
Republic of Korea		8 Feb 1973 a
Republic of Moldova		18 Sep 1998 a
Romania		13 Sep 1961 a
Russian Federation	29 Dec 1958	24 Aug 1960
Rwanda		31 Oct 2008 a
San Marino		17 May 1979 a
Sao Tome and Principe		20 Nov 2012 a
Saudi Arabia		19 Apr 1994 a
Senegal		17 Oct 1994 a
Serbia <sup>2</sup>		12 Mar 2001 d
Seychelles		3 Feb 2020 a
Sierra Leone		28 Oct 2020 a
Singapore		21 Aug 1986 a
Slovakia <sup>4</sup>		28 May 1993 d
Slovenia <sup>2</sup>		6 Jul 1992 d
South Africa		3 May 1976 a



Participant	Signature	Ratification, Accession(a), Succession(d)
Spain		12 May 1977 a
Sri Lanka	30 Dec 1958	9 Apr 1962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12 Sep 2000 a
State of Palestine		2 Jan 2015 a
Sudan		26 Mar 2018 a
Sweden	23 Dec 1958	28 Jan 1972
Switzerland	29 Dec 1958	1 Jun 1965
Syrian Arab Republic <sup>10</sup>		9 Mar 1959 a
Tajikistan		14 Aug 2012 a
Thailand		21 Dec 1959 a
Tonga		12 Jun 2020 a
Trinidad and Tobago		14 Feb 1966 a
Tunisia		17 Jul 1967 a
Türkiye		2 Jul 1992 a
Turkmenistan		4 May 2022 a
Uganda		12 Feb 1992 a
Ukraine <sup>11,12</sup>	29 Dec 1958	10 Oct 1960
United Arab Emirates		21 Aug 2006 a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up>13</sup>		24 Sep 1975 a
United Republic of Tanzania		13 Oct 1964 a
United States of America		30 Sep 1970 a
Uruguay		30 Mar 1983 a
Uzbekistan		7 Feb 1996 a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8 Feb 1995 a
Viet Nam		12 Sep 1995 a
Zambia		14 Mar 2002 a
Zimbabwe		29 Sep 1994 a

### 3.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

뉴욕중재협약은 외국중재판정, 즉 승인·집행 청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과 그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내국판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중재판정

에 모두 적용되도록 규정하여(제1조 제1항)<sup>255)</sup> 1927년 제네바협약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sup>256)</sup>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중재판정이 국내에서 성립하였더라도 준거법이 외국법인 중재판정의 경우 외국중재판정이라고 보는 국가에서는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이 된다.<sup>257)</sup> 외국중재판정의 기준에 대하여 1955년 초안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영역주의(territorial criterion)를 채택하였으나, 이는 1927년 제네바협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sup>258)</sup>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두 번째 기준으로 비국내기준(non-domestic criterion)을 도입하여 집행국 법에 의하여 내국판정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중재판정도 뉴욕중재협약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적용범위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확대하였다.<sup>259)</sup>

한편, 뉴욕협약 제1조 제3항은 상호주의 유보선언과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협약국에게 유보선언 선택권을 부여한다.<sup>260)</sup> 우리나라도 뉴욕중재협약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한하여 뉴욕중재협약을 적용하는 상호주의 유보선언과 우리 법에 의하여 상사성이 있는 분쟁에 뉴욕중재협약을 적용하는 상사한정 유보선언을 하였다.<sup>261)</sup> 이는 뉴욕중재협약 적용범위를 좁혔을 뿐만 아니라, 상사성에 대한 판단에서 국내법이 개입될 여지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sup>262)</sup>

255) 뉴욕중재협약 원문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UNCITR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Text,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new-york-convention-e.pdf> (2022. 10. 17. 최종접속). 뉴욕중재협약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Non-authentic translations, Korean Transl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https://www.newyorkconvention.org/11165/web/files/original/1/5/15462.pdf> (2022. 10. 17. 최종방문).

256) UNCITRAL, UNCITRAL Secretariat Guide on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2016 Ed), 7-8,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2016\\_guide\\_on\\_the\\_convention.pdf](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2016_guide_on_the_convention.pdf) (2022. 10. 17. 최종접속) (이하 'NYC Guide'로 인용함).

257) 김상호,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 2007, 5면.

258) NYC Guide, 앞의 글, 18.

259) NYC Guide, 앞의 글, 22.

260) NYC Guide, 앞의 글, 29.

261)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Contracting States - List of Contracting States, <https://www.newyorkconvention.org/list+of+contracting+states> (2022. 10. 17. 최종접속).

262)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41면.

## 나. 중재합의 형식과 효력

뉴욕중재협약 제2조 제1항은 중재가능성이 있는 분쟁에 대한 중재합의가 서면성이 있는 경우 이를 승인할 것을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서명하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 속에 포함된 주된 계약 속의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서면으로 된 유효한 중재합의의 대상이 되는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계약국 법원은 해당 분쟁을 중재에 의하도록 당사자들에게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본래 뉴욕중재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으로 중재합의의 승인이나 효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으나, 협약 제4조와 제5조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요건으로 중재합의의 승인 및 집행이 문제되자 뉴욕중재협약이 채택되기 3주 전에 급히 마련하여 삽입한 조항이다.<sup>263)</sup>

서면성이 있고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이행불능이 아닌 경우 법원은 그 소송의 본안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고,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권(principle of competence-competence)에 의하여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sup>264)</sup>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린 후 법원은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으므로 중재판정부의 자기권한심사권이 있다고 하여 중재절차 후 법원의 중재합의에 대한 판단권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sup>265)</sup>

한편, 중재합의의 서면성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해석이 갈림에 따라 UNCITRAL은 2006년 중재모델법 개정을 하면서 중재합의의 서면성 등에 대한 뉴욕중재협약의 해석권 고도 함께 제시하였다.<sup>266)</sup> '서신이나 전보의 교환'의 해석에 관하여, 대부분의 법원들은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기록 가능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교환된 중재합의도 서면성이 있다고 해석하여 왔다.<sup>267)</sup> 2006년 UNCITRAL은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의 서명성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위 조항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고,

263) NYC Guide, 앞의 글, 39면.

264) NYC Guide, supra note, at 41.

265) Id.,

266) UNCITRAL,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 paragraph 2, and article VII,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10 June 1958 (2006),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explanatorytexts/recommendations/foreign\\_arbitral\\_awards](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explanatorytexts/recommendations/foreign_arbitral_awards) (2022. 10. 17. 최종접속).

267) NYC Guide, supra note, at 55.

2006년 중재모델법에서 명문으로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도 서면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자적 의사소통방식에 의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한 논란을 종결지었다.<sup>268)</sup>

#### 다. 중재판정 효력

뉴욕중재협약 체결국은 외국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 요건을 갖춘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이를 집행국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한다(제3조). 이 조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려는 뉴욕중재협약의 취지를 나타낸 조항으로, 체결국에게 외국 중재판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다.<sup>269)</sup> 이 조항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은 체결국에서 일응(prima facie) 승인되고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sup>270)</sup> 한편, 뉴욕중재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에 대한 통일은 시도하지 않았으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방법과 절차는 각 체결국의 국내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sup>271)</sup> 뉴욕중재협약은 국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부과하는 것보다 엄격한 조건이나 고액의 인지대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제3조 2문) 체결국이 외국중재판정 및 집행의 절차를 입법하는데 재량을 인정하였다.<sup>272)</sup> 체결국의 절차법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체결국의 절차에 따라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가능성도 존재하나, 현재까지 실무에서 절차로 인하여 승인 및 집행 결과가 달라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73)</sup>

#### 라.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적극적 요건

뉴욕중재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①정당하게 인증된 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과 ②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268) NYC Guide, supra note, at 56.

269) NYC Guide, supra note, at 77.

270) NYC Guide, supra note, at 77.

271) NYC Guide, supra note, at 82-83.

272) NYC Guide, supra note, at 90.

273) NYC Guide, supra note, at 86.

증명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위의 중재판정이나 중재합의가 집행지 공용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용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번역문은 공증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제4조 제2항). 뉴욕중재협약 이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성립국에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허가하는 재판을 받아 중재판정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었다.<sup>274)</sup> 이를 이중집행(double exequatur)이라고 하여 중재판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sup>275)</sup> 뉴욕중재협약은 이중집행 실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속력이 있는(binding)’ 중재판정일 것을 규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final)임을 요구하지 않았다.<sup>276)</sup> 또한 중재판정의 구속력에 대한 증명책임은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 구속력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전환하였다.<sup>277)</sup> 뉴욕중재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중재합의와 중재판정문 등의 제출만을 규정하여 당사자 부담을 경감하였다.<sup>278)</sup> 중재판정의 신청을 구하는 당사자가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은 중재판정 집행에 대한 일종의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sup>279)</sup>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다투려는 당사자에게 그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을 지게 한다.<sup>280)</sup>

#### 마.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소극적 요건

뉴욕중재협약은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식으로 규정하여, 그 이외의 사유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집행지 법원의 중재판정의 본안 내용에 대한 심사를 금지한다.<sup>281)</sup> 집행지국의 법원이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뉴욕중재협약은 제5조에서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제1항)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제2항)로 나누어 규정한다.

274) NYC Guide, supra note, at 97; 이호원, 앞의 글, 15면.

275) NYC Guide, supra note, at 97; 이호원, 앞의 글, 15면.

276) NYC Guide, supra note, at 98; 이호원, 앞의 글, 15면.

277) 이호원, 앞의 글, 15면.

278) NYC Guide, supra note, at 98; 김상호, 앞의 글, 10면.

279) NYC Guide, supra note, at 99.

280) 이호원, 앞의 글, 17면.

281) NYC Guide, supra note, at 124; 이호원, 앞의 글, 16면.

중재판정의 집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하는 사유는 (a)중재합의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없거나 중재합의가 무효인 사실, (b)중재절차에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실, (c)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실, (d) 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에 하자가 있던 사실, (e) 중재판정이 구속력이 없거나 취소·정지된 사실 등이 있다. 한편, 당사자 주장과 무관하게, 집행국 법원이 (a)중재가능성이 없거나 (b) 공공질서에 반한 사실이 있으면 직권으로 판단하여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바. 최혜권리

뉴욕중재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다른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7조 제1항)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더라도 그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국내법 또는 다른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승인·집행을 구할 수 있다.<sup>282)</sup> 다만 뉴욕중재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더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다른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은 뉴욕중재협약보다 관대한 요건을 규정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sup>283)</sup>

## 제2절 |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중재법

### 1. 제정배경

모델중재법은 각국이 국제상사중재의 특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대한 국내법을 개정하고 개선함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모델중재법은 중재합의,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관할, 법원의 개입,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등 중재절차 전반을 규율한다.<sup>284)</sup>

282) 이호원, 앞의 글, 13면.

283) 이호원, 앞의 글, 13면.

284)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뉴욕중재협약 성공 이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 등은 국제적으로 통일되었으나,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등의 상당부분은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였으며, 국제중재의 투명성과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내법이 규율하는 중재절차의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sup>285)</sup>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각국의 국내법이 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델법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개정하도록 권고하여 표준화를 이루는 이원적 접근(two-track) 정책에 따라 모델중재법이 제정되었다.

## 2. 가입현황

모델중재법 수용현황은 UNCITRAL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으며, 2022. 10. 현재 85개국에서 수용하였다(표 3-2 참조).<sup>286)</sup> 우리나라는 1999년에 1985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법을 전부개정하였으며, 2016년에 2006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재차 중재법을 개정하였다.

» [표 3-2] 모델중재법의 수용 현황

State	Year	Notes
Argentina	2018	
Armenia	2006	
Australia	2010	(a), (b)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2017	(b)
New South Wales	2010	(b)
Northern Territory	2011	(b)
Queensland	2013	(b)
South Australia	2011	(b)
Tasmania	201	(b)
Victoria	2011	(b)
Western Australia	2012	(b)
Austria	2006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 (2022. 6. 25. 최종접속).

285) Id.

286) UNCITRAL, Status: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status](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status) (2022. 10. 18. 최종접속).

위 표에서 (a)는 모델법을 수용하여 기존의 법률을 개정한 경우를 의미하고, (b)는 2006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입법이 된 경우를 의미하며, (c)는 영국의 해외영토를 의미한다.

State	Year	Notes
Azerbaijan	1999	
Bahrain	2015	(a), (b)
Bangladesh	2001	
Barbados	2007	(b)
Belarus	1999	
Belgium	2013	(b)
Bhutan	2013	(b)
Brunei Darussalam	2009	(b)
Bulgaria	2002	(a)
Cambodia	2006	
Canada	1986	-
Alberta	1986	-
British Columbia	2018	(a), (b)
Manitoba	1986	-
New Brunswick	1986	-
Newfoundland and Labrador	1986	-
Northwest Territories	1986	-
Nova Scotia	1986	-
Nunavut	1999	-
Ontario	1987	(a), (b)
Prince Edward Island	1986	-
Quebec	1986	-
Saskatchewan	1988	-
Yukon	1986	-
Chile	2004	
China	-	-
Hong Kong, China	2010	(a), (b)
Macao, China	2019	(a), (b)
Costa Rica	2011	(b)
Croatia	2001	
Cyprus	1987	
Denmark	2005	
Dominican Republic	2008	
Egypt	1994	
Estonia	2006	
Fiji	2017	(b)
Georgia	2009	(b)
Germany	1998	
Greece	1999	
Guatemala	1995	



State	Year	Notes
Honduras	2000	
Hungary	1994	
India	1996	
Iran(Islamic Republic of)	1997	
Ireland	2010	(a), (b)
Jamaica	2017	(b)
Japan	2003	
Jordan	2001	
Kenya	1995	
Liechtenstein	2010	
Lithuania	2012	(a), (b)
Madagascar	1998	
Malaysia	2005	
Maldives	2013	
Malta	1996	
Mauritius	2008	(b)
Mexico	1993	
Mongolia	2017	(b)
Montenegro	2015	
Myanmar	2016	
New Zealand	2007	(a), (b)
Nicaragua	2005	
Nigeria	1990	
North Macedonia	2006	
Norway	2004	
Oman	1997	
Paraguay	2002	
Peru	2008	(a), (b)
Philippines	2004	
Poland	2005	
Qatar	2017	
Republic of Korea	2016	(a), (b)
Russian Federation	1993	
Rwanda	2008	(b)
Saudi Arabia	2012	
Serbia	2006	
Singapore	1994	(a)

State	Year	Notes
Slovakia	2014	
Slovenia	2008	(b)
South Africa	2017	(b)
Spain	2003	
Sri Lanka	1995	
Thailand	2002	
Tunisia	1993	
Türkiye	2001	
Turkmenistan	2016	(b)
Uganda	2000	
Ukraine	1994	
United Arab Emirates	2018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2013	
Abu Dhabi Global Market	2015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
Bermuda	1993	(c)
British Virgin Islands	2013	(b), (c)
Scotland	2015	-
United States of America	-	-
California	1988	-
Connecticut	1989	-
Florida	2010	(b)
Georgia	2012	-
Illinois	1998	-
Louisiana	2006	-
Oregon	1991	-
Texas	1989	-
Uruguay	2018	
Uzbekistan	2021	(b)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1998	
Zambia	2000	
Zimbabwe	1996	

### 3. 1985년 모델중재법 채택 당시 주요내용

#### 가. 채택취지

UNCITRAL은 1985년 모델중재법<sup>287)</sup>을 제정하면서 각국이 모델법에 기초하여 입법

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설을 함께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sup>288)</sup> 모델중재법은 중재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과 당사자자치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내법원의 역할을 제한하고 중재판정부의 재량권을 보장하였다.<sup>289)</sup> 또한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절차의 기준을 제공하고, 국제중재를 국내절차에서 독립시켜 각국의 국제상사중재의 절차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서 국제적 통일 또는 조화를 도모하였다.<sup>290)</sup>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상사중재를 적용범위로 하면서 국제중재절차의 전반, 즉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구성, 중재절차의 심리 등을 모두 규정하였다. UNCITRAL은 이를 모델법 형태로 제공하여 각국이 모델법의 부분 또는 일부를 수용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융통성을 부여하였다.<sup>291)</sup>

## 나. 주요내용

### (1) 일반조항

모델중재법은 뉴욕중재협약과 달리 국제상사중재를 적용범위로 하며, 주요개념에 대한 정의 등을 규정하여 각국이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완성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적용범위에 대하여, 모델중재법은 국제상사중재에 적용되며(제1조 제1항),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중재지가 해당국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동조 제2항). 중재란 상설중재기관에서 사무처리가 되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중재를 의미한다(제2조 (a)호).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상사중재의 국제성은 (a)중재합의의 당사가 중재합의를 체결할 당시 상이한 국가에

287) 1985년 모델중재법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06-54671\\_ebook.pdf](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06-54671_ebook.pdf) (2022. 10. 24. 최종접속). 1985년 모델중재법의 한글번역은 대한상사중재원, UNCITRAL 모델 중재법,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112?seq=3&clsf=1&pageno=3&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112?seq=3&clsf=1&pageno=3&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 (2022. 10. 21. 최종접속) 참조.

288)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19-09955\\_e\\_ebook.pdf](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19-09955_e_ebook.pdf) (2022. 10. 24. 최종접속).

289) 장복희,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기본원리와 구조”, 중재학회지 제7권, 328면.

290) 장복희, 위의 글, 328-29면.

291)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5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06-54671\\_ebook.pdf](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06-54671_ebook.pdf) (2022. 10. 24. 최종접속)(이하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로 인용함).

영업소를 두는 경우 또는 (b)(i)중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었거나 결정되는 중재지, (ii)상거래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는 장소 또는 분쟁의 본안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된 장소 중의 하나가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국 외에 있는 경우, (c)중재합의의 본안문제가 2개국 이상과 연관되어 있다고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인정된다(동조 제3항). 한편, 모델중재법은 국제상사중재의 상사성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주로 계약에 의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상사적인 특징을 가지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포섭할 수 있도록 넓게 해석하도록 권고하고, 국내법이 상사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않고 넓게 해석하도록 권고하기 위하여 상사성이 있는 사항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였다.<sup>292)</sup>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법원의 사법절차가 아닌 중재에서의 서면통지는 수신인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수신인의 영업소·상거소·우편주소지에 전달된 경우에 전달된 일자에 수령한 것으로 본다(제3조). 중재절차에서 당사자가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나 중재합의에서 정한 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지체없이,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제4조). 한편, 모델중재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원은 모델중재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불필요한 개입을 금지하였다(제5조).<sup>293)</sup> 나아가 모델중재법은 중재인선정, 중재인기피절차, 중재인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중재판정부의 결정권한, 중재판정취소 등에서 모델중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지원·감독하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한다(제6조).

## (2) 중재합의

중재합의란 계약에 의하거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의미하며,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중재조항이나 별도의 합의형식으로 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일부 국가에서는 중재합의를 구두로 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나, 모델중재법은 뉴욕중재협약에 따라 서면성을 요구하였

292)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17면.

293)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18면.

다.<sup>294</sup> 중재합의의 서면성은 ①당사자가 서명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거나, ②서신·텔레그램·텔레그램 등 중재합의를 기록하는 통신의 교환에 포함되어 있거나, ③신청서와 답변서의 교환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중재합의의 존재를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동조 제2항 2문). 중재조항을 포함한 서류가 계약내용에 언급되어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중재조항을 포함한 서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중재합의로 인정된다(동항 3문).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이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 대하여 모델중재법은 뉴욕중재협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그 분쟁의 본안에 관한 첫 진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러한 항변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중재합의가 무효·실효되었거나 이행불능의 상태가 아니라면 당사자들에게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sup>295</sup> 위 소송이 개시된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개시되거나 속행될 수 있고, 법원의 재판 계속 중에도 중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동조 제2항). 한편, 모델중재법은 중재합의가 있더라도 당사자는 중재절차 전이나 계속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것은 중재합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제9조) 법원의 보전처분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sup>296</sup>

### (3) 중재판정부 구성

모델중재법은 중재인의 수, 중재인의 선정, 중재인에 대한 기피 사유 및 절차, 중재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보궐중재인의 선정 등 중재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재판정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규정한다. 이 부분에서 모델중재법은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공정과 정의의 기본적인 요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규정을 마련하였다.<sup>297</sup>

중재인 수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중재인 수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294)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18면.

295)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19면.

296)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19면.

297)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19면.

합의가 없으면 3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원칙으로 한다(제10조). 중재인 선정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국적으로 이유로 중재인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으며(제11조 제1항),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절차를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중재인 선정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의 중재인 선정절차에 대하여 모델중재법은 3인 중재와 단독중재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는데, 단독중재의 경우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 등이 중재인을 선정하며, 3인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중재인 2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동조 제3항). 중재인 선정절차가 난항을 겪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델중재법은 법원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sup>298)</sup>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선정절차에 당사자가 그 절차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나 두 중재인이 중재인선정절차에 의한 합의에 이를 수 없거나, 기관을 포함한 제3자가 중재인선정절차에서 위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법원 등에 필요한 처분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이에 대한 법원 등에 처분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원 등은 중재인 선정에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 선정을 보장하여야 하고, 단독중재인이나 제3의 중재인의 국적이 당사자 국적과 다르게 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동조 제5항).

중재인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거나 당사자가 합의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피될 수 있는데, 다만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그 선정절차에 참여한 중재인의 선정 후에 알게된 사유에 대하여 기피할 수 있다(동조 제2항)고 하여 기피사유의 시적 제한을 두었다. 중재인 기피절차는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모델중재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게 된다. 모델중재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거나 중재인 기피사유의 사정을 알게된 후 15일 이내에 중재인 기피사유를 진술한 서면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중재판정부가 하는 것을 규정한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지 30일 이내

298)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19면.

에 법원 등에 중재인 기피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기피신청이 된 중재인을 포함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동조 제3항 전문).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임하거나 당사자 합의로 중재인 직무권한을 종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원 등에 이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중재인이 기피되거나 사임하거나 중재인 권한이 취소·종료되는 경우에는 보궐중재인이 이전의 중재인에 적용되었던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제15조).

#### (4) 중재판정부 판정권한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하여, 모델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자기결정권한을 긍정한다. 모델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자신의 관할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자기권한심사 원칙(principle of Kompetenz-Kompetenz)과 중재조항의 독립성 원칙(principle of seperability)을 채택하였다.<sup>299)</sup> 다만 중재판정부가 판정권한이 없다는 항변은 답변서 제출 전까지 제기되어야 하고, 중재판정부가 판정권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항변은 중재절차 중 권한유일이 된 즉시 제기되어야 하며, 정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늦게 제출한 항변도 허용이 된다(동조 제2항). 위 항변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선결문제 또는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결정할 수 있고, 선결문제로 중재판정부가 판정권한을 긍정하는 경우 당사자는 그러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 등에 중재인 판정권한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신속성을 위하여 항고가 금지되며 중재절차는 중지되지 않는다(동조 제3항).<sup>300)</sup>

모델중재법은 당시 일부 국내법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중재판정부의 보전처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sup>301)</sup>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신청으로 분쟁 본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보전처분에 대하여 적절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다만 모델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보전

299)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0면.

300)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0면.

301)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0면.

처분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모델중재법을 수용하는 국가가 이에 관하여 법원의 협조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각국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sup>302)</sup>

##### (5) 중재절차

모델중재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를 위하여 두 가지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sup>303)</sup> 첫 번째 기본원칙은 절차적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 중재절차에서 양 당사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신의 주장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제18조). 두 번째 기본원칙은 당사자자치의 존중으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중재절차에 대하여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채택 여부, 관련성, 중요성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동조 제2항). 모델중재법은 중재지의 개념을 채택하였는데, 중재지는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정하며,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당사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정한다(제20조 제1항).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중재판정부는 구성원간의 협의나 증인·전문가증인·당사자 등의 심문이나 물건·문서 등의 조사를 위하여 적당한 장소를 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중재절차의 개시시점에 대하여, 모델중재법은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중재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한다(제21조). 국제상사중재에서 문제가 되는 언어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합의로 정할 수 있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정할 수 있다(제22조 제1항). 중재절차가 개시가 되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은 신청서를,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신청서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관련이 있는 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제출 예정인 문서나 기타 증거에 대하여 기재할 수도 있다(제23조 제1항).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가 신청서나 답변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 절차를 지연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는 이미 제출한 신청서와 답변서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수 없다(동조 제2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합의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제출이나 구술변론을 위하여 구술

302)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0면.

303)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0면.



심리를 할지의 여부 및 절차를 서면이나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전문). 그러나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요청에 의하여 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동항 후문). 모든 종류의 심리와 물건·문서 등의 조사를 위한 회합 등을 하기 앞서서 충분한 사전적 여유를 둔 통지가 당사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절차의 공정성을 위하여 일방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모든 의견서, 문서, 정보 등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유되어야 하며 중재판정부가 판정에 원용할 가능성이 있는 감정인의 보고서나 서증도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sup>304)</sup>

중재절차에는 당사자가 성실히 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모델중재법은 당사자 일방이 해태한 경우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고 충분한 이유 없이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는 이를 신청인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며, 당사자가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고 제출된 증거로 판정을 내린다(제25조). 한편,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없으면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정보나 문서, 물품 등을 제출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한편,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국가 관할법원에 증거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거조사절차에 따라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제27조).

#### (6) 중재판정과 중재절차의 종료

중재판정문을 내릴 경우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법규는 당사자 합의로 지정한 법이 없으면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한다(제28조 제2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만 형평과 선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고(동조 제3항), 적용 가능한 상관습이 있는 경우

304)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1면.

상관습을 고려한다(동조 제4항).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별도로 방법을 정하지 않는 한, 다수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경우 전 구성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중재절차에 대하여는 당사자나 중재판정부 구성원 전원의 수권이 있으면 의장중재인이 정할 수 있다(제29조). 중재절차 중에도 당사자들은 자신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할 수 있고, 중재판정부는 이 경우 절차를 종료하고 당사자 요청이 있으면 그 화해내용을 중재판정문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화해내용이 기재된 중재판정문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조 제2항).

중재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의 서명이 필요하나, 복수의 중재인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된 이유가 기재되면 중재판정부 구성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충분하다(제31조 제1항). 중재판정문에는 원칙적으로 그 판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하고(동조 제2항), 작성일자과 중재지를 기재하여(동조 제3항), 중재인들이 서명한 원본은 각 당사자에게 송부된다(동조 제4항). 중재판정문에 기재된 중재지에서 중재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로 중재판정문이 내려진 장소와 다를 수 있고, 중재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서명할 필요도 없다.<sup>305)</sup> 중재판정문에 반대의견이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모델중재법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sup>306)</sup>

최종 중재판정이 나오거나 중재판정부 명령이 있는 경우 중재절차는 종료가 된다(제32조 제1항). 중재판정부는 신청인이 그 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종료에 합의하거나, 중재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중재판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중재절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중재절차가 종료되면 중재판정부의 판정의무도 함께 종결된다(동조 제3항).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계산상 오류나 오기 등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중재판정부에 중재판정의 특정 사항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제33조 제1항). 한편 중재판정부는 판정일자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판정문에 대하여 경정할 수 있고(동조 제2항), 당사자가 정당하게 추가판정을 요구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동조 제3항). 중재판정문의 정정, 해석, 추가판정의 기간은 연장될

305)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1면.

306)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1면.

수 있다(동조 제4항).

### (7) 중재판정의 취소

일부 국가에서는 중재판정에 대한 다양한 불복방법을 규정하기도 하나, 모델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으로 중재판정의 취소만을 인정한다(제34조 제1항).<sup>307)</sup> 모델중재법 제6조에서 지정한 법원이 중재판정 취소를 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중재판정취소사유는 뉴욕중재협약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에 따라 사실상 규정하였고, 이 법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하여 인정한다.<sup>308)</sup>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①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거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지 법령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②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변론할 수 없었던 경우, ③중재판정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중재합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과 범위 밖의 사항이 분리가능하면 중재합의를 벗어나는 범위에 한하여 취소함), ④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당사자 합의는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합의가 없는 경우 이 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를 증명하면 법원 등에 중재판정 취소를 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제1호). 한편, 법원이 분쟁대상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가능성을 결여하였거나 중재판정이 해당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동항 제2호).

중재판정 취소는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 또는 제33조의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이 중재판정부에서 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법원은 중재판정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적절한 요청이 있으면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판정취소사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소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동조 제4항).

307)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2면.

308)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3면.

## (8)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판정은 중재지를 불문하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되어야 하고,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하다(제35조 제1항).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합의서와 중재판정문의 정당하게 인증된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중재합의서나 중재판정문이 해당국의 공용어와 다른 경우 정당하게 증명된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모델중재법 제36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를 규정하는데, 뉴욕 중재협약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를 그대로 수용하였다.<sup>309)</sup> 모델중재법은 외국판정과 국내판정을 구분한 뉴욕중재협약과 달리 국제상사중재와 비국제상사중재로 구분하여 적용하는데, 국제상사중재에 해당한다면 그 중재판정이 외국판정인지 국내판정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승인·집행되어야 한다.<sup>310)</sup> 중재판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법원은 이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제36조 제1항).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는 ①중재합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였거나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 지정한 법령 또는 지정한 법이 없으면 중재지법에 의하여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②중재판정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변론할 수 없었던 경우, ③중재판정이 다른 분쟁이 중재합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벗어난 경우(중재합의 범위 내에 속하는 부분과 중재합의 외의 부분이 분리가능하면 중재합의 범위내에 속하는 부분의 중재판정은 승인·집행 가능함), ④중재판정부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합의대로 행하여지지 않았거나,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를 한 나라의 법에 위배된 경우, ⑤중재판정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지거나 중재판정에 적용된 법의 국가의 법원이 중재판정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한 경우 등이다. 한편, 법원은 직권으로 ①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해당국가의 법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할 수 없거나, ②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하는 것이 해당 국가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309)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4면.

310) 1985년 모델중재법 해설, 앞의 글, 24면.

수 있다.

중재판정의 취소·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이 중재지 또는 준거법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법원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재판을 연기할 수 있고,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4. 2006년 모델중재법 개정의 주요내용

##### 가. 개정배경

2006년 모델중재법<sup>311)</sup>의 개정의 주된 이유는 중재합의 방식의 완화와 임시적 처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의 도입이다.<sup>312)</sup> 또한 중재판정분의 승인·집행에 대한 적극적 요건으로 중재합의문 제출 요건을 폐지하였다. 개정내용의 비교표는 아래와 같다.

» [표 3-3] 모델중재법 개정 주요내용

1985년 모델법	2006년 모델법의 개정 내용
제1조 적용 범위	제1조 적용범위 <2006 개정>
제2조 정의와 해석	제2조의A 국제성 및 일반원칙<2006 개정>
제3조 서면통지의 수령	-
제4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
제5조 법원의 관여	-
제6조 중재 지원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 또는 기타 기관	-
제7조 중재합의의 정의와 방식	제7조 중재합의의 정의와 방식<2006 개정>
제8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
제10조 중재인의 수	-
제11조 중재인의 선정	-
제12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

311) 2006년 모델중재법의 원문 및 해석은 다음 웹페이지 참조.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19-09955\\_e\\_ebook.pdf](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19-09955_e_ebook.pdf) (2022. 10. 28. 최종접속)(이하 '2006년 모델중재법 해설'로 인용함). 2006년 모델중재법의 한글번역본은 김갑유 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7, 부록4 참조.

312) 석광현 2012, 앞의 글, 535면; 노태약, 앞의 글, 112면.

1985년 모델법	2006년 모델법의 개정 내용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
제14조 중재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
제15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
제16조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권한	-
제17조 중재판정부의 보전처분	제4A장 임시적 처분 및 예비적 명령<2006 개정> 제17조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명령 권한 제17조의A 임시적 처분의 허용조건 제17조의B 예비적 명령의 신청 및 허용 조건 제17조의C 예비적 명령에 관한 특별규정 제17조의D 변경, 정지, 취소 제17조의E 담보의 제공 제17조의F 고지의무 제17조의G 비용 및 손해배상 제17조의H 승인 및 집행 제17조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 사유 제17조의J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 처분
제18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
제19조 중재절차규칙의 결정	-
제20조 중재지	-
제21조 중재절차의 개시	-
제22조 언어	-
제23조 중재신청서와 답변서	-
제24조 구술심리 및 서면절차	-
제25조 어느 한쪽 당사자의 해태	-
제26조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	-
제27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
제28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
제29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
제30조 화해	-
제31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
제32조 중재절차의 종료	-
제33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
제34조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으로서 취소신청	-
제35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5조 승인과 집행<2006 개정>
제36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사유	-

## 나. 개정 주요내용

### (1) 중재합의 서면성 완화 또는 폐지

2006년 모델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 중 하나는 중재합의의 서면성에 관한 것으로, 서면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Option I)과 서면성 폐지하는 방안(Option II)를 동시에 채택하여 각국이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sup>313)</sup> 전반적으로 서면성 요건이 후퇴한 데 대하여 실무가들이 모든 경우에 서면으로 중재합의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서면으로 된 중재합의가 없더라도 중재합의가 있으면 그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sup>314)</sup>

서면성 요건을 완화한 Option I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여 중재합의의 정의, 서면성의 요건 등을 차례로 규정한다. ‘중재합의’란 당사자가 계약에 의한 분쟁인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를 의미하고, 중재합의는 계약서 내의 중재조항의 형태나 별도의 독립된 합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제7조 제1항).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동조 제2항), 서면성은 중재합의나 계약이 구두나 행위 등의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기록된 경우 인정된다(동조 제3항). 2006년 모델중재법은 전자통신에 대하여도 규정하는데, 전자통신에 의한 경우에도 차후에 접근할 수 있으면 서면성이 인정되고, ‘전자통신’은 데이터 메시지에 의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문서교환, 전자우편, 전보, 전신 등 전자적·자기적·과학적 등의 방법으로 생성·송신·수령·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동조 제4항). 한편, 중재합의의 서면성은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가 교환한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중재합의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상대방 당사자가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동조 제5항).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그 중재조항이 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중재합의의 서면성이 인정된다(동조 제6항).

한편, 중재합의에 대한 제2방안(Option II)는 서면성 요건을 철폐하여, 중재합의의 정의에 대하여만 규정한다. 제2방에서 제시하는 2006년 모델중재법 제7조는 ‘중재합의’는 당사자가 계약에 의한 분쟁인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313) 석광현 2012, 앞의 글, 543면.

314) 노태약, 앞의 글, 115면.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간 합의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2) 중재판정부 임시적 처분 규정 강화<sup>315)</sup>

1985년 모델중재법은 제17조에서 중재판정부가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담보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그 집행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았다. 2006년에 개정된 모델중재법은 임시적 처분과 예비적 명령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sup>316)</sup>

<p><b>제IV장의A 임시적 처분과 예비적 명령</b></p> <p>제1절 임시적 처분</p> <p>제17조 임시적 처분을 명할 수 있는 중재판정부의 권한</p> <p>제17조의A 임시적 처분을 하기 위한 조건</p> <p>제2절 예비적 명령</p> <p>제17조의B 예비적 명령의 신청과 예비적 명령을 하기 위한 조건</p> <p>제17조의C 예비적 명령을 위한 특별규정</p> <p>제3절 임시적 처분과 예비적 명령에 적용되는 조항</p> <p>제17조의D 변경, 정지, 취소</p> <p>제17조E 담보의 제공</p> <p>제17조의F 고지의무</p> <p>제17조의G 비용 및 손해배상</p> <p>제4절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p> <p>제17조의H 승인 및 집행</p> <p>제17조의I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p>
---

(가) 임시적 처분의 의의와 요건

모델중재법은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명령 권한에 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한다(제17조 제1항). 임시적 처분이란 종국판결 전에 중재판정의 형식 또는 다른 양식으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①중재절차 계속 중에 현상유지 또는 복원, ②중재절차 자체에 현존·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의 방지 또는 금지, ③중재판정의 집행 만족을 위한 자산의 보존, ④분쟁해결에 관련이 있고 중요한 증거의 보존 등을 내용으로 한다(동조 제2항).

315) 김갑유 외, 앞의 책, 부록 4의 번역을 참조함.

316) 석광현 2012, 앞의 글, 549면.



위 ①, ②, ③의 내용에 대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게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면 중재판정의 손해배상으로 적절하게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임시적 처분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하고, ㉡신청인이 본안에서 승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음(다만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결정을 내리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7조의A 제1항). 위 ④의 내용에 대한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범위에서 위 ㉠, ㉡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동조 제2항).

#### (나) 예비적 명령의 의의와 요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임시적 처분에 대한 신청과 더불어 신청한 임시적 처분의 목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제17조의B 제1항).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사실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되면 방해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동조 제2항).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면 중재판정의 손해배상으로 적절하게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예비적 명령의 허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라면 제17조의A에 규정된 요건은 예비적 명령에도 적용된다(동조 제3항).

예비적 명령에 관한 결정을 내린 직후에 중재판정부는 모든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및 예비적 명령의 신청 사실, 예비적 명령(예비적 명령을 한 경우), 이와 관련된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간에 모든 통신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제17조의C 제1항). 동시에 중재판정부는 예비적 명령을 받은 당사자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예비적 명령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예비적 명령은 발령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동조 제4항). 예비적 명령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나 법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고, 예비적 명령은 중재판정이 되지 못한다(동조 제5항).

#### (다) 임시적 처분과 예비적 명령의 절차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신청이나 예외적인 사정변경이 있으면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임시적 처분이나 예비적 명령을 변경·정지·종료할 수 있다(제17조의D). 중

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이나 예비적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제17조의E).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이나 그 신청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즉시 알리도록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제17조의F 제1항), 예비적 명령의 신청 당사자는 예비적 명령의 허용 또는 유지의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중재판정부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개의무는 예비적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방어기회를 보장받을 때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로는 이 조항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동조 제2항).

중재판정부가 사후에 당해 임시적 처분이나 예비적 명령이 그 상황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적 처분이나 예비적 명령을 신청한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러한 비용과 손해배상은 중재절차 계속 중 언제든지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그 지급을 명할 수 있다(제17조의G).

#### (라) 임시적 처분의 승인·집행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승인·집행거부사유가 없으면 그 처분이 내려진 국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관할 법원에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제17조의H 제1항).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받은 당사자는 당해 임시적 처분이 종료·정지·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법원에 고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임시적 처분의 승인·집행을 신청받은 국가의 법원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 중재판정부가 담보명령을 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결정이 제3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신청 당사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임시적 처분은 규정된 승인·집행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제17조의I).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㉔동법 제36조 제1항 1호 (i)부터 (iv)목에 규정된 거부사유가 있거나, ㉕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중재판정부가 명령한 담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㉖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나 중재지 또는 그 임시적 처분이 내려진 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종료·정지되었음을 증명하거나, 법원이 ㉗당해 임시적 처분이 법원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이거나, ㉘동법 제36조 제1항 2호 (i)에서 (ii)목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것을 탐지한 경우 그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동조 제1항). 위

승인·집행거부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집행의 허부에 관하여만 효력이 있고, 해당 법원은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다(동조 제2항).

### (3) 중재판정 집행신청시 중재합의서 제출 요건 완화

개정 전 모델중재법 제35조 제2항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하여 중재합의서와 중재판정문 모두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2006년 개정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제출할 서류에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을 삭제하여, 제출할 유일할 서류로 중재판정문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만을 규정하였다(제35조 제2항). 이는 2006년 개정에서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이 완화되거나(Optional I) 폐지되면서(Optional II),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위한 제출서류에서도 중재합의서 제출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sup>317)</sup>

### (4) 적용범위 및 해석원칙

2006년 모델중재법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2006년 개정으로 중재합의,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 취소, 중재판정 승인·집행 등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해당국 영토가 중재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제1조 제2항). 이는 2006년 개정으로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고 임시적 처분의 승인·집행 등에 대하여도 규정이 되면서 개정된 조항이다. 한편, 정의와 해석의 원칙에 관하여, 이 법을 해석할 때 국제성을 고려하고 법적용의 통일성과 신의성실원칙의 준수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제2조의A).

317) 노태약, 앞의 글, 117면.

### 제3절 | 국제중재의 국내 현황

#### 1. 국제중재사건의 해결 현황

##### 가. 국제중재사건의 담당기관 및 심리시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중재 담당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다.<sup>318)</sup> 한편, 법무부는 센터 시설 운영 및 중재법 연구·교육을 위하여 2012. 9. 20. 산하 공익사단법인으로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의 설립을 허가하였고, 서울국제중재센터는 2013. 5. 27. 개소하였다.<sup>319)</sup> 서울국제중재센터는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글로벌센터빌딩 11층에 위치하였으며, 대현 심리실 1개·중형 심리실 1개·소형 심리실 2개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대한상사중재원을 포함하여 4개의 국제중재기구 사무소들이 입주하였다.<sup>320)</sup> 서울국제중재센터 출범에는 법무부, 서울시, 대한변협, 대한상사중재원의 공동지원이 있었는데, 법무부는 센터 내부시설 및 첨단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서울시는 5년 간 센터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대한변협은 상근변호사 등 운영 지원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시설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였다.<sup>321)</sup>

법무부는 2016년 이후 중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서울국제중재센터의 재정을 지원하여 왔다.<sup>322)</sup> 대한상사중재원은 2018. 4. 20. 국제상사분쟁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국제중재사건 전담부서인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를 설치하였다.<sup>323)</sup> 한편, 2018. 4. 20. 대한상사중재원 심리시설과 기존의 서울국제중재센

31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 소개,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ro/kcab.jsp](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ro/kcab.jsp) (2022. 10. 6. 최종접속); 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센터 소개, [http://www.kcabinternational.or.kr/common/index.do?jpath=/contents/sub0402&CURRENT\\_MENU\\_CODE=MENU0020&TOP\\_MENU\\_CODE=MENU0018](http://www.kcabinternational.or.kr/common/index.do?jpath=/contents/sub0402&CURRENT_MENU_CODE=MENU0020&TOP_MENU_CODE=MENU0018) (2022. 10. 6. 최종접속) 참조.

319) 법무부,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한국의 국제중재 허브 시대를 열다!(2013. 5. 27. 보도자료), <https://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88JTJGYmJzJTJGbW9qJTJGMTgyJTJGMjIyNzM1JTJGYXJ0Y2xWaWV3LmRvJTNG> (2022. 10. 6. 최종접속).

320) Id.

321) Id.

322) 기본계획, 앞의 글, 3면.

323) KCAB International, 국제중재센터 소개, [http://www.kcabinternational.or.kr/common/index.do?jpath=/kor/contents/sub0402&CURRENT\\_MENU\\_CODE=MENU0077&TOP\\_MENU\\_COD](http://www.kcabinternational.or.kr/common/index.do?jpath=/kor/contents/sub0402&CURRENT_MENU_CODE=MENU0077&TOP_MENU_COD)

터의 심리시설을 통합하여<sup>324)</sup> 삼성동 트레이드타워로 확장·이전하여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가 출범하게 되었다.<sup>325)</sup> 통합한 국제중재 전문심리시설인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Seoul IDRC)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운영하고 있다.<sup>326)</sup>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는 53평 규모의 대형 심리실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중재심리실, 당사자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중재심리공간과 외국 중재기관과 국내 유관단체들의 입주공간으로 조성된 사무공간으로 구성되고, 국제중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각종 물적 여건과 함께 화상회의시스템, 중재판정부 간 회의 및 휴식 등을 위한 중재인라운지, 사건 당사자들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등의 시설을 구비하였다.<sup>327)</sup> 서울국제중재조정센터의 총 면적은 홍콩국제중재센터 심리시설 면적의 약 1.5배이며, 뉴욕국제중재센터 중재심리시설 면적의 3.8배에 달한다.<sup>328)</sup>

#### 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을 구분하여 두고 있으며,<sup>329)</sup> 현행 국제중재규칙은 2016. 6. 1. 이후 접수된 국제중재사건부터 적용된다.<sup>330)</sup> 국제중재규칙은 당사자들이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사건 진행을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해당 중재가 국제중재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규칙 제3조). 국제중재규칙은 제6장에서 신속절차를 규정하여 신청금액이 5억원 이하 또는 당사자 사이에 신속절차에 의하여 중재한다는

E=MENU0071 (2022. 10. 6. 최종접속).

324) 황현영, 앞의 글, 5면.

325) 리걸타임즈, 2018. 4. 26. 기사, "서울중재센터, 트레이드타워로 이전",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5> (2022. 6. 27. 최종접속).

326) Seoul IDRC, 자주묻는 질문, <http://www.sidrc.org/idrc/kor/page/faq.do> (2022. 6. 27. 최종접속).

327) Id.

328) Id.

32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안내,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_2.jsp](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_2.jsp) (2022. 6. 27. 최종접속).

330)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국문)\_2016. 6. 1. 이후 접수된 국제사건,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1112?seq=46&clsf=1&pageno=2&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1112?seq=46&clsf=1&pageno=2&path=&name=&search_word_kind=titl&search_word=) (2022. 6. 25. 최종접속).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규칙 제43조),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규칙 제48조 제1항). 또한 별표3에서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긴급한 경우 긴급중재인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긴급처분을 내리고 이를 변경·정지·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별표3 제3조).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이용자에게 투명한 중재절차 진행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중재사건 비용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처리지침, 국제중재사건 중재인 선정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사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sup>331)</sup>

#### 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 현황

##### (1) 대한상사중재원 사건 수

대한상사중재원 클레임 통계<sup>332)</sup>에 의하면 2021년 총 7,660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중재사건은 500건이며 국제중재는 50건이다.<sup>333)</sup> 2020년과 비교하여 중재사건 전체는 405건에서 500건으로 23.5% 증가하였으나, 국제중재 접수건수는 69건에서 50건으로 27.5% 감소하였다.<sup>334)</sup> 국제중재의 신청금액 합계는 2020년 1,684억 원에서 2021년 511억 원으로 69.7% 감소하여 접수 건수뿐만 아니라 신청금액에 있어서도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35)</sup> 대한상사중재원은 2021년 신청금액이 1,000 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중재사건을 유치한 반면, 동년도에 접수한 국제중재사건은 모두 신청금액 100억 원 이하 또는 신청금액이 없다.<sup>336)</sup>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중 가장 접수건수가 많은 분야는 무역분쟁으로, 2020

331) KCAB International, 사무처리지침, [http://www.kcabinternational.or.kr/common/index.do?jpath=kor/contents/sub0205&CURRENT\\_MENU\\_CODE=MENU0094&TOP\\_MENU\\_CODE=MENU0073](http://www.kcabinternational.or.kr/common/index.do?jpath=kor/contents/sub0205&CURRENT_MENU_CODE=MENU0094&TOP_MENU_CODE=MENU0073) (2022. 6. 27. 최종접속) 참조.

332) 대한상사중재원, 통계/학술자료, [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511](http://www.kcab.or.kr/servlet/kcab_kor/data/4511) (2022. 11. 4. 최종접속).

333) 대한상사중재원, 2021년 클레임 통계, file:///C:/Users/%EC%A1%B0%EC%88%98%ED%98%9C/Downloads/2021%EB%85%84%20%ED%81%B4%EB%A0%88%EC%9E%84%20%ED%86%B5%EA%B3%84.pdf (2022. 11. 5. 최종접속).

334) Id.

335) Id.

336) Id.

년은 국제중재사건 69건 중 39건, 2021년 국제중재사건 50건 중 28건이 무역분쟁사건이다.<sup>337)</sup> 대한상사중재원이 제공하는 신속절차의 경우 2020년은 국제중재사건 69건 중 31건, 2021년에는 국제중재사건 50건 중 27건이 신속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sup>338)</sup> 국제중재의 연간 처리건수는 2020년 76건, 2021년 63건이며, 평균처리일은 2020년 400일, 2021년 401일이다.<sup>339)</sup>

▶▶ [표 3-4]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연간 처리건수 및 처리기간

구분	2021		2020		증감률	
	처리 건수	평균 처리일	처리 건수	평균 처리일	처리 건수	평균 처리일
국제	63	401	76	400	-17.1	0.3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의 주요 국가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sup>340)</sup> 국제중재 주요 접수 국가는 중국, 미국, 싱가포르 순으로 우리나라와의 지리적 인접성 및 무역 규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표 3-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사건 주요 국가별 현황

국가	건수	금액(단위: 백만원)
중국	11	28,751
미국	7	3,322
싱가포르	4	18,625
러시아	3	228
홍콩	3	1,842
베트남	3	1,623
말레이시아	3	544
일본	3	458
태국	3	1,239
영국	2	282
프랑스	1	14,814

337) Id.

338) Id.

339) Id.

340) Id.

한편, 법무부는 2016년부터 중재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2016년 이전부터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증감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0년의 국내 및 국제중재 접수사건 수는 아래와 같다(표11).<sup>341)</sup> 2021년 국내중재 접수사건수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6년 전후로 국제중재와 국내중재 사건 수에서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 보이지는 않는다.<sup>342)</sup>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 세계경제의 불활실성으로 분쟁이 증대하면서 국제상사중재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sup>343)</sup>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은 점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재산업은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시장원리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344)</sup>

▶▶ [표 3-6] 최근10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건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내 중재	275	261	295	339	319	307	331	373	336	450
국제 중재	39	77	87	74	62	78	62	70	69	50
총계	314	338	382	413	381	385	393	443	405	500

(2) 홍콩과 싱가포르와의 비교를 통한 현황 분석<sup>345)</sup>

중재산업진흥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던 싱가포르와 홍콩의 위 표와 비슷한 시기의 국제중재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sup>346)</sup>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적극적인 중재산업 육성정책을 펼친 결과 국제중재 유치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WTO의 2017

341) 황현영, 앞의 글, 5면; 대한상사중재원, 2020년 클레임통계, file:///C:/Users/EC%A1%B0%EC%88%98%ED%98%9C/Downloads/2020%EB%85%84%20%ED%81%B4%EB%A0%88%EC%9E%84%20%ED%86%B5%EA%B3%84.pdf (2022. 11. 5. 최종접속); 대한상사중재원, 2021년 클레임통계, file:///C:/Users/EC%A1%B0%EC%88%98%ED%98%9C/Downloads/2021%EB%85%84%20%ED%81%B4%EB%A0%88%EC%9E%84%20%ED%86%B5%EA%B3%84.pdf (2022. 11. 5. 최종접속).

342) 황현영, 앞의 글, 5면.

343) 김준기, 앞의 글, 312면. 위 글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19 유행시기에 국제상업회의소 사건 수는 8.9%, 런던국제중재법원 사건 수는 12.4% 증가하였다.

344) 윤진기, 앞의 글, 6면.

345) 싱가포르, 홍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참조.

346) 황현영, 앞의 글, 6면.



년 자료에 의하면 홍콩 교역액은 11,402억 달러이며 싱가포르는 7,300억 달러이며,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은 10,521억 달러이다.<sup>347)</sup> 국제중재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중재 이용자들이 국제 교역을 통하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바탕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및 법조인력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sup>348)</sup> 다만 전세계적으로 선호되는 중재지는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조사되는 것을 볼 때, 아직 국제상사중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sup>349)</sup>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홍콩	260	252	271	262	297	265
싱가포르	259	222	271	343	452	402
한국	77	87	74	62	78	62

국제상사중재에서 급부상하고 있으며, 현재 런던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중재지인 싱가포르<sup>350)</sup>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경우 2019년 479건, 2020년 1080건, 2021년 469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사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시기였던 2020년에 사건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1).<sup>351)</sup> 다만 2020년에는 인도 당사자 이용의 증가로 사건 수가 증가한 면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sup>352)</sup>

347) 황현영, 앞의 글, 6면.

348) 윤진기, 앞의 글, 8면; 황현영, 앞의 글, 6면. 다만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공영어가 영어라는 점,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에 속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미국과 영국 등의 기업이 아시아 기업과 분쟁이 있을 때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는데 큰 장점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등 법원의 사법절차에 대한 영문 통번역 서비스가 없으며, 대륙법계에 속하므로 일의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이에 대하여 대륙법계 국가의 장점을 살려서 유럽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기업들과 분쟁이 생긴 경우의 국제중재를 유치하는 의견이 있다. 황현영, 앞의 글, 11면.

349) 김정환 외, 앞의 글, 187면; 윤진기, 앞의 글, 7면; 이상하·하충룡, 앞의 글, 104면.

350) 김준기, 앞의 글, 314면.

351) SIAC, Annual Report 2021, <https://siac.org.sg/wp-content/uploads/2022/06/SIAC-AR2021-FinalFA.pdf> (2022. 11. 4. 최종접속).

352) 김준기, 앞의 글, 313면 참조.

▶▶ [그림 3-1] SIAC 접수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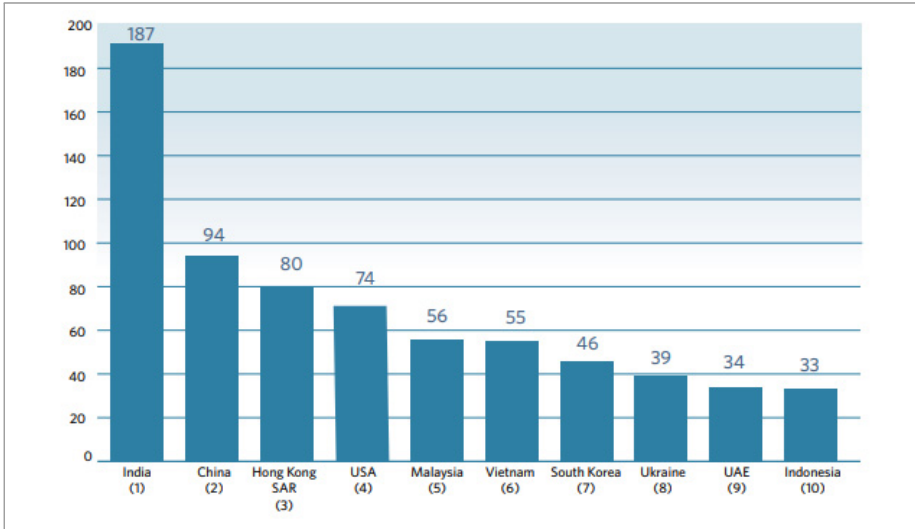
한편, 2021년 SIAC 중재의 외국 이용자 국적은 아래와 같다(그림 2).<sup>353)</sup> 주요 이용국에 해당하는 인도, 중국, 홍콩, 미국 등은 싱가포르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였거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리적·경제적 기반은 국제상사중재 유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sup>354)</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수, 무역규모 등을 고려하고 인접국인 중국, 일본 등의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중재시장을 뒷받침하는 지리적·경제적 기반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국제중재를 활성화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355)</sup>

353) SIAC, Annual Report 2021, <https://siac.org.sg/wp-content/uploads/2022/06/SIAC-AR2021-FinalFA.pdf> (2022. 11. 4. 최종접속).

354) 윤진기, 앞의 글, 8면.

355) 윤진기, 앞의 글, 8면.

» [그림 3-2] 2021년 SIAC 외국 이용자 국적



## 2.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협조 현황

### 가. 국제상사중재와 법원

중재에 관하여 중재법이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원의 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중재법 제6조),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sup>356)</sup> 그러나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지의 법원은 절차 전반에 관하여 중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협조·지원을 하게 되며, 중재의 결과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할 권한도 가지므로,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 법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sup>357)</sup> 우리나라는 종래 법원에 중재판정문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여(1999년 중재법 제32조 제4항) 법원의 중재

356) 김인호,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조화적 그리고 갈등적 상호작용”, 국제거래법연구 제28권 제2호, 2019, 71면;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중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원의 중재절차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5634 판결 (중재절차 위법확인 소는 중재법에 규정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등 참조.

357) 이호원, 앞의 글, 305면; 이정아,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법원의 개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질서’의 해석 및 취소된 중재판정의 승인을 중심으로 -”, 사법 통권 57호, 2021, 725면 참조.

판정문원본 보관의무를 규정하였으나, 2016년 개정을 통하여 보관의무를 삭제하고 선택사항으로 규정하였다(2016년 중재법 제32조 제4항). 한편, 우리 중재법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제정·변경시에 대법원장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법원의 협조사항으로 두고 있다(제41조). 이러한 중재절차에 대한 관여·협조 외에도 국제상사중재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유효하게 중재판정이 성립한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뉴욕중재협약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 중재법에서 규정하는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협조·관여가 필요한 부분을 국제상사중재의 절차 흐름에 따라 살펴본다.

## 나. 국제상사중재절차 외 또는 개시 전 단계에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

### (1)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법원에 제소한 경우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피고의 중재합의에 대한 항변이 있으면 그 소를 각하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이 방소항변에 관한 규정은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sup>358)</sup> 법원은 그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동항 단서). 중재합의 존재는 소극적 소의 요건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고 항변사항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 하며,<sup>359)</sup> 피고의 항변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시까지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본안에 대한 실질적인 변론을 하여 본안의 심리에 들어간 후에는 방소항변을 제출할 수 없다.<sup>360)</sup>

모델중재법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중재절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재절차로 이송하는 등 중재절차를 이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침묵한다.<sup>361)</sup> 우리 중재법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며 그 이행을 가능한 경우 당사자의 방소항변이 있으면 소를 각하

358) 이호원, 앞의 글, 306면.

359) 이호원, 앞의 글, 306면.

36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7083 판결.

361) 김용진, “중재와 법원 사이의 역할분담과 절차협력 관계 - 국제적 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다툼과 중재합의관철 방안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2017, 96면.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법원이 당사자에게 중재절차에 임하도록 명령하거나 소송을 금지하는 것은 현재 허용되지 않는다.<sup>362)</sup> 반대의 경우로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했거나 이행불능인 경우, 우리 중재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속 중인 중재절차를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sup>363)</sup> 한편, 당사자가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하거나, 반대로 중재합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에 이에 대한 우선적인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중재법 제17조 참조).<sup>364)</sup>

## (2) 법원의 보전처분

중재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은 중재합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중재법 제10조). 이는 중재법 제18조의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법원은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보전처분 신청을 허용한다. 이는 유효한 중재합의를 전제로 하여 중재합의 대상 분쟁이 중재판정이 있기 전에 현상변경을 방지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등을 피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sup>365)</sup>

## 다. 국제상사중재 절차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 (1) 중재인 선정·권한종료 및 기피

중재인 선정 및 기피신청은 중재절차 초반에 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부분으로, 중재인 선정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이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이 중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중재법 제12조 제3항), 중재인 선정에서 법원이 협조한다.

362) 김인호, 앞의 글, 76면; 김용진, 앞의 글, 100면 참조.

363)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364) 김인호, 앞의 글, 75면.

365)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또한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양쪽 당사자 또는 중재인들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중재인 선정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제3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없는 때에도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은 중재인을 선정하게 된다(동조 제4항).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법원 또는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의 중재인선정에 대한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동법 제5항). 중재인이 선정되었으나 권한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는 법원에 대하여 중재인 권한종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15조 제2항), 이에 대한 법원의 권한종료결정은 항고대상이 아니다(동조 제3항).<sup>366)</sup>

한편, 잠재적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살 만한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제13조 제2항), 당사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를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면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기피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기피신청 당사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동법 제3항),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동법 제4항). 법원은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중재판정부 결정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중재법은 중재절차의 신속성과 절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기피신청 기간과 불복방법을 제한하였다.<sup>367)</sup>

## (2)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한 법원의 결정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개시 후 자신의 판정권한 및 그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의 존재와 유효성 등에 대하여 심사할 자기권한심사권을 가진다(중재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판정권한 또는 중재합의 유효성에 대하여 선결문제로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

36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중재인 선정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중재심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인 선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

367) 김인호, 앞의 글, 77면.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동조 제6항).<sup>368)</sup> 이러한 중재인의 권한심사신청에 대한 법원의 권한심사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동조 제8항). 이는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조항이나, 모델중재법 제16조 제3항은 중재판정부가 그 관할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만 법원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우리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인정한 경우와 부정한 경우 모두에 대하여 법원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sup>369)</sup>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하여 중재판정으로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관할을 집중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중재판정부의 관할결정권한에 대한 당사자 합의의 무효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370)</sup>

### (3)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승인·집행

2016년 중재법은 2006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면서 예비적 명령 부분을 제외한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에 대한 규정들을 도입하였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대한 승인 및 집행 조항도 규정하여,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제18조의7 제1항).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정지·취소를 법원에 알려야 하고(동조 제2항), 법원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집행시 중재판정부가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않았거나 제3자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신청 당사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동조 제3항), 임시적 처분의 집행은 우리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을 준용한다(동조 제4항).

중재법이 규정한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중재법 제18조의8 제1항). 다만 우리 중재법은 모델중재법과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진 임시적 처분에 한하여만 집행을 허용한다(제2조 제1항).<sup>371)</sup> 한편, 2006년 모델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내용으로 중재

36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452 판결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관한 이의에 주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369) 김인호, 앞의 글, 78면.

370) 김용진, “중재와 법원 사이의 역할분담과 절차협력 관계 - 국제적 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다툼과 중재합의관철 방안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2017, 89면.

합의가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러한 소송을 금지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006년 모델중재법 제17조 제2항 b호). 2016년 개정 이전의 우리 중재법은 중재판정부의 소송금지명령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의 하나로 소송금지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sup>372)</sup>

#### (4) 증거조사

중재절차에 중재합의 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으며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시킬 수 없고, 제3자가 소지한 증거물 또는 자료의 제출도 강제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재판정부의 증거조사에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373)</sup> 2016년 중재법은 제28조에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중재판정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동조 제1항).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재소환에도 불응한 경우 7일 이하의 감치처분이 가능하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구인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 제312조). 한편 출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민사소송법 제318조).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형법 제152조~155조).<sup>374)</sup>

### 라. 국제상사중재 절차종료 이후 법원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 (1) 중재판정의 취소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으로 중재판정의 취소의 소를 규정한다(제36조 제1항). 중재판정 취소 사유는 모델중재법을 수용한 결과 뉴욕중재협약의

371) 이호원, 앞의 글, 321면.

372) 다만 중재판정부의 소송금지명령에 대하여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뒤에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갑유 외, 앞의 글, 263면.

373)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90면.

374)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193면.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동조 제2항).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당사자가 중재판정 정보를 받은 날 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정정·해석·추가한 경우 그 정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다만 우리 법원이 해당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조 제4항).

우리 법원은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심사에서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입법화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중재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중재판정 취소 사유 중 하나인 당사자 간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단순한 절차위반을 넘어서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sup>375)</sup> 또한 취소사유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 여부에 대하여도 단순히 중재인이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중재인의 법적 판단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중재판정으로 명하는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sup>376)</sup> 국제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소사유가 있다고 엄격히 해석하여, 중재절차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제한적으로 중재절차에 관여한다.<sup>377)</sup>

##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우리 중재법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규정하면서 적극적 요건으로서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를 구별하고 있지 않고(제37조 참조), 승인·집행의 소극적 요건에 관하여 국내 중재판정과 외국중재판정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제38, 39조 참조). 나아가 외국중재판정의 경우 뉴욕중재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집행 요건 및 집행 절차를 나누어 규정한다(제37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참조). 국제상사중재는 국제성에 따른 분류이며 중재판정이 국내 판정인지 외국 판정인지 여부는 중재지에 따른 분류이므로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 외국 중재판정뿐만 아니라 국내 중재판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중재판정이 승인·집행은 법원의

37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0387 판결.

376)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73918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0387 판결.

377) 김인호, 앞의 글, 81면.

집행결정으로 허가하게 되고(제37조 제2항), 뉴욕중재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 및 절차(집행판결)의 방법에 의하게 된다(제39조 제2항).

한편, 우리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뉴욕중재협약을 해석하면서 중재제도의 절차적 특징을 고려하여, 승인·집행 거부사유의 하나인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당사자 합의에 위반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한 합의사항의 위반을 넘어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sup>378)</sup> 승인·집행거부사유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또한 우리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서 집행국 법원의 재량이 부여되는 뉴욕중재협약 제5조 제2항 (a)호의 중재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대하여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뉴욕중재협약 제5조 제2항 (a)호의 중재간오서를 해석하면서, 분쟁의 중재가능성은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기준으로 특정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면서 분쟁에 대한 특정 구제수단이 단순히 집행국 특정 법원의 전속적 토지관하권에 속한다는 사실 만으로 해당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sup>379)</sup> 뉴욕중재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조항에 대하여도, 이 조항의 취지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하면서, 이 조항에 대하여는 국내적인 사정 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 실정법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사유가 되지 않고, 해당 중재판정을 승인하면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380)</sup>

378)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37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38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49931 판결 참조.

#### 마. 우리나라 법원의 협조태도

우리 법원이 국제상사중재에서 가장 많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구하는 경우이며, 이에 따라 쟁점은 뉴욕중재협약에 규정된 승인·집행거부사유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sup>381)</sup> 우리 법원은 중재합의의 효력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중재조항 독립성을 인정하고, 중재판정 이유기재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등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382)</sup>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서 집행국 법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가장 큰 승인·집행거부 사유는 공공질서 위반인바,<sup>383)</sup> 우리 법원은 공공질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국제적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384)</sup>

위와 같은 우리 법원의 태도 및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일반적 관여 금지 조항을 둔 중재법의 입법태도로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법원의 개입정도에 대하여 최소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sup>385)</sup> 국제중재는 국제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하므로 각 법체계의 차이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재절차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러한 최소적 접근법은 해당 국가에 대한 중재지로서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386)</sup> 다만 실제로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단심제인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이 중재절차 진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관여 기준 및 협조의 방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제상사중재절차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재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sup>387)</sup>

381) 이호원, 앞의 글, 305면.

382)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399면.

383) 이정아, 앞의 글, 732면.

384)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400면.

385) 이정아, 앞의 글, 729면.

386) 이정아, 앞의 글, 731-732면.

387) 김정환 외, 앞의 글, 217면.

## 제4절 | 국제중재의 발전과제

### 1. 국제중재를 위한 물적 여건의 마련

우리나라를 선호되는 중재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재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이 중재에 호의적이고, 우리 중재인들이 국제적 명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지로 적합한 환경 및 시설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sup>388)</sup>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상사중재의 필요에 부응하여 2018년 국제중재에 적합한 설비를 갖춘 국제중재 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있다. 국제중재센터는 외적으로 규모와 시설 면에서 물적 설비를 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 시설이 한 건물의 여러 개 층으로 분산되어 관리가 어렵고 당사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sup>389)</sup> 이에 이를 한 층이나 인접층으로 재배치하는 등<sup>390)</sup>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비의 운영,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규칙 등은 중재기관이 담당하고, 국제중재는 전문성을 갖추고 국제적 명성이 있는 중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중재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무역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sup>391)</sup>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 이후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였고 국제적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392)</sup>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어에 능하고 국제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 등 조직 혁신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sup>393)</sup> 또한 중재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정부의 지원 외에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중재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 등이 존재할 수 있도록 중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394)</sup>

388)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390면.

389) 황현영, 앞의 글, 9면.

390) 황현영, 앞의 글, 10면.

391) 목영준·최승재, 앞의 글, 394면; 석광현 2012, 앞의 글, 576면;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2017, 48면; 한종규, 앞의 글, 126면.

392) 한종규, 앞의 글, 126면.

393) 한종규, 앞의 글, 126면.

394) 윤진기, 앞의 글, 10면.

## 2.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대한상사중재원에 순수 국제중재인으로 등록된 수는 497명으로,<sup>395)</sup> 이는 홍콩의 749명, 싱가포르의 554명과 비교하여 적은 숫자이다.<sup>396)</sup> 또한 중재인 인력의 양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운영하는 국제중재 전문가 과정이 있을 뿐, 대학에서의 학위과정 등 중재 및 분쟁해결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적다.<sup>397)</sup> 이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대학 정규과정 및 중재관련 민간기구에서 다양한 실무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sup>398)</sup> 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재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중재절차의 질은 우수하고 전문적인 중재인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중재인을 모집하고 일반대학원에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수한 중재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sup>399)</sup>

## 3. 중재법 및 중재규칙의 지속적인 개정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질서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사중재절차를 이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법률교류를 하면서 최신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400)</sup> 현재 우리 중재법은 2006년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합의의 서면성을 완화하여 온라인상의 중재에서 문제가 되는 서면성 요건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판정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 및 그 승인·집행의 요건 및 방법도 규정하는 등 국제기준의 수준에 부합하는 중재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중재의 고비용 및 절차지연 문제에 대응하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은 긴급중재인에 의한 긴급처분을 두고 있으며, 신속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제상사중재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39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황,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person01.jsp](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person01.jsp) (2022. 11. 7. 최종접속).

396) 황현영, 앞의 글, 7-8면.

397) 황현영, 앞의 글, 9면.

398) 황현영, 앞의 글, 8면.

399) 황현영, 앞의 글, 10면; 이상하·하충룡, “아시아 중재 선진국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2019, 104면.

400) 한종규, 앞의 글, 127면.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중재법과 중재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401)</sup>

중재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진행을 위하여, UNCITRAL은 2021년 신속중재규칙(Expedited Arbitration Rules)을 제정한바 있다.<sup>402)</sup>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중재의 지연과 비용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속중재절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속중재절차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에는 동일하게 구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므로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속중재의 적용범위, 심리기간, 중재판정부 재량권 등에 대하여 국제중재실무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sup>403)</sup> 국제상사중재가 소송제도와 비교하여 가지는 특징 중 하나인 비공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 등 중재와 관련된 법원의 절차를 비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sup>404)</sup> 한편, 홍콩과 싱가포르가 영미법계 이점을 살려서 미국과 영국 등이 아시아 국가의 기업과 분쟁이 있을 때 중재사건을 유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중국과 일본 등 인접한 대륙법계 국가들과 유럽 소재 기업들과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sup>405)</sup> 이를 위하여는 중재규칙 마련에 있어서 대륙법계 국가들에게 익숙한 중재규칙의 마련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 4. 우리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역할 강화

중재는 소송을 대체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진행되는 절차이나, 그 성격상 법원의 협조를 예정하고 있다.<sup>406)</sup>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법원의 적절한 감독과 지원이 필수적이다.<sup>407)</sup>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를 선택할 때에도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당사자자치를 존중하고 중재판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중재친

401) 윤진기, 앞의 글, 17면.

402) UNCITRAL, Expedited Arbitration Rules (2021), <https://uncitral.un.org/en/content/expedited-arbitration-rules> (2022. 11. 8. 최종접속).

403) 김병태, “신속한 중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시사점 -UNCITRAL의 신속중재규정(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35면; 이춘원, “UNCITRAL 신속중재의 도입과 전망”, 중재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2 참조.

404) 정선주, 앞의 글, 249면.

405) 황현영, 앞의 글, 11면.

406) 김정환 외, 앞의 글, 217면.

407) 석광현 2012, 위의 글, 577면.

화적인 중재지 법원은 중요한 요소이다.<sup>408)</sup> 아직 국제상사중재지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국 당사자들에게 우리 법원의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하다.<sup>409)</sup> 법원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법관이 국제중재사건의 처리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410)</sup>

한편, 중재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중재관련 사건을 어느 법원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sup>411)</sup> 이를 위하여 중재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신설, 외국중재판정에 관하여 관할을 특정 법원으로 집중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sup>412)</sup>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일본의 중재법 개정(仲裁法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sup>413)</sup>에 중재사건의 법원 집중화에 대한 조항이 있어서 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중재법 개정안에 의하면, 중재지가 일본인 경우 도쿄지방법원 또는 오사카지방법원을 경합관할로 인정한다고 규정하여<sup>414)</sup>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에 중재사건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도쿄지방법원과 오사카지방법원의 국제중재 전문성을 향상하고 판단의 안정성 및 통일화를 도모하여 국제분쟁 해결에 적합한 중재지로서의 평가를 얻기 위한 것이다.<sup>415)</sup>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우리 법원의 중재친화적 실무처리를 국제상사중재 이용자들에게 알려져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sup>416)</sup> 이를 위하여 대법원 산하의 국제업무 담당기관의 확대방안<sup>417)</sup>, 우리 법제도와 중재 관련 판례의 영문 번역본 소개를 위한 영문 웹페이지 구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418)</sup>

408) 김정환 외, 앞의 글, 217-218면.

409) 김정환 외, 앞의 글, 218면.

410) 김정환 외, 앞의 글, 219면.

411) 석광현 2012, 앞의 글, 577면; 김정환 외, 앞의 글, 220면.

412) 석광현 2012, 위의 글, 577면; 김정환 외, 앞의 글, 220면.

413) 法務省, 法制審議會第192回會議配布資料, 仲裁法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 <https://www.moj.go.jp/content/001358284.pdf> (2022. 10. 11. 최종접속).

414) 要綱案 第3, 1 仲裁関係事件手続における管轄

415) ゾンデルホフ&アインゼル法律特許事務所, 法務: 仲裁法改正に向けた動き ~ 仲裁法改正要綱の答申 <https://se1910.com/ja/%E6%B3%95%E5%8B%99%EF%BC%9A%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3%81%AB%E5%90%91%E3%81%91%E3%81%9F%E5%8B%95%E3%81%8D%EF%BD%9E%E4%BB%B2%E8%A3%81%E6%B3%95%E6%94%B9%E6%AD%A3%E8%A6%81%E7%B6%B1/> (2022. 10. 12. 최종접속).

416) 김정환 외, 앞의 글, 226면.

417) 김정환 외, 앞의 글, 228면.

## 5. 국제중재의 중재인 및 대리인 자격의 완화

우리 변호사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 109조), 다만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국제중재사건의 대리를 할 수 있다(제2조 제7호; 제24조 제3호)고 규정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가 중재대리를 할 수 있는지,<sup>419)</sup> 변호사 아닌 사람이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sup>420)</sup>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우리의 현행 변호사법 규정은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중재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으로,<sup>421)</sup> 외국 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변호사에게도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sup>422)</sup>

우리의 변호사법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법률개정을 통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였다. 일본 변호사법(弁護士法, 昭和24年 法律第205号) 제72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얻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사무 등을 금지하고 동법 제77조 제3항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sup>423)</sup> 다만,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平成十六年法律第百五十一号, 이하 'ADR촉진법'이라 한다) 제28조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인증받은 분쟁해결기관에서 중재나 조정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sup>424)</sup> 또한 일본 법무성은 일본의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sup>425)</sup>에 대한 개정을 시도하였다.<sup>426)</sup> 개정내용은 국제중재·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일본 국내에서 활동하는

418) 김정환 외, 앞의 글, 230면.

419) 석광현 2012, 앞의 글, 578면.

420) 윤진기, 앞의 글, 11면; 정선주, 앞의 글, 224-225면 참조.

421) 윤진기, 앞의 글, 10-11면.

422) 한종규, 앞의 글, 126-27면.

423) E-GOV 法令検索, 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24AC1000000205>

424) E-GOV 法令検索,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平成十六年法律第百五十一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6AC0000000151\\_20200401\\_429AC0000000045](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16AC0000000151_20200401_429AC0000000045)

425) E-GOV 法令検索,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二年法律第三十三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61AC00000000066\\_20200829\\_502AC00000000033](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61AC00000000066_20200829_502AC00000000033) (2022. 11. 4. 최종접속).

426) 法務省, 国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政府の取組について, [https://www.moj.go.jp/kokusai/kokusai03\\_00003.html](https://www.moj.go.jp/kokusai/kokusai03_00003.html) (2022. 11. 4. 최종접속).



외국 변호사들이 국제중재·조정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개정안은 2020. 5. 22.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동년 5. 29. 공포, 동년 8. 29. 시행되었다.<sup>427)</sup> 개정된 외국변호사법<sup>428)</sup>은 일본 법무대신의 승인 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명부등록을 받은 외국법률사무변호사의 자격을 가지는 자(제5조의3), 또는 그 외의 외국변호사로 외국에서 그 자격을 기초로 하여 법률사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당해 국제중재사건 또는 국제조정사건을 그 외국에서 수입한 자(제58조의 2)의 경우 국제중재사건 또는 국제조정사건의 절차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일본을 중재지로 하는 국제중재의 경우 외국 변호사는 중재절차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427) 法務省,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令和2年法律第33号)について, [https://www.moj.go.jp/housei/gaiben/housei07\\_00002.html](https://www.moj.go.jp/housei/gaiben/housei07_00002.html) (2022. 11. 4. 최종접속).

428) E-GOV 法令検索,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昭和六十一年法律第六十六号),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61AC0000000066\\_20200829\\_502AC0000000033](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61AC0000000066_20200829_502AC0000000033)



## 제 4 장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조정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김 세 준



## 제4장

#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조정 체계 발전과 국내 현황 및 발전과제

### 제1절 | 2018년 UNCITRAL 조정모델법

#### 1. 제정배경

21세기에 들어오며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무역이 증가하고 상업활동이 활성화됨으로 인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졌다. UNCITRAL은 각 국가들이 분쟁해결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고, 국제 무역거래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58년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이 마련되었고, 1985년에는 중재조정모델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중재와 함께 효율적인 ADR 시스템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던 조정에 관해서도 UNCITRAL은 2002년에 조정모델법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sup>429)</sup>

UNCITRAL은 2000년 제32차 회의에서 국제상사중재의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였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상사중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법제도 마련을 UNCITRAL 워킹그룹의 주요 활동업무로 선정하게 되었다.<sup>430)</sup>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제35차 회의에서 조정모델법의 초안을 공개하였다.<sup>431)</sup> 이후

429)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03-90953\\_ebook.pdf](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03-90953_ebook.pdf)(2022. 11. 08. 최종접속).

430) UNCITR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on the work of its thirty-second session(Vienna, 20 - 31 March 2000), para. 85.

431) UNCITRAL, Draft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조정모델법 초안은 각 회원국 및 옵저버들에게 회람되며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2년 6월 24일에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미국(12개주), 캐나다(2개주), 프랑스 등 32개의 국가에서 2002년 조정모델법을 수용하여 조정에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하였다.<sup>432)</sup>

조정모델법은 이미 조정이 당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며, 각 국가들의 조정절차에 국제적인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각 국가들의 법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증거조사, 비공개성, 조정의 효력 등을 비롯한 각종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조정을 이용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조정의 이용률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정모델법은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절차규칙에 통일성을 제공함은 물론, 조정과정에서 절차의 하자문제를 치유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433)</sup>

## 2. 성립과정

2002년 조정모델법이 채택된 이후, EU는 2008년에 민·상사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조정지침(Cross-Border Mediation Directive)을 채택하였다.<sup>434)</sup> 그리고 EU 회원국들은 동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순차적으로 완료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도 조정모델법을 수용하여 기존의 조정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제정작업을 수행하였다.<sup>435)</sup> 이처럼 모델제정법 채택 이후에는 유럽 및 북미지역에서 조정이

---

Commercial Conciliation],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hirty-fifth session, Vienna, 19 - 30 November 2001.

432)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conciliation/status\(2022.11.08.최종접속\)](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conciliation/status(2022.11.08.최종접속)).

433) 오현석/김성룡,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조정모델법 개정 동향”, 무역학회지 제 45권 제1호, 2020, 36~37면.

434) 2008년 5월 21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민사 및 상사조정지침의 특정 측면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EU 국제조정지침의 목적은 조정의 사용을 장려하고 조정과 사법절차의 균형적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대안적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EU 국제조정지침은 강행규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EU 역내의 국제 민사 및 상사문제(cross-border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 적용된다. 이상, 오현석/김성룡,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조정모델법 개정 동향”, 무역학회지 제45권 제1호, 2020, 37~38면.

435) 오현석/김성룡,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조정모델법 개정 동향”, 무역학회지 제 45권 제1호, 2020, 38면.

국제상사분쟁에 효과적인 해결방식으로서 주목받고 있음은 물론,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고 그 접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도 모색되고 있었다. 그러나 UNCITRAL의 예상과 달리 조정은 중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고, 그 결과 앞서 언급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조정제도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UNCITRAL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2018년에 들어 조정모델법의 개정작업을 시작하였고, 조정모델법의 명칭도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CITRAL 조정모델법 2018(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로 변경하였다.<sup>436)</sup> UNCITRAL은 2018년 6월 25일 제1070차 회의에서 조정모델법을 채택하였다.<sup>437)</sup>

2018년 조정모델법은 적용범위와 해석 기준, 조정절차 및 비밀성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2002년 조정모델법에 새롭게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종래 조정모델법과 비교하여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의 용어를 ‘conciliation’에서 ‘mediation’으로 변경한 것이다.<sup>438)</sup> 개정된 조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sup>439)</sup>

» [표 4-1] 2002년 조정모델법과 2018년 조정모델법의 조문리스트 비교

Article	Model Law(2002)	Model Law(2018)
1	Scope of Application and Defini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Definitions
2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3	Variation by Agreement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ection and Definitions
4	Commencement of Conciliation Proceedings	Variation by Agreement
5	Number and Appointment of Conciliators	Commencement of Mediation Proceedings

436) 종래 2002년의 조정모델법 명칭이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인 것과 비교.

437) 2018년 UNCITRAL 보고서(A/73/17),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fifty-first session(New York, 25 June-13 July 2018, paras. 49, 68.

438) 2002년 조정모델법에서 UNCITRAL은 ‘conciliation’과 ‘mediation’의 용어가 혼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conciliation’을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8년에 조정모델법을 개정하면서 UNCITRAL은 용어의 실질적 의미 및 이용현실에 맞추기 위한 노력 및 용어의 변경이 조정모델법의 홍보를 원활하게 하고 그 가시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로써 ‘mediation’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439) 오현석/김성룡,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조정모델법 개정 동향”, 무역학회지 제 45권 제1호, 2020, 37면.

Article	Model Law(2002)	Model Law(2018)
6	Conduct of Conciliation	Number and Appointment of Mediators
7	Communication Between Conciliator and Parties	Conduct of Mediation
8	Disclosur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Mediator and Parties
9	Confidentiality	Disclosure of Information
10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Other Proceedings	Confidentiality
11	Termination of Conciliation Proceedings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Other Proceedings
12	Conciliator Acting As Arbitrator	Termination of Mediation Proceedings
13	Resort to Arbitral or Judicial Proceedings	Mediator acting as Arbitrator
14	Enforceability of Settlement Agreement	Resort to Arbitral or Judicial Proceedings
15		Binding and Enforceable Nature of Settlement Agreements
16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ection and Definitions
17		General Principles
18		Requirements for Reliance on Settlement Agreements
19		Grounds for Refusing to Grant Relief
20		Parallel Applications or Claims

싱가포르조정협약과 함께 조정모델법의 준비가 동시에 진행된 이유는 상이한 관할권에서 조정에 관한 서로 다른 경험의 수준을 수용하고 각 국가에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의 국경 간 집행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양자는 그 내용상 큰 차이가 없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sup>440)</sup>

▶▶▶ [표 4-2]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의 상응 규정

내용	싱가포르조정협약	조정모델법
정의	제2조	제16조
일반원칙	제3조	제17조
화해합의의 원용 요건	제4조	제18조
구제부여의 거부 사유	제5조	제19조
병행 신청 또는 청구	제6조	제20조

440) UNCITRAL, Report of Working Group II(Dispute Settlement) on the work of its sixty-sixth session(New York, 6-10 February 2017), para. 142.



### 3. 주요내용

#### 가. 조정모델법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 (1) 국제상사조정(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조정모델법은 ‘국제상사조정’에 적용되는데,<sup>441)</sup>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국제적’ 조정으로 정한다.<sup>442)</sup>

첫째, 조정의 합의 당사자들이 해당 합의를 체결할 당시에 서로 다른 국가들에 그들의 영업소들을 가지는 경우이다.

둘째, 당사자들의 영업소들이 있는 국가가 ① 상사관계의 의무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 또는 ② 분쟁의 주제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와 다른 경우이다.

이때 일방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들을 가지는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영업소를 조정의 합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장소로 한다. 또한 일방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상거소가 참조되어야 한다.<sup>443)</sup>

나아가 당사자들이 조정이 국제적이라고 합의하거나 조정모델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상사조정의 적용 가능성에 합의하는 상사조정 역시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당사자들은 조정모델법상 국제상사조정의 적용 가능성의 배제 역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sup>444)</sup>

그러나 재판 또는 중재 절차 중에 판사나 중재인이 화해를 촉진하고자 시도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모델법의 국제상사조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쟁의 발생 전이나 후에 이루어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법으로 확정된 의무, 또는 법원이나 중재판정부, 소관 정부기관의 지시나 제의는 조정이 수행되는 근거와 관계없이 적용된다.<sup>445)</sup>

441) 조정모델법 제1조 제1항 전단.

442) 조정모델법 제3조 제2항.

443) 조정모델법 제3조 제3항.

444) 조정모델법 제3조 제4항, 제5항.

445) 조정모델법 제3조 제7항, 제6항.

## (2) 국제화해합의(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조정모델법은 '국제화해합의'에 적용된다.<sup>446)</sup> 우선 '화해합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에 의하고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종결한 국제합의를 의미한다.<sup>447)</sup> 다만 개인, 가족 또는 가사 목적으로 당사자들 중 하나(소비자)가 참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결된 화해합의, 또는 가족법, 상속법이나 노동법에 관련된 화해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up>448)</sup> 나아가 법원이 승인하였거나 법원의 절차 중에 종결된 화해합의 및 해당 법원의 국가에서 판결로서 집행 가능한 화해합의, 그리고 기록되었고 중재판정으로서 집행 가능한 화해합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sup>449)</sup>

화해합의는 '국제적'이어야 하는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제적'인 것으로 본다.<sup>450)</sup>

첫째, 화해합의에 대한 적어도 두 당사자들이 그들의 영업소들을 다른 국가들에서 가지는 경우이다.

둘째, 화해합의에 대한 당사자들의 영업소들이 있는 국가가, 화해합의에 따른 의무의 상당한 부분이 이행되어야 하는 국가, 또는 화해합의의 주제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와 다른 경우이다.

다만 일방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들을 가지는 경우, 기준이 되는 영업소는 당사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을 고려할 때 화해합의로 해결된 분쟁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화해합의의 종결 당시 당사자들이 그러한 것으로 고려한 장소가 된다. 또한 일방 당사자에게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상거소가 참조되어야 한다.<sup>451)</sup>

'서면'의 의미에 대해서는, 화해합의의 내용이 어느 형식으로도 기록되면 동 화해합의는 '서면'에 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화해합의의 서면 요건은 전자통신에 포함된 정보가 추후 참조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경우 전자통신에 의해서도 충족된다.<sup>452)</sup>

446) 조정모델법 제1조 제1항 후단.

447) 조정모델법 제16조 제1항.

448) 조정모델법 제16조 제2항.

449) 조정모델법 제16조 제3항.

450) 조정모델법 제16조 제4항.

451) 조정모델법 제16조 제5항.

### (3) 조정 및 조정인

‘조정’은, ‘mediation’, ‘conciliation’, 기타 유사한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불리는 것과 상관없이, 계약 또는 다른 법적 관계에 관련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그들의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도록 시도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제3자 또는 제3자들(조정인)에게 그들을 도와주도록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다만 조정인은 당사자들에게 분쟁의 해결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sup>453)</sup> 이때 ‘조정인’은 경우에 따라 단독 조정인 또는 둘 이상의 조정인들을 의미한다.<sup>454)</sup>

#### 나. 조정의 개시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관한 조정절차는 그 분쟁의 당사자들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것을 합의한 날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타방 당사자에게 조정을 요청한 일방 당사자가 그 요청이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요청에서 명시된 다른 기간 내에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을 받지 못한 경우, 요청을 발송한 당사자는 이를 조정 요청의 거부로 간주할 수 있다.<sup>455)</sup>

#### 다. 조정인의 지정

조정인은 원칙적으로 1인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둘 이상의 조정인을 지정하는 것에 합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sup>456)</sup>

분쟁당사자들은 조정인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기관이나 개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즉, 일방 당사자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조정인으로서 행동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당사자들은 기관 또는 개인이 한명 이상의 조정인을 직접 지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sup>457)</sup>

조정인을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기관이나 개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정인의

452) 조정모델법 제16조 제6항.

453) 조정모델법 제1조 제3항.

454) 조정모델법 제1조 제2항.

455) 조정모델법 제5조.

456) 조정모델법 제6조 제1항.

457) 조정모델법 제6조 제3항.

지정의 확보와 같은 고려사항을 참작하여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국적이 아닌 다른 국적의 조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sup>458)</sup>

조정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다. 즉, 조정인이 될 자는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아가 당사자들에게 이미 그러한 상황이 고지되지 않았다면, 조정인은 자신의 지정 당시로부터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내내 위의 모든 상황을 지체 없이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sup>459)</sup>

## 라. 조정절차의 수행

### (1) 조정의 수행방식

당사자들은 조정이 수행되어야 하는 방식에 관하여 일련의 규칙을 참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방식에 관한 합의가 실패하는 경우, 조정인은 사건의 상황, 당사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바람, 또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의 필요를 고려하여 자신이 적절하다고 고려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sup>460)</sup>

절차의 수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인은 당사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sup>461)</sup> 또한 조정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조정인은 분쟁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sup>462)</sup> 조정인은 당사자들을 함께 또는 각각 별도로 만나거나 의사소통할 수 있다.<sup>463)</sup>

### (2) 분쟁에 관한 정보의 공개

조정인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분쟁에 관한 정보를 받는 경우에 조정인은 그 정보의 요지를 조정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

458) 조정모델법 제6조 제4항.

459) 조정모델법 제6조 제5항.

460) 조정모델법 제7조 제1항, 제2항.

461) 조정모델법 제7조 제3항.

462) 조정모델법 제7조 제4항.

463) 조정모델법 제8조.

당사자가 조정인에게 비밀 유지의 특정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정보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sup>464)</sup>

### (3) 비밀유지

법에 따라 또는 화해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의 목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sup>465)</sup>

### (4) 다른 분쟁의 중재금지

조정절차의 수행에 관하여 조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정 외에 동일한 원인에 기한 다른 분쟁의 중재인이 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의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분쟁에 관하여, 또는 동일한 계약이나 법적 관계 또는 관련된 모든 계약이나 법적 관계에서 발생한 다른 분쟁에 관하여 조정인은 중재인으로서 행동해서는 아니 된다.<sup>466)</sup>

## 마. 조정의 종료

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각각 종료된다.<sup>467)</sup>

첫째, 당사자들의 화해합의의 종결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합의일에 절차가 종료된다.

둘째,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조정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조정인이 선언함으로써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선언일에 절차가 종료된다.

셋째,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로 당사자들이 조정인에게 선언함에 따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선언일에 절차가 종료된다.

넷째,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들), 또는 지정된 경우, 조정인에게 선언하여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선언일에 절차가 종료한다.

464) 조정모델법 제9조.

465) 조정모델법 제10조.

466) 조정모델법 제13조.

467) 조정모델법 제12조.

### 바. 다른 절차에 대한 영향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는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조정모델법은 조정이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하였고 특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까지 현존의 또는 장래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우에,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그 약속의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해당 약속의 내용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속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합의의 포기나 조정절차의 종료로 자동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up>468)</sup>

### 사. 조정의 효력

당사자들이 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합의를 종결하는 경우, 그 화해합의는 구속력이 있고 집행가능하다.<sup>469)</sup>

### 아. 화해합의의 원용 요건

조정에 따른 화해합의를 원용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소관 당국에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첫째, 당사자들이 서명한 화해합의. 둘째, 화해합의에 대한 조정인의 서명, 조정이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정인이 서명한 문서, 조정을 관리한 기관의 증명, 또는 앞의 것들이 없는 경우 소관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등 화해합의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sup>470)</sup>

위 서명에 관해서는 조정모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sup>471)</sup>

468) 조정모델법 제14조.

469) 조정모델법 제15조.

470) 조정모델법 제18조 제1항.

471) 조정모델법 제18조 제2항.

### 자. 구제 부여의 거부 사유

구제 부여를 청구받은 소관 당국은 그 구제 부여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는 구제 청구의 대상인 당사자가 소관 당국에게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그 당사자의 요청으로 가능하다.<sup>472)</sup>

첫째, 화해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이다.

둘째, 원용되도록 시도된 화해합의가, 당사자들이 유효하게 준수한 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으면 소관 당국이 적용 가능하다고 간주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이용할 수 없거나, 이행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혹은 화해합의의 조건에 따라 구속력이 없거나 중구적이지 않은 경우이거나, 또는 추후 수정된 경우이다.

셋째, 화해합의에서의 의무가 이행된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이다.

넷째, 구제 부여가 화해합의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위반이 없었으면 동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서 조정인 또는 조정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조정인이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이다.

여섯째, 조정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제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정인이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한 비공개가 일방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이나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 그러한 비공개로 동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또한, 소관 당국은 구제 부여가 본 국가의 공공정책에 반한다는 점, 또는 분쟁의 주제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조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한 경우에도 구제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sup>473)</sup>

472) 조정모델법 제19조 제1항.

473) 조정모델법 제19조 제2항.

## 제2절 | 2019년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싱가포르조정협약")

### 1. 제정배경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은 UNCITRAL에서 협상을 통하여 제시된 조정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조약이다. UN 총회는 2002년 11월 19일 결의 57/18<sup>474)</sup>의 전문에서 1980년 12월 4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UNCITRAL 컨실리에이션규칙(Conciliation Rules)과 함께 2002년 조정모델법이 ‘국제상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의 조화된 법적 골격의 수립’에 중요하게 기여한다는 확신을 표시하였다.<sup>475)</sup> 국제상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의 가치를 인정함에 따라, 싱가포르조정협약은 1958년 뉴욕 협약이 중재 판정을 제공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의 ‘화해합의(settlement agreement)’를 승인하고 집행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조정에 관한 현존하는 법적 골격을 보완하고 조화로운 국제경제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476)</sup>

### 2. 성립과정

UNCITRAL은 국제상사거래의 질서 확립 및 국제상거래법의 점진적인 통일화를 목적으로 총 6개의 작업그룹(Working Group)을 두고 정책수립 및 법제화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중에서 Working Group II(이하 ‘작업그룹’)는 국제중재 및 조정 분야에 관해 연구 활동, 토론, 법제화 등의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2회에 걸쳐 미국 뉴욕(2월)과 오스트리아 비엔나(10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매년 6월 뉴욕에서

474) United Nations,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RES/57/18., 24. Jan. 2003.

475)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3면.

476) 2018년 UNCITRAL 보고서(A/73/17),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fifty-first session(New York, 25 June-13 July 2018, para. 49.



개최되는 UNCITRAL 본회의(Commission)는 작업그룹의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작업그룹들이 그간 진행해온 업무를 보고받고, 규범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향후의 작업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제47차(2014년)부터 제50차(2017년) UNCITRAL 본회의에서는 '화해합의의 집행'(Enforcement of settlement agreements)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단계적으로 작업그룹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63차(2015년)부터 제67차(2017년)에 걸친 작업그룹의 회의에서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집행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sup>477)</sup>

UNCITRAL은 특히 2015년 제48차 회의에서 작업그룹에게 관련 쟁점을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UN협약의 준비, 모델 조항 또는 지침을 포함한 분쟁해결 협약의 시행문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다양한 접근법 및 고려사항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작업그룹의 위임 사항이 광범위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sup>478)</sup> 이에 따라 작업그룹은 제63차 회의에서 그 주제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2016년 제49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63차 및 제64차 회의의 작업에 관한 작업그룹의 보고를 가졌다. 논의 후 위원회는 조정으로 인한 국제상사분쟁해결의 협약을 다루는 문서 준비 작업을 작업그룹에 위탁하고, 작업그룹이 그에 대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sup>479)</sup>

2017년 제50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65차 및 제66차 회의의 작업에 관한 작업그룹의 보고를 가졌다. 위원회는 제66차 회의에서 작업그룹이 도출한 합의에 주목하였으며, 이 합의안은 다섯 가지 핵심 이슈를 일괄 처리하였으며 작업그룹이 그러한 합의안에 기초하여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작업그룹의 진전에 대한 만족을 표명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완료하도록 요청하였다.<sup>480)</sup>

제67차 회의에서 작업그룹은 사무국에 작업그룹의 심의와 결정을 반영하여 국제상

477) 한국조정학회, 국제상사조정 및 합의의 집행 관련 협약과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8, 66면.

478)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eventieth Session, Supplement No. 17 (A/70/17), paras. 135~142.

479)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even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17 (A/71/17), paras. 162~165.

480)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eventy-second Session, Supplement No. 17 (A/72/17), paras. 236~239.

사소정에 관한 조정모델법에 대한 수정안 초안과 협약 초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sup>481)</sup> 제68차 회의 역시 ‘조정합의의 집행 및 규범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문서초안(Draft Instruments)에 관하여 협약(Convention)과 모델법(Model Law)의 두 가지 형태의 규범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의 규범안에 대한 제목, 조문의 구성, 문구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sup>482)</sup> 특히 해당 회의에서는 사무국에서 이전 회의까지 확정되지 않았던 규범초안 내의 개별조항들과 규범안 관련 기타 쟁점들을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UN총회와 UNCITRAL 본회의에 제출할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및 모델법 초안(Draft Model Law)을 확정하고자 했다. 즉 이전 회의까지 이미 확정된 규범초안은 제외하고, 나머지 규범들 중에서 쟁점이 되는 규정의 최종 문구 등의 정비가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또한 협약과 모델법의 두 규범 간에 정합성을 피하고, 영어 외 다른 UN 공식 언어로 위 규범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규정의 언어적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 및 필수적 기초 작업 역시 논의하였다.<sup>483)</sup>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협약 본문은 2018년 6월 25일 UNCITRAL에서 최종 승인되었으며, 2018년 12월 20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그 후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한국 등 46개 국가의 서명을 거쳤고, 싱가포르, 피지, 카타르의 비준으로써 2020년 9월 12일 발효하였다.<sup>484)</sup>

### 3. 주요내용

#### 가. 기본 취지

싱가포르조정협약에서는 ‘조정(mediation)’을 “이용된 표현이나 절차가 수행되는 근거와 무관하게, 분쟁당사자들에게 해결을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는 제3자 또는 제3자들(조정인)의 지원을 받아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의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

481) UNCITRAL, Report of Working Group II (Dispute Settlement) on the work of its sixty-seventh session (Vienna, 2-6 October 2017).

482) UNCITRAL, Report of Working Group II (Dispute Settlement) on the work of its sixty-eighth session (New York, 5-9 February 2018).

483) 한국조정학회, 국제상사조정 및 합의의 집행 관련 협약과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8, 67면.

484) 세부적인 서명 및 비준 현황은 이하의 “4. 서명 및 비준 현황” 참고.

도록 시도하는 절차”로 정의한다.<sup>485)</sup> 동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이와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ADR)수단으로서 조정의 의미와 비중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그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에 의해 성립된 것이다.

첫째, 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의 자치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되 분쟁당사자들이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노력 중에 제3자가 그것을 지원하도록 한다. 국제상사분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조정의 가치를 국제거래에서 인정하고자 한다.

둘째, 국제 및 국내의 상사관계에서 재판에 대한 대안으로서 조정절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셋째, 조정제도의 활용을 통해 분쟁으로 인한 거래관계의 단절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 국제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입장에서는 법집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의 상당한 장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넷째,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가 실제 분쟁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화로운 국제경제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

## 나. 적용범위 및 적용의 배제

우선 동 협약은 국제상사분쟁에 관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에 의해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합의(화해합의)에 적용된다. 즉 ‘국제적인’ 화해합의에 적용된다.<sup>486)</sup>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참여한 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화해합의, 친족법·상속법·노동법과 관련된 화해합의에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이미 승인하였거나 법원에서의 절차 중에 체결된 화해합의, 해당 법원이 속한 국가에서 판결로서 집행 가능한 화해합의, 중재판정으로 기록되어 집행 가능한 화해합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sup>487)</sup>

485) 싱가포르조정협약 제2조 제3항.

486) 싱가포르조정협약 제1조 제1항.

487) 싱가포르조정협약 제1조 제2항, 제3항.

#### 다. 일반 원칙

조정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 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나 일부 행정형 조정에서는 조정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든 조정에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분쟁의 조정, 그리고 민간조정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의 효력은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기여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협약은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다. 즉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및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화해합의를 집행”하여야 하며,<sup>488)</sup> “일방 당사자가 화해합의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동 사안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국은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및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동 당사자가 동 화해합의를 원용하게 허용하여야 한다.”<sup>489)</sup>

#### 라. 화해합의를 원용하기 위한 요건

분쟁당사자가 본 협약에 따라 화해합의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구체절차를 이행하는 협약 당사국의 소관 당국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한다.<sup>490)</sup>

첫째, 당사자들이 서명한 화해합의.

둘째, 화해합의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 예를 들어, 화해합의에 대한 조정인의 서명, 조정이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조정인이 서명한 문서, 조정을 관리한 기관의 증명, 또는 소관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증거를 말한다.

한편 화해합의가 전자통신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 조정인의 서명 요건은 다음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본다.<sup>491)</sup>

첫째, 당사자대들이나 조정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자통신에 포함된 정보에

488) 싱가포르조정협약 제3조 제1항.

489) 싱가포르조정협약 제3조 제2항.

490) 싱가포르조정협약 제4조 제1항.

491) 싱가포르조정협약 제4조 제2항.

관하여 당사자들 또는 조정인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이용되는 경우.

둘째, 이용된 수단이 관련된 모든 합의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통신이 생성되었거나 전송된 목적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거나, 그 자체로 또는 추가적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위 첫째의 기능을 충족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

나아가 만일 화해합의가 구제가 추구되는 협약 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의 소관 당국은 그 언어로 번역을 요청할 수 있다.<sup>492)</sup>

또한 소관 당국은 협약의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sup>493)</sup>

#### 마. 소관 당국이 구제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본 협약의 요건을 갖추어 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구제의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 소관 당국은 그 구제추구의 대상인 상대방이 소관 당국에 다음의 증명을 제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만 구제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sup>494)</sup>

첫째, 화해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였던 경우.

둘째, 원용이 시도된 화해합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당사자들이 유효하게 준수한 법률에 따라,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구제가 추구되는 협약 당사국의 소관 당국이 적용 가능하다고 간주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거나 이행을 불가능한 경우, ② 화해합의의 조건에 따라 구속력이 없거나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

셋째, 화해합의에서의 의무가 이미 이행된 경우이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구제 부여가 화해합의의 조건에 반할 경우.

다섯째, 조정인이 자신에 관한 기준 또는 조정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고 이러한 위반에 의해 분쟁 당사자가 화해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여섯째, 조정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을 조정인이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그렇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일방 당사자에

492) 싱가포르조정협약 제4조 제3항.

493) 싱가포르조정협약 제4조 제4항.

494) 싱가포르조정협약 제5조 제1항.

게 중대한 효과나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 동 당사자가 화해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또한 구제부여가 협약 당사국의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 또는 분쟁의 내용이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조정에 의한 해결 불가능한 경우 소관 당국은 구제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sup>495)</sup>

**바. 병행신청·청구**

화해합의에 관한 신청이나 청구가 법원, 중재판정부 또는 이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구제추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소관 당국에 제기된 경우, 그 소관 당국은 적절하다고 고려하면 결정을 연기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다면 타방 당사자에게 적당한 보증도 명령할 수 있다.<sup>496)</sup>

**4. 서명 및 비준 현황**

협약 제14조 제1항은 “본 협약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세 번째 문서 기탁 후 6개월이 되면 발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9년 8월 7일 서명식 이후 9개국이 추가로 협약에 서명하였고, 2020년 2월 25일 싱가포르·피지, 2020년 3월 12일 카타르가 협약을 비준하여 그 6개월이 되는 2020년 9월 12일 발효되었다.

이후 2020년 5월 5일에 사우디아라비아, 2020년 7월 15일에 벨라루스, 2020년 9월 9일에 에콰도르가 비준하였고, 가장 최근인 2022년 5월 23일에 카자흐스탄이 비준하는 등, 현재 총 10개국이 비준하고 있으며 서명국은 55개국이다. 한국은 아직 비준하고 있지 않다.

서명 및 비준한 국가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표 4-3]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서명 및 비준국가 현황(2022년 6월 27일 현재)**

Country	Date Signed	Date Ratified	Entry into Force
Afghanistan	07-Aug-19	-	-
Armenia	26-Sep-19	-	-

495) 싱가포르조정협약 제5조 제2항.

496) 싱가포르조정협약 제6조.

Country	Date Signed	Date Ratified	Entry into Force
Australia	10-Sep-21	-	-
Belarus	07-Aug-19	15-Jul-20	15-Jan-21
Benin	07-Aug-19	-	-
Brazil	04-Jun-21	-	-
Brunei Darussalam	07-Aug-19	-	-
Chad	26-Sep-19	-	-
Chile	07-Aug-19	-	-
China	07-Aug-19	-	-
Colombia	07-Aug-19	-	-
Congo	07-Aug-19	-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07-Aug-19	-	-
Ecuador	25-Sep-19	09-Sep-20	09-Mar-21
Eswatini	07-Aug-19	-	-
Fiji	07-Aug-19	25-Feb-20	12-Sep-20
Gabon	25-Sep-19	-	-
Georgia	07-Aug-19	29-Dec-21	29-Jun-22
Ghana	22-Jul-20	-	-
Grenada	07-Aug-19	-	-
Guinea-Bissau	26-Sep-19	-	-
Haiti	07-Aug-19	-	-
Honduras	07-Aug-19	02-Sep-21	02-Mar-22
India	07-Aug-19	-	-
Iran (Islamic Republic of)	07-Aug-19	-	-
Israel	07-Aug-19	-	-
Jamaica	07-Aug-19	-	-
Jordan	07-Aug-19	-	-
Kazakhstan	07-Aug-19	23-May-22	23-Nov-22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07-Aug-19	-	-
Malaysia	07-Aug-19	-	-
Maldives	07-Aug-19	-	-
Mauritius	07-Aug-19	-	-
Montenegro	07-Aug-19	-	-
Nigeria	07-Aug-19	-	-
North Macedonia	07-Aug-19	-	-
Palau	07-Aug-19	-	-
Paraguay	07-Aug-19	-	-
Philippines	07-Aug-19	-	-

Country	Date Signed	Date Ratified	Entry into Force
Qatar	07-Aug-19	12-Mar-20	12-Sep-20
Republic of Korea	07-Aug-19	-	-
Rwanda	28-Jan-20	.	.
Samoa	07-Aug-19	-	-
Saudi Arabia	07-Aug-19	05-May-20	05-Nov-20
Serbia	07-Aug-19	-	-
Sierra Leone	07-Aug-19	-	-
Singapore	07-Aug-19	25-Feb-20	12-Sep-20
Sri Lanka	07-Aug-19	-	-
Timor-Leste	07-Aug-19	-	-
Turkey	07-Aug-19	11-Oct-21	11-Apr-22
Uganda	07-Aug-19	-	-
Ukraine	07-Aug-19	-	-
United States of America	07-Aug-19	-	-
Uruguay	07-Aug-19	-	-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07-Aug-19	-	-

### 제3절 |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 이행 논의 현황

#### 1. 비준 및 이행법률에 관한 논의 현황

##### 가. 법무부 주관 T/F의 출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그리고 동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집행하고 그 원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한국이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절차규칙'에 해당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3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다.<sup>497)</sup> 해당 T/F는 학자 6인, 변호사 2인, 판사 1인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

497)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제도: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158면.



어 있다.

다만 비준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고 있기도 하다.<sup>498)</sup>

우선 서명국의 다수가 영미법계 등 비대륙법계 국가라는 점이다.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자국의 집행제도가 협약이 규정하는 집행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조정제도의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다. 대표적으로 미국, 싱가포르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제상거래 규범형성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조정산업 등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동 협약에 대한 접근의 근거에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한국의 주요 교역국 상당수가 참여한 결과 제도적 유사성과 무관하게 서명의 필요성이 존재한 것이다.

한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현재 미서명국, 가령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경우 EU 차원으로 서명할 것인지 아니면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서명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sup>499)</sup> 또한 일본은 자국의 제도와 충돌한다는 것을 이유로 서명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sup>500)</sup>

#### 나. 이행법률의 제정 및 국내 도입 방향

싱가포르조정협약상 화해합의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법에 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중재의 경우와는 달리 그것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뉴욕협약의 국내법 편입은 1999년 UNCITRAL 중재모델법을 수용하는 내용의 중재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미 중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중재법이 존재한 결과 그것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협약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에서 극복하여야 할 문제가 존재한다.

498) 박정현, “싱가포르 협약과 조정제도의 설계”, 한국조정학회 제38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39면.

499) 박정현, “싱가포르 협약과 조정제도의 설계”, 한국조정학회 제38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39면.

500) 박정현, “싱가포르 협약과 조정제도의 설계”, 한국조정학회 제38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39면.

따라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가입을 계기로 하여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추진하며, 이와 함께 일반법의 제정을 장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sup>501)</sup>

#### 다. 이행법률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제언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의 내용과 형식은 다음과 같이 제안해볼 수 있다.<sup>502)</sup> 첫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본래 취지인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집행 등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다. 이때 법률의 명칭은 가칭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한 법률'이 될 수 있다.

둘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은 물론 동 협약과 함께 UNCITRAL 조정모델법 및 UNCITRAL 조정규칙에 규정된 조정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다. 이때 법률의 명칭은 가칭 '상사조정기본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사중재에 적용되는 중재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조정에 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동 법률은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른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합의의 집행을 규정함은 물론 조정절차의 국제기준을 수용함으로써, 조정의 개념, 조정절차, 조정인의 역할, 조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여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올바른 조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예와 같이 동 법률은 국내에서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을 규정할 수도 있다. 이로써 현재 법원이 관장하는 민사조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위 민간형 조정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사조정기본법의 제정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별도로 논하고자 한다.

501) 박정현, “싱가포르 협약과 조정제도의 설계”, 한국조정학회 제38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42면.

502)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159면.

## 2. 상사조정기본법제의 신설에 관한 논의 현황

### 가. 필요성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이 발효됨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제조정이 라는 방식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분쟁해결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 협약 및 조정모델법의 자국 내 수용을 위한 입법 준비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국제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국내 집행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 집행을 위한 실무적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sup>503)</sup>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동 협약의 효력에 따라 조정모델법을 기초로 하는, 가칭 '상사조정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기존에 국내법제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국내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한 국제상사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그 근거로서의 관련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법은 법제도 측면에서 조정 및 분쟁해결제도 자체에 관해서도 바람직한 조정절차의 방향을 모범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다.

### 나. 외국의 입법 사례 비교

다수의 국가에서 조정을 위한 입법이 존재하고 있으나, 유럽연합 조정지침의 국내 법 수용을 위하여 자국법을 마련한 프랑스, 독일 등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내조정에 관해서만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다.<sup>504)</sup> 따라서 현재로서는 싱가포르조정

503) 오현석, "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689호, 2020, 39면.

504) 미국은 1998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8(28 U.S.C. §651~658)을 제정하였고, 2001년 UNCITRAL의 조정모델법을 수용하여 통일조정법(Uniform Mediation Act)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2012년 7월 'EU조정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법률로서 '조정과 재판 외 다른 분쟁해결방법을 장려하는 법'을 채택하였다. 일본 역시 국내조정에 관해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裁判外紛爭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하여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상, 오현석, "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협약을 반영하여 국제상사조정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체계는 2020년에 입법이 이루어진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법(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Bill, '조정협약법')」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17년 「조정법(Mediation Act)」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동 법률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이 채택되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 국제조정보다는 국내조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 이후 싱가포르 정부의 노력으로 국제조정에 관한 새로운 UN협약의 서명식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동 협약의 이름이 '싱가포르조정협약'으로 불리게 되면서 싱가포르가 먼저 국제조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반영한 '조정협약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싱가포르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국제조정에 의한 화해합의의 효율적인 이행과 집행에 대하여 큰 비중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 13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505)</sup>

제3조는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하는데, 싱가포르조정협약 제2조의 적용범위를 대부분 준용하고 있다. 즉 싱가포르협약 제1조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소비자분쟁, 노동 및 가사분쟁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제4조는 화해합의의 집행을 원하는 당사자는 관련 기록들을 고등법원(High Court)에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order)을 구하도록 규정하며, 제6조에서는 법원의 결정을 신청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이 요건들은 싱가포르조정협약 제4조에서 규정하는 화해합의의 집행을 위한 요건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7조에서는 집행신청의 거부사유(Grounds for refusing application)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싱가포르조정협약 제5조를 제1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sup>506)</sup>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조정협약법은 한국에서 상사조정기본법을 제정하는 경우 조정모델법을 대부분 참조하거나 그것을 기초로 제정하는 방안이 가능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제689호, 2020, 41면.

505) 오현석, "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689호, 2020, 41면.

506) 더 자세한 내용은 오현석, "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689호, 2020, 42면 참고.

## 제4절 |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제도 발전 방향

### 1. 집행력의 확보와 실현에 대한 체계 정립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에서는 화해합의의 승인(recognition)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논의과정에서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 화해합의가 제3국에서 집행되는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각 국가의 법제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승인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sup>50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승인절차의 필요 여부에 관해 국내에서는 다시금 논의하여야 한다. 승인은 법원이 화해합의에 우리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화해합의가 법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기판력을 가지게 된다. 중재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법원에서 별도의 결정에 의해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조정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승인절차가 필요하다.<sup>508)</sup>

나아가 승인과 함께 집행에 관한 규정도 중요하게 고려해보아야 한다. 집행은 화해합의의 내용을 법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집행지국에서 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받음으로써 강제집행 등 집행지국법상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sup>509)</sup> 따라서 화해합의의 집행에 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 그것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중재와 비교해보면 중재판정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볼 수 있다.<sup>510)</sup>

한편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의 집행절차에 차이를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역시 중재와 비교해보면, 중재법 제38조<sup>511)</sup>와 제39조<sup>512)</sup>에서는 국내중재판

507) 이재민,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2018, 1271면.

508) 오현석, “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689호, 2020, 59면.

509)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299면; 오현석, “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제689호, 2020, 59면.

510) 중재법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511) 중재법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이하 생략)

정과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해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정에서도 역시 중재법에 준하여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을 원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조정에 있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논란이 예상될 수 있으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 2. 상사조정기본법의 제정 방안

### 가. 당사자 중심의 절차

분쟁해결절차로서 조정은 그 시작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전제된다. 조정에서 각 당사자는 중재나 소송절차에 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중재인이나 법원의 판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분쟁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상대방 당사자와의 대화를 다시 시작하고, 솔직한 의견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자신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자신들의 분쟁에 대해 제3자의 결정에 기대지 않고 다른 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분쟁해결방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의미한다.

분쟁해결방식의 선택에 당사자의 자율성이 증시된다면, 절차의 진행과정 역시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 조정의 장점은 여기에 있다. 그 결과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은 조정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법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상사조정기본법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절차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상사조정기본법은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율성을 보완하고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512)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①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같은 협약에 따라 한다. ②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 나. 최소한의 절차규정

조정에서는 당사자의 자율성이 광범위하게 존중 내지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양한 기관들에게 각기 다른 내용과 방식의 조정을 허용한다면 분쟁해결의 혼란을 야기하고 법적 안정성에 관한 불안을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표준화 및 규칙화하여 바람직한 절차의 진행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며 필수적이다. 특히 당사자가 일일이 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내용의 절차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도 있다. 조정이 당사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또 자유롭게 진행되는 절차라 하더라도 절차상 기본을 완전히 무시한 채 수행해져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모든 국가작용에 있어서의 적법절차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다.

절차상의 기본규칙이나 적법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은 채 수행된 조정의 결과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집행력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 즉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은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까지 고려하여 그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조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규칙에 관해서 UNCITRAL 조정모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즉 조정모델법의 내용을 반영하되 세부사항에서는 우리법제 및 조정실무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 다. 민간형 조정센터의 조정

### (1) 민간형 조정의 필요성

당사자의 자율성이라는 조정의 본질에 상응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수한 민간주도형 조정제도의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분쟁을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분쟁해결의 사적자치가 바람직하므로 정부 등 기관의 개입 없이 민간 주도로 진행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사조정기본법 역시 민간형 조정의 발전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결국 민간이 주도하는 조정의 기본법이 된다는 점에 가장 큰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형 조정기구를 활성화하고 민간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다수의 영리, 비영리 기관이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sup>513)</sup> 이들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민간형 조정기구들이 활성화되고 그에 관련된 시장이 형성된다면, 영국의 민관협력 모델과 같이, 현재 정부가 각종 분쟁위원회를 통하여 제공하는 조정서비스와 연계하거나 협력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sup>514)</sup>

싱가포르의 경우 역시 민간조정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대법원이 설립을 지원한 ‘싱가포르조정센터(Singapore Mediation Centre)’는 상사분쟁, 가사분쟁을 포함한 민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해당 기관은 조정인 교육 및 조정인 인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순수 민간형 조정기관이다. 특히 국제사건의 경우는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주로 기업 간 국제거래분쟁을 다루고 있다. 싱가포르조정센터와 국제조정센터 모두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관할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싱가포르조정센터에서는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조정조항을 넣도록 홍보하고, 이러한 조항<sup>515)</sup>이 들어간 계약에서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그 관할을 행사하고 있다.

## (2) 민간형 조정센터의 설립

민간형 조정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인의 양성을 담당할 수도 있다. 그 중 조정인의 양성에 관하여 대표적으로는

513) 한국조정학회, 국제상사조정 및 합의의 집행 관련 협약과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동북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8, 101-102면.

514) 예를 들어, 영국의 통신산업 관련 분쟁조정기관으로서 Otelo(Office of Telecommunication Ombudsman)와 CISAS(Communication & Internet Services Adjudication Scheme)가 대표적이다.

515) 싱가포르조정센터(SMC) 표준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must be submitted for mediation at the Singapore Mediation Centre (SMC) in accordance with SMC’s Mediation Procedure in force for the time being.”



다음과 같은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이 학회나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조정인 교육 및 인증업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그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때 공공기관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신 및 학회나 협회로 구성된 민간기관과도 구별되는 조정인의 인증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 평가위원회 (commission)를 구성한다.<sup>516)</sup> 이러한 별도의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및 평가절차는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대외에 공포하지 않으며, 평가 대상 조정인에 대한 일체의 사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유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평가대상 조정인의 사적 관계를 단절하는 철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정인의 질적 능력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민간형 조정센터의 특성상 해당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감독 및 제재의 직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점은 제도적으로는 물론 시장의 평가에 의하여 보완이 가능하며, 그것을 현저히 능가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조정센터를 인증하는 것에 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조정인 교육과 인증을 받은 조정인을 조정에 투입하는 해당 기관을 ‘공공기관이 인증하는 조정센터’로 선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은 종래와 달리 조정인에 대한 교육이 내실화되고 조정인 인증 및 재인증 절차를 통하여 조정인의 질적 관리 및 문제가 있는 조정인을 걸러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일치하는 당사자를 위한 조정이라고 하는 조정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516) 싱가포르조정협약도 제4조 제1항 (b)의 (iii)에서 ‘조정을 관리한 기관의 증명’이 구제청구 시에 소관 당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로써 화해합의의 신뢰성을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3국이 조정센터를 통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정센터 및 조정인을 인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조정의 저변 확대

국내에서는 조정을 당사자 주도의 자율적 분쟁해결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지 실정에 따라 분쟁의 대상에 관한 액수를 조정(調整)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감액하는 것, 또는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시키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조정인의 중립성이나 당사자가 절차상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등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sup>517)</sup> 또는 조정을 행정부의 수월한 업무수행의 방식 혹은 민원처리의 수단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sup>518)</sup>

나아가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조정협약에서 말하는 조정과 다른 제도를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sup>519)</sup> 또한 그 법률들 역시 동일하게 조정(調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이로부터 조정의 효력 역시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 내지 민사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까지 다양한 경우로 나뉜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조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가령 현행과 같이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조정도 조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문제 등도 새로운 조정법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조정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법무부T/F 등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정에 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제의 도입 또는 신설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국제조정 수행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제도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민간형 조정센터를 통해 ‘국제조정 허브’의 형성을 목표로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관은

517) 국회입법조사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싱가포르 협약 대응을 중심으로, NARS 정책연구보고서, 2021, 207면.

518) 국회입법조사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싱가포르 협약 대응을 중심으로, NARS 정책연구보고서, 2021, 208면.

519) 국회입법조사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싱가포르 협약 대응을 중심으로, NARS 정책연구보고서, 2021, 208면.

초창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제조정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더욱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sup>520)</sup> 지나치게 조정의 제도적 확장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결국 현재의 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민사조정, 행정형 조정 및 형사조정과 같이 정부가 개입하는 관제식 조정제도에 그치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조정을 수행하는 기관은 그 수행에 필요한 조정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조정인 명부를 비치하며, 외국의 유사 국제조정기관과 협력 및 경쟁할 수 있는 등 국제조정이 가능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이 과정 역시 조정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조정을 포함한 각종 분쟁해결제도는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되어 이용자인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나 분쟁당사자가 단지 조정을 수치상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하여 조정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제도로써 조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질적 향상이 병행되어야 한다. 조정인에 대한 대우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없고, 그 결과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신뢰할 만한 조정제도가 운영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의 규모,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조정인에 의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조정의 수행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조정을 통한 성공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이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이것은 국제경쟁력과 평판이 중요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sup>521)</sup>

조정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질서를 존중하며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를 반영한 싱가포르조정협약체제에서 한국이 국제조정의 허브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평판과 신뢰를 가지고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조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민간영역에서 국제상사조정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520)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159면.

521)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160면.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KIMC)가 2020년 10월에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한국조정학회에서는 매년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APMC)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고, 또한 조정이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합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의 국제조정기관이 설립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sup>522)</sup>

---

522)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160면.

## 제 5 장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국제중재 및 조정 선진국가 제도 및 정책 동향

김 명 수



## 제5장

# 국제중재 및 조정 선진국가 제도 및 정책 동향

### 제1절 | 싱가포르

#### 1. 개관

싱가포르는 홍콩이나 상하이 등의 국제중재센터와 달리 별도의 국제조정센터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는 1991년 설립된 국제분쟁 중재기구로서 아시아 최대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이며, 특히 2010년 7월 아시아 중재기관 최초로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를 도입하여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 긴급임시처분의 신청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sup>523)</sup>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er, SIMC)는 2014년 설립된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으로 2014년 11월 5일 싱가포르를 국제상사 조정을 위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순다레시 메논 대법원장(Chief Justice Sundaresh Menon)과 법무부가 구성한 실무 그룹(working group)의 권고에 따라 설립되었다.<sup>524)</sup>

523) “2019년 분쟁조정제도 관련 해외현지조사 싱가포르 방문 결과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10., 4면.

524)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 누리집, <https://simc.com.sg/mediating-in-singapore/> 참조. 최종방문 2022.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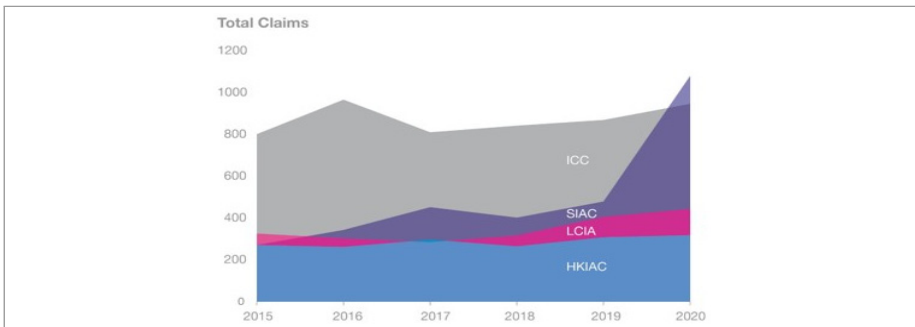
## 2.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 가. SIAC 국제중재 현황과 기반시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세계 5대 중재기관(런던, 싱가포르, 홍콩, 파리 및 제네바) 중 2위, 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중재기관이다.<sup>525)</sup> 2020년 ICC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가장 선호하는 중재지이며 파리, 런던, 제네바, 뉴욕, 취리히에 이어 가장 많이 중재지로 선택되는 도시 중 6위를 차지했다. SIAC는 가장 최근인 2021년 5월 러시아 중재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러시아에서 영구중재기관(permanent arbitral institution, PAI)으로 등록되면서 중재지가 러시아인 국제상사중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sup>526)</sup>

SIAC는 2020년에 새로운 사건 접수 기록을 세웠는데, 그동안 1,000건을 넘지 못하였다가 처음으로 1,080건의 새로운 사건 접수되었다. 2020년 분쟁 총액은 2019년 대비 4.9% 증가한 84억 9,000만 달러였다.<sup>527)</sup>

▶▶▶ [그림 5-1] 국제상업회의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런던국제중재센터, 홍콩국제중재센터 사건수 비교<sup>528)</sup>



525)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누리집, <https://siac.org.sg/about-us/why-siac>. 「2021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and White & Case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Adapting Arbitration to a Changing World」, [https://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LON0320037-QMUL-International-Arbitration-Survey-2021\\_19\\_WEB.pdf](https://arbitration.qmul.ac.uk/media/arbitration/docs/LON0320037-QMUL-International-Arbitration-Survey-2021_19_WEB.pdf). 2022.11.1. 최종 방문

526) 「SIAC Licensed to Administer Disputes in Russia」, 20 May 2021, <https://siac.org.sg/wp-content/uploads/2022/07/Press-Release-SIAC-Licensed-to-Administer-Disputes-in-Russia.pdf>. 2022.11.1. 최종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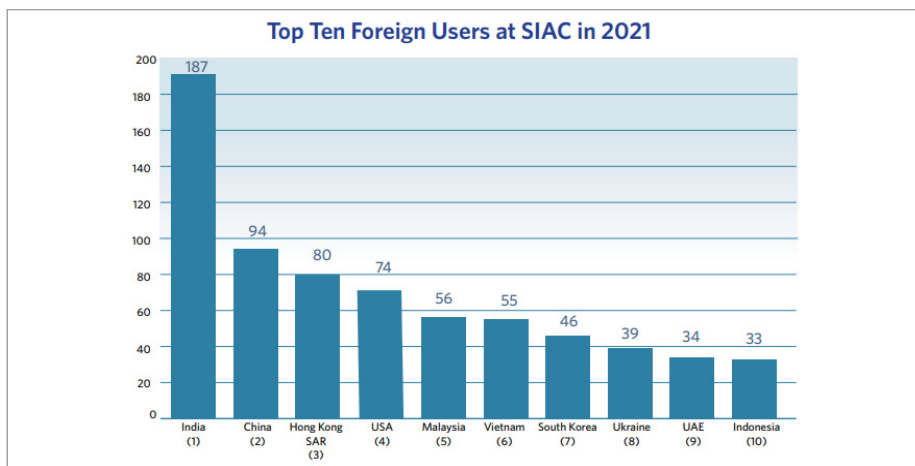
527) 「SIAC Annual Report 2020」, p.17. [https://siac.org.sg/wp-content/uploads/2022/06/SIAC\\_Annual\\_Report\\_2020.pdf](https://siac.org.sg/wp-content/uploads/2022/06/SIAC_Annual_Report_2020.pdf). 2022.11.1. 최종 방문

528) Amanda Lees·Patric McGonigal, 「SIAC Statistics: Looking behind the large increase in SIAC caseload」, <https://pulse.kwm.com/>. 2022.11.1. 최종 방문



2020년도 SIAC의 외국인이용자는 인도(690건), 미국(545건), 중국(195건), 스위스(135건) 순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도에 비해 미국, 스위스 등의 당사건당사자수가 늘어났다.<sup>529)</sup>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유행의 여파와 그에 따른 전 세계 여행 중단 및 도시 봉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시설을 갖춘 SIAC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곳이다.<sup>530)</sup> 흥미로운 사실은 2020년에 SIAC에 중국당사자와 관련된 사건이 255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건수는 같은 해에 HKIAC에 제출된 모든 외국당사자와 관련된 총 신규 사건 수인 318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당사자에게도 SIAC가 분쟁 해결을 위한 곳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531)</sup>

▶▶ [그림 5-2] 2021년도 SIAC 외국인용자 수(「SIAC Annual Report 2021」, p.20)



2021년도 SIAC는 469건의 신규 사건이 접수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SIAC에서 처리한 469건 중 446건(95%)이 SIAC에서 관장한 사례였고(기관중재), 나머지 23건(5%)은 임시중재(ad hoc) 사건이었다(아래 <표 5-1> 2021년 SIAC 사건 통계 참조). 지난 10년 동안 SIAC의 사건수가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5년 연속 400건을

529) 「SIAC Annual Report 2020」, pp.17-18.

530) 「SIAC Annual Report 2020」, p.4. 2020년에 60개국의 당사자에서 2021년에는 64개국의 당사자가 SIAC에서 중재하기로 결정했다.

531) Amanda Lees-Patric McGonigal, "SIAC Statistics: Looking behind the large increase in SIAC caseload".

넘어섰다.<sup>5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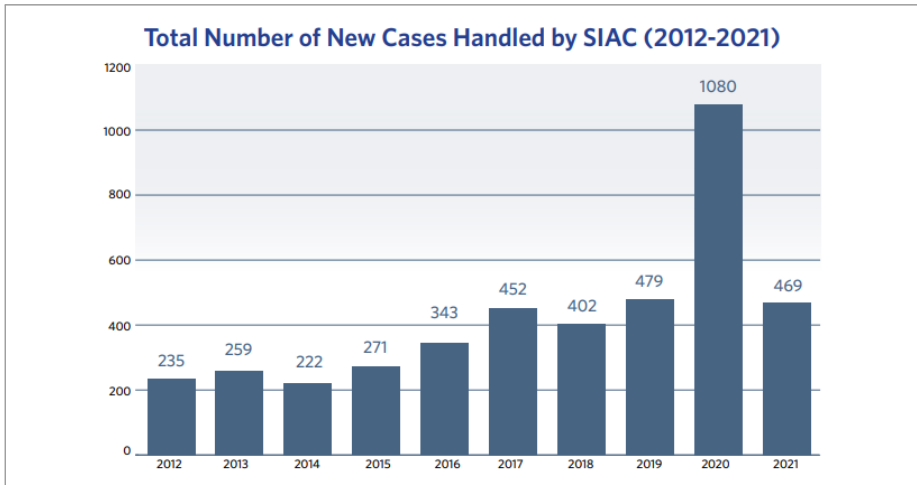
▶▶ [표 5-1] 2021년 SIAC 사건 통계

총	접수사건(건)			
	기관중재	임시중재	국제중재	국내중재
469	446	23	405	64

2021년 SIAC의 총 분쟁 금액은 65억 4천만 달러(SGD 88억 5천만 달러)였다. 단일 처리 사건의 최대 분쟁액은 19억5,000만 달러(SGD 26억 4,000만 달러)로 2020년 최대 분쟁액의 2배가 넘었다. SIAC에 제출된 새로운 사건의 86%는 본질적으로 국제중재사건이다.<sup>533)</sup>

SIAC는 5년 동안 매년 400건 이상의 중재사건을 접수받아 왔고(아래 그림 참조), 2021년에 접수된 469건 중 국제중재사건이 405건으로 전체의 86%이고, 기관중재가 446건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sup>534)</sup>

▶▶ [그림 5-3] 최근 10년간 SIAC 처리 사건 수(「SIAC Annual Report 2021」, p.18.)



532) 「SIAC Annual Report 2021」, p.18.

533) 「SIAC, 「ANNUAL REPORT 2021」, p19. available at [https://www.siac.org.sg/images/stories/articles/annual\\_report/SIAC-AR2021-FinalFA.pdf](https://www.siac.org.sg/images/stories/articles/annual_report/SIAC-AR2021-FinalFA.pdf). 2022.6.21. 최종 방문.

534) 「SIAC, 「ANNUAL REPORT 2021」, p19.

### 나. 전문분야의 특성화 교육

매년 국제중재와 관련된 실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다.<sup>535)</sup>

- ① 긴급 중재, 신속 절차 등 SIAC 중재 규칙에 따른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과정
- ② 주요 중재 관련 개발 및 결정 검토
- ③ 국제중재 법적 체계 이해에 관한 중재 101 강좌
- ④ 국제중재에서 증거개시 및 문서제출 실무와 같은 실무기반 과정
- ⑤ 아시아에서 중재판정의 집행
- ⑥ 변호인, 중재인 및 중재판정부 실무자를 위한 기술 기반 교육
- ⑦ 사법부, 정부 기관, 산업 협회 및 비정부 기관의 구성원을 위한 특별 맞춤형 개인 교육 워크숍

▶▶▶ [표 5-2] 2021-2022년 SIAC Academy 일정

일정	프로그램
26 Jan 2022 (Wed)	Review of Key Arbitration Developments and Decisions in 2021: Singapore and United Kingdom
24 and 25 Feb 2022 (Thur and Fri)	Arbitration 101: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Legal Framework
22 and 23 March 2022 (Tue and Wed)	Investment Arbitration 101: A Primer
27 April 2022(Wed)	Practicum on Discovery and Document Produc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11 May 2022(Wed)	Specialist Arbitration Series: Part 1: Construction Arbitrations
6 July 2022(Wed)	Specialist Arbitration Series: Part 2: Energy, Oil & Gas Arbitrations
19 Oct 2022(Wed)	Tribunal Secretar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1 Dec 2022(Thur)	SIAC Academy Annual Lecture
20 Jan 2021(Wed)	Review of Key Arbitration-Related Developments and Decisions in 2020: Singapore and United Kingdom
27 and 28 Jan 2021 (Wed and Thur)	Arbitration 101: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Legal Framework
25 Feb 2021(Thu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1: Singapore

535) SIAC 누리집, <https://siac.org.sg/siac-academy>. 2022.11.1. 최종 방문

일정	프로그램
17 March 2021(We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2: China
7 and 8 April 2021 (Wed and Thur)	SIAC Middle East Academy (Virtual Edition): Time and Cost Savers at SIAC: Emergency Arbitration, Expedited Procedure and Early Dismissal
28 April 2021(We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3: India
14 May 2021(Fri)	Masterclass on Advocacy Training
27 May 2021(Thu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4: Indonesia
9 June 2021(Wed)	Practicum on Discovery and Document Production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4 June 2021(Thur)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5: Malaysia
7 July 2021(We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6: South Korea
29 and 30 July 2021 (Thur and Fri)	SIAC South East Asia Academy (Virtual Edition): The Making of an Advocate and an Arbitrator
4 Aug 2021(We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7: Japan
20 Aug 2021(Fri)	SIAC Russia Academy: Time and Cost Savers at SIAC: Emergency Arbitration, Expedited Procedure and Early Dismissal (Webinar Edition)
8 Sept 2021(We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8: Philippines
27 Oct 2021(We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9: Thailand and Vietnam
12 Nov 2021(Fri)	Tribunal Secretari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24 Nov 2021(We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Asia: Theory & Practice – Part 10: Cambodia, Laos and Myanmar
2 Dec 2021(Thur)	SIAC Academy Annual Lecture

출처: SIAC 누리집<sup>536)</sup>

#### 다. 수수료 등 비용 문제

2016년 SIAC 중재규칙(SIAC Rules 2016)에 따르면, 중재비용에는 (i) 중재판정부 수수료 및 경비와 긴급중재인 수수료와 경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ii) SIAC의 관리 수수료 및 경비, (iii) 중재판정부가 선정한 전문가를 위한 비용 및 중재판정부의 합리적인 필요에 따른 기타 지원을 위한 경비 등이 포함된다(제35조).

536) <https://siac.org.sg/siac-academy>. 2022.11.1. 최종 방문

### (1) 관리비용(Administration Fees)

관리비용은 싱가포르 중재규칙 부칙(Schedule)에 따라 산정되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처리되는 모든 중재사건에 적용된다. 달리 정함이 없는 한 SIAC는 최소 3,800 싱가포르 달러를 관리비로 부과한다. 이 관리비용에는 중재판정부의 수수료 및 비용, 심리(심리시설, 장비, 번역서비스 등)와 관련된 설비 이용 및 지원 서비스 비용, 7%의 GST(Goods and Services Tax)<sup>537)</sup>는 포함되지 아니한다.<sup>538)</sup>

▶▶ [표 5-3] SIAC 관리비용

신청금액(SGD)	관리비용(SGD)
0~500,000	3,800
500,001~100,000	3,800+50,000초과×2.200%
100,001~500,000	4,900+10,000,000초과×1.200%
500,001~1,000,000	9,700+500,000초과×1.000%
1,000,001~2,000,000	14,700+1,000,000초과×0.650%
2,000,001~5,000,000	21,200+2,000,000초과×0.320%
5,000,001~10,000,000	30,800+5,000,000초과×0.160%
10,000,001~50,000,000	38,800+10,000,000초과×0.095%
50,000,001~80,000,000	76,800+50,000,000초과×0.040%
80,000,001~100,000,000	88,800+80,000,000초과×0.031%
100,000,001~	95,000

출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누리집<sup>539)</sup>

### (2) 중재인 수수료(Arbitrator's Fees)

중재인 수수료는 싱가포르 중재규칙 제34.1조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수수료를 결정하는 대체적 방법에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규칙의 Schedule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중재인에게 지급한다.<sup>540)</sup>

537) 싱가포르 소비세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

538)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

539)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

540)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

▶▶ [표 5-4] 중재인 수수료

신청금액(SGD)	중재인 수수료(SGD)
0~500,000	6,250
500,001~100,000	6,250+50,000초과×13.800%
100,001~500,000	13,150+100,000초과×6.500%
500,001~1,000,000	39,150+500,000초과×4.850%
1,000,001~2,000,000	63,400+1,000,000초과×2.750%
2,000,001~5,000,000	90,900+2,000,000초과×1.200%
5,000,001~10,000,000	126,900+5,000,000초과×0.700%
10,000,001~50,000,000	161,900+10,000,000초과×0.300%
50,000,001~80,000,000	281,900+50,000,000초과×0.160%
80,000,001~100,000,000	329,900+80,000,000초과×0.075%
100,000,001~500,000,000	344,900+100,000,000초과×0.065%
500,000,001~	605,000+50,000,001~2,000,000×0.040%

출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누리집<sup>541)</sup>

### (3) 기피신청 수수료(환불불가)

기피통지를 제출한 일방당사자는 싱가포르 중재규칙 제15.3조에 따라 기피신청 수수료(challenge fee)를 지급해야 한다. 중재인의 기피신청을 위한 관리비용은 싱가포르 당사자인 경우 S\$8,560이고(7% GST 포함), 외국 당사자인 경우 S\$8,000이다.<sup>542)</sup>

### (4) 평가 또는 과세 수수료(assessment or taxation fee)

중재 종료시 또는 중재 과정에서 쟁점이 결정된 후,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에 의해 발생한 법적 비용(또는 법적 비용의 일부)을 상대방이 지급하도록 명한다. 중재인은 일반적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 금액을 확정한다. SIAC는 중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금액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SIAC 등록관(Registrar)에게 당사자들을 위해 금액을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록관의 서비스가 필요한 당사자는 청구된 비용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sup>543)</sup>

541)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

542)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

543)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

▶▶ [표 5-5] 평가 또는 과세 수수료

신청금액(SGD)	평가 또는 과세 수수료(SGD)
0~500,000	5,000
500,001~100,000	5,000+50,000초과×2%
100,001~250,000	6,000+100,000초과×1.5%
250,001~500,000	8,250+250,000초과×1%
500,001~1,000,000	10,750+500,000초과×0.5%
1,000,001~	13,250+1,000,000초과×0.25%
최대	25,000

출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누리집<sup>544)</sup>

## (5) 선정수수료(appointment fee)(환불불가)

선정수수료는 임시중재(ad hoc) 사건에서 중재인 선정 요청이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는 선정을 요청한 당사자가 지급하고 선정신청은 아래의 선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sup>545)</sup>

▶▶ [표 5-6] 임시중재인 선정수수료

구분	중재인 1인	중재인 2인	중재인 3인
싱가포르 당사자	S\$3,210*	S\$4,280*	S\$5,350*
외국인 당사자	S\$3,000	S\$4,000	S\$5,000

\* 수수료에는 7% GST가 포함

출처: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누리집<sup>546)</sup>

그 밖의 싱가포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인증수수료(Authentication Charges)는 S\$171.20, 그밖의 중재판정의 인증수수료는 S\$438.70가 부과된다. 또한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 증명서교부수수료(Certification Charges)는 S\$171.20이다.<sup>547)</sup>

544)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545)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546)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547) <https://siac.org.sg/siac-schedule-of-fees>. 2022.11.1. 최종 방문

라. 중재인 구성 및 자격

(1) 중재인 구성

2021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는 총 192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였고, 이들은 25개국 이상 지역에서 온 에너지, 엔지니어링, 조달, 건설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다.<sup>548)</sup>

▶▶▶ [표 5-7]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패널 구성(국가별)

국적(거주지)	인원(명)	국적(거주지)	인원(명)
아르헨티나	1	대한민국	11
호주	30	레바논	2
오스트리아	4	말레이시아	16
방글라데시	1	멕시코	4
벨기에	7	미얀마	1
브라질	2	네덜란드	5
캐나다	8	뉴질랜드	5
중국	36	나이지리아	3
콜롬비아	1	파키스탄	5
프랑스	16	페루	1
독일	10	필리핀	7
홍콩	36	폴란드	2
인도	36	러시아	14
인도네시아	6	싱가포르	134
아일랜드	1	스페인	4
이스라엘	2	스웨덴	1
이탈리아	6	스위스	14
일본	8	타이	4
우크라이나	2	미국	43
아랍에미리트	20	베트남	4
영국	74	지식재산분쟁	26

출처: SIAC 누리집<sup>549)</sup>

548) SIAC Annual Report 2021, p.22.

549) <https://siac.org.sg/siac-panel>. 2022.11.1. 최종 방문



## (2) 중재인 자격

2016년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인의 자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 13조). 그리고 중재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sup>550)</sup>

###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SIAC 규칙(제6차, 2016. 8. 1.))

#### 13 중재인 자격

- 13.1 이 규칙에 의하여 선정된 모든 중재인은 당사자로부터 지명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독립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
- 13.2 중재법원장은 이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 자격 요건 등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련된 모든 고려사항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 13.3 중재법원장은 중재인이 심리 대상 중재사건의 성격에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활동 가능성(availability)을 갖고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13.4 중재인으로 지명된 자는 중재법원장에 의해서 중재인으로 선정되기 전에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하여 타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사자들과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 13.5 중재인은 중재 진행 중에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타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과 다른 중재인들 및 사무국에 즉시 고지하여야 한다.
- 13.6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중재인 또는 당사자 지명 중재인 후보자 중 어느 누구와도 편면적 의사소통(ex parte communication)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중재인 후보자에게 관련 논쟁의 전반적인 성격과 예상되는 절차에 관하여 통지하거나, 중재인 후보자의 자격이나 중재인으로서의 활동 가능성 또는 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의 독립성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혹은 당사자들이나 일방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들이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하려는 상황에서 중재인 후보자들의 의장중재인으로서의 적합성에 관하여 논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모든 당사자와 그 대리인은 의장중재인 후보자 중 어느 누구와도 편면적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중재인 패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이나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① 고등교육을 받고, ② 자격 경험 후 최소 10년이 경과하였을 것, ③ 공인된 중재인협회, 싱가포르 중재인협회나 이에 준하는 전문중재인협회의 펠로우십, ④ 5건 이상 중재인으로서의 경험, ⑤ 적어도 2건의 상사 중재판정을 종결했고, ⑥ 30세에서 75세 사이일 것 등이다.<sup>551)</sup>

## (3) 중재인 구성의 다양성

2021년 중재인으로 선정된 371명 중 137명(33%)이 외국중재인(non-Singaporean

550) SIAC FAQs No.43 참조. <https://siac.org.sg/faqs/siac-general-faqs>. 2022.11.1. 최종 방문

551) <https://siac.org.sg/standards-for-admission-to-siac-panel>. 2022.11.1. 최종 방문

arbitrators)이며 당사자들이 지명한 외국중재인은 113명(27%), 공동중재인이 지명한 외국중재인은 45명(11%)에 달한다. SIAC가 선정한 179명의 중재인 중 64명(35.8%)이 여성이었다.<sup>552)</sup>

2021년에 SIAC 중재법원(Court of Arbitration)은 1건의 중재인에 대한 기피(challenge to an arbitrator)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sup>553)</sup>

#### 마. 젊은 층을 겨냥한 YSIAC 조직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40세 미만의 젊은 그룹(Young SIAC group)을 “YSIAC”로 브랜드화하고 계획을 선도하고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활력을 되찾고 있다. YSIAC는 지역 및 국제적으로 국제중재 및 그 밖의 대안적 분쟁 해결의 활용을 촉진하고, 젊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 걸쳐 법률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직면한 고유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554)</sup>

### 3.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 가.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개관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는 2014년 11월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IAC”)와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사이의 중재-조정-중재 의정서(Arb-Med-Arb Protocol, “AMA Protocol”)에 따라 처리되는 조정을 제외한 모든 조정사건을 다룬다(SIMC 조정규칙 제1.1조).<sup>555)</sup>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는 국제중재센터에서 접수된 중재 사건을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하는 경우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바(중재-조정-중재), 이는 중재 판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빠른 분쟁 해결 및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sup>556)</sup>

552) 「SIAC, 「ANNUAL REPORT 2021」, p24.

553) 「SIAC, 「ANNUAL REPORT 2021」, p24.

554) SIAC 누리집, ‘About YSIAC’ 참조. <https://siac.org.sg/about-ysiacc>. 2022.11.1. 최종 방문

555) 싱가포르 조정규칙(Mediation Rules)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10월 23일 Heng Swee Keat 싱가포르 재무장관이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인프라 허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인프라 분쟁 관리 의정서(Singapore Infrastructure Dispute-Management Protocol)를 발표하였다.<sup>557)</sup> 이에 따르면, 당사자는 프로젝트 시작부터 엔지니어링, 자료 조사 및 법률과 같은 관련 분야의 중립적인 전문가 최대 3명으로 구성된 분쟁위원회(Dispute Board, DB)를 지명한다. 분쟁위원회는 다양한 맞춤형 분쟁 방지 및 해결 절차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사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필요에 따라 1명 내지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위원회(DB)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 있는 사용자는 복잡한 인프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절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목록인 SIMC의 전문가 패널(Specialists Infrastructure Panel)에서 분쟁위원회의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위원회 구성원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SIMC는 적절한 상황에서 이 전문가 패널 목록에서 분쟁위원회 구성원을 지명하게 된다.<sup>558)</sup>

조문	조문 내용
Rule 1	Application
Rule 2	Commencement of Mediation
Rule 3	Agreement to Mediate
Rule 4	Appointment of Mediator
Rule 5	Fees and Costs
Rule 6	Conduct of Mediation
Rule 7	Termination of Mediation
Rule 8	Settlement Agreement
Rule 9	Confidentiality
Rule 10	Cancellations or Postponement
Rule 11	General Provisions
SIAC-SIMC Arb-Med-Arb Protocol	
Model Clauses	

출처: <https://simc.com.sg/v2/wp-content/uploads/2022/06/20220610-SIMC-Mediation-Rules-Clean.pdf>. 2022.10.4. 최종 방문.

556) “2019년 분쟁조정제도 관련 해외현지조사 싱가포르 방문 결과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10., 6.

557) 아시아개발은행(ADB)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조7,000억 달러(2조3,000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한다. <https://simc.com.sg/dispute-resolution/dispute-boards/>. 2022.10.4. 최종 방문.

▶▶ [표 5-8] 조정인 패널(2014년~2022년)

구분	인원	한국인(국적)
Ambassador	10	1
Industry Expert	59	
International Mediator	67	24
Specialist Mediator	161	23

출처: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누리집<sup>559)</sup>

### 나. 조정인 선정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로부터 조정인 또는 전문가 추천을 바라는 당사자들은 조정인 선정 위임서비스(Appointing Authority Service, AAS)를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소정의 선정 수수료(중재자 또는 전문가 1인당 S \$1,070(GST 포함))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SIMC의 AAS(Appointing Authority Service)를 신청하고 24시간 이내에 SIMC는 당사자에게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3명의 후보자 명단을 제공하면, 당사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SIMC에서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sup>560)</sup>

▶▶ [표 5-9] (사)국제조정센터 국제조정인(국가별)

구분	인원수(명)	구성
대한민국	24	법조인, 기업, 학계, 정부, 외교, 미디어, 의료, 기타
중국	1	학계
홍콩	1	업계
인도	1	학계
이탈리아	1	기타
말레이시아	1	기타
러시아	3	법조인, 학계
영국	1	학계
미국	1	학계

출처: 한국국제조정센터(KIMC) 누리집<sup>561)</sup>

558) <https://simc.com.sg/dispute-resolution/dispute-boards/>. 2022.10.4. 최종 방문.

559) [https://simc.com.sg/mediators/?\\_sfm\\_nationality=Korea%20\(South\)&\\_sfm\\_active\\_since=2014+2022](https://simc.com.sg/mediators/?_sfm_nationality=Korea%20(South)&_sfm_active_since=2014+2022). 2022.10.4. 최종 방문

560) <https://simc.com.sg/dispute-resolution/appointing-authority-service/>. 2022.10.4. 최종 방문.

561) <https://kimc.seoul.kr/Panel-of-International-Mediators>. 2022.10.4. 최종 방문.

### 다. 중재-조정-중재절차(Arb-Med-Arb)

중재-조정-중재(Arb-Med-Arb) 절차는 중재절차 중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에 화해가 성립한다면 이 화해 계약(settlement agreement)은 중재판정(arbitral award)으로 받아들여져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에 따라 160여 개 국가에서 집행될 수 있다. 이 절차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 집행가능성과 종국성을 겸비한 기밀성 및 중립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다.<sup>562)</sup>

중재절차 진행 중 또는 중재절차 개시 전 중재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는 중재절차 진행 중 또는 중재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분쟁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조정에 의한 해결은 동의 판정으로 기록될 수 있고,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중재 및 조정 절차는 모두 기밀이며,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들이 선택한 재판적(venue)에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국제조정센터 중재-조정-중재 의정서(SIAC-SIMC Arb-Med-Arb 프로토콜)에 따라 중재인과 조정인은 각각의 센터 규칙에 따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와 국제조정센터(SIMC)에서 각각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임명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과 조정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다.<sup>563)</sup>

SIMC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체 사건 133건 중 21건이 중재-조정-중재(AMA)를 거쳤다고 한다.<sup>564)</sup>

### 라. 조정인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들에게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풍토를 조성해주기 위해 다양한 워크숍<sup>565)</sup>과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다(아래 표 참조).

562) <https://simc.com.sg/simc-covid-19-protocol/>. 2022.10.4. 최종 방문. 화해계약(Settlement agreements)은 집행가능한데, 2017년 조정법(Mediation Act 2017)에 따른 법원의 명령으로 기록되고, 싱가포르 조정협약(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

563) <https://simc.com.sg/dispute-resolution/arb-med-arb/>. 2022.10.4. 최종 방문.

564) [https://www.ciarb.org/media/12760/mediation-symposium-2020\\_george-lim-sc-4-dec-2020-final.pdf](https://www.ciarb.org/media/12760/mediation-symposium-2020_george-lim-sc-4-dec-2020-final.pdf). George Lim, "The interface between arbitration and mediation: What will be the new normal?", Mediation Symposium 2020, p.17.

565)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는 대한상사중재원(KCAB INTERNATIONAL)의 지원으로 2018년부터 전문 조정인 워크숍(Specialist Mediators Workshop)을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2022년 6월에 한국, 미국, 싱가포르, 호주 국

» [표 5-10] 2021-2022년 전문가 프로그램(2021.10.-2022.9.)

연번	프로그램
1	Arbitration 101: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Legal Framework (Virtual Edition) (24-25 February 2022)
2	SIMC Supports SIAC's Investment Arbitration 101: A Primer (22-23 March 2022)
3	2nd Singapore-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Conference (Apr 7 2022)
4	Healing the Virtual World - Arbitration & Mediation in the Metaverse(Jun 3 2022)
5	SCCA Legal Eagle Challenge - Masterclass 2022(Jun 25 2022)
6	Virtual Dispute Resolution in Asia - AIJA Conference(Aug 24 2022)
7	Mediating a \$1B International Dispute: Insights of Mediator and Counsel to Avoid Pitfalls and Achieve Success(Aug 31 2022)
8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under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Sep 16 2022)
9	International Mediation: A Practical Look at the Merits of the Singapore Convention (Nov 24, 2021)
10	JIMC 3rd Anniversary Celebration: The Futur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 Asia(Nov 19, 2021)
11	SIMC at Seoul ADR Festival 2021: The New K-Wave(Nov 1, 2021 - Nov 5, 2021)
12	ARISE+ IPR: Introduction About IP Mediation Services in Singapore (Oct 11, 2021 - Oct 12, 2021)

출처: SIMC 누리집<sup>566)</sup>

#### 마. 싱가포르 조정의 특색

싱가포르의 상사조정은 법원연계형(court-based)이거나 사적 조정인데, 전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사에 의해 수행되고 후자는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나 싱가포르 조정센터(SMC)에 회부된다.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는 세계적인 규모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중재-조정-중재” 절차가 활용되기도 한다. 싱가포르에서 조정은 2017년 11월 1일에 싱가포르 조정법(Mediation Act 2017)이 도입되고, 2020년 9월 12일에 싱가포르 조정법에 관한 협약(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ct)이 도입되어 당사자들이 싱가포르 법원에 조정이 성립된 화해 합의(mediated settlement agreement)를 법원의 명령(order of the court)으로 기록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 조건의 후속 위반이 있는 경우 해당 화해 합의를 법원 명령으로 직접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된다.<sup>567)</sup>

적 변호사 20여 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열렸다.

566) <https://simc.com.sg/professional-development/>. 2022.10.4. 최종 방문

## 제2절 | 홍콩 국제중재센터(Hong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 1. 홍콩 국제중재 현황과 기반시설

#### 가. 홍콩 국제중재 현황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1980년대에 설립된 홍콩 자체 중재기관으로 정부의 간섭 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다. HKIAC가 발표한 2021년 통계에 따르면, HKIAC가 관장한 중재사건 중 국제무역과 상품판매에 관한 분쟁이 2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법 분쟁(19.5%), 해사 분쟁(17%), 금융 분쟁(16.2%), 건설 분쟁(9.4%) 순이었다. HKIAC는 2021년 중재 277건, 조정 12건, 도메인 네임 분쟁 255건 등 모두 514건이 접수되었으며,<sup>568)</sup> 전체 중재사건 분쟁규모는 약 70억 달러이고 사건 당 평균 분쟁규모는 약 2,480만 달러로 나타났다.<sup>569)</sup>

2013년 1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홍콩국제중재센터에서 처리한 중재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6.9개월, 중재비용은 137,332(US\$)였다.<sup>570)</sup>

#### 나. 국제중재 기반시설

##### (1)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중재재판소 아시아 사무소(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ICA")

파리에 기반을 둔 ICC-ICA는 2008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ICC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홍콩에 그 사무국의 첫 해외 사무소를 개설했다.<sup>571)</sup>

567) <https://www.linklaters.com/ko-kr/insights/publications/commercial-mediation-a-global-review/commercial-mediation-a-global-review/singapore>. 2022.10.4. 최종 방문.

568)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접수된 조정분쟁사건은 총12건이다. "HKIAC Annual Report 2021", p.9.

569)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2022.6.26. 최종 방문.

570) <https://www.hkiac.org/arbitration/costs-duration>. 2022.6.26. 최종 방문.

571) [https://www.doj.gov.hk/en/legal\\_dispute/arbitration.html](https://www.doj.gov.hk/en/legal_dispute/arbitration.html). 2022.11.1. 최종 방문. <https://iccwbo.org/dispute-resolution-services/arbitration/>.

(2) 중국 국제경제 및 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중국 국제경제 및 무역중재위원회(CIETAC)는 1956년에 설립되었으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경험이 풍부한 중재기관으로 중국에서 대부분의 외국 관련 중재 사건을 처리한다. 2012년 9월 CIETAC 홍콩중재센터는 중국 본토 이외의 지역에 설립된 첫 번째 지부로 중재합의가 ‘CIETAC 홍콩중재센터 내 중재(arbitration in CIETAC Hong Kong)’ 또는 ‘홍콩 내 CIETAC에서의 중재(arbitration in CIETAC in Hong Kong)’라고 서명된 사건을 주로 처리한다.<sup>572)</sup>

(3) 중국해사중재위원회(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MAC”)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는 1958년 11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1959년 1월 22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중국국제상공회의소) 내에 설립되었으며, 해상, 운송, 물류 관련 분쟁 및 당사자가 합의한 그 밖의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중재기관이다. 중국해사중재위원회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으며 홍콩 특별행정구에 중재센터를 두고 있다.<sup>573)</sup>

(4)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국가간 중재와 그밖의 분쟁해결 촉진하기 위해 1899년에 설립되었으며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국제사회의 진화하는 분쟁 해결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현대적이고 다면적인 중재기관으로 발전했다.<sup>574)</sup> 2015년 1월 PCA는 중앙인민정부와 주최국 협정 및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와 관련 행정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중재센터로서 위상을 향상시키고 있다.<sup>575)</sup>

(5) 홍콩해사중재협회(Hong Kong Maritime Arbitration Group, “HKMAG”)

홍콩해사중재협회(HKMAG)는 원래 홍콩국제중재센터 지부였으나 해상 중재를 전

572) [http://www.cietachk.org.cn/portal/showIndexPage.do?pagePath=en\\_US/index&userLocale=en\\_US](http://www.cietachk.org.cn/portal/showIndexPage.do?pagePath=en_US/index&userLocale=en_US). 2022.11.1. 최종 방문.

573) <http://www.cmac.org.cn/en/>. 2022.11.1. 최종 방문

574) <https://pca-cpa.org/en/about/>. 2022.11.1. 최종 방문

575)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1501/04/P201501040801.htm>. 2022.11.1. 최종 방문.



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2019년 3월에 독립적인 중재기관이 되었다. 홍콩해사중재협회는 홍콩 해사 중재 및 조정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 협회 회원은 해운업무에 정통하거나 해운무역과 관련된 홍콩시민 또는 홍콩에 거주 및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협회 중재인은 국제중재 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국제해운무역업무에 정통하며 동서양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있<sup>576)</sup>

#### (4) 국제 온라인 분쟁 해결 센터(“eBRAM”)

국제 온라인 분쟁 해결 센터(eBRAM International Online Dispute Resolution Centre Limited, “eBRAM”)는 2018년 6월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주로 비즈니스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비용 효율적인 온라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sup>577)</sup>

#### (5) 중재촉진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Promotion of Arbitration)

홍콩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국제중재 서비스의 선두 센터로 홍보하기 위해 법무 부장관은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중재촉진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홍콩 내외에서의 중재서비스의 촉진을 위한 전반적인 전략과 지속적이고 새로운 계획(Initiatives)에 관하여 조언 및 조정을 한다.

#### (6) 통합분쟁 방지 및 해결 사무소(Inclusive Dispute Avoidance and Resolution Office, IDAR Office)

변화에 더 잘 대처하고 일대일로 사업과 광둥-홍콩-마카오 광역만권역 계획이 제공하는 추가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2019년 1월 2일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분쟁 방지 및 해결 사무소(IDAR Office)가 설립되었다.<sup>578)</sup>

IDAR Office의 업무에는 다른 관할과 국제기구와의 국제중재 및 조정 문제와 관련

576) <https://www.hkmag.org.hk/home>. Hong Kong Maritime Arbitration Q&As 참조, 2022.11.1. 최종 방문.

577) <https://www.ebram.org/>. 2022.11.1. 최종 방문

578)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민사과(Civil Division)의 중재팀과 조정팀 그리고 국제법과(International Law Division)의 국제기구 및 법률협력팀의 지원을 받아 IDAR Office는 부서의 조정 및 중재 업무의 조정을 강화하고 관련 국제, 국내 및 지역 기관과 협력하며, 분쟁 방지 및 해결 서비스를 관련 운영 위원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여 협력 또는 파트너십 계약을 추진하고 체결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홍콩에서 열리는 여러 중요한 국제 행사 및 활동을 조직, 지원 또는 장려할 뿐만 아니라 해외 역량 강화 및 판촉 활동을 통해 거래 성사 및 분쟁 해결에 있어 홍콩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sup>579)</sup>

## 2. 중재인의 선정과 확정

### 가. 중재인 선정

HKIAC의 중재인 선정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HKIAC에서 임명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 또는 공동중재인에 의한 중재인 지명은 HKIAC의 확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선정이 효력을 갖는다(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제9.1조). HKIAC는 일반적으로 HKIAC 웹사이트에 게시된 중재인 패널 또는 목록에서 중재인을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HKIAC는 중재인 패널 또는 목록 이외에서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중재인의 자격(qualifications)으로는 수년간의 경험, 국적, 언어 능력, 가용도, 실무지, 효율적이고 비용절감적인 중재를 수행하기 위한 헌신과 능력 등이 포함된다.<sup>580)</sup>

#### (1) 중재인수 결정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이하 “2018년 중재규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HKIAC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중재절차가 단독중재인에게 회부될지 또는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될지 여부를 결정한다(제6.1조)

#### (2) 단독중재인의 선정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가 없는 한 ① 중재절차의 개시 전에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

579)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Department of Justice/Invest Hong Kong, 2019.4., p.14.

580) <http://www.hkiac.org/arbitration/arbitrators>. 2022.10.24. 최종 방문.

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② 중재절차의 개시 이후에 당사자들이 단독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③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하여 HKIAC가 해당 분쟁을 단독중재인에게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자들 중 마지막으로 HKIAC의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2018년 중재규칙 제7.1조). 당사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HKIAC가 단독중재인을 선정한다(제7.2조).

### (3) 공동중재인의 선정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가 없는 한, 양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이 3인의 중재판정부에 회부되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① 중재절차의 개시 전에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각 당사자는 중재요청서와 답변서를 통하여 중재인을 각각 지명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중재절차의 개시 이후에 당사자들이 3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 신청인은 그와 같은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인 지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③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를 합의하지 못하여 HKIAC가 3인의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HKIAC의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중재인 지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인을 지명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선정된 2인의 중재인들은 중재판정부의 의장중재인으로 활동할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한다. 선정 또는 확정된 2인의 중재인들이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HKIAC가 의장중재인을 선정한다(2018년 중재규칙 제8.1조).

나. 중재인의 국적

2021년 HKIAC가 2018년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으로 선정된 164명 중 118명은 당사자가 지명한 사례이고 나머지 46명은 공동중재인이 지명한 사례이다.<sup>581)</sup> 중재인의 출신 또는 국적은 아래 <표 5-11>과 같다.

▶▶ [표 5-11] 중재인의 출신 또는 국적

순위	HKIAC가 선정한 중재인	당사자 또는 공동중재인이 지명한 중재인
1	Hong Kong - 27.5% (39)	United Kingdom - 25.6% (42)
2	United Kingdom - 19.7% (28)	Hong Kong - 23.2% (38)
3	Dual Nationals - 13.4% (19)	Dual Nationals - 15.2% (25)
4	Australia - 10.6% (15)	United States - 12.2% (20)
5	Mainland China - 5.6% (8)	Mainland China - 5.5% (9)
6	Singapore - 5.6% (8)	Austria - 4.3% (7)
7	United States - 3.5% (5)	Singapore - 3% (5)
8	Canada - 2.8% (4)	Australia - 2.4% (4) France - 2.4% (4)
9	Austria - 2.1% (3) France - 2.1% (3) Malaysia - 2.1% (3) New Zealand - 2.1% (3) South Korea - 2.1% (3)	Canada - 1.9% (3)
10	Finland - 0.8% (1)	Germany - 1.3% (2)
11		Brazil - 0.6% (1) Italy - 0.6% (1) Malaysia - 0.6% (1) New Zealand - 0.6% (1) Switzerland - 0.6% (1)

출처: HKIAC 누리집<sup>582)</sup>

다. 자격을 갖춘 중재인의 다양성

HKIAC가 선정한 142명 중 65명(45.8%)이 중재인 패널에서, 64명(45.1%)이 중재인 목록에서 선정된 경우이다. 그리고 13명(9.1%)은 중재인 패널과 중재인 목록 모두에 속하지 않은 경우이다. 31명(21.8%)은 여성 중재인이었고, 44명(31.0%)은 지난 3년

581)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2022.11.1. 최종 방문.

582)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2022.11.1. 최종 방문.

동안 HKIAC에서 이전에 선정된 적이 없는 중재인이었다.<sup>583)</sup>

당사자가 지명하고 HKIAC가 확인한 118명의 지정 중에는 84명(71.2%)은 중재인 패널에서, 13명(11%)이 중재인 목록에서 선정된 경우이다. 21명(17.8%)은 중재인 패널도 중재인 목록도 아닌 경우이다. 15명(12.7%)은 여성 중재인이었고, 40명(33.9%)은 지난 3년 동안 당사자가 지정하지 않고 HKIAC가 확인한 중재인이었다.<sup>584)</sup>

#### 라. 중재인의 독립성·공정성 확보

확정된 중재판정부는 항상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들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단독중재인 또는 의장중재인은 어떠한 당사자와도 같은 국적을 갖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2018년 중재규칙 제11.2조). 중재인 후보자는 중재인으로 선정 또는 확정되기 전에 ① 자신이 해당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가용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하고, ②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 당사자들에게 이미 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중재인이 확정 또는 지명된 후 및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중재인은 이를 지체 없이 당사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제11.4조).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중재인 또는 중재인 후보, 의장중재인 후보와 중재절차에 관한 일방적인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제11.5조). 중재인이 그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재인이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임무 수행을 지체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인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제11.6조).

#### 마. 중재언어

2021년에 개시된 중재의 78.7%가 영어로 진행되었고, 15.8%는 중국어로, 5.5%는 영어와 중국어를 사용했다.<sup>585)</sup>

583)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2022.11.1. 최종 방문.

584)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2022.11.1. 최종 방문.

585) <https://www.hkiac.org/about-us/statistics>. 2022.11.1. 최종 방문.

### 3. 수당 및 경비 등 중재비용

2018년 중재규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경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합의한 후,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HKIAC에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들이 이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동 중재규칙 별표(Schedule) 2의 내용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수당 및 비용이 결정된다(제10.1조).

#### 가. 중재인 수당(Arbitrator's Fees)

당사자가 지명한 각 중재인의 수당은 해당 각 중재인을 지명한 당사자와 지명된 중재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당사자가 지명한 단독중재인 또는 당사자가 지명한 2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지명된 의장중재인의 수당은 해당 중재인과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2018년 중재규칙 제10.2조). 3인의 중재인에 회부되는 사건의 경우, HKIAC는 그 재량으로 단독중재인 비용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재비용을 증액할 권한이 있다(제10.3조 (b)항).

▶▶ [표 5-12] 중재인 수당

신청금액(HKD)	중재인 수당(HKD)
0 ~ 400,000	11.000% of amount in dispute
400,001 ~ 800,000	44,000 + 400,000초과×10.000%
800,001 ~ 4,000,000	84,000 + 80,000,000초과×5.300%
4,000,001 ~ 8,000,000	253,600 + 4,000,000초과×3.780%
8,000,001 ~ 16,000,000	404,800 + 8,000,000초과×1.730%
16,000,001 ~ 40,000,000	543,200 + 160,000,000초과×1.060%
40,000,001 ~ 80,000,000	797,600 + 40,000,000초과×0.440%
80,000,001 ~ 240,000,000	973,600 + 80,000,000초과×0.250%
240,000,001 ~ 400,000,000	1,373,600 + 240,000,000초과×0.228%
400,000,001 ~ 600,000,000	1,738,400 + 400,000,000초과×0.101%
600,000,001 ~ 800,000,000	1,940,400 + 600,000,000초과×0.067%
800,000,001 ~ 4,000,000,000	2,074,400 + 800,000,000초과×0.044%
4,000,000,001~	3,482,400 + 4,000,000,000초과×0.025% 최대 12,574,000

출처: HKIAC 누리집<sup>586)</sup>

586) 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Schedule 3 ARBITRAL TRIBUNAL'S FEES

### 나. HKIAC의 관리비용(Administrative Fees)

당사자들은 심리장소의 임차료, 통역 및 녹취록 비용 등과 같이 중재절차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행정 지원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관리비용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2018년 중재규칙 별표 2 제4조). 관리비용은 2018년 중재규칙 별표(Schedule) 1 제2조에 따라 아래 <표 5-13>과 같이 결정되며, 당사자들은 HKIAC의 관리비용 납부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별표 1 제2.8조).<sup>587)</sup>

▶▶ [표 5-13] HKIAC의 관리비용

신청금액(HKD)	관리비용(HKD)
0~400,000	19,800
400,001~800,000	19,800+400,000초과×1.300%
800,001~4,000,000	25,000+80,000,000초과×1.000%
4,000,001~8,000,000	57,000+4,000,000초과×0.545%
8,000,001~16,000,000	78,800+8,000,000초과×0.265%
16,000,001~40,000,000	100,000+160,000,000초과×0.200%
40,000,001~80,000,000	148,000+40,000,000초과×0.110%
80,000,001~240,000,000	192,000+80,000,000초과×0.071%
240,000,001~400,000,000	305,600+240,000,000초과×0.059%
400,000,001~	400,000

출처: HKIAC 누리집<sup>588)</sup>

### 다. HKIAC 신청수수료(Registration Fee)

신청인은 2018 HKIAC 중재규칙 제4.4조 및 별표(Schedule) 1에 따라 신청인은 중재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 HKIAC 홈페이지에 공고된 바에 따라 HKIAC가 산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제1.1조). 신청인이 신청수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HKIAC는 제4.6조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제1.2조), HKIAC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신청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제1.3조).<sup>589)</sup>

587) 2018 HKIAC Administered Arbitration Rules, paragraph 2.8 of Schedule 1. The partie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HKIAC's Administrative Fees.

588) <http://www.hkiac.org/content/2018-schedule-fees>. 2022.10.24. 최종 확인.

589) <http://www.hkiac.org/content/2018-schedule-fees>. 2022.10.24. 최종 확인.

### 라. 중재판정부 및 간사의 수당(Fees of Arbitral Tribunal and Tribunal Secretary)

2018년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HKIAC가 양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은 예치금액에서 지급하는데, HKIAC가 중재판정부에 수당 등을 지급할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금액으로 지급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HKIAC는 당사자들이 불충분한 금액 관련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청구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별표 3 제2.1조 및 제2.2조). 중재인을 어느 당사자가 지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들은 중재인에게 지급될 수당과 비용을 부진정연 대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다(제2.4조).

### 마. 기피신청 수수료

2018 HKIAC 중재규칙 제11.7조에 따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는 5만 홍콩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환불되지 않음). 기피신청서가 둘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당사자는 공평한 나누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sup>590)</sup>

### 바. 긴급중재인 절차(Emergency Arbitrator Procedures) 수수료

긴급중재인의 수수료는 2018년 중재규칙 별표 2에 따라 결정되며, 별표 4 제5조에 따라, 긴급중재인의 총 수수료는 당사자들이 동의하거나 HKIAC가 예외적인 상황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20만 홍콩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긴급중재인 임명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일에 25만 홍콩달러의 신청 납부금(Application Deposit)을 지급해야 한다. 신청서가 둘 이상의 당사자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당사자들은 신청 납부금을 공평하게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sup>591)</sup> 물론 사건의 성질 및 긴급중재인과 HKIAC가 수행하는 업무의 양과 성질을 고려하여 긴급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언제라도 증가되는 긴급중재인의 수당 또는 HKIAC의

590) <http://www.hkiac.org/content/2018-schedule-fees>. 2022.10.24. 최종 확인.

591) <http://www.hkiac.org/content/2018-schedule-fees>. 2022.10.24. 최종 확인.



관리비용에 관한 추가비용을 당사자가 납부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2018년 중재규칙 별표 4 제5조 참조).

#### 4. 국제중재 및 조정의 허브로서 홍콩

홍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해외직접투자부(Invest Hong Kong)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이 중재 및 조정을 통해 국제적인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국가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첫째, 홍콩의 사법부는 중재 친화적인 접근법으로 국제 분쟁 해결의 영역에서 탁월하며, 두 당사자가 유효한 중재합의를 한 경우 법원은 중재를 우선하여 법원 절차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것이다.<sup>592)</sup> 또한 법원은 중재절차의 전반적인 유연성 및 무결성을 지지한다. 둘째, 홍콩 중재 판결은 뉴욕 협약에 따라 150개 이상의 계약국에서 집행될 수 있다. 셋째,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는 홍콩에서 자생한 중재기관임에도 2016년, 2017년 및 2018년 Global Arbitration Review Hearing Centres Survey에서 위치, 금전, 직원의 도움 및 IT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넷째, 수많은 존경받는 국제기구들이 홍콩을 자신들의 중국 관할권 밖에서의 첫 번째 글로벌 소재지로 만들기 위해 선택해왔으며, 이러한 국제중재기관의 융합은 홍콩을 아시아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제분쟁해결서비스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왔다.<sup>593)</sup>

##### 가. 풍부한 법률 및 전문가 보유

글로벌 금융 및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은 상업 및 금융, 해양, 인프라 및 건설,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및 국제투자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법률 및 전문적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각 산업은 중재 또는 기타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일련의 고유한 상황 및 요구 조건을 갖게 되는데, 홍콩은 이러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풍부한 법조인 인력풀을 가지고 있다.<sup>594)</sup>

592) 우리나라 중재법도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의 항변을 하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593)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Department of Justice/Invest Hong Kong, 2019.4., p.12.

594)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p.12.

### 나. 사용자 친화적 중재법

홍콩은 중재입법으로 2011년에 UNCITRAL 국제상업중재모델법을 채택했다. 이러한 사용자 친화적인 입법은 홍콩에 더 많은 국제중재를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는 명확하고 확실하며 접근가능한 중재법체계를 보장하게 된다.<sup>595)</sup>

### 다. 제3자 자금지원(Third Party Funding)

중재 이용자의 재정 자원으로 충당하고 관리하는 데 입증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3자 자금지원이 있다. 홍콩은 2017년 중재·조정 입법(2017년 제3자 자금지원 조례)은 중재·조정을 위한 제3자 자금지원이 보통법(common law) 원칙에 의해 금지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제3자 자금지원 실무 강령(A Code of Practice for Third Party Funding of Arbitration)은 제3자 자금제공자가 중재를 위해 제3자 자금지원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제3자 자금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무관행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596)</sup>

### 라. 조정제도의 폭넓은 활용과 조정인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홍콩 조정 조례(Hong Kong Mediation Ordinance)는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조정의 광범위한 활용과 발전을 장려한다. 홍콩은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 우호적인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 사이에 사과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사과 입법(apology legislation)을 가진 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다. CEPA<sup>597)</sup> 조정 체계는 다른 일방이 어느 일방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계약의 실질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CEPA 조정 체계가 준비됨에 따라, 홍콩 특별행정구(HKSAR) 정부의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는 아시아에서 투자 조정인팀을 구성하고 홍콩을 훈련 및 역량 강화 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 조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sup>598)</sup>

595)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p.13.

596)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p.13.

597) 'CEPA'란 의사소통(Communication), 교육(Education) 및 참여(Participation), 인식 향상(Awareness)을 의미한다.

그 밖에도 법무부(Doj)는 아시아 및 전 세계의 판사 및 공무원들을 위한 국제법, 분쟁 해결과 관련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법률서비스 및 분쟁 해결 서비스를 위한 지역 및 국제 센터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다.<sup>599)</sup>

#### 마. 법률 허브로서 지위 강화

홍콩의 법치주의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홍콩 중앙 비즈니스 지구(Hong Kong's Central Business District)의 중심부에 법률 허브(Legal Hub)가 개발되고 있으며, 이곳은 홍콩의 주요 글로벌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여러 법률 관련 기관에 제공되고 있고, 국제 기구로부터 평판도 좋다. 현재 법률 관련 기관과 홍콩의 주요 국제법 기구 및 분쟁 해결 기구는 아래 <표 5-14>와 같다.<sup>600)</sup>

#### ▶▶ [표 5-14] 홍콩의 주요 국제법 기구 및 분쟁 해결 기구

- Asian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AAIL) / [www.aail.org](http://www.aail.org)
- Asia Pacific Regional Office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 / [www.hcch.net](http://www.hcch.net)
- CEDR (Centre for Effective Dispute Resolution) Asia Pacific Limited / [www.cedr-asia-pacific.com](http://www.cedr-asia-pacific.com)
-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CIArb) (East Asia Branch) / [www.ciarbasia.org](http://www.ciarbasia.org)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Hong Kong Arbitration Center (CIETAC - HK Arbitration Center) / [www.cietachk.org](http://www.cietachk.org)
-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Hong Kong Arbitration Center (CMAC - HK Arbitration Center) / [www.cmac.org.cn](http://www.cmac.org.cn)
- Financial Dispute Resolution Centre (FDRC) / [www.fdrc.org.hk](http://www.fdrc.org.hk)
- Hong Kong Institute of Arbitrators (HKI Arb) / [www.hkiarb.org.hk](http://www.hkiarb.org.hk)
-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HKIAC) / [www.hkiac.org](http://www.hkiac.org)
- Hong Kong Maritime Arbitration Group (HKMAG) / [www.hksoa.org/maritime\\_arbitration\\_group.html](http://www.hksoa.org/maritime_arbitration_group.html)
- Hong Kong Mediation Accreditation Association Limited (HKMAAL) / [www.hkmaal.org.hk](http://www.hkmaal.org.hk)
- Hong Kong Mediation Centre (HKMC) / [www.mediationcentre.org.hk](http://www.mediationcentre.org.hk)
- International Advocacy Training Council Limited / [www.i-atc.com](http://www.i-atc.com)

598)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p.14.

599)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p.15.

600)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p.16. 홍콩의 '법률 허브(Legal hub)'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www.legalhub.gov.hk](http://www.legalhub.gov.hk)에서 확인할 수 있다.

- Joint Mediation Helpline Office (JMHO) / www.jointmediationhelpline.org.hk
-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sia Office (ICC – ICA) / www.icchkcbc.org and https://iccwbo.org/
- Vis East Moot Foundation Limited (Vis East Moot) / www.cisgmoot.org

출처: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p.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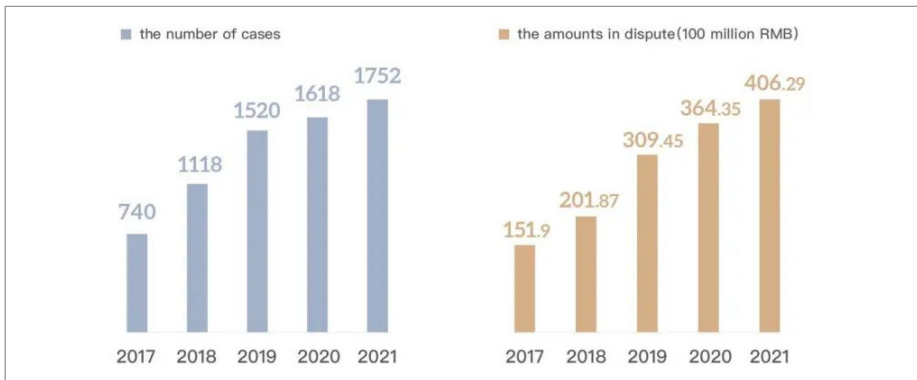
### 제3절 | 상하이 국제중재센터(Shangh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SHIAC)

#### 1.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현황

##### 가. 사건현황

2021년에 SHIAC가 접수한 사건은 1,752건이고 전년 대비 132건(8.15%△)이 상승하였다. 전체 분쟁금액은 406.29억 위안이며 전년 대비 41.94억 위안(11.51%△)이 증가하였다. 2021년도에 접수된 사건 중 58건의 분쟁금액이 1억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평균 분쟁금액은 2,300만 위안을 넘었다.<sup>601)</sup>

▶▶▶ [그림 5-4] 2021년도 SHIAC 사건수 및 분쟁금액



출처: SHIAC, 「2021 Annual Report」<sup>602)</sup>

601) SHIAC, 「2021 Annual Report」, [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 2022.10.24. 최종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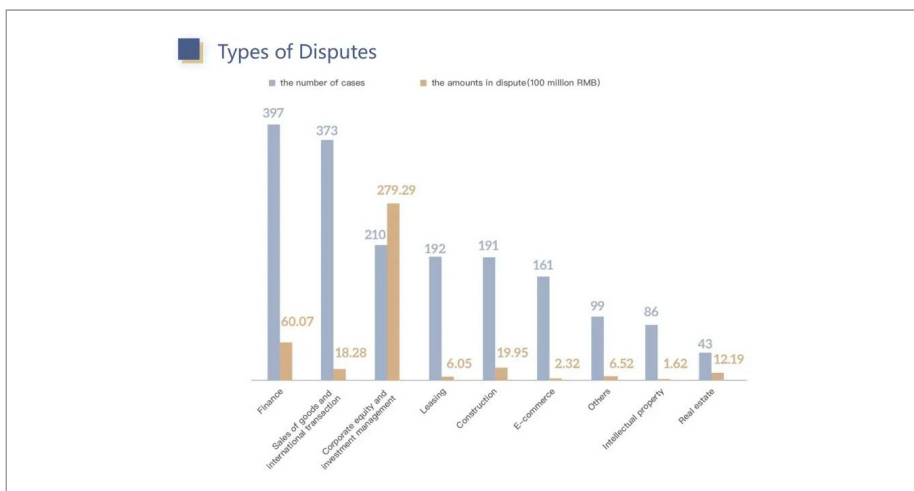
## 나. 분쟁당사자

2021년에 접수된 사건의 당사자들은 28개국에서 왔으며, 중국 본토(Mainland China)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중재에 참가한 당사자 중 110명은 외국 당사자들이며 미국, 일본, 독일 순이다.<sup>603)</sup>

## 다. 분쟁유형

가장 많은 분쟁유형은 금융사건으로 397건(23%), 국제거래가 373건(21%), 기업지분 및 투자관리가 210건(12%)을 차지하였다. 분쟁금액은 기업지분 및 투자관리가 2억7,929만 위안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금융이 6,007만 위안(15%), 건설이 1,995만 위안(5%) 순이다.<sup>604)</sup>

▶▶ [그림 5-5] SHIAC 분쟁유형



출처: SHIAC, 「2021 Annual Report」<sup>605)</sup>

602) [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 2022.10.24. 최종 방문.

603) SHIAC, 「2021 Annual Report」, [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 2022.10.24. 최종 방문.

604) SHIAC, 「2021 Annual Report」, [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 2022.10.24. 최종 방문.

605) [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 2022.10.24. 최종 방문.

### 라. 중재언어

2021년에 접수된 14건의 사건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절차상의 언어로 영어를 채택하였고 7건의 사건이 영어와 중국어 모두를 절차상의 언어로 채택하였다.<sup>606)</sup>

### 마. 중재인 또는 조정인의 자격요건

상하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인과 조정인의 임명 기간은 5년으로 2021년 임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중재인 및 조정인 명부 작성을 위해 선발 및 채용 공고에 나타난 중재인 또는 조정인의 선발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607)</sup>

신청자는 건강하고, 중재를 사랑하고, 공정하고 정직하며, "정관"에 동의하고, 중재인 및 조정인 관리에 대한 위원회의 규칙과 중재인 및 조정인에 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높은 전문가 수준, 원칙적으로 68세 이하(업계에서 경험이 있고 높은 평판은 적절하게 완화될 수 있음).

위의 조건 외에도 중재인 신청자는 중재인 자격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1) 국가통합법률전문가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전문가자격을 취득하고 8년 동안 중재업무에 종사한 자
- (2) 변호사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 (3) 8년 이상 판사로 재직한 자
- (4) 법률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고 고위 전문직을 가진 자;
- (5) 법률 지식이 있고 경제 및 무역 전문 업무에 종사하고 고위 전문 직위를 보유하거나 동일한 전문 수준을 가진 자

## 2. 중재인의 선정 및 구성

### 가. 중재인의 선정

2021년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177건의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특별합의를 하였으며, 이들 중 108건에서 의장중재인(presiding arbitrator) 및 단독중재인(sole arbitrator)을 선정하는 방식에 관한 특별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0건은 SHIAC의 중재인패널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sup>608)</sup>

606) SHIAC, 「2021 Annual Report」, [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 2022.10.24. 최종 방문.

607) 上海国际仲裁中心新一届仲裁员、调解员换届公告(公告日期: 2021-03-10), <http://www.shiac.org/SHIAC/notice.aspx?id=10718>. 2022.10.23. 최종 확인

2021년에 1,752사건 중 SHIAC에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을 한 것이 1,168건이었고, SHIAC가 중재인 선정을 한 것은 2,026건이었다(의장중재인 847건, 단독중재인 653건, 공동중재인 526건). 당사자 또는 SHIAC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들 중 35명은 중국 본토 이외의 국적 출신이며 668명은 여성이었다.<sup>609)</sup>

#### 나. 국제중재인의 구성

상하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상하이국제중재센터)는 심의 및 승인절차를 거쳐 2021년 8월 1일 새로운 국제중재인(外籍仲裁员) 명부를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75개국 총 286명이 등재되어 있다. 새로운 중재인들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중재인으로서 활동하게 된다.<sup>610)</sup>

▶▶▶ [표 5-15]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패널 구성(국가별)(2021.8.1.~2026.4.30.)

국적(거주지)	인원(명)	국적(거주지)	인원(명)
오스트리아	2	스페인	8
영국	28	싱가포르	19
브라질	5	터키	2
이란	5	캐나다	4
일본	8	말레이시아	3
파라과이	4	남아프리카공화국	11
중국	2	나이지리아	2
이탈리아	15	미국	24
러시아	4	덴마크	4
프랑스	13	브루나이 다루살람	1
포르투갈	1	루마니아	3
스위스	10	베트남	1
인도	3	아일랜드	1
독일	15	뉴질랜드	3

608) SHIAC, 「2021 Annual Report」 [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 2022.10.24. 최종 방문.

609) SHIAC, 「2021 Annual Report」 [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http://www.shiac.org/shiac/news_detail_E.aspx?page=12022&id=1991). 2022.6.26. 최종 방문.

610)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누리집, <http://www.shiac.org/SHIAC/arbitrator.aspx?flag=1>. 2022.10.23. 최종 방문

국적(거주지)	인원(명)	국적(거주지)	인원(명)
아르메니아	2	보츠와나	1
벨기에	3	노르웨이	1
호주	10	헝가리	1
에콰도르	1	카자흐스탄	1
우크라이나	1	인도네시아	3
멕시코	2	케냐	2
필리핀	1	그리스	2
칠레	2	이스라엘	2
이집트	3	아랍에미리트	1
대한민국	6	세르비아	2
모리셔스	1	크로아티아	1
스웨덴	3	네덜란드	3
코스타리카	1	사이프러스	1
슬로바키아	1	레바논	1
바레인	1	콜롬비아	1
라트비아	1	탄자니아	4
스리랑카	4	아르헨티나	1
파키스탄	1	우즈베키스탄	1
키르기스스탄	1	몽골	2
타이	1	폴란드	1
짐바브웨	1	에스토니아	1
네팔	1	쿠바	1
슬로베니아	1	체코	1
요르단	1		

출처: 상하이 국제중재센터 누리집<sup>611)</sup>

### 3. 수수료 등 중재비용

각 사건이 접수되면, 중재신청 심사, 중재절차 개시, 전산화 관리, 서류 제출을 위한 비용을 포함한 등록 수수료(Registration Fee)로 10,000위안의 추가 금액이 청구된다. 중재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신청금액을 확정되지 않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수수료의 금액은 상하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상하이 국제중재센터) 사무국(Secretariat)에서 정한다. 만일 중재 수수료가 외화(foreign currency)로

611) [http://www.shiac.org/upload\\_files/file/2021/20210816152714\\_0030.pdf](http://www.shiac.org/upload_files/file/2021/20210816152714_0030.pdf). 2022.6.26. 최종 방문



청구된다면, 중재수수료표(Arbitration Fee Schedule)에 명시된 해당 위안화 가치에 해당하는 외화를 지급해야 한다. 중재수수료표에 따른 중재 수수료 부과와는 별도로, 상하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중재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밖의 추가비용과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sup>612)</sup>

▶▶▶ [표 5-16] 국제중재사건의 수수료 및 비용

신청금액(RMB Yuan)	수수료(RMB Yuan)
0~1,000,000	최저 10,000 / 신청금액×3.5%
1,000,001~5,000,000	35,000+80,000,000초과×2.5%
5,000,001~10,000,000	135,000+5,000,000초과×1.5%
10,000,001~50,000,000	210,000+10,000,000초과×1%
50,000,000~	610,000+50,000,000초과×0.5%

출처 : 상하이국제중재센터 누리집<sup>613)</sup>

## 제4절 | 국제중재 및 조정허브의 성공 및 한계요인 분석

### 1. 취약한 중재산업 기반

#### 가. 다양한 중재인풀 구성

국제중재 허브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다방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재판정 패널의 구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재인의 풀(pool)을 살펴보면, 법조계, 실업계 학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각 분야 1,7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단을 갖추고 중재인 선정을 지원하고 있다(아래 <표 5-17>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황 참조).

612) Shanghai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누리집, [http://www.shiac.org/shiac/arbitrate\\_fee\\_E.aspx?p=0](http://www.shiac.org/shiac/arbitrate_fee_E.aspx?p=0). 2022.10.23. 최종 방문

613) [http://www.shiac.org/shiac/arbitrate\\_fee\\_E.aspx?p=0](http://www.shiac.org/shiac/arbitrate_fee_E.aspx?p=0). 2022.10.23. 최종 방문

▶▶▶ [표 5-17]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현황

구분	법조계	실업계	학계	공공 단체, 기타	회계사, 변리사 등	총계
국내 중재인	581	302	205	101	12	1,203
국제 중재인	515(426)	28(20)	66(38)	16(13)	0	625(497)
합계	1,007	322	243	114	14	1,700

※ 괄호 안은 국내중재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 국제중재인

※ 2022. 6. 1. 기준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누리집 중재인 현황<sup>614)</sup>

### 나. 중재인 자격요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위촉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5-18]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 위촉기준

법조계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
실업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상장기업은 3년 이상, 비상장기업은 5년 이상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전문직종에 15년 이상 또는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학계	대학교수로 5년 이상, 박사학위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공공, 기타 전문단체	해당 기관에서 임원으로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 전공분야에서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현직에서 근무한 자
주한 외국인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 교수, 주한 외국상사 내지 무역유관기관의 임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한 자, 전문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국외 거주자	국내 거주자의 기준에 준하여 위촉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누리집<sup>615)</sup>

## 2. 국내·국제 중재제도 인식 및 이용률 저조

민간 및 공공부문<sup>616)</sup>에서 분쟁해결방안으로써 중재에 대한 효용과 장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중재 이용률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국제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글로

614)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person01.jsp](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person01.jsp). 2022.10.23. 최종 방문

615)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person01.jsp](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person01.jsp). 2022.10.23. 최종 방문.

6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르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상의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제34조의2).

별 스탠더드가 되는 국제중재가 국내에서 활성화되는 데 저해 요소이기도 하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업에 의한 국제중재 이용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해외 기업 등과의 계약 교섭 단계부터 장래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해결책의 하나로서 국내에서 국제중재 이용을 염두에 두고 교섭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제중재는 민간을 주체로 하는 분쟁해결 절차이며, 중재판단의 중립성·공평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주체적인 대응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효과적인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비용은 다른 국가 소재 중재기관의 중재기관과 비교해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 국제중재센터의 국제중재사건의 중재비용은 신청금액이 100만 위안(한화 190만원 정도)이하 일 때 최소 1만 위안(한화 190만원)부터 3만5,000위안(한화 670만원)으로 우리나라(260만원)와 비교해 3배 정도에 달한다. 따라서 국제중재에서 조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분쟁당사자들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나 조정 제도를 선택하는데 있어 비용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요소라고 볼 수도 있다.

▶▶▶ [표 5-19] 분쟁금액별 중재비용 및 중재인 수당

단위: 원

신청금액	중재비용					
	관리요금	수당 최소	수당 최대	수당 평균	신청 요금	합계액
10,000,000	50,000	0	0	400,000	0	450,000
10,000,001	50,000	0	0	400,000	0	450,000
20,000,000	90,000	0	0	400,000	0	490,000
30,000,000	135,000	0	0	400,000	0	535,000
50,000,000	225,000	0	0	400,000	0	625,000
50,000,001	225,000	0	0	600,000	0	825,000
80,000,000	360,000	0	0	900,000	0	1,260,000
100,000,000	450,000	0	0	1,100,000	0	1,550,000
100,000,001	450,000	0	0	1,100,000	0	1,550,000
130,000,000	540,000	0	0	1,320,000	0	1,860,000
150,000,000	600,000	0	0	1,470,000	0	2,070,000

신청금액	중재비용					
	관리요금	수당 최소	수당 최대	수당 평균	신청 요금	합계액
180,000,000	690,000	0	0	1,700,000	0	2,390,000
200,000,000	750,000	0	0	1,850,000	0	2,600,000
200,000,001	1,800,000	2,250,000	7,500,000	4,870,000	1,000,000	7,670,000
500,000,000	3,300,000	4,500,000	16,500,000	10,500,000	1,000,000	14,800,000
500,000,001	3,300,000	4,500,000	16,500,000	10,500,000	1,000,000	14,800,000
800,000,000	4,800,000	6,000,000	24,900,000	15,450,000	1,000,000	21,250,000
1,000,000,000	5,800,000	7,000,000	30,500,000	18,750,000	1,000,000	25,550,000
1,000,000,001	5,800,000	7,000,000	30,500,000	18,750,000	1,000,000	25,550,000
2,000,000,000	10,800,000	9,500,000	40,500,000	25,000,000	1,000,000	36,800,000
5,000,000,000	25,800,000	17,000,000	70,500,000	43,750,000	1,000,000	70,550,000
5,000,000,001	25,800,000	17,000,000	70,500,000	43,750,000	1,000,000	70,550,000
7,500,000,000	32,050,000	18,000,000	75,500,000	46,750,000	1,000,000	79,800,000
10,000,000,000	38,300,000	19,000,000	80,500,000	49,750,000	1,000,000	89,050,000
10,000,000,001	38,300,000	19,000,000	80,500,000	49,750,000	1,000,000	89,050,000
30,000,000,000	78,300,000	24,000,000	100,500,000	62,250,000	1,000,000	141,550,000
40,000,000,000	98,300,000	26,500,000	110,500,000	68,500,000	1,000,000	167,800,000
50,000,000,000	118,300,000	29,000,000	120,500,000	74,750,000	1,000,000	194,050,000
50,000,000,001	118,300,000	29,000,000	120,500,000	74,750,000	1,000,000	194,050,000
75,000,000,000	150,000,000	32,750,000	138,000,000	85,370,000	1,000,000	236,370,000
100,000,000,000	150,000,000	36,500,000	155,500,000	96,000,000	1,000,000	247,000,000
100,000,000,001	150,000,000	36,500,000	155,500,000	96,000,000	1,000,000	247,000,000
200,000,000,000	150,000,000	43,500,000	185,500,000	114,500,000	1,000,000	265,500,000
300,000,000,000	150,000,000	50,500,000	215,500,000	133,000,000	1,000,000	284,000,000
신청금액이 없는 경우	3,000,000	0	0	1,500,000	0	4,500,000

출처: 대한상사중재원 누리집, 분쟁금액별 중재비용<sup>617)</sup>

### 3. 국제 법률 허브로서의 위상 제고 필요

법률서비스 및 분쟁 해결 서비스를 위한 국제 법률 허브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홍콩정부는 특정 지역을 '법률 허브'로 개발하였고 홍콩 내 20개 이상의 법률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17) [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calc\\_2.jsp#a](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calc_2.jsp#a). 2022.5.3. 최종 방문

#### 4. 외국어 번역 중재판정문과 법령 등 데이터 구축

우리나라도 UNCITRAL 중재모델법 체계를 도입해 중재친화적인 법제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아 우리나라 중재법제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사중재판정문과 관련 법령에 대한 다양한 외국어 번역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sup>618)</sup>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도서관 누리집 등에서 국내 법령에 대한 번역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공하는 번역문은 공식 번역이 아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어번역 법령은 2022년 5월 2일 현재 민법, 회사법 등 총 14,747건이고, 비영어번역 법령은 11건에 불과하다(중재법에 대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로, 행정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대해 각각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을 뿐이다).

#### 5. 국내 민간 조정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국제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국내조정제도의 활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간 상사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절차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민간조정절차가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와 법원연계(또는 법원주도)형 중심의 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조정제도 본연의 장점을 살려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 가. 행정형 분쟁조정위원회의 난립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대안으로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한편으로는 법원형 ADR이 발전되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소관사무

6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https://www.law.go.kr/engLsSc.do?menuId=1&subMenuId=21&tabMenuId=117&query=>, 2022.5.2. 최종 방문.

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행정형 ADR의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행정형 ADR과 관련해 문제는 우선 행정형 분쟁조정제의 범위, 효력 등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분쟁조정 제도가 통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sup>619)</sup> 그리고 70여 개가 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행정형 ADR 제도가 일부를 제외하고 유명무실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sup>620)</sup>

▶▶▶ [표 5-20] 행정형 분쟁조정기관 현황 및 조정의 효력

	분쟁조정기관	조정 효력	근거 법률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제16조)	재판상 화해(제24조 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40조)	재판상 화해(제47조 제5항)	개인정보 보호법
3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제69조)	재판상 화해(제78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4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재판상 화해(제32조 제9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제4조)-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판상 화해(제35조의2)	환경분쟁 조정법
6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제29조)	재판상 화해(제31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제71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재판상 화해(제74조 제6항)	공동주택관리법
8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판상 화해(제44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9	건축분쟁전문위원회(제88조)	재판상 화해(제96조 제4항)	건축법
1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제89조)	-	국민건강보험법
11	국가지식정보위원회(제8조)	효력규정 無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제33조)	재판상 화해(제39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제78조의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4	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제70조의3)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619) 김용섭,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통권 제81호, 한국법학원, 2004.10.28-29면.

620) 이은상,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인권과 정의 제506호(2022.6.), 대한현호사협회, 115-128면 참조. 다양하게 산재한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통일성과 명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통합적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분쟁조정기관	조정 효력	근거 법률
15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제23조의4)	재판상 화해(제23조의7 제8항)	농약관리법
16	대규모유통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제20조)	재판상 화해(제27조 제5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7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제13조)	재판상 화해(제21조 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18	(시도지사) 분쟁조정위원회 (제18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제11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제34조)	재판상 화해(제38조 제3항)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 진에 관한 기본법
21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21조의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7 조 준용	도시개발법
2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제116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제117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3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분 쟁조정협의회(제73조):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 와 관련된 분쟁	재판상 화해(제78조 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제7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25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제152조의2)	-	디자인보호법
26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제41조)	재판상 화해(제46조 제2항)	발명진흥법
27	물관리위원회(제32조)	-	물관리기본법
28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제55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 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제57조, 민사상 합의의 효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9	방송분쟁조정위원회(제35조의3)	-	방송법
30	사학분쟁조정위원회(제24조의2)	-	사립학교법
31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의3)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 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제44조의10 제4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32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제23조)	재판상 화해(제28 제4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33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제10조의3)	-	산업디자인진흥법
3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제29조)	재판상 화해(제33 제4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3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제12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제26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분쟁조정기관	조정 효력	근거 법률
		민사상 합의의 효력/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제27조) <sup>621)</sup>	
36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20조)	주택임대차와 동일(제2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7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제60조)	재판상 화해(제67 제4항)	소비자기본법
38	국립수산과학원-분쟁조정협의회(제38조 제5항)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39	종자위원회(제119조)	당사자 간에 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제124조 제2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식물신품종 보호법
40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제24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제28조 제1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1	공제분쟁조정위원회(제70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제74조 제4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2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제20조)	「민법」상의 화해(제37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43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제48조의2)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44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제15조)	-	원자력 손해배상법
45	유통분쟁조정위원회(제36조)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제39조 제4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유통산업발전법
46	의료분쟁조정위원회(제19조)	재판상 화해(제37조 제4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7	의료분쟁조정중재원(제6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48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제16조)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제20조 제4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49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제17조)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제21조 제2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0	전기위원회(제53조)	-	전기사업법
51	통신분쟁조정위원회(제45조의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제45조의7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분쟁조정기관	조정 효력	근거 법률
52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제32조)	재판상 화해(제35조 제3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53	전자어음분쟁조정위원회(제16조)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	시장분쟁조정위원회(제58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제62조 제4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5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제25조)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제29조 제4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56	분쟁조정협의회(제48조)-국립중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	종자산업법
57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제12조)	재판상 화해(제25조 제6항)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8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제35조)	재판상 화해(和解) (제3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9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지방분쟁조정위원회(제166조)	-	지방자치법
60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제52조의2)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제52조의9 제2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1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16조)	재판상 화해(제28조 제6항)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6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4조)	재판상 화해(제24조의6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제54조)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제56조 제4항, 민사상 합의의 효력)	하천법
6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65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제9조의9)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료: 필자 작성

621) 금전 등의 지급 또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 없다.

## 나. 법원연계형 중심의 민사조정

### (1) 민사조정제도

#### (가) 개요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sup>622)</sup>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뉜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민사조정법 제5조 제1항),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제6조).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제7조).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제26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제27조), 이 때에는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된다(제36조).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28조 및 제29조).

#### (나) 상임 조정위원 제도

지난 2009년 2월 6일 민사조정법이 개정되어,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상임 조정위원이 위촉된 법원의 조정담당판사는, 상임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조정에

622)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민사),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 2022.6.26. 최종 방문.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임 조정위원은 법원에 상근하면서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과 마찬가지로, 상임 조정위원은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뿐 아니라 정식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상임 조정위원은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만큼, 특별히 판사·검사·변호사 등 통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나 있는 사람이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니지만 형법상의 뇌물죄가 적용된다(민사조정법 제40조의2).<sup>623)</sup>

대법원은 2009년 4월 13일 서울 지역에 박준서 전대법관 등 8명에 대하여, 부산 지역에 조무제 전대법관 등 3명에 대하여 처음으로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하였다. 서울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부산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4월 13일 서울, 부산지역에 이어서 대전, 대구, 광주 지역에 각 2명씩 6명에 대하여 새로이 상임 조정위원을 위촉했다. 대전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대전고등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대구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광주지역 상임 조정위원은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한다.<sup>6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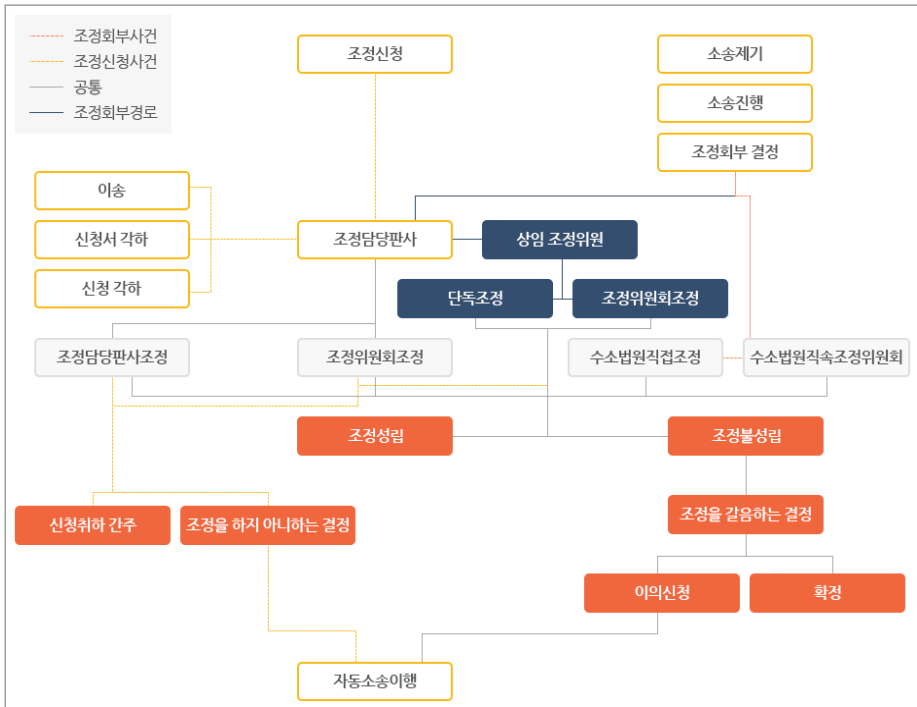
또한 대법원은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였다.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에,<sup>625)</sup>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623)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민사),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 2022.6.26. 최종 방문.

624)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민사),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 2022.6.26. 최종 방문.

625) 서울중앙지방법원 누리집, 「서울법원조정센터」 참조, [http://seoul.scourt.go.kr/seoul/intro/intro\\_11/intro\\_111/index.html](http://seoul.scourt.go.kr/seoul/intro/intro_11/intro_111/index.html). 2022.6.26. 최종 방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정과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상임조정위원 9인, 조정위원 344인(상근조정위원 27인 포함)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회 각계의 조정전문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대한불법화해중재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연계 조정도 시

대전, 대구, 광주에서는 2011년 4월 18일에 출범하였고, 2013년 4월 서울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조정센터가, 2014년 6월 인천 조정센터가, 2019년 4월 서울동부·수원 조정센터가 출범하여 현재 12개의 법원조정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sup>626)</sup>



출처: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민사)<sup>627)</sup>

## 나. 법원연계형 조기조정

법원연계형 조기조정(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은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조정으로서, 조정위원 주도형 조정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3월부터 조기조정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5. 3.부터

행하고 있다.

626)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민사),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 2022.6.26. 최종 방문.

627)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1/index.html). 2022.6.26. 최종 방문.

조정사건을 수행하고 있다.<sup>628)</sup>

법원연계형 조기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sup>629)</sup>

- ① 조정회부  
법원의 본안재판부는 사건분류단계에서 조정할 사건을 조정담당판사에 조기조정 회부를 합니다.
- ② 조정사건 배당  
조정담당판사는 각 조정위원(대한상사중재원)에게 사건특성과 당사자를 고려하여 조정사건을 배당합니다.
- ③ 조정 및 보고  
조정사건을 배당받은 총괄조정위원은 주도적으로 사건처리 후(당사자 사이에 합의성립시 합의서 작성), 배당일로부터 45일 이내 조정담당판사에 사무수행보고(필요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로부터 1개월 한도로 연장 허가를 얻어 조정을 계속할 수 있음)를 합니다.
- ④ 조정사건 종료  
조정담당판사는 사무수행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종료시 본안재판부에 통보하거나 소송으로 이행토록 합니다.

628) 대한상사중재원 누리집, [http://www.kcab.or.kr/html/kcab\\_kor/revision/revision02.jsp](http://www.kcab.or.kr/html/kcab_kor/revision/revision02.jsp). 2022. 6.26. 최종 방문.

629) 대한상사중재원 누리집, [http://www.kcab.or.kr/html/kcab\\_kor/revision/revision02\\_2.jsp](http://www.kcab.or.kr/html/kcab_kor/revision/revision02_2.jsp). 2022. 6.26. 최종 방문.



## 제 6 장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 수요의 실증적 분석

김한균·박노형·김세준·조수혜·송병준





## 제6장

#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정책 수요의 실증적 분석

### 제1절 | 국제상사중재 또는 국제상사조정 전문가 조사 분석

#### 1. 설문조사 취지와 구성 설계

앞서 살펴본 바,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상사중재·조정 사건을 유치하여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국제 중재 및 조정에 관한 기업인, 법조인과 국민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파악과 대안모색의 실증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의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설문 체계는 통계분석을 위한 일반 설문과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의견 및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의견 세 주제로 구분하고, 모두 37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 임직원, 사내변호사, 로펌(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포함) 소속 변호사, 공무원,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그룹 82명을 상대로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과 관련하여 자문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이다. 본 설문은 통계 분석을 위한 일반 질문,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자문의견,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자문의견, 통계 분석을 위한 인적 사항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국제상사조정·중재에 관한 자문의견을 구하는 세부 질문 내용은 다음 <표 6-1>과 같다.

설문의 구성은 국제상사조정에서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을 제외하고, 국제상사중재에서는 '중재지' 선택이 중재판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 조정과 중재에서 질문 내용은 유사하다.

▶▶▶ [표 6-1] 국제상사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문 조항

국제상사조정	국제상사중재
1.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해 국내에서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해 국내에서 중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1. 국내에서 국제상사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1-1.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1-2. 국내에서 국제상사조정제도가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1-2.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는?
2. 2020년 9월 발효한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에 관해 알고 계십니까?	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다음의 국내·외 주요법제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2-1. 2022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싱가포르 조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한국기업이 동 협약에 따른 국제상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3. 중재산업진흥법의 시행 이후 국내에서 국제중재가 보다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 이후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의 관계는?	
4.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하여 별도의 이행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 이행법률이 필요하다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4-2. 이행법률이 언제 제정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5.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산업진흥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국제상사조정을 경험한 경우만 답변) 계약상사 분쟁해결조항에 국제상사조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7. 향후 계약체결 시 분쟁해결조항에 국제상사조정의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법무법인 내에서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9. 국제상사조정에서는 각 분쟁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공동조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국제상사중재에서 각 분쟁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공동중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조정인이 양 당사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단일 조정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중재인이 양 당사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단일 중재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1. 현행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조정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현행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중재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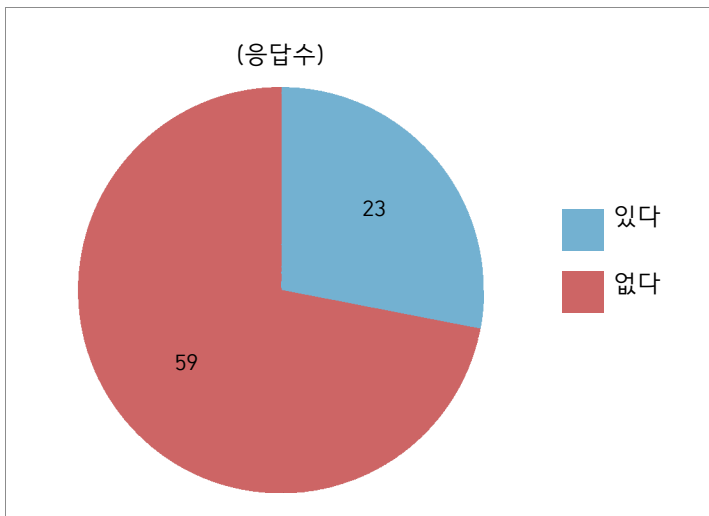
국제상사조정	국제상사중재
11-1. 누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1. 누가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조정인이 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까?	7. 중재인이 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까?
13. 변호사의 입장에서 중재나 소송과 같은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할 때, 수입료 등 기회비용에 관하여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4. 국제상사조정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8.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9.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자를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15. 국제상사조정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10. 국제상사중재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16. 국제상사조정의 조정인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11.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17. 국제상사조정에서 심리운영 또는 IT 활용이 중요한지?	12. 국제상사중재에서 심리운영 또는 IT 활용이 중요한지?

조사결과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전문가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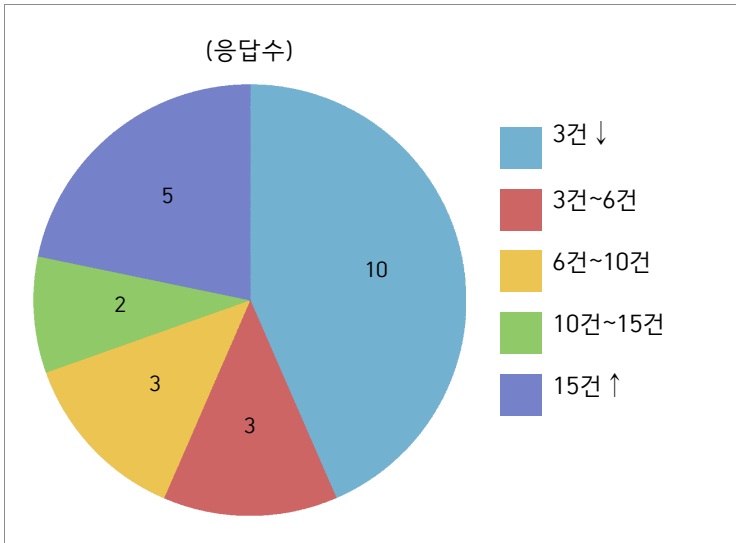
### 가. 일반 문항에 관한 설문결과

(1) 국제상사조정 또는 국제상사중재 사건을 관련자로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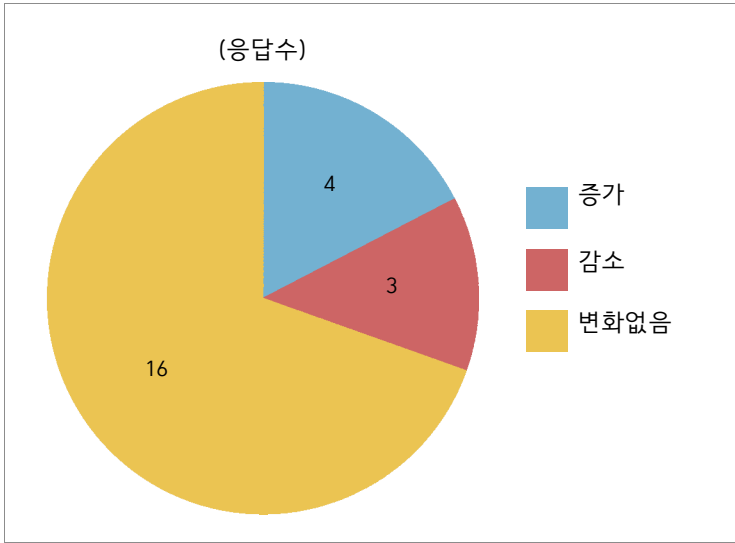
국제상사중재 또는 조정을 ‘관련자’로서 경험한 응답자는 23명(28%)이고,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는 59명(72%)이다. 국제상사중재 또는 조정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28%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 역시, 이하의 설문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름대로 국제상사중재 또는 조정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20년 ~ 2022년 사이에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를 합하여 직·간접적으로 담당한 국제분쟁사건의 수는 몇 건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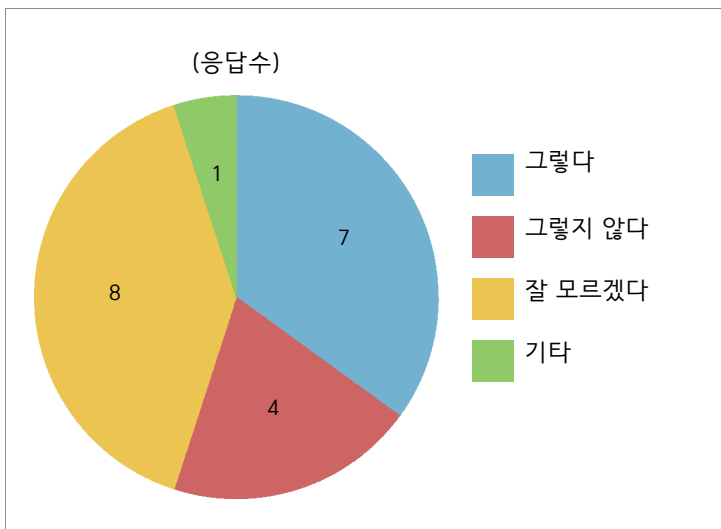
위 (1)문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지난 3년 동안 국제상사중재 또는 조정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담당한 국제분쟁사건의 수는 동 중재 또는 조정에 관련된 23명 중에서, 3건 미만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건 이상이 5명, 3건 이상 6건 미만, 6건 이상 10건 미만, 10건 이상 15건 미만은 각각 3명이다.

(3) 위 사건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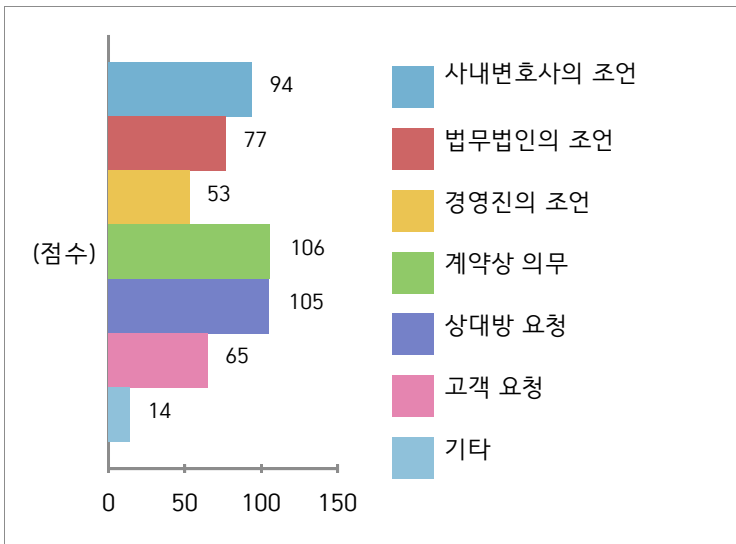
위 (1)문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국제상사 중재나 조정에 관련되었다고 응답한 23명 중에서 4명은 사건 수가 증가하였다고 밝혔고, 3명은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다수인 16명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4)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위 사건수 증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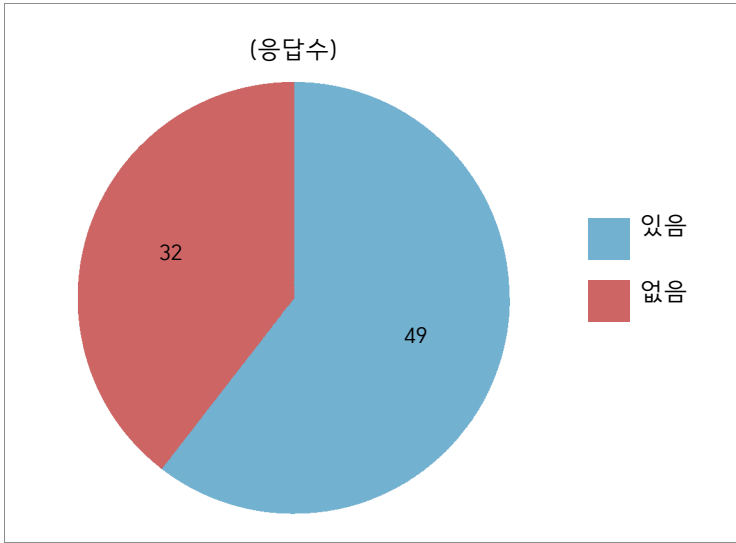
위 (1)문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2020년 이후 코로나의 국제상사중재 또는 조정 사건 수의 증감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응답자 7명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고, 4명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8명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무응답자도 있다.

(5) 국제상사조정 또는 국제상사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순위별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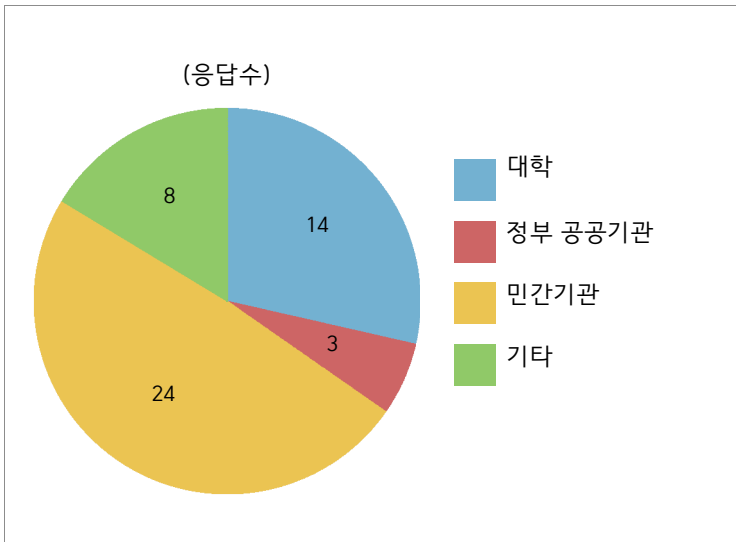
위 (1)문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국제상사 조정 또는 국제상사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로서 계약상 의무(106점)를 꼽고 있다. 그리고 근소하게 상대방의 요청(105점)이 뒤따른다. 그 다음으로 사내변호사 조언(94점), 법무법인 조언(77점), 고객 요청(65점) 순이다. 기타 의견으로서 해상법 등 대부분 업계의 관행은 중재조항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외건설 발주에서 중재가 분쟁해결수단이라고 한다.

(6)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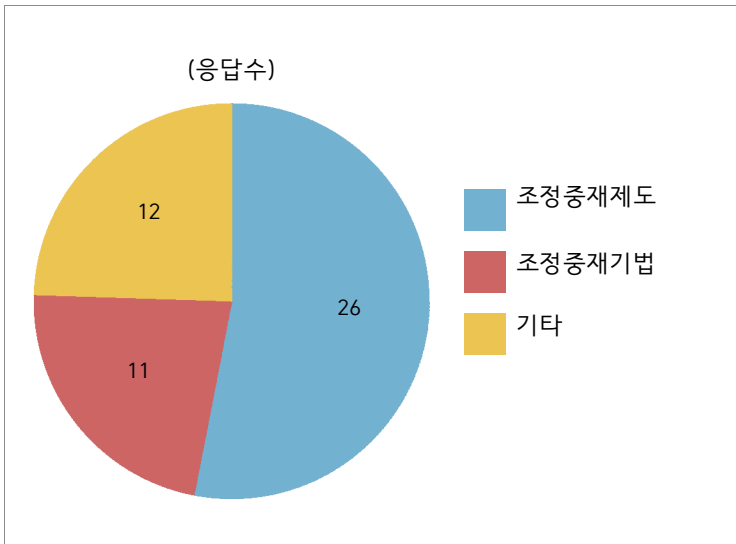
조정 또는 중재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49명(60%)이고,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32명 (40%)이다.

(7) 교육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위 (6)문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중재 또는 조정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 중에서 학회 또는 조정/중재센터 등 민간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24명(49%)이고,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14명(28.5%)이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불과 3명(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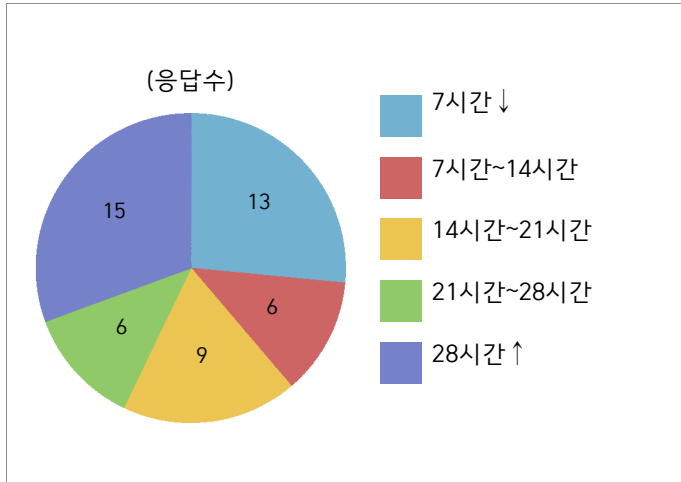
(8) 교육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위 (6)문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교육내용에 관하여, 응답자 26명(53%)은 조정·중재 제도에 관하여, 응답자 11명(22.4%)은 조정·중재 기법에 관한 것이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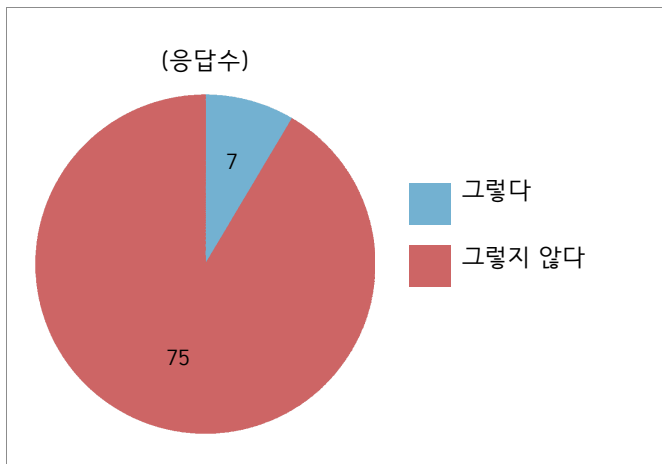
(9) 교육을 받은 총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 (6)문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조정·중재의 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이 응답자 15명(30.6%)으로서 가장 많고, 7시간 미만이 응답자 13명(26.5%), 14시간 이상 21시간 미만이 응답자 9명(18.5%), 7시간 이상 14시간 미만과 21시간 이상 28시간 미만이 각 6명(12.2%)의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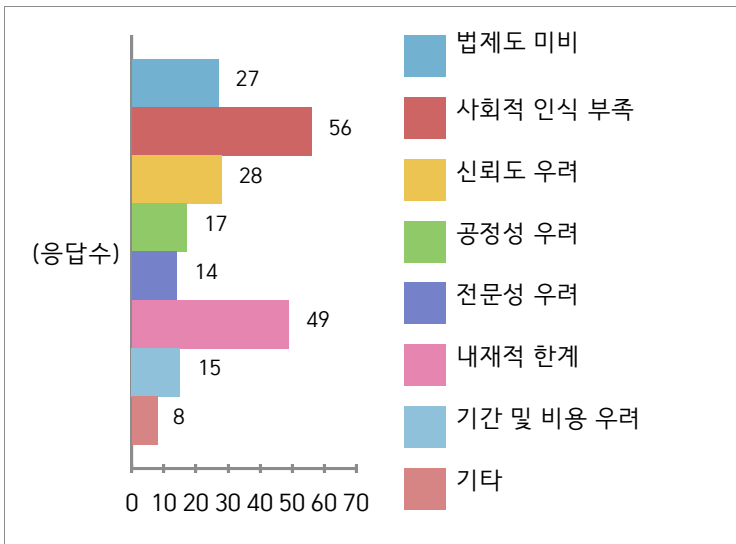
나.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설문결과

(1)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해 국내에서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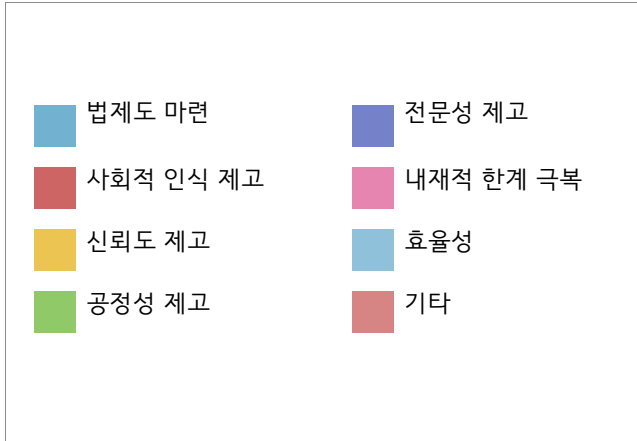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해 국내에서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응답자는 7명(8.5%)에 불과하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자는 75명(91.5%)이다. 이는 일반문항 (1)에서 국제상사중재 또는 조정에 관련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23명(28%)과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 59명(72%)을 모두 포함한 결과이다.

(2) 국내에서 국제상사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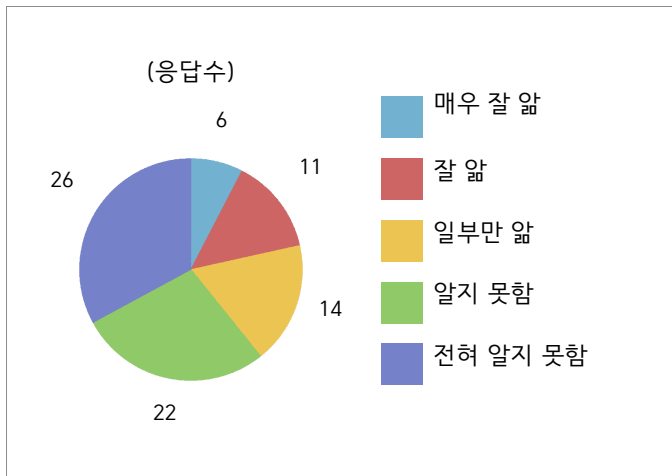
위 (1)문항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국내에서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라는 응답자가 56명(26.1%), 집행가능성 등 분쟁해결 효과의 내재적 한계라는 응답자가 49명(22.9%), 기관 또는 조정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라는 응답자가 28명(13.1%), 법제도상의 미비라는 응답자가 27명(12.6%), 공정성에 대한 우려라는 응답자가 17명(7.9%),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라는 응답자가 15명(7%), 전문성에 대한 우려라는 응답자가 14명(6.5%)이다.

(3) 국내에서 국제상사조정제도가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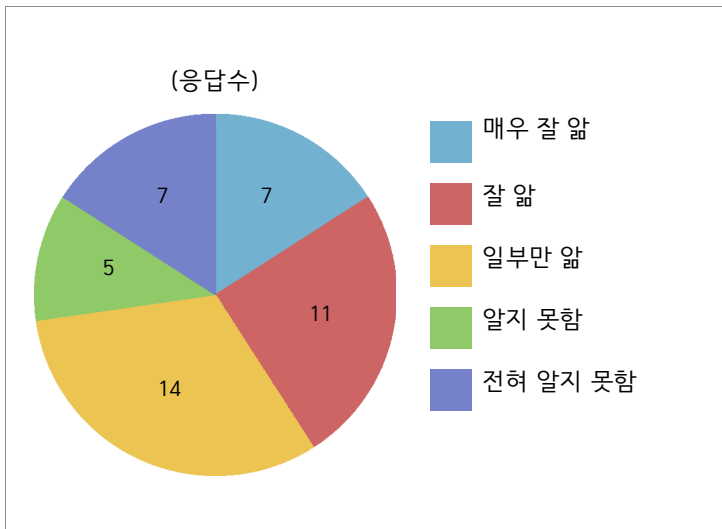
위 (1)문항에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국제상사조정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된 요소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102점), 집행가능성 등 내재적 한계의 극복(99점), 기관 또는 조정인의 신뢰도 제고(82점), 기본법 등 법제도 마련(52점), 전문성 제고(46점), 공정성 제고(36점), 효율성 제고(30점)의 순서이다.

(4) 2019년 8월 서명되고 2020년 9월 발효한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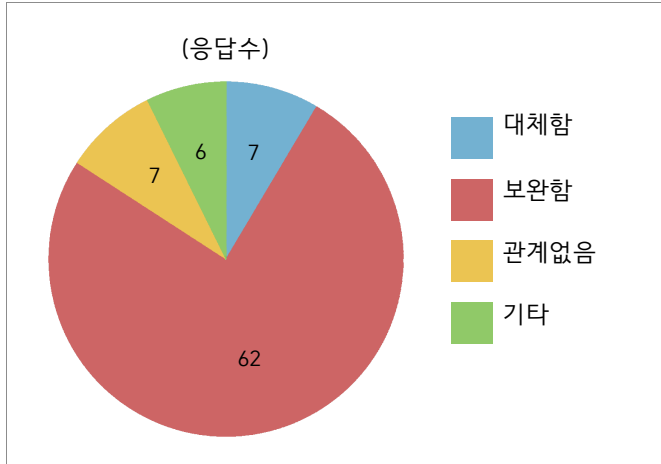
2020년 9월 12일 발효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매우 잘 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각 6명(7.6%)과 11명(13.9%)로서 응답자의 21.5% 정도가 동 협약을 알고 있다.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총 31명(39.2%)이다. 동 협약을 전혀 또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각 26명(32.9%)과 22명(27.8%)로서 응답자의 60.7% 정도가 동 협약을 모르고 있다.

(5) 2022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 동 협약에 따른 국제상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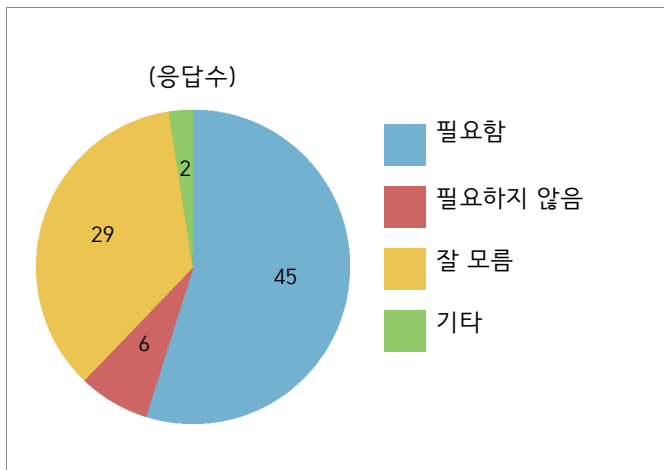
위 (4)문항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국제조정협약의 집행은 싱가포르조정협약 당사국의 의무인 점에서, 한국이 동 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기업은 해당 국제조정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기업의 자산이 있는 동 협약 당사국 법원에 그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매우 잘 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각 7명(8.8%)과 11명(13.9%)로서 응답자 중 18명 정도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대한 인지도와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 일부만 알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면 32명으로서 이 역시 앞선 문항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6)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 이후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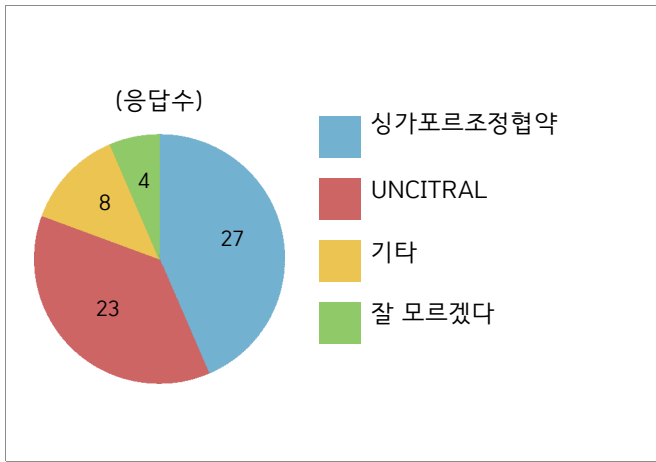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의 관계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이 서로 보완한다는 응답자가 62명(75.6%)이며, 국제상사조정이 국제상사중재를 대체한다는 응답자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응답자가 각 7명(8.5%)이다.

(7) 2021년 3월 법무부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T/F를 구성·설치하였습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하여 별도의 이행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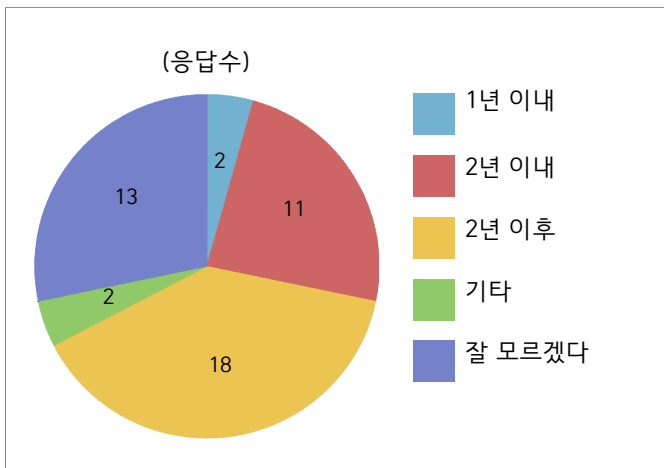
45명(54.9%)의 응답자가 이행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6명(7.3%)의 응답자는 이행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8) 이행법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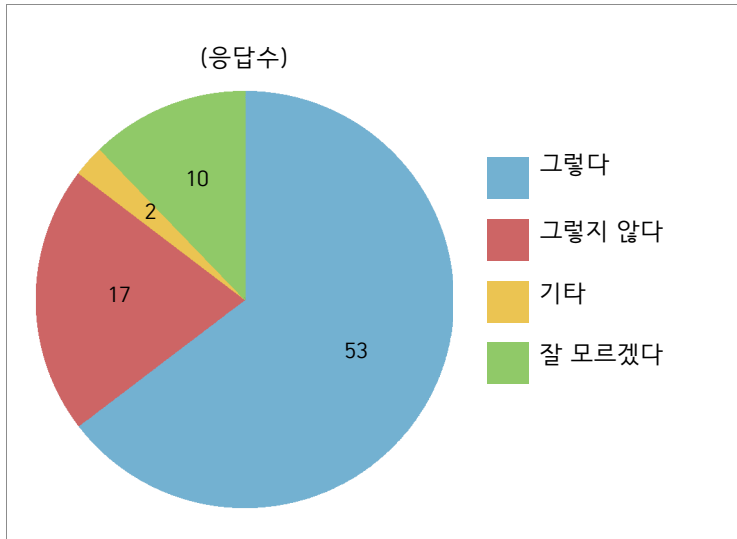
위 (7)문항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며,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다. 이행법률의 내용으로서 27명(43.5%)의 응답자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내용이 포함되면 된다고 하고, 23명(31.1%)의 응답자는 UNCITRAL 조정모델법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9) 이행법률이 언제 제정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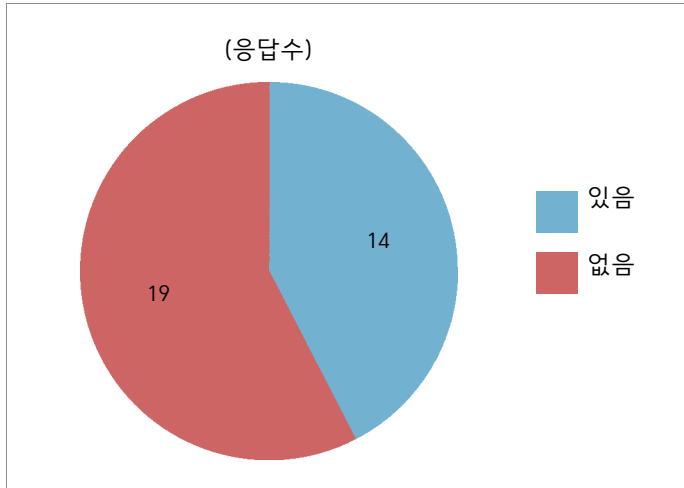
위 (7)문항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는 시기에 관하여, 2년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가 18명(39.1%)으로 가장 많고, 2년 이내는 11명(23.9%), 1년 이내는 2명(4.3%)에 불과하다.

- (10)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산업진흥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산업진흥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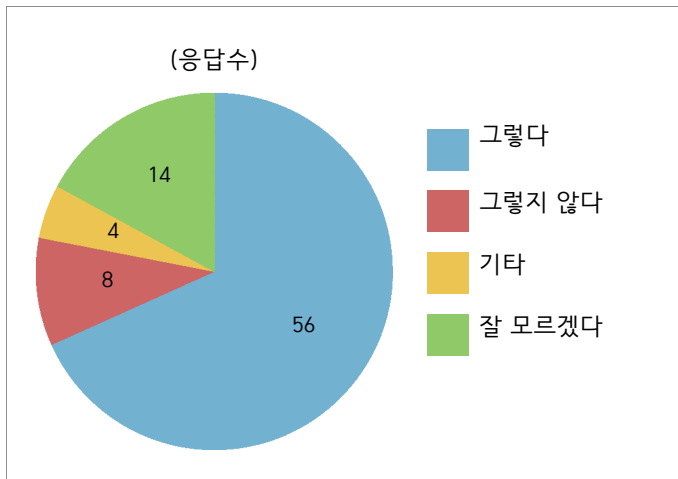
중재에 관한 중재산업진흥법과 유사하게, 조정산업진흥법의 입법 필요에 관하여, 53명(64.6%)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17명(20.7%)이다.

(11) 계약서상 분쟁해결조항에 국제상사조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계약서에 국제상사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규정이 포함된 경우의 경험에 관하여, 국제상사조정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 14명(전체 응답자의 17.1%)가 국제상사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의 조항이 있는 계약을 경험하였고, 19명(전체 응답자의 23.2%)은 그런 계약을 경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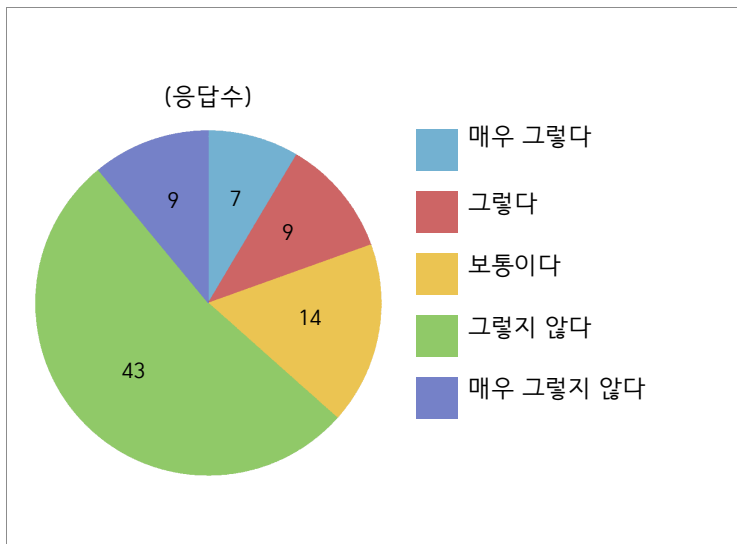
(12) 향후 계약체결 시 분쟁해결조항에 국제상사조정의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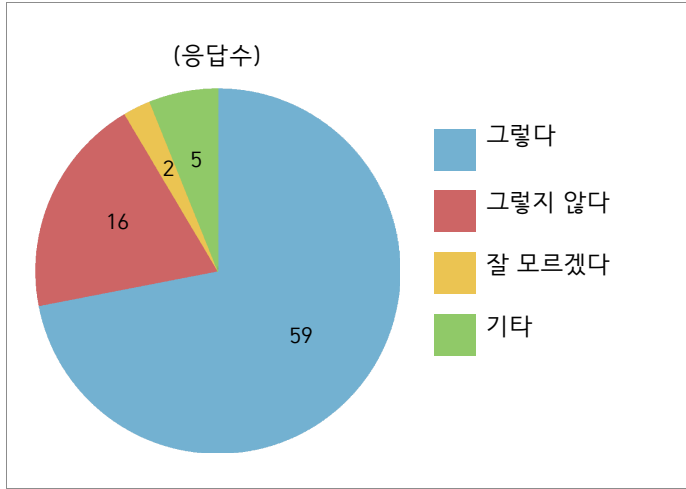
계약에 국제상사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규정될 필요에 관하여, 응답자 56명(68.3%)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응답자 8명(9.8%)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 (13) 법무법인 내에서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제상사중재팀과 별개의 국제상사조정팀 설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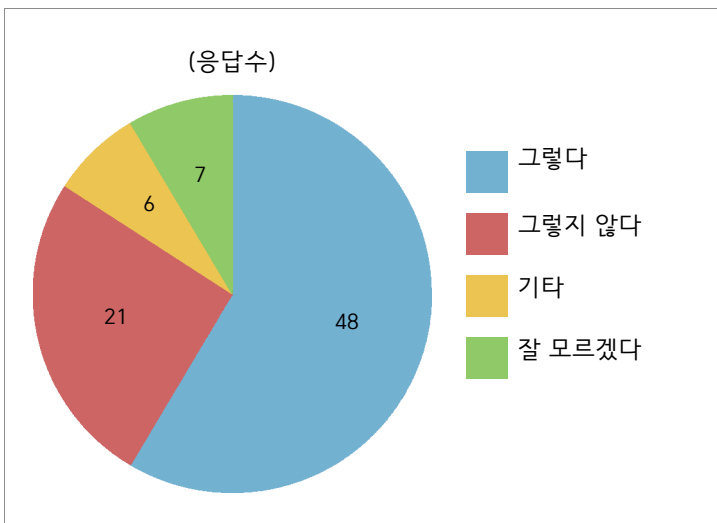
현재 국내 법무법인은 대체로 국제중재팀을 두고 있는데,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제중재팀과 별도의 국제조정팀이 설치될 필요에 관하여,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가 각각 9명(11%)과 43명(52.4%)으로 전체 응답자의 63%가 넘는다. 이에 반하여 국제중재팀과 별도의 국제조정팀이 설치될 필요에 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자는 각각 7명(8.5%)과 9명(11%)로 20% 정도에 불과하다.

(14) 국제상사조정에서는 분쟁당사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각 분쟁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공동조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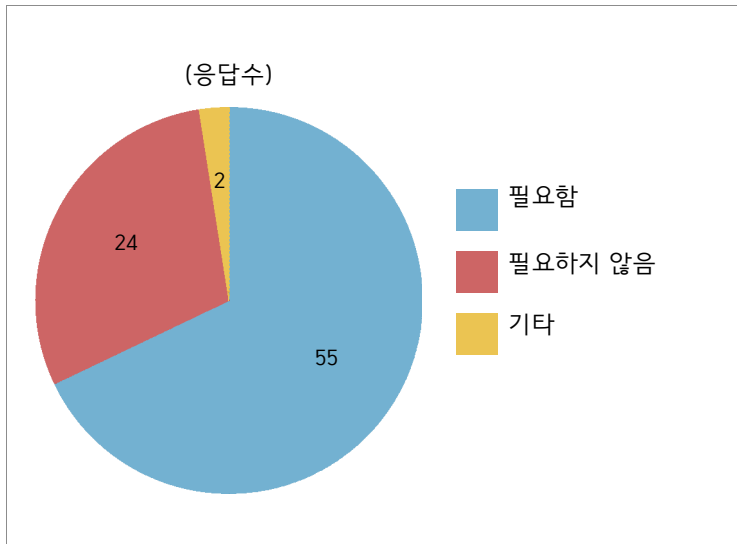
국제상사조정에서 분쟁당사자인 기업의 국적에 따른 2인 이상 공동조정인의 필요에 관하여,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59명(72%)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16명(19.5%)이다.

(15) 분쟁당사자의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정인이 양 당사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단일 조정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상사조정에서 분쟁당사자들의 언어를 구사하는 경우, 단일조정인의 지정에 관하여, 단일 조정인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48명(58.5%)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1명(25.6%)이다.

(16) 현행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조정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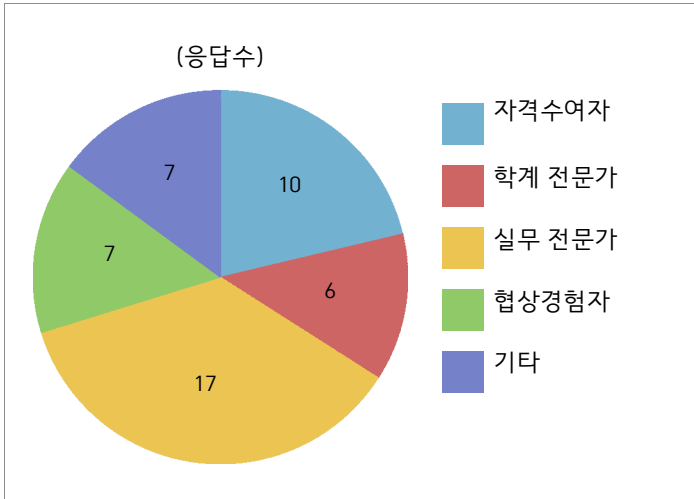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중략)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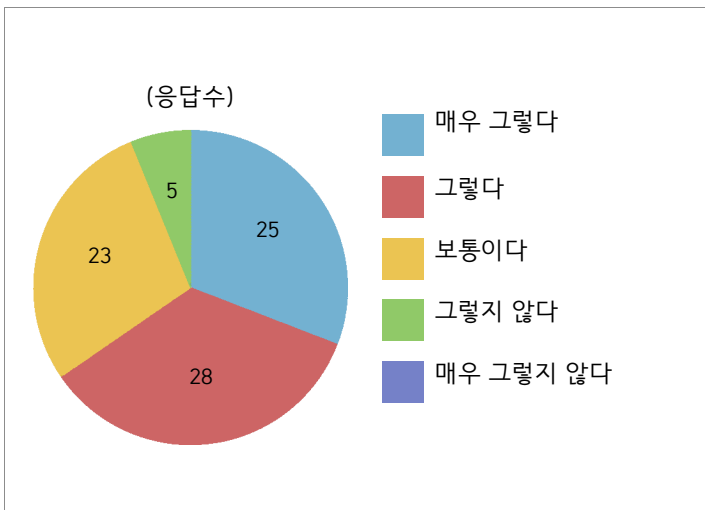
위 변호사법 규정을 고려할 때, 조정인의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여부에 관하여, 55명(67.9%)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24명(29.6%)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17) 누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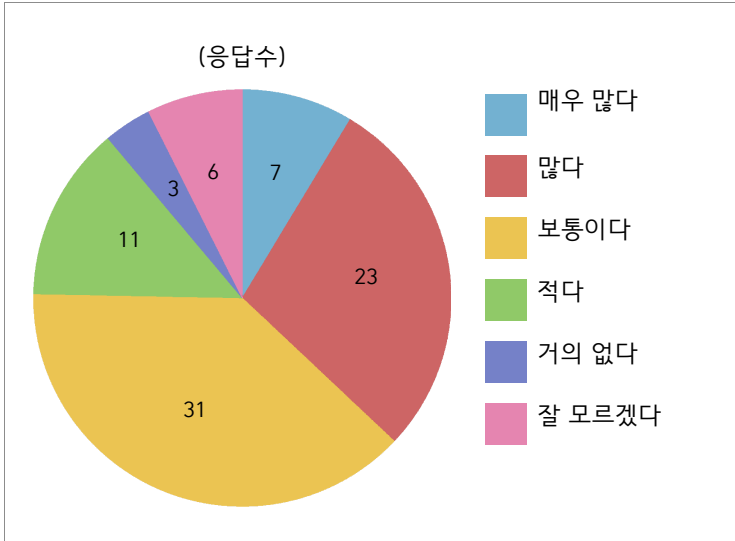
위 (16)문항에서 변호사자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며 복수응답이 가능하였다. 조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17명(36.2%)이 해당 사건의 실무 전문가, 10명(21.3%)이 조정 교육을 이수한 자, 7명(14.9%)이 외교관이나 기업인 등 협상 경험이 풍부한 자, 6명(12.8%)이 학계 전문가라고 응답하였다.

(18) 조정인이 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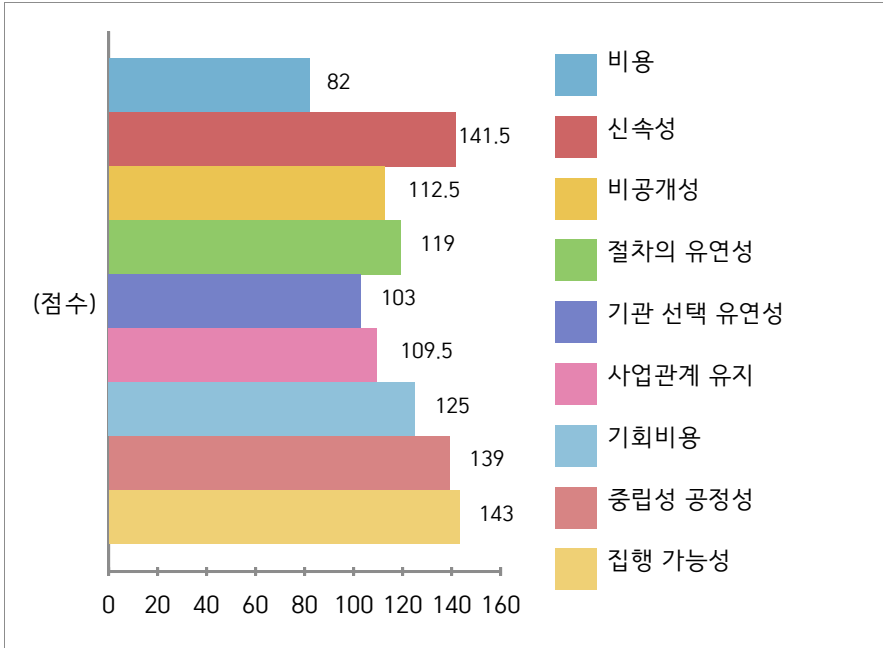
조정이 되고자 하는 의사에 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자가 각각 25명(30.8%)과 28명(34.5%)이고,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23명(28.4%)이다.

(19) 변호사의 입장에서 중재나 소송과 같은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할 때, 수임료 등 기회비용에 관하여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수임료 등 기회비용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조정을 선택할 유인에 관하여, 매우 많다는 응답자가 7명(8.6%)과 많다는 응답자가 23명(28.4%)이다. 이와 달리 이런 경우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거의 없다와 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3명(3.7%)과 11명(13.6%)이다.

(20) 국제상사조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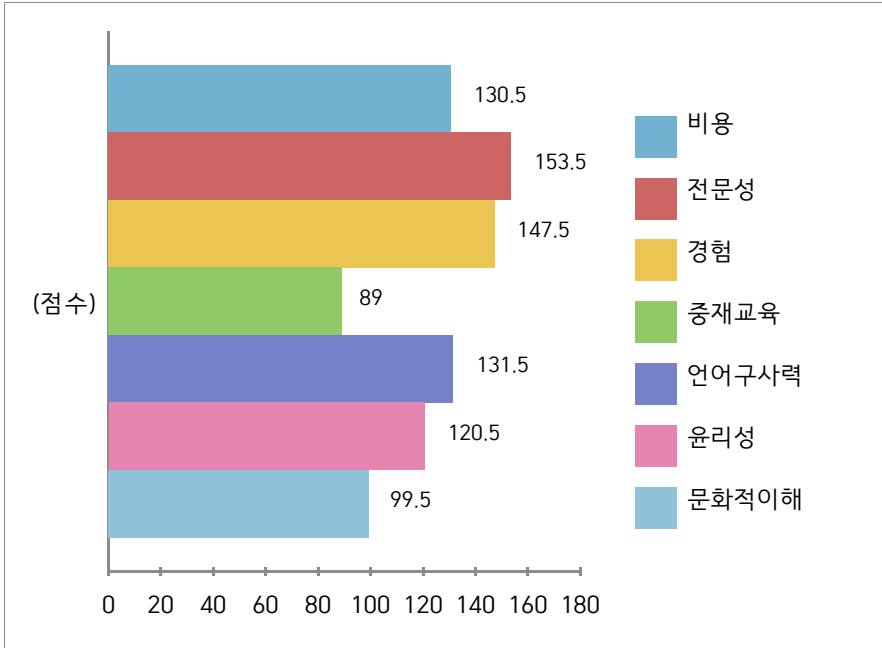
집행가능성(143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근소한 차이로 신속성(141.5점)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독립성과 공정성(139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회비용(125점) 등의 순서로 따른다. 주목할 점은 비용(82점)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21) 국제상사조정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제상사조정기관의 선택에서 소속 조정인의 전문성(143.5점)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또한 효율성(137점)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주목할 점은 비용(133점)을 기관의 선택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규모 및 인지도(121점) 및 평판(119점) 등이 그 다음 순서로 고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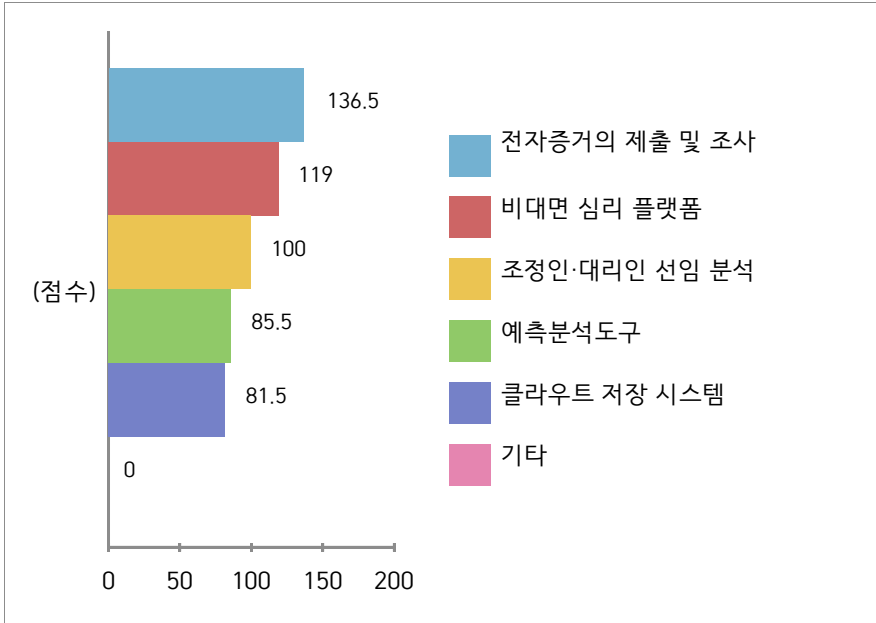
(22) 국제상사조정인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조정인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 및 분쟁 관련 전문성 (153.5점)이며, 조정인의 분쟁해결 경험(147.5점)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언어구사력(131.5점)을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조정 관련 교육 여부(89 점)를 조정인 선택 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3) 국제상사조정에서 다음과 같은 IT의 활용에 대해 생각하시는 유용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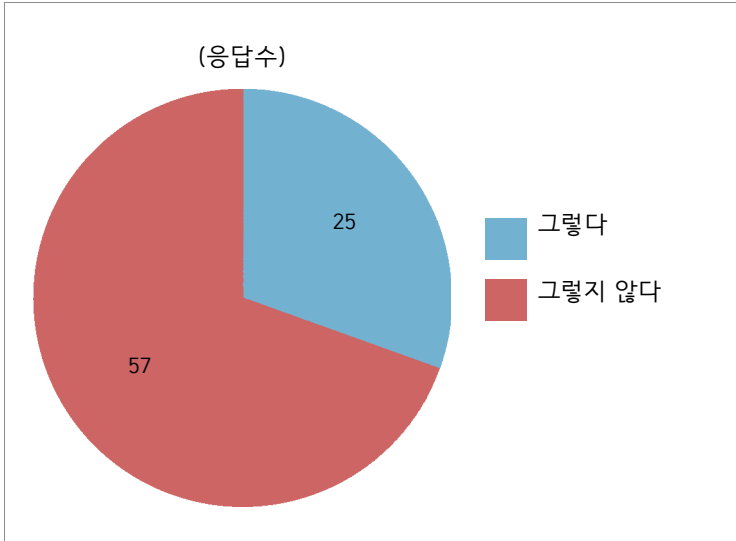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가장 유용성이 큰 것으로 전자증거의 제출 및 조사 수단(136.5.점)을 택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비대면 심리 플랫폼(119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설문 결과

(1)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해 국내에서 중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2.항으로
- ② 그렇지 않다 : 1-1.항으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응답수)	25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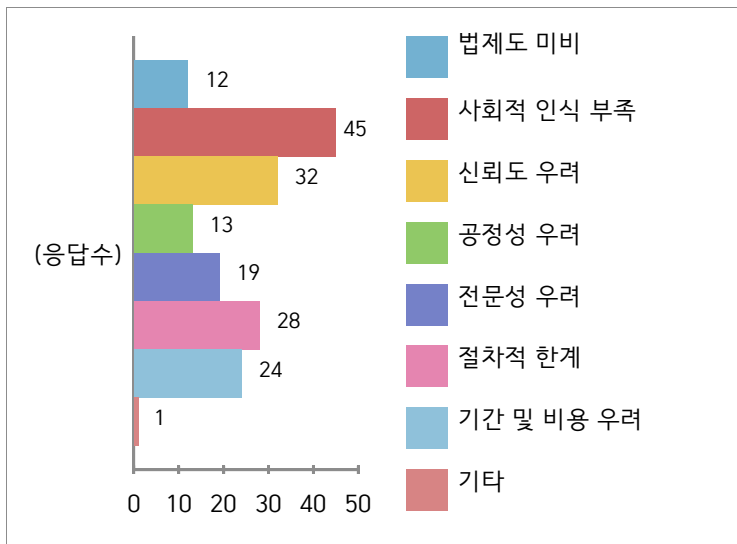
국제상사중재에 대하여는 82명 중 57명의 응답자, 즉 69.5%의 응답자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국제상사중재가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30.5%)의 두 배가 넘는 인원들이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국제상사조정에 비하여는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진 비율이 높으나, 중재법이 1966년 제정된 이후 UNCITRAL 중재모델법 등을 활발하게 수용하고 대한상사중재원도 국제중재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국제상사중재의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점, 중재산업진흥법이 2016년 제정되어 중재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 다음 중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① 법제도상의 미비
- ② 사회적 인식의 부족
- ③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
- ④ 공정성에 대한 우려
- ⑤ 전문성에 대한 우려

- ⑥ 절차적 한계(예: 상소제도 등의 부재)
- ⑦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
- ⑧ 기타(1)
- ⑨ 기타(2)
- ⑩ 기타(3)

	법제도 미비	사회적 인식 부족	신뢰도 우려	공정성 우려	전문성 우려	절차적 한계	기간 및 비용 우려	기타
(응답수)	12	45	32	13	19	28	24	1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 응답자 중 국제상사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복수응답하도록 한 조사에서는 사회적 인식의 부족(22.3%),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16.2%), 상소제도 부재 등 절차적 한계(14.2%),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12.2%), 전문성에 대한 우려(9.6%), 공정성에 대한 우려(6.6%), 법제도상의 미비(6.1%), 기타 및 무응답(12.7%) 등의 순으로 그 이유가 집계되었다. 이는 여전히 국제상사중재는 낮은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일반적 홍보와 더불어 대한상사중재원 등 상설중재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홍보하여 중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중재기관 및 중재인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으로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서 지적되었는데, 위와 같이 응답한 사람이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지적한 것인지 중재인의 신뢰도를 지적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중재법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등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일하고, 중재인 명부를 대한상사중재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중재 절차에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인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 문제가 두 번째로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추후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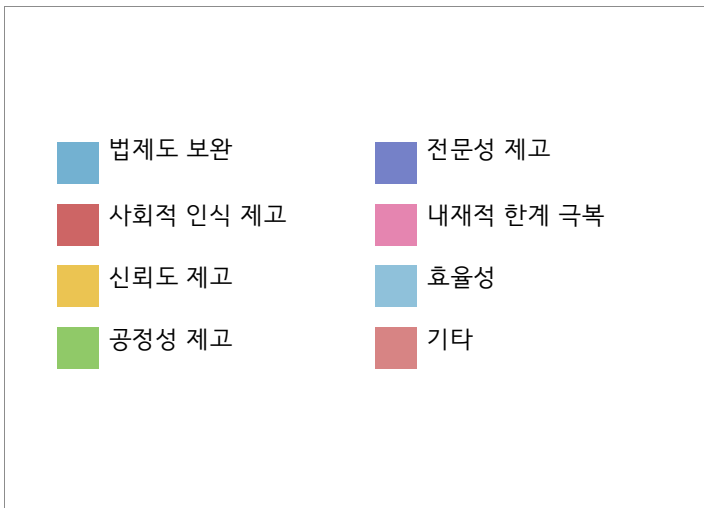
또한 상소제도 부재 등 중재제도가 가지는 절차적 한계와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는데, 중재제도가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제도 자체가 가지는 절차적 한계는 중재제도가 가지는 내제적 한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유의미한 응답 결과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대안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 이유가 소송 절차가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 절차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도입된 중재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서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의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을 줄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타 의견으로 법원의 소송 절차의 신속성, 효율성을 언급한 설문도 있었다.

이처럼 중재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담보하여 상소제도 등의 부재로 인한 절차적 한계로 인한 불안감을 제거할 필요와 더불어, 최근 국제상사중재에서 문제가 되는 기간 및 비용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운영 및 진행을 통하여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기타 의견에서 지적한 대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되는 국내 소송절차를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1-2.) 다음 중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괄호안에 중요도 순으로 세가지 요소를 선택하여 1, 2, 3 숫자 기입)

- ① (    ) 법제도 측면의 보완
- ② (    ) 사회적 인식의 제고
- ③ (    )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 제고
- ④ (    ) 공정성 제고
- ⑤ (    ) 전문성 제고
- ⑥ (    ) 절차적 한계의 극복
- ⑦ (    ) 효율성 제고
- ⑧ (    ) 기타(1)
- ⑨ (    ) 기타(2)
- ⑩ (    ) 기타(3)

	법제도 보완	사회적 인식 제고	신뢰도 제고	공정성 제고	전문성 제고	내재적 한계 극복	효율성	기타
(점수)	35	73	74	25	48	61	44	0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앞서 살펴본 국제상사중재가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상사중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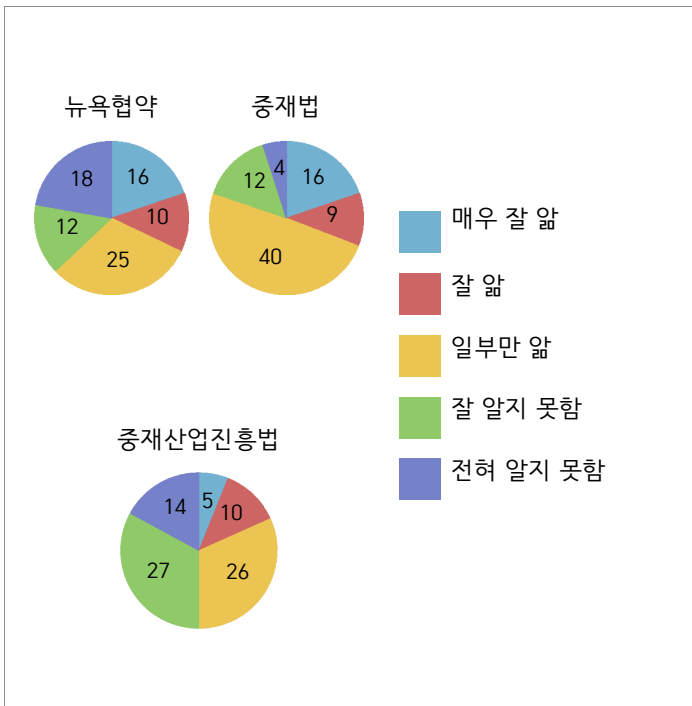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점수로 환산해보면 첫째로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 제고가 74점을 획득하였고, 둘째로 사회적 인식 제고가 73점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는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서의 1위, 2위를 차지한 항목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내재적 한계 극복이 61점, 전문성 제고가 48점, 효율성 제고가 44점, 법제도 측면의 보완이 35점, 공정성 제고가 25점으로 나타났다.

(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다음의 국내·외 주요법제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일부만 알고 있음	잘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중재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	①	②	③	④	⑤
중재법	①	②	③	④	⑤
중재산업진흥법	①	②	③	④	⑤

(응답수)	매우 잘 앎	잘 앎	일부만 앎	잘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뉴욕협약	16	10	25	12	18
중재법	16	9	40	12	4
중재산업진흥법	5	10	26	2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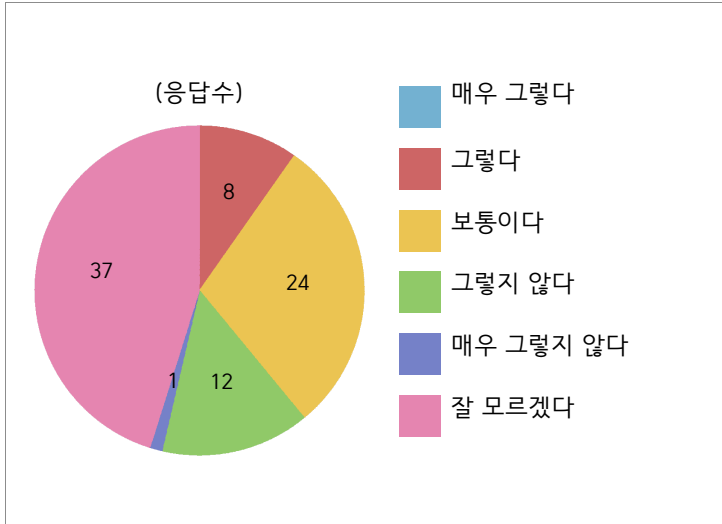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내·외 주요법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중재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을 매우 잘 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각 16명(19.5%)과 10명(12.2%)에 불과하였고, 일부만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25명(30.5%)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 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재법을 매우 잘 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각 16명(19.5%)과 9명(11%)으로 뉴욕협약을 알고 있는 응답자 수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고, 40명(48.8%)이 일부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중재산업진흥법을 매우 잘 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각 5명(6.1%)과 10명(12.2%)으로 앞서 살펴본 뉴욕협약과 중재법에 비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중재법, 중재산업진흥법 등 이행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지원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각 법제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비율을 합하면 최소 30%에 이른다는 것인데, 응답자 중 사내변호사가 30명(31.9%), 로펌 변호사가 49명(52%)으로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할 때 중재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중재산업진흥법의 시행 이후 국내에서 국제중재가 보다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⑥ 잘 모르겠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응답수)	0	8	24	12	1	37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국제상사중재의 국내·외 주요법제인 뉴욕중재협약과 중재법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잘 앎, 잘 앎, 일부만 앎)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 제정된 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하여는 82명 중 41명이 잘 모른다(잘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고 응답하였다. 82명의 응답자들 중 소속 직역이 법무법인 등 로펌(49명), 기업의 사내변호사(30명)인 경우가 대다수임을 고려할 때 법조실무에 필요한 뉴욕중재협약이나 중재법을 접할 기회가 많은 반면, 중재산업진흥법은 직접적으로 사건해결과 관계가 없어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응답자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제정 이후 5년이 지난 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점을 보면 중재산업 지원방안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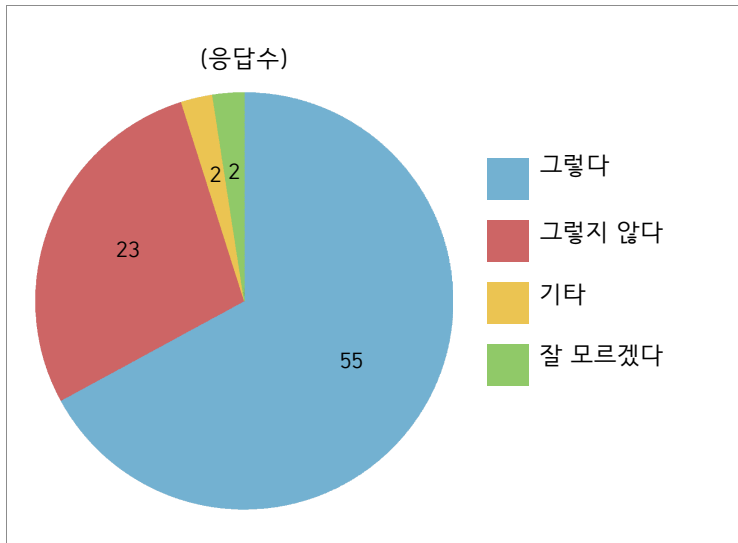
이는 응답자 중 중재산업진흥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경우(8명)가 보통(24명) 또는 활성화되지 않음(13명)보다 적은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비록 이 응답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37명)가 많아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중재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계획들이 수립,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실제로 국제상사중재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일부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분쟁당사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각 분쟁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공동중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기타
- ④ 잘 모르겠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기타	잘 모르겠다
(응답수)	55	23	2	2



국제중재판정부 구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사자 국적과 동일한 국적의 중재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다수의 응답자(55명)는 각 분쟁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공동중재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각 분쟁 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공동중재인이 필요하지 않다(23명)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단심제로 끝나는 국제상사중재에서는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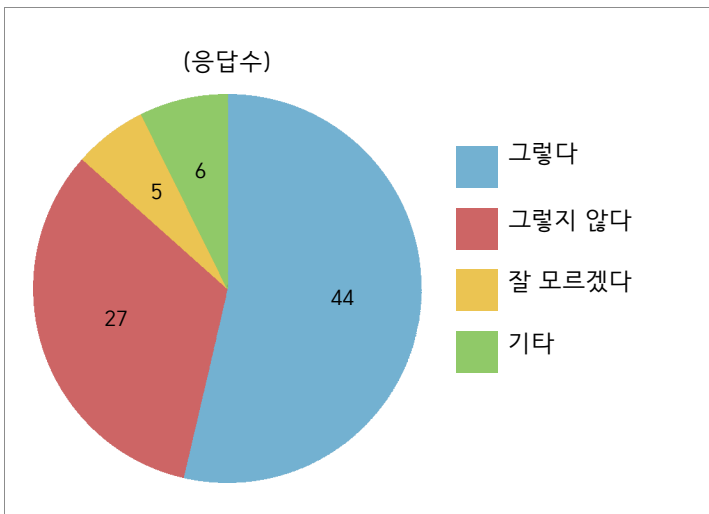
특기할 점은 실제로 중재제도에서 공동중재인을 구성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거의 30%에 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국제상사중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사내변호사와 로펌의 국제중재팀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그렇다는 의견보다 더 많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설문 결과에 상식적으로는 공동중재인이 단일중재인보다 공정성 및 객관성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하기에 공동중재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동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국제상사중재의 국내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명확히 구명되어야 하므로, 향후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이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분쟁당사자의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이 양 당사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단일 중재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기타
- ④ 잘 모르겠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기타
(응답수)	44	27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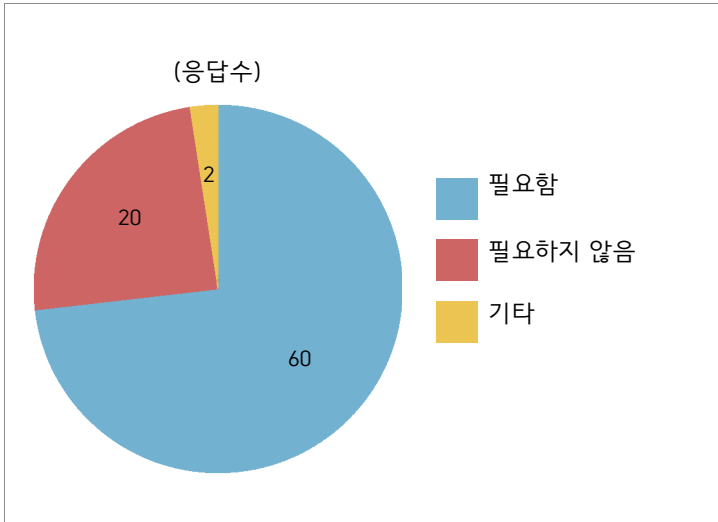
한편,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인 후보자가 분쟁당사자들의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단일중재인의 지정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관한 질문에는, 단일중재인의 지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44명(53.7%)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7명(25.6%)이다. 위에서 공동중재인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과반수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분쟁당사자들의 언어의 구사 가능성을 전제한다면 단일 중재인의 지정도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경우 신속성이 담보되는 단독 중재인을 선임하는 수요도 상당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문은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 언어 구사 가능성이 공정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변수라고 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기타 의견으로 언어는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므로 언어 자체는 쟁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타 의견으로는 단독중재인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6) 현행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중재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함 : 7.항으로
- ② 필요하지 않음 : 6-1.항으로
- ③ 기타 : 6-1.항으로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기타
(응답수)	60	20	2



중재인의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여부에 관하여, 60명(73.2%)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20명(24.4%)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중재판정이 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 사실상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하다는 점과 현행 변호사법에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취급할 수 없는 사무로서 '중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대한 응답자 중 사내변호사가 30명(31.9%), 로펌 변호사가 49명(52%)으로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재인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이가 20명(24.4%)에 달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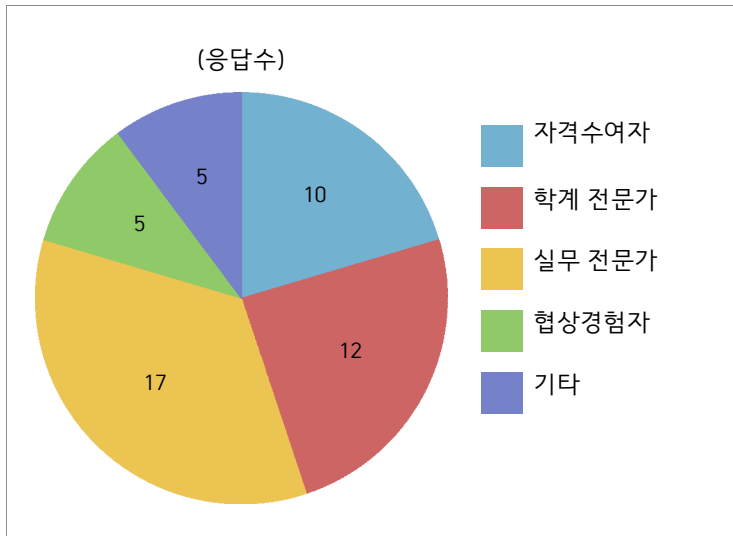
다만 기타 의견으로 합의로 정해진 준거법에 따라야 하므로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대한 고려는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재인의 위치 및 중재제도의 기능에 비추어 중재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단일중재인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2인 이상 중재에서 최소 1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다면 나머지 중재인의 자격을 변호사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와 같은 설문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 개정을 전제로 변호사가 아닌 자의 중재인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정확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6-1) 누가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소정의 중재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을 수여받은 사람
- ②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 ③ 대상 사건 분야의 실무 전문가
- ④ 외교관, 정부공무원, 기업인 등 협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기타

	자격수여자	학계 전문가	실무 전문가	협상경험자	기타
(응답수)	10	12	17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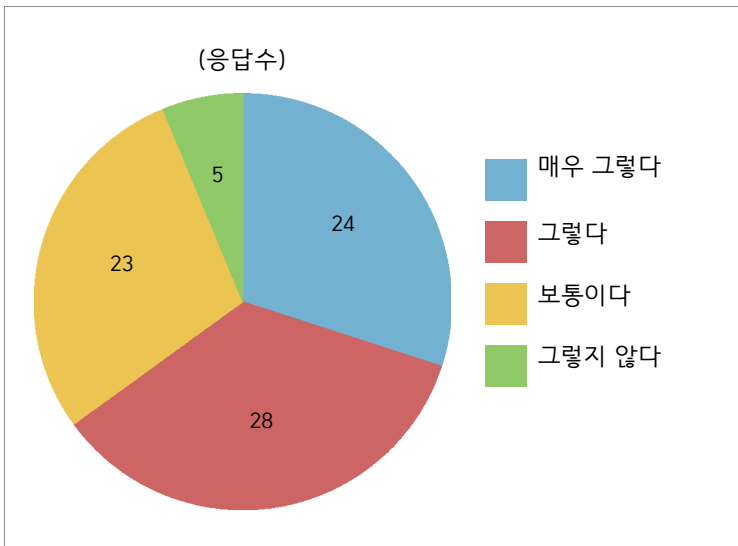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응답자 중 17명(34.7%)이 해당 사건의 실무 전문가, 12명(24.5%)이 학계 전문가, 10명(20.4%)이 소정의 중재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을 수여받은 사람, 5명(10.2%)이 외교관이나 기업인 등 협상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국제상사중재 사건이 전문 분야에 관한 분쟁임을 고려할 때 17명이 해당 사건의 실무 전문가가 중재인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중재의 대상인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타 의견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 분쟁당사자 모두가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합의된 준거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전문성을 위하여 분쟁 대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우 등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중재인으로서의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중재인이 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수)	24	28	23	5	0



중재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에 관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응답자가 각각 24명(30.5%)과 28명(34.1%)이고,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23명(28%)이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중재인이 되고자하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위 설문 결과는 조정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물은 설문 결과와 동일하다. 이처럼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 관심 자체가 높다는 점은 국제중재 및 조정 제도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8)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비용	①	②	③	④	⑤
신속성	①	②	③	④	⑤
비공개성	①	②	③	④	⑤
중재인 선택 등 절차적 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중재지 선택의 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중재기관 선택의 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사업관계의 유지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분쟁해결에 관한 기회비용	①	②	③	④	⑤
중립성 및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집행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비용	신속성	비공개성	절차의 유연성	중재지 선택 유연성	중재기관 선택 유연성	사업관계 유지	기회 비용	중립성 공정성	집행 가능성
(점수)	138.5	137	110.5	122.5	111	98.5	69.5	115.5	142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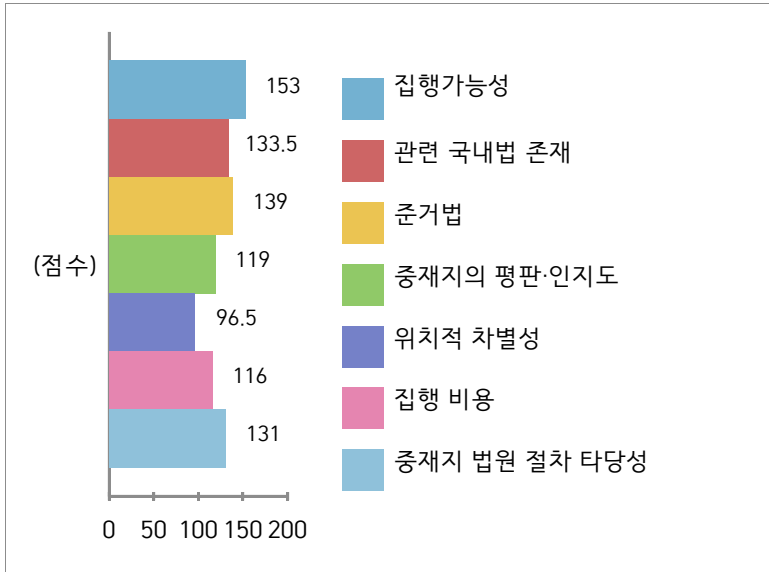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151점), 중재의 중립성 및 공정성(142점), 비용(138.5점), 신속성(137점), 중재인 선택 등 절차적 유연성(122.5점)이 상위 5개 요인으로 선택되었다. 국제상사중재의 집행 가능성이 국제상사중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뉴욕중재협약으로 표상되는 국제상사중재판정의 집행력의 국제적 보장이 국제상사중재의 기초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중립성 및 공정성은 중재절차 비용과 신속성보다 근소하게 앞서며 중재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는데, 중재절차 및 판정의 공정성과 더불어 중재절차의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국제상사중재는 분쟁해결절차로서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모순되는 가치를 달성할 필요가 있어서, 신속중재규칙이나 임시적 처분 등 중재절차 설계가 실무의 요구에 대응하여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9)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지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국제상사중재를 규율하는 국내법의 존재 (예: 임시적 처분 등)	①	②	③	④	⑤
계약에서 정하는 준거법	①	②	③	④	⑤
중재지의 평판 및 인지도	①	②	③	④	⑤
당사자의 국적·영업소와의 위치적 차별성	①	②	③	④	⑤
집행 비용	①	②	③	④	⑤
중재지 법원절차의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집행가능성	관련 국내법 존재	준거법	중재지의 평판·인지도	위치적 차별성	집행 비용	중재지 법원 절차 타당성
(점수)	153	133.5	139.	119	96.5	116	131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지 선정에 대한 고려요소로 제시한 7가지 요소 중 복수응답으로 선정한 가장 중요한 고려한 요소는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153점)이다.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가장 큰 특징인 구속력 또는 집행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뉴욕중재협약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이 되고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으로 국제상사중재절차가 국제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재지와 집행지의 사법기관의 해석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이 좌우되기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려요소로 계약에서 정하는 준거법(139점)과 국제상사중재를 규율하는 국내법의 존재(133.5점)를 선정하여, 중재지의 사법기관의 해석과 중재법의 내용이 중재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응답자들은 네 번째 고려요소로 중재지 법원 절차의 타당성(131점)을 선택하여 중재지 법원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의 법제도를 포함하여 중재지 법원의 국제상사중재절차에 대한 협조 등 중재지 법원의 소송운영 실무도 중재지 선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어 중재판정의 집행 및 중재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재지의 법제도 및 소송실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은 위의 고려요소들에 이어서 중재지의 평판 및 인지도(119점), 중재판정 등 집행비

용(116점), 당사자의 국적이나 영업소와의 위치적 차별성(96.5점)을 중재지 고려요소로 선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중재지의 전통적인 평판이나 인지도, 위치보다는 중재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중재법과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중재친화적인 법원의 소송실무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10) 국제상사중재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비용	①	②	③	④	⑤
효율성	①	②	③	④	⑤
기관의 중재규칙	①	②	③	④	⑤
규모 및 인지도	①	②	③	④	⑤
평판	①	②	③	④	⑤
사건처리 건수	①	②	③	④	⑤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소속 중재인의 문화적 친밀성	①	②	③	④	⑤
소속 중재인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선택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지리적 근접성	①	②	③	④	⑤
당사자의 국적·영업소와의 위치적 차별성	①	②	③	④	⑤
이의신청의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ODR 등 기술적 지원의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비용	효율성	조정 규칙	규모·인지도	평판	사건 처리 건수	소속 중재인 전문성	문화적 친밀성	소속 중재인 정보	지리적 근접성	위치적 차별성	이의 신청 가능성	기술 지원의 가능성
(점수)	135.5	142	121.5	124.5	124	104.5	139	86.5	106.5	82	78	98	93



국제상사중재의 대다수는 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재기관의 경쟁력은 국제상사중재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상사중재기관 선택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3가지는 효율성(142점),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139점), 비용(135.5점)으로 중재기관의 사무처리 및 중재절차에 대한 보조가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 적절한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이 담보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선택한 3가지 요소는 중재기관의 규모 및 인지도(124.5점), 평판(124점), 중재기관의 중재규칙(121.5점)으로, 중재기관으로 선택을 받기 위하여 중재기관의 인지도와 평판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재산업진흥법에 의한 중재산업 지원 및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지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지도를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건 유치를 통하여 대한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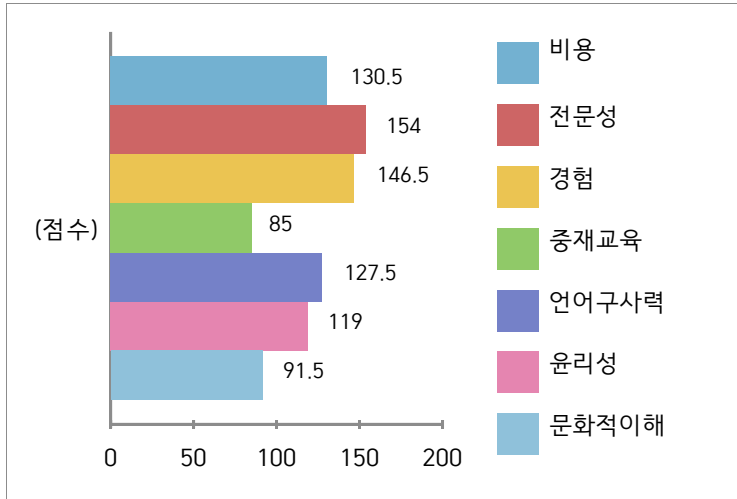
중재원에서의 중재절차에서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평판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재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중재 당사자의 수요에 맞는 신속중재절차, 긴급중재인 등 적절한 중재규칙을 마련,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중재기관 선택 중요도는 소속 중재인에 대한 정보접근성 및 선택가능성(106.5 점), 사건처리 건수(104.5점), 이의신청 가능성(98점), ODR 등 IT 기술 지원 가능성(93 점), 소속 중재인의 문화적 친밀성(86.5점), 지리적 접근성(82점), 당사자의 국적·영업소와의 위치적 차별성(78점) 등의 순으로 선택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상사중재사건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적절한 중재규칙의 마련, 전문성 있는 중재인의 확보와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비용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전문인력을 두고,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비용	①	②	③	④	⑤
산업·분쟁 관련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분쟁해결 경험	①	②	③	④	⑤
중재 관련 교육 여부	①	②	③	④	⑤
언어구사력	①	②	③	④	⑤
윤리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적 이해	①	②	③	④	⑤

	비용	전문성	경험	중재교육	언어구사력	윤리성	문화적이해
(점수)	130.5	154	146.5	85	127.5	119	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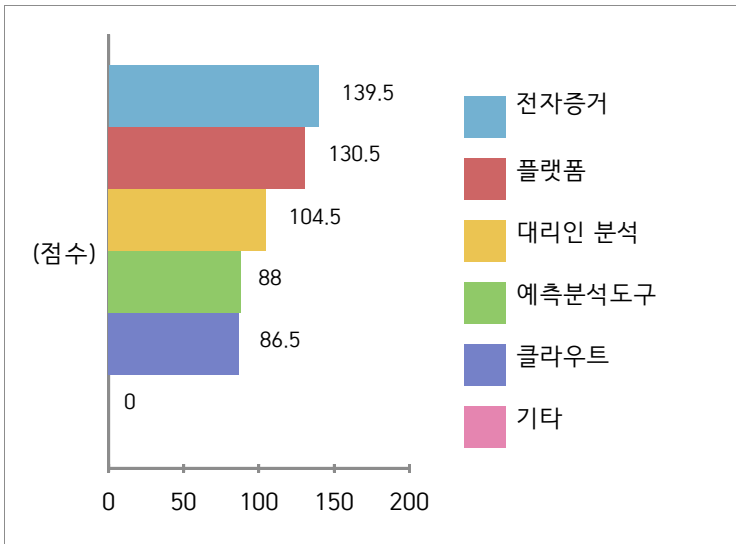


응답자들은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는 산업·분쟁 관련 전문성(154점), 분쟁해결 경험(146.5점), 비용(130.5점), 언어구사력(127.5점), 윤리성(119점), 문화적 이해(91.5점), 중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85점)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서 중재기관 선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중재인 선정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재 등 분쟁해결 경험을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이전에 중재인으로 활동한 경력 등을 중시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중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에 대하여는 중요성이 낮다고 응답하여,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 경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재인 선정에 있어서도 비용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여, 중재의 효율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중재 언어에 대한 이해도 실무상 중요한 요소로, 이는 분쟁 당사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담보하는 요소로 중요하며, 중재인의 윤리성 또한 실무상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났다. 현재 우리 중재법은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 제공하는 것은 중재인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재 당사자들의 중재인의 윤리성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2)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음과 같은 활용에 대해 생각하시는 유용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유용	유용	보통	유용하지 않음	매우 유용하지 않음
전자증거 제출 및 조사	①	②	③	④	⑤
비대면 심리의 운영 플랫폼	①	②	③	④	⑤
중재인 또는 대리인 선임의 분석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인 추천 등)	①	②	③	④	⑤
예측 분석 도구(청구의 강점 또는 예상 결과의 예측 등)	①	②	③	④	⑤
클라우드를 통한 저장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기타					

	전자증거	플랫폼	대리인 분석	예측분석도구	클라우드	기타
(점수)	139.5	130.5	104.5	88	86.5	0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중재 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국제상사중재에서도 비대면방식의 심리운영 또는 IT 활용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국제상사중재기관 선택에서 IT 지원의 중요성은 13개 요소 중 10번째로,

현재까지는 IT의 활용 또는 지원이 국제상사중재 유치에는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각국에서 전자소송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전자증거 등의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상사중재에서도 전자증거 제출 및 조사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나왔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유용한 IT 활용으로는 전자증거의 제출 및 조사(139.5점), 비대면 심리의 운영 플랫폼(130.5점), 중재인 또는 대리인 선임의 분석(104.5점), 예측 분석 도구(88점), 클라우드 등 저장 시스템(86.5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자소송 또는 각국 법원의 ODR 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전자소송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전자증거의 제출 및 조사는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국제상사중재 실무에서도 이미 이용이 되고 있다. 전자문서나 전자증거에서 나아가 비대면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등에 대하여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법원 연계형 ODR 등과 같이 그 유용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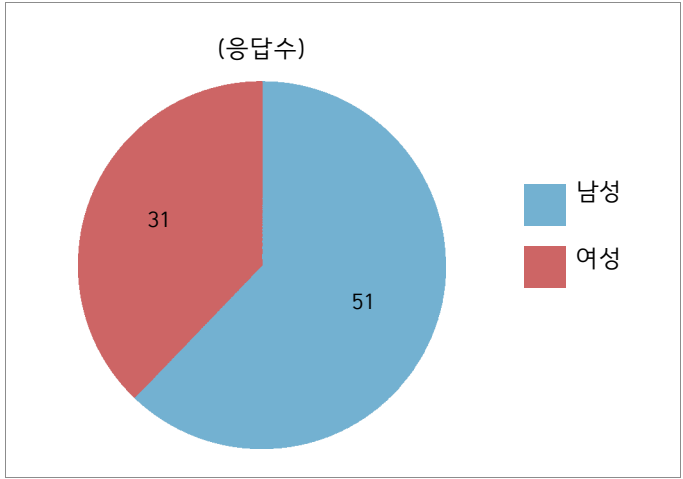
다만 AI를 이용한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재인 추천 등 중재인 또는 대리인 선임의 분석이나 청구의 강점 또는 예상 결과 예측 등 예측 분석 도구에 대하여는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응답이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미 각 당사자들이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 수요가 높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유용도 응답이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 라. 통계분석을 위한 인적사항 설문결과

### (1)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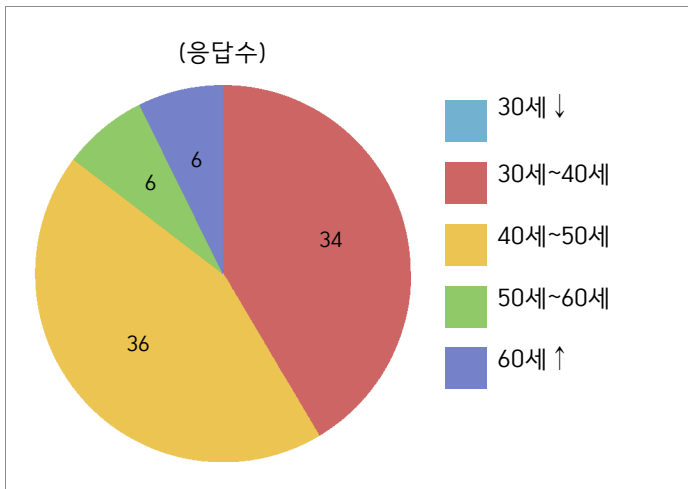
	남성	여성
(응답수)	51	31



(2) 연령대

- ① 30세 미만
- ② 30세 이상 40세 미만
- ③ 40세 이상 50세 미만
- ④ 50세 이상 60세 미만
- ⑤ 60세 이상

	30세 ↓	30세~40세	40세~50세	50세~60세	60세 ↑
(응답수)	0	34	36	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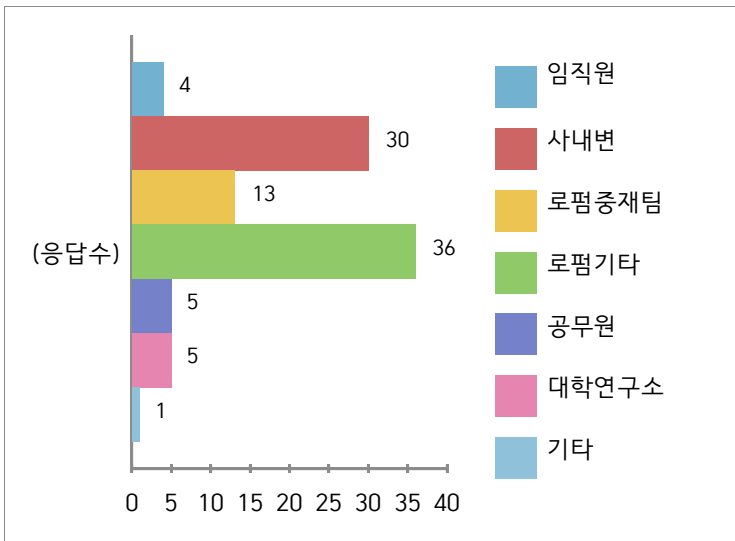




## (3) 소속(또는 소속했었던) 직역

- ① 기업 임직원
- ② 기업의 사내변호사
- ③ 로펌(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포함)의 국제분쟁 또는 국제중재팀
- ④ 로펌(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포함)의 기업자문관련 등 국제분쟁/국제중재 이외의 팀
- ⑤ 정부 공무원(외교관 포함)
- ⑥ 대학/연구소
- ⑦ 기타 \_\_\_\_\_

	임직원	사내변	로펌중재팀	로펌기타	공무원	대학연구소	기타
(응답수)	4	30	13	36	5	5	1



## 3. 분석 및 평가

## 가. 일반문항 분석 및 평가

## (1) 코로나-19에 따른 사건 수의 변화 관련

건수에 관한 설문결과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도출되지

않는다. 다만 15건 이상의 많은 수를 담당한 경우가 약 22%에 해당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해 사건 수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다수의 응답은 지난 3년간 팬데믹의 여파로 국제상사중재나 조정의 사건 수가 대체로 증가한 현상과 다르다. 예컨대, ICC, SIAC/SIMC 등의 기관에서 수행한 조정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과 차이가 있다. 다만 응답자 개인이 실제로 '관련된' 사건의 수에 국한하는 것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경우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현상과의 차이가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사건 수 증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다수인 점은 주목해야 하나, 실제 영향이 증가 또는 감소의 어느 쪽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 (2) 국제상사조정 또는 국제상사중재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관련

영향을 미친 요소의 7개 기준 중 상위 3가지는 '계약상 의무', '상대방 요청', '사내변호사 조언'으로 나타난다. 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은 요소가 '경영진 조언'인 점은 흥미롭다.

계약상 의무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데, 이는 해당 계약에 분쟁해결을 국제중재 또는 국제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인 상대방 요청과 고객 요청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응답자의 입장에서 국제상사중재나 조정을 신청하기 보다는 신청 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영진 조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요소가 되지만, 이는 고객 요청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내변호사 조언과 법무법인 조언이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라는 점은 어느 정도 사내의 변호사들의 자문이 국제상사중재 또는 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타 의견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상법 등 대부분 업계의 관행은 중재조항을 두고 있으며, 해외건설 발주에서 중재가 주요 분쟁해결수단이라는 점은 역시 계약에서 분쟁해결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제상사조정 및 국제상사중재가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해당 분쟁해결수단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3) 교육 관련

민간이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교육을 받은 비중이 지극히 낮다. 그 이유는 이번 설문에 대한 응답자가 대부분 법조인이고, 공무원 또는 그 출신의 비중이 지극히 낮은 것에 따른 결과일 것이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국내 대학(원)에서 협상, 조정, 중재의 교육은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대학, 특히 극히 소수의 법과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교육 받은 경험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회 등 민간기관의 교육 비중이 높은 것은 역설적으로 대학(원)에서 협상, 조정, 중재의 일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의 반증일 것이다.

조정·중재 기법에 관한 교육이 조정·중재 제도에 관한 교육보다 많은 것은 일응 이러한 교육을 대학(원)에서보다 학회 등 민간기관에서 더 많이 받은 결과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제상사중재 또는 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들은 물론 그들의 대리인인 변호사들이 협상, 조정, 중재의 실제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조정·중재 기법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1958년 뉴욕중재협약과 국제상사조정제에 관한 2019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내용 즉 제도의 이해 역시 동등한 비중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정·중재의 제도에 관한 교육 역시 소홀히 될 수는 없다.

교육시간으로서 7시간은 대체로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인데, 산술적으로 하루 교육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고(26.5%), 다음으로 사흘 교육(18.5%), 그 다음으로 이틀과 나흘 교육(각 12.2%) 순으로 뒤따른다. 일반적으로는 학회 등 민간기관에서의 교육이 하루에서 사흘까지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기관에서의 교육이 가장 많은 응답수를 차지한 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 한 학기 교육은 대체로 30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28시간 이상이 15명이라는 점은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14명인 결과와 호응한다.

해당 설문결과를 통해 대학 및 정부·공공기관에서의 조정 및 중재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 나.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문항 분석 및 평가

### (1) 국제상사조정 활성화 여부 관련

국내에서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응답자들이 실제 국제상사중재나 조정에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서 국내에서의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견의 상당한 일치를 보인다.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이 가장 크다는 응답은, 국제상사조정 또는 국제상사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경영진의 조언이 가장 부정적이었던 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경영진의 인식이 부족한 결과 그것에 영향을 받는 선택의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행가능성 등 분쟁해결효과에 관한 내재적 한계가 그 다음 이유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제상사중재와 비교할 때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일종의 ‘프레임’이 사회적으로 특히 법조계에서도 만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조정에 의한 합의는 분쟁당사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고, 분쟁당사자들이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조정을 통하여 합의되었을 경우에만 조정이 성공한 것이다. 분쟁당사자들이 이행할 수 있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으면, 조정은 실패한 것이고, 중재나 재판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법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된 것은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이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한 것이어서, 이러한 조정에 의한 합의는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되지 않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다. 중재판정과 달리 조정합의는 법적으로 계약으로서 그 자체로서 집행력은 없지만, 집행력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조정에 의한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조정에 의한 합의는, 중재판정과 달리, 집행력이 없어서 국제상사분쟁의 해결로서 합당한 수단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2018년 UN총회에서 채택되고 2020년 9월 12일 발효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더 이상 조정에 의한 합의에 집행력의 결여라는 내재적 한계가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라는 지적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관 또는 조정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아직 국내에서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상사조정 기관이나 조정인에 대한 평가가 미천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서 법제도상의 미비가 네 번째 응답결과로 나타나는데, 역시 이러한 응답도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조정과 국제상사 조정을 막론하고 조정은 임의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된다. 특히 기업 간 국제상사분쟁을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는데 굳이 법제도적 근거가 요구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물론 현재 가사사건의 해결에서와 같이 소위 조정전치주의가 국내법상 채택된다면, 중재 등 강제적 분쟁의 해결의 전에 임의적 분쟁의 해결인 조정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는 있을 것이다.

분쟁해결의 기간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적은 수이지만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응답되는 것은 미묘한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상사조정이 국제상사중재나 국제상사재판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지는 것은 그 절차를 통한 해결의 시간이 덜 걸리고 따라서 비용이 덜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분쟁해결 기간과 비용에 대한 우려가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작은 이유로서 응답된 것은 실제로는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에 관하여 분쟁해결의 기간과 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작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타에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응답들이 있다.

첫째, 상대방이 국내에서의 상사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준거법에 근거하는 상사중재가 아닌 상사조정을 국내에서 원하지 않는 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패소 시 책임문제라는 응답은 국제상사조정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원하지 않으면 조정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패소'의 경우를 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정합의가 되어서 분쟁이 해결되어도 그러한 해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따질 수는 있을 것이다.

셋째, 홍보 미비는 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당사자 기업이 감사 우려로 합의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패소 시 책임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제중재와 달리 조정제도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는데, 위 홍보 미비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여섯째, 해외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 첫째의 기타 응답과 같이 상대방이 국내에서 상사조정을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분쟁의 특성 상 결정이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국제상사중재에 관련될 것이다.

여덟째, 대한민국의 신뢰가 없다는 점은 국제상사조정은 물론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도 해당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중요하다는 점이 해당 설문결과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 (2) 국제상사조정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요소 관련

국제상사조정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위에서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가장 많은 응답수를 차지한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기타에서 주목할 응답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업계에서 일반적 관행으로 정착인데, 국제상사조정의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국제상사조정이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건설 등의 특정 분야를 우선하여 인식 제고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홍보인데, 위의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경영판단에 대한 신뢰와 존중인데,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 노력과 조정합의에 대한 경영판단은 국내 형법에서 자칫 배임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과 관련된다.

넷째, 홍보의 중요성인데, 이는 국제상사조정기관의 직접적인 홍보의 노력을 가리킨다.

다섯째, 해외 상대방의 동의는 조정이 가능한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여섯째, 분쟁 결과의 불확실성과 객관적 소송 가능성 평가 등 경영진의 인식 제고인

데, 일단 조정에 의한 해결은 해당 기업이 합의하는 경우에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조정합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제3자인 중재인이나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중재나 재판에서와 같은 분쟁 결과의 불확실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3)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한 설문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0.7%인데, 응답자 중에서 사내변호사가 30명(31.9%), 로펌 변호사가 49명(52%)으로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법조인들의 동 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아주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 관계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이 서로 보완한다는 응답자가 62명(75.6%)인데, 이는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고, 협상이 실패하면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로 협상인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고, 이러한 당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해결이 실패하면, 중재나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응답자 대부분이 중재와 조정의 관계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상사조정이 국제상사중재를 대체한다는 응답자와 서로 관계가 없다는 응답자가 각 7명(8.5%)인데, 이는 중재와 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포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를 통해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해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릴 필요성이 도출된다.

### (4)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을 관련

한국이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하면 동 협약에 규정된대로 이행되지 않은 국제조정합의의 집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이행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54.9%의 응답자가 이행법이 필요하다고 하며 7.3%의 응답자는 이행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한국은 조약을 포함하여 국제법의 이행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단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점에서는 일응 동 협약의 국내 이행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에 따른 국내 이행법률에 동 협약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가장 소극적인 방식이다. 싱가포르도 이렇게 동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해당 법에 포함하였다. UNCITRAL 조정모델법을 이행법에 포함하는 것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된다. 조정모델법은 동 협약의 내용은 물론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동 조정모델법의 취지는 조정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UN회원국이 동 조정모델법을 참조하라는 것이고, 이 점에서 조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민사조정법의 법원 조정과 검찰에서 운영되는 형사조정은 물론 각 행정부 기관마다 설치된 행정형 조정으로 국내는 조정 포화상태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내의 제도적 조정이 당사자 중심의 협상을 도와주는 민간형 조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조정모델법에 포함된 조정의 개념은 UN의 기관인 UNCITRAL이 가장 최근에 채택한 조정에 관한 세계적 기준인 점에서, 조정모델법이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내용에 포함되면, 기존 국내 조정제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경우 이행법의 명칭은 '상사조정기본법'이 될 수 있다.

#### (5) 조정산업진흥법과 같은 입법의 필요성 관련

현행제도와 같이 법원의 민사조정, 검찰의 형사조정 및 행정부의 행정형 조정이 만연한 국내에서 조정을 산업으로서 진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위 조정산업진흥법의 입법 필요에 대한 과반이 넘는 응답(64.6%)은 그만큼 국내에서도 조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 (6) 국제상사조정의 조항이 포함된 계약의 체결 여부 및 필요성 관련

아직 국제상사조정이 국제상사중재에 비교하여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국제상사조정을 경험한 23명의 응답자 중에서 조정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14명의 긍정적인 응답은 - 비록 전체 응답자의 17.1%에 불과하더라도 -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국제상사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상당한 수준으로 계약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계약 체결 후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동 계약에 국제상사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규정되면, 당사자들은 자동적으로 해당 분쟁을 국제상사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게 되는



점에서,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려면, 이렇게 계약에 국제상사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응답자의 과반수(68.3%)가 그 필요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 (7) 법무법인 내 국제상사조정팀의 설치 필요성 관련

현재 국내 법무법인은 대체로 국제중재팀을 두고 있는데,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국제중재팀과 별도의 국제조정팀이 설치될 필요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3%가 넘는다. 이에 반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2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응답은 국제중재팀이 국제상사분쟁을 종래와 같은 중재에 의한 해결과 함께 조정에 의한 해결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위에서 과반수가 넘는 75.6%의 응답자가 국제상사조정이 국제상사중재와 보완 관계에 있다는 있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별도의 국제조정팀의 설치 필요성을 지지한 응답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국제조정팀이 법무법인에 설치되면 나름 국제상사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표시로 이해될 수 있다.

#### (8) 공동조정인 관련

국제상사조정에서 2인 이상의 공동조정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일단 확인되며, 반대로 단일조정인의 지정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상사조정에서 공동조정인의 지정이 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9) 조정인의 자격 관련

조정인의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한 여부에 관하여 과반수가 넘는 6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29.6%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본 설문 응답자 중에서 사내변호사가 30명(31.9%), 로펌 변호사가 49명(52%)으로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인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의 협상을 도와주고, 중재와 달리 법에 따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닌 점에서,

반드시 변호사만이 조정인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점에서 법조인들 중에서도 조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조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해당 사건의 실무 전문가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꼽았다. 그 다음으로 조정 교육을 이수한 자, 외교관이나 기업인 등 협상 경험이 풍부한 자, 학계 전문가를 꼽는 응답이 뒤따른다. 조정은 협상을 도와주는 기술적인 성격이 있는 점에서, 36.2%가 해당 사건의 실무 전문가가 조정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은 조정의 기법보다 조정의 대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응답자의 67.9%가 조정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그 자체로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의 과반수가 조정인이 되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조정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 (10) 변호사로서 조정을 선택할 유인 관련

수임료 등 기회비용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매우 많다고 많은 응답자가 각각 7명(8.6%)과 23명(28.4%)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재와 비교할 때 조정의 시간이 훨씬 적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응답자가 수임료 등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선택하겠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보통이라는 응답자도 31명(38.3%)이나 되므로, 수임료 등 기회비용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선택은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거의 없다고 없다는 응답자가 각각 3명(3.7%)과 11명(13.6%) 존재한다. 응답자의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응답자 일부는 수임료 등 기회비용이 조정을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조정의 활성화에 관하여 변호사들의 선택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11) 국제상사조정에서 중요한 요소 관련

설문결과에서는 '집행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집행가능성 등의 내재적 한계를 국제상사조정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및 중요요소로 비중 있게 판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즉 응답자들은 국제상사조정에서 화해합의의 집행을 통하여 더 이상 아무런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종국적인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로 '신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조정제도의 장점으로서 신속한 분쟁해결에 대하여 응답자들 역시 많은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동시에 조정절차에서 신속성이 요구 혹은 관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립성 및 공정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조정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나 덕목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분쟁해결에 관한 기회비용'도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선 문항에서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많다고 보는 점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비용'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정의 장점으로 저렴한 비용을 꼽고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결과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응답자들은 비용상의 이점보다는 조정제도가 가진 다른 특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혹은 국내 조정과 달리 국제상사조정에서는 비용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이미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반대로, 조정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사고가 이미 전제됨에 따라 비용 자체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하는 것이 결과로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결과로부터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상의 집행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되며, 이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 필요성, 그리고 이행법률 혹은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 (12) 국제상사조정기관 선택 시 중요한 요소 관련

설문결과에서는 국제상사조정기관의 선택 시 '소속 조정인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기관의 전문성이 합리적인 분쟁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응답자들은 다른 요소보다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분쟁해결이라는 본질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효율성'을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해당 조정기관이 분쟁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관심사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앞선 문항에서 국제상사조정에서의 신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기관의 선택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은 앞의 문항과 상반된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상사조정에 있어서는 비용이 크게 문제되는 요소가 아니지만 조정기관의 선택에서는 의미 있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달리 취급하는 사고로부터 기인한다. 즉 조정기관의 전문성이나 규모 등은 비용과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 하에서는 전문성이나 규모, 인지도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비용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규모 및 인지도'와 '평판'이 국제상사조정기관의 선택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점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즉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일정한 규모와 인지도를 갖춘 기관을 선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하위의 세 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사자의 국적·영업소와의 위치적 차별성', '지리적 근접성', '소속 조정인의 문화적 친밀성'이다. 특히 당사자의 국적이거나 영업소와 조정기관이 위치적으로 차별성을 갖출 필요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은 객관성을 경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치와 객관성이 무관하다는 사고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친밀성도 하위에 있다는 점 역시 이러한 사고를 뒷받침해준다.

기관의 전문성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사고는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조정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양한 민간조정기관이 전

문성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각각의 전문분야에 관한 조정인의 양성 및 교육 등이 필요하며, 이는 조정인의 자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 (13) 조정인 선정 시 중요한 요소 관련

설문결과에서는 조정인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산업·분쟁 관련 전문성'으로 꼽고 있다. 이것 역시 앞선 문항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분쟁해결이나 사건의 전문성에 일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조정인의 '분쟁해결 경험'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인데, 조정인이 많은 분쟁해결을 경험할수록 그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응답자들은 전문성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한다.

'언어구사력'을 세 번째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는데, 국제상사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조정 관련 교육 여부'를 조정인 선택 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이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와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교육보다는 실제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을 통해 다양한 조정기법 및 의사소통기법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건이나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 외에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자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의미가 있다. 즉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정교육의 활성화가 필요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 (14) 국제상사조정에서 IT의 유용성 관련

설문결과는 국제상사조정의 특성상 원거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IT수단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가장 유용성이 큰 것으로 '전자증거의 제출 및 조사 수단'을 택하고 있다. 다른 수단보다도 조정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용성이 더 큰 것으로 이해된다. 두 번째로 유용하다고 하는 '비대면 심리 플랫폼' 역시 같은 의미에서 유용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IT기술을 통한 국제상사조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중심이 되어 개발되고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제2절 |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발전적 보완과 문제개선

### 1. 국제상사중재의 홍보 필요성

#### 가. 중재제도 인식 개선

중재산업진흥법이 제정되고 2019년부터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서는 69.5%의 응답자가 국제상사중재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국제상사중재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중재법, 뉴욕중재협약 등에 대하여는 알고 있어서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반이 2016년에 제정된 중재산업진흥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고, 중재산업진흥법 이후 국제상사중재가 특히 활성화되지는 않았다는 인식이 다수 차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법조계·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sup>630)</sup> 이 기본계획에는 중재에 대한 교육 실시나 중재 관련 뉴스레터 제공, 민간 및 공공부문에 대한 중재제도의 홍보,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중재정보의 접근성 향상

국제상사중재가 우리나라에서 잘 활용되어 있지 않은 요인에 대하여, 설문조사결과는 그 주된 원인을 사회적 인식의 부족(22.3%),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16.2%), 상소제도 부재 등 절차적 한계(14.2%),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12.2%), 전문성에 대한 우려(9.6%), 공정성에 대한 우려(6.6%), 법제도상의 미비(6.1%), 기타 및 무응답(12.7%) 등에서 찾는다.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응답한 중재제도에

63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사법무과]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480> (2022. 11. 7. 최종접속).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중재뿐만 아니라 국내중재도 활성화하여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점에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홍보 방법으로, 국내 포털의 법률섹션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체험 프로그램 등의 방법 외에도 기본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홈페이지에 중재사례나 주요법제 내용에 대한 웹툰이나 5-10분의 간단한 동영상 등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풍부하게 있어서, 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등 중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 2. 중재절차의 공정성·효율성 향상

### 가. 중재절차 관련 법령의 개선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지 않은 요인으로서는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 상소제도 부재 등 절차적 한계,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 전문성에 대한 우려, 공정성에 대한 우려, 법제도상 미비 등도 거론되는데, 모두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 절차적 정의(procedural fairness)에 관련된 요소들이다. 한편, 국제상사중재를 분쟁해결방법으로 선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재판정의 집행 보장이며, 이 외에도 중재판정부의 중립성·공정성과 중재절차의 비용과 신속성 등이 거론되었다. 이는 중재절차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것으로, 중재절차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적법절차 또는 절차적 정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재법, 중재규칙, 민사집행법 등 중재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근 국제상사중재에서 문제가 되는 기간 및 비용에 대하여도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되는 국내 소송절차나 행정형 조정제도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나. 법원의 중재에 대한 전문성 향상

중재절차와 관련된 법령 전반을 개선할 필요는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지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즉 설문조사 결과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지 선정에 대한 고려요소로 제시한 7가지 요소 중 복수응답으로 선정한 가장 중요한 고려한 요소는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153점)이다. 이는 국제상사중재의 가장 큰 특징인 구속력 또는 집행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뉴욕중재협약에 의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이 되고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수용으로 국제상사중재절차가 국제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재지와 집행지의 사법기관의 해석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가능성이 좌우되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려요소로 계약에서 정하는 준거법(139점)과 국제상사중재를 규율하는 국내법의 존재(133.5점)를 선정하여, 중재지의 사법기관의 해석과 중재법의 내용이 중재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응답자들은 네 번째 고려요소로 중재지 법원 절차의 타당성(131점)을 선택하여 중재지 법원에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의 법제도를 포함하여 중재지 법원의 국제상사중재절차에 대한 협조 등 중재지 법원의 소송운영 실무도 중재지 선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어 중재판정의 집행 및 중재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재지의 법제도 및 소송실무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은 위의 고려요소들에 이어서 중재지의 평판 및 인지도(119점), 중재판정 등 집행비용(116점), 당사자의 국적이나 영업소와의 위치적 차별성(96.5점)을 중재지 고려요소로 선택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중재지의 전통적인 평판이나 인지도, 위치보다는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중재법과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중재친화적인 법원의 소송실무의 중요성을 유추할 수 있다.

### 3. 중재인 자격 규제의 완화

국제상사중재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의하므로 중재판정부의 독립성·중립성·전문성·윤리성 등은 중재절차의 질을 좌우한다. 다만 중재는 법적 판단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으며, 우리 중재법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에 의한 중재판정도 허용하



고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중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변호사가 아닌 중재인이 다수 활동한다. 이에 중재인 자격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 제109조를 전제로 중재인 자격에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설문을 실시한바, 60명이 변호사 자격이 필요함을, 그리고 20명이 필요하지 않음을 응답하였다. 국제상사중재는 구속력이 있고 집행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집행불능 등에 대비하여 법조인을 중재인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이 개정되어 변호사 아닌 자가 중재인으로 활동 가능하다는 전제로 변호사가 아닌 자의 중재인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정확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문조사대상의 상당수가 법조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중재를 당사자로 경험한 그룹이나 변호사가 아닌 중재인 등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재인 선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중재인 선정에서 산업·분쟁 관련 전문성, 분쟁해결 경험, 비용, 언어구사력, 윤리성, 문화적 이해, 중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재인 선정에서 법적 지식보다는 분쟁대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이해와 중재인으로서의 경험 등이 중시됨을 시사한다. 한편, 공정한 중재인 선정을 위하여 현재 우리 중재법은 중재인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례 등을 분석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 제공하는 것은 중재인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재 당사자들의 중재인의 윤리성에 대한 불안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 4. 중재기관 개선 방안

##### 가. 중재기관 전문성 향상 방안

국제상사중재의 대다수는 중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재기관의 경쟁력은 국제상사중재 유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상사중재기관 선택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 3가지는 효율성,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 비용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재기관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중재기관의 사무처리 및 중재절차에 대한 보조가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 적절한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이 담보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중재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중재기관의 평판과 중재규칙도 상당히 고려되고 있으므로, 중재규칙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중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중재기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중재 당사자의 수요에 맞는 신속중재절차, 긴급중재인 등 적절한 중재규칙을 마련,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중재기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기관 홍보와 함께 적절한 중재규칙의 마련, 전문성 있는 중재인의 확보와 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비용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재기관에 중재전문인력을 두고, 전문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IT기술의 활용

분쟁해결절차에서의 IT의 활용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코로나19 이후 중재에서도 비대면심리 등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에서는 국제상사중재기관 선택에서 IT 지원의 중요성은 크게 고려가 되는 요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현재까지는 IT의 활용 또는 지원이 국제상사중재 유치에는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각국에서 전자소송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고 전자증거 등의 이용이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제상사중재에서도 전자증거 제출 및 조사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응답이 나와 향후 중재규칙 등에서 IT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유용한 IT 활용으로는 전자증거의 제출 및 조사(139.5점), 비대면 심리의 운영 플랫폼(130.5점), 중재인 또는 대리인 선임의 분석(104.5점), 예측 분석 도구(88점), 클라우드 등 저장 시스템(86.5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자소송 또는 각국 법원의 ODR 이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전자소송이 활발히 이용되고 전자증거의 제출 및 조사는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국제상사중재 실무에서도 이미 이용이 되고 있다. 전자문서나 전자증거에서 나아가 비대면 심리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등에 대하여도 미국이나 캐나다의 법원 연계형 ODR 등과 같이 그 유용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다만 AI를 이용한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재인 추천 등 중재인 또는 대리인 선임의 분석이나 청구의 강점 또는 예상 결과 예측 등 예측 분석 도구에 대하여는 알고리즘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우려로 인하여 응답이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미 각 당사자들이 클라우드 저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 수요가 높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유용도 응답이 낮게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



## 제 7 장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 결 론

김한균·김명수·박노형



### 제1절 | 논의의 정리

본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는 국제중재 및 조정 유관 제도와 정책의 현실과 최신 동향을 분석하며,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상사중재 제도 및 산업의 발전 성과와 한계를 법무정책적 관점에서 개괄적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에 관한 기업인, 법조인과 일반인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관련 제도와 정책 활성화 문제에 주목하였다. 이같은 실태파악 및 문제현실 분석을 통해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필요성과 예상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 1. 국제중재 체계의 국내 현황과 문제

첫째, 1999년 중재법 전부개정으로, 국제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기존 중재법의 적용을 기피하던 외국 기업 및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를 이용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2006년 모델중재법이 개정배경 외에도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하고,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중재법 개정이 추진되었는바, 특히 국제중재 유치건수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올리면 중재활성화로 인하여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중재지 선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소는 중재지의 중재법이라는 점에서 아시아지역에서의 지리적 이점과 경제

개방성 등의 장점을 살려 중재 허브로 도약하고자 중재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둘째, 2019년 법무부가 중재진흥법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2019~2023)'은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해결절차인 중재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률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서 연관 효과가 큰 중재산업을 육성하여 '중재산업 진흥을 통한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획이다. 이는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취약한 중재산업 기반을 지적하며, 이는 우수한 법률가가 많음에도 중재분야 진입이 원활하지 않아 중재인력이 부족하고, 중재에 대한 정보 공유가 미비하여 중재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바탕으로, 중재 전문인력 양성 및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 2. 국제조정 체계의 국내 현황과 문제

첫째, 우리 법제에서 민간형 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국제상사조정 of 的 定의 定의를 내리기 어려우나, 국제상사조정의 승인 및 집행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년 제정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은 국제상사조정의 개념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협약상 국제상사분야에서의 조정은 국내의 경우 좁은 의미의 조정, 즉 민간형 조정 중에서도 국제상사분쟁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은 국내중재규칙과 국제중재규칙을 구분하고 규정하는데 비해 조정 규칙은 국내와 국제사건의 구분 없이 하나의 규칙을 두고 있다.

둘째,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은 민사조정의 하나인 법원연계형 조정의 형태로 활용되는 것이 대다수이며, 무역분쟁조정으로는 대외무역법에서 규율한 선적전 검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출상과 검사기관 간의 분쟁을 위한 지정 조정기관으로서의 조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순수한 의미의 국제상사조정의 이용은 아직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무역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국제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부재, 조정사건 유치를 위한 조정기관의 관심 부족, 전문성을 갖춘 국제조정 인의 부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셋째,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재지의 법원은 절차 전반에 관하여 중재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협조·지원을 하게 되며, 중재의 결과인 중재판정에 대하여 취소할 권한도 가지므로,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지 법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우리 법원은 중재합의의 효력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중재조항 독립성을 인정하고, 중재판정 이유기재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등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조정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 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국제분쟁의 조정, 그리고 민간조정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조정의 효력은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기여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은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 '자신의 절차규칙에 따라, 그리고 동 협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에 의한 화해합의를 집행하고 그 원용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한국이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절차규칙'에 해당하는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3월부터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T/F를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의 내용과 형식은 ①싱가포르조정협약의 본래 취지인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집행 등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안(가칭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한 법률'), ②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은 물론 동 협약과 함께 UNCITRAL 조정모델법 및 UNCITRAL 조정규칙에 규정된 조정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있다.

일곱째, 국내에서는 조정을 당사자 주도의 자율적 분쟁해결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지 실정에 따라 분쟁의 대상에 관한 액수를 조정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감액하는 것, 또는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시키는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조정인의 중립성이나 당사자가 절차상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등의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여덟째, 분쟁해결제도로서 조정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질적 향상이 필수적일 것인바, 특히 국제경쟁력과 평판이 중요한 국제상사분쟁의 조정 영역에서는 조정 수행에서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조정을 통한 성공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국제상사중재 및 국제상사조정 실증조사 결과 비교

#### 가. 제도의 국내 활성화 정도

국제상사조정의 경우 응답자 중 91.5%,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69.5%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국제상사중재에 비해 조정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국제상사조정의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고, 양 제도 모두 국내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 나.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국내에서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① 사회적 인식 부족(26.1%), ② 분쟁해결 효과에 관한 내재적 한계(22.9%), ③ 기관 또는 조정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13.1%), ④ 제도상의 미비(12.6%), ⑤ 공정성에 대한 우려(7.9%)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① 사회적 인식의 부족(22.3%), ②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16.2%), ③ 상소제도 부재 등 절차적 한계(14.2%), ④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12.2%), ⑤ 전문성에 대한 우려(9.6%) 순으로 선택하였다.

국제조정과 국제중재 모두 사회적 인식 부족이 가장 높게 나와 분쟁해결수단으로 양 제도 모두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 밖의 이유로 제시된 것은 양 제도의 차이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조정의 경우에는 집행가능성 등 분쟁해결 효과에 관한 내재적 한계와 조정인의 신뢰도를 선택하였지만,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와 상소제도 부재 등 중재제도가 가지는 절차적 한계를 들고 있다.

#### 다. 제도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

국제상사조정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는 위에서 국제상사조정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와 같은 맥락이어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① 사회적 인식의 제고, ② 집행가능성 등 내재적 한계의 극복, ③ 기관 또는 조정인의 신뢰도 제고, ④ 기본법 등 법제도 마련, ⑤ 전문성 제고 등의 순서이다.

국제상사중재제도 발전에 필요한 요소 역시 국제상사중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 제고, ② 사회적 인식 제고, ③ 내재적 한계 극복, ④ 전문성 제고, ⑤ 효율성 제고 등으로 나타났다.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비활성화 이유와 비교해 1, 2위 순위가 비록 바뀌었으나 의미가 있을 만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양 제도 모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보아 홍보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 그리고 각각의 제도가 갖고 있는 내재적 한계 극복과 신뢰도 제고 등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 라. 양 제도에 관한 이해도

2020년 9월 12일 발효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매우 잘 또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21.5% 정도이다. 동 협약을 전혀 또는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60.7% 정도로 인지도가 낮다.

중재법제(뉴욕협약과 중재법)에 대한 이해도 설문에서도 매우 잘 또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약 30% 정도이고 중재산업진흥법은 18% 정도이다. 응답자 대부분이 법조인임을 고려하면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한 싱가포르 조정 협약이든 중재법제이든 전반적으로 관심도와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마.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 사이의 관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발효에 따른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의 관계에 대하여,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상사조정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는 응답자가 62명(75.6%)이다. 국제중재의 경우 통상 중재합의를 할 때에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등을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해 다툼의 소지를 없애도록 주된 계약체결시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인데 반해, 조정은 아직까지는 분쟁 전에 계약서 작성시 분쟁해결수단으로 명시하는 관행은 흔하지 않고 주로 갈등 또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조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 관행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제조정이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된다면 자연스럽게 계약체결 시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 바. 조정인 및 중재인 자격

조정인은 반드시 변호사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68% 정도(전체 82명 중 55명)가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중재의 경우에도 73% 정도(60명)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재가 조정의 경우보다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현행 변호사법에서 비변호사가 취급할 수 없는 사무로 '중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응답자 대부분(전체 84% 정도)이 변호사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정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설문과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설문의 결과 위에서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요한다고 응답한 자(중재 설문의 경우 60명, 조정 설문의 경우 55명)가 대부분 무응답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 응답자 수는 크게 차이가 없다(중재 설문의 경우 49명, 조정 설문의 경우 47명).

응답한 자 중에서 중재와 조정 설문 모두에서 대상 사건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최우선순위로 뽑았다. 다만 조정 설문과 중재 설문에서 학계 전문가 비중에서 중재(12명, 24.5%)가 조정(6명, 12.8%)의 경우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재인이 중재절차, 준거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므로 관련 지식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적합하다는 비중이 다소 높게 나왔다고 판단된다.

### 사. 절차수행 시 중요 요소

국제조정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① 집행 가능성, ② 신속성, ③ 중립성·공정성, ④ 기회비용 순으로 선택하였고, 국제중재절차에서는 ① 집행 가능성, ② 중립성·공정성, ③ 비용, ④ 신속성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양 절차 모두에서 집행 가능성을 절차수행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는데, 이는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임을 감안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양 절차 모두 궁극적인 실현 단계인 집행 단계에서 일방당사자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여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 아. 분쟁해결기관 선택 시 중요 요소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국제상사조정기관이나 국제상사중재기관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① 소속 조정인(또는 중재인)의 전문성, ② 효율성, ③ 비용 순으로 양자 동일하다. 특히 응답자들은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소속 조정인(또는 중재인)의 전문성을 들었는데, 소속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해당 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 자. 조정인 또는 중재인 선정시 중요 요소

조정과 중재 모두 전문성과 관련 분야의 경험을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중재교육 또는 조정교육 요소에 대해서는 양 쪽 모두에서 최하위로 선택되었는데,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사내변호사, 로펌변호사 포함, 84% 정도)이므로 교육을 통한 법적 지식을 취득한 조정인이나 중재인보다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자를 분쟁해결조정자로 하려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 차. 분쟁해결절차에서 IT 활용

국제상사조정절차와 국제상사중재절차 모두 IT 활용에 대해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와 비대면 심리 운영 플랫폼 등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응답

하였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대유행으로 원격심리절차가 일반화되고 대량의 증거를 제출하여 심리를 지연·방해는 것을 예방하고자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제도 등이 민·형사절차에 도입됨에 따라 국제조정절차나 국제중재절차에서도 유용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절 |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 기대 효과와 정책과제

### 1. 국제 중재의 활성화 정책과제

첫째, 중재진흥법 및 이에 따른 기본계획은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중재진흥법 제정 이후에도 국제중재 유치 건수 등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중재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중재진흥법 및 이에 따른 기본계획은 체계적 지원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여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중재선진국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중재진흥법 제정 이후에도 국제중재 유치 건수 등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아 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중재산업 지원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팬데믹 시기에 세계경제의 불활성화로 분쟁이 증대하면서 국제중재 심리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즉 상당 기간 동안 국제 중재는 심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되면서 심리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대면심리가 아닌 virtual hearing으로 이루어졌음. ICC 통계에 따르면, 2020년 4분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ICC 사건 중 71%가 virtual hearing으로 진행되었다.(2020년 1분기의 36%보다도 2배 가까이 증가된 수치)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virtual hearing은 상당히 그 효용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들이 화상회의를 통한 virtual hearing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재 관련 규정에 관련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다.<sup>631)</sup>

특히 국제상사중재 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사건수가 증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중재산업은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경쟁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시장원리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중재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중재 이용자들이 국제 교역을 통하여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바탕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교역규모 및 법조인력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선호되는 중재지는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으로 조사되는 것을 볼 때, 아직 국제상사중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경제적 기반은 국제상사중재 유치를 위한 중요한 요소인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수, 무역규모 등을 고려하고 인접국인 중국, 일본 등의 교역규모를 고려하면 중재시장을 뒷받침하는 지리적·경제적 기반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국제중재를 활성화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 법원의 태도 및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일반적 관여 금지 조항을 둔 중재법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법원의 개입정도에 대하여 최소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중재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단심제인 중재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법원이 중재절차 진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관여 기준 및 협조의 방법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제상사중재절차에서 경쟁력이 있는 중재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를 선호되는 중재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재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이 중재에 호의적이고, 우리 중재인들이 국제적 명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국제중재지로 적합한 환경 및 시설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필요설비의 운영,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규칙 등은 중재기관이 담당하고, 국제중재는 전문성을 갖추고 국제적 명성이 있는 중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중재기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무역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

631) 백운재, COVID-19과 국제중재의 동향 변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년도 제5차 중재·조정 법정정책 세미나, 2021년 7월 14일)

하다. 중재산업 발전을 위하여는 정부의 지원 외에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중재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관 등이 존재가능한 중재환경 조성도 검토 필요하다.

일곱째, 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재제도의 특징으로 인하여 중재절차의 질은 우수하고 전문적인 중재인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재인을 모집하고 일반대학원에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수한 중재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들의 법질서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상사중재절차를 이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법률교류를 하면서 최신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홉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중재의 지연과 비용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속중재절차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속중재절차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에는 동일하게 구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므로 중재절차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속중재의 적용범위, 심리기간, 중재판정부 재량권 등에 대하여 국제중재 실무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열째, 홍콩과 싱가포르가 영미법계 이점을 살려서 미국과 영국 등이 아시아 국가의 기업과 분쟁이 있을 때 중재사건을 유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중국과 일본 등 인접한 대륙법계 국가들과 유럽 소재 기업들과의 분쟁에 대하여 중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재 규칙 마련에 있어서 대륙법계 국가들에게 익숙한 중재규칙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열한째, 아직 국제상사중재지로서 위상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국 당사자들에게 우리 법원의 중재친화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함. 또한 우리 법원의 중재친화적 실무처리를 국제상사중재 이용자들에게 알려서 국제적인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열두째, 우리 변호사법은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중재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정으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가 중재대리를 할 수 있는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중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바,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중재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국제 조정의 활성화 정책과제

첫째, 싱가포르조정협약상 화해합의는 현행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입법에 관한 정비가 필수적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중재의 경우와는 달리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가입을 계기로 하여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법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추진하며, 이와 함께 일반법의 제정을 장기적 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이 발효됨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는 국제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새롭게 열리는 분쟁해결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 협약 및 조정모델법의 자국 내 수용을 위한 입법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임. 특히 국제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국내 집행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집행을 위한 실무적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해 국내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싱가포르조정협약과 조정모델법의 적용범위가 기존 국내법과 충돌하지 않는 이상, 동 협약의 효력에 따라 조정모델법을 기초로 하는, 가칭 '상사조정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존 국내법제도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국내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한 국제상사 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그 근거로서의 관련 기본법이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분쟁해결방식의 선택에 당사자의 자율성이 증시된다면, 절차의 진행과정 역시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수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은 조정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를 법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사조정기본법은 당사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절차와 관련해서도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사조정에 관한 기본법은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함과 동시에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까지 고려하여 그 내용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조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민간형 조정은 다양한 유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인의 양성을 담당할 수도 있음. 특히 조정인의 양성에 관하여 공공기관이 학회나 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기관에 조정인 교육 및 인증업무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그 결과를 점검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조정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정에 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저야 하며, 새로운 법제의 도입 또는 신설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에 관해서는 국제조정 수행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조정의 진정한 의미를 제도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기능 수행이 기대된다. 다만 조정의 제도적 확장에만 목적을 두게 되면 결국 현재의 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민사조정, 행정형 조정 및 형사조정과 같이 정부가 개입하는 관계식 조정제도에 그치는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조정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의미가 있는 바,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념을 반영한 싱가포르조정협약체제에서 한국이 국제조정 허브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평판과 신뢰를 가지고 자율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제조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정정책적 연구과제

#### 1. 양 제도에 관한 인식 고취 및 이해도 증진 필요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대한 인지도에 관한 설문결과를 보면 일부만 알고 있고 알지 못하거나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8.5%에 이른다.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사내변호사, 로펌변호사 포함 전체 응답자의 84%임)임을 고려할 때 동 협약이 변호사 실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며 협약의 효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 2. 조정인·중재인의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확대

조정인이나 중재인의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략 70%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응답자 대부분이 변호사이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조정이나 중재를 할 수 있다는 법률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협상이나 분쟁해결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일정한 협상기법이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해당 분야에 관한 해박한 전문지식도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정인·중재인의 자격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학계, 실업계)로 확대가 필요하다.

#### 3. 분쟁해결기관으로 갖추어야 할 중요 요소 분석 필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의 경우 모두 소속 구성원(조정인, 중재인 등)의 전문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 입장에서는 중재나 조정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비용 절감이나 절차적 효율성보다는 소속 구성원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내놓는 결론(판단)에 대한 신뢰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은 40여 개 국가(대한민국 포함)의

국적을 가진 625명(2022.6.1.기준)<sup>632)</sup>의 전문 인력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분쟁해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분쟁해결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안내를 통해 위상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 4. 「조정산업진흥법」 제정에 관한 논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재의 경우에 중재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sup>633)</sup>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정산업진흥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5%(82명 중 53명) 정도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제20대 국회(2016~2020)에서 한 차례 입법화를 시도한 적이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2018.10.31., 의안번호 2016179)은 조정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취약하므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분쟁조정시설 등 조정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① 국무총리가 조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조정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조), ② 국무총리가 조정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훈련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6조). 그리고 ③ 국무총리가 조정산업 관련 국제협력의 위한 조사 및 연구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안 제7조).<sup>634)</sup>

이 법률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정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여러 분쟁의 효율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조정 활성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타당한 입법조

632) 대한상사중재원 제공 자료에 따르면, 국적별로 보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15%), 영국(9.6%), 중국(7.2%), 독일(4.2%), 싱가포르(4.2%) 순이며, 지역별로 보면 법조계(82.6%), 학계(10.7%), 실업계(4.6%), 공공단체 및 기타(2.1%)이다.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남성(83.5%), 여성(16.5%)으로 구성되어 있다.

633) [시행 2017. 6. 28.] 법률 제14471호, 2016. 12. 27., 제정]

634)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누리집,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R8U1K0J3U1Z1Q6Z3E8X3Q8P7S8J5](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R8U1K0J3U1Z1Q6Z3E8X3Q8P7S8J5), 2022.11.7. 최종 방문.

치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다만, 유사한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인 중재의 경우 기본법인 중재법이 제정된 이후에 중재를 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점, 민간조정 및 국제조정 건수가 아직 미흡하여 “산업”으로서 독자적 발전가능성 유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률안에 대해서 ① 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조정이용 권고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② 법률 명칭을 「조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로 변경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sup>635)</sup>

---

635) “조정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179호), 2019. 3., 30면.



## [국내문헌]

국회입법조사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 싱가포르 협약 대응을 중심으로』, NARS 정책연구보고서, 2021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 대한상사중재원, 2012

\_\_\_\_\_, 『중재50년사』, 대한상사중재원, 2016

\_\_\_\_\_, 『클레임 통계』, 대한상사중재원

법무부, 『UN국제상거래 규범집』 제2권, 2020

법원행정처, 『2022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202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년 분쟁조정제도 관련 해외현지조사 싱가포르 방문 결과보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9

강수미, “행정형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중재연구 제25권 제4호, 2015

김갑유 외,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7

김병태, “신속한 중재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시사점 -UNCITRAL의 신속중재규정(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김봉철, “독일 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기구의 법제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2021

김상호, “한국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중재연구 제17권 제3호, 2007

김세준,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2020

김용섭,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 저스티스 통권 제81호, 한국법학원, 2004

김용진, “중재와 법원 사이의 역할분담과 절차협력 관계 - 국제적 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다툼과 중재합의관철 방안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2017

김인호, “중재판정과 법원재판의 조화적 그리고 갈등적 상호작용”, 국제거래법연구 제

- 28권 제2호, 2019
- 김잔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과제”, 법학연구 제62권 제3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김정환 외,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사법정책연구원, 2018
- 김준기,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국제상사법원, 국제투자법원 및 국제중재의 비교고찰과 그 함의-”, 비교사법 제28권 제3호, 2021
- 노태악, “UNCITRAL 모델중재법 및 중재규칙 개정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필요성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16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과 중재산업발전을 위한 과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년도 제2차 중재·조정 법정정책 세미나, 2021년 5월 26일
- 목영준·최승재,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8
- 박노형, 『국제상사조정체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영사, 2021
- 박정현, “싱가포르 협약과 조정제도의 설계”, 한국조정학회 제38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1
- 백윤재, COVID-19과 국제중재의 동향 변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년도 제5차 중재·조정 법정정책 세미나, 2021년 7월 14일
- 석광현, “중재법의 개정방향 - 국제상사중재의 측면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 \_\_\_\_\_, “2016년 중재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문제점”, 법학연구 제5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 \_\_\_\_\_, “개정중재법의 몇 가지 문제점 -국제상사중재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5호, 2000
-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2017
- 송양호, “IT거래와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오재창, “민간형 조정 활성화를 통한 소송과 조정의 균형 모색”,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 2021
- 오현석, “상사조정법 제정에 관한 연구”, 법제 제689권, 법제처, 2020
- 오현석·김성룡,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조정모델법 개정 동향”, 무역학회지 제45권 제1호, 2020



- 유병욱, “국제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활용에 관한 고찰-조정과 중재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제80권, 2018
- 윤남근, 우리나라 중재·조정(ADR) 법제 발전을 위한 법정책 과제,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2022년도 제1차 중재·조정 법정책 세미나, 2021년 4월 11일
- 윤진기,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중재판정 집행에 관한 문제점”,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2016
- \_\_\_\_\_, “한국 중재산업 발전 방안”, 중재연구 제28권 제4호, 2018
- 윤찬영 외, 『조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정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 연구원, 2022
- 이강빈,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개정동향”,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
- 이상하·하충룡, “아시아 중재 선진국의 국제중재 허브 육성전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싱가포르와 홍콩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2019
- 이은상, “행정형 분쟁해결제도의 입법개선 방향”, 인권과 정의 제506호,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재민, “국제 조정을 통한 합의서 집행협약의 도입과 법적 쟁점”,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2018
- 이정아,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실현단계에서의 법원의 개입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공공질서’의 해석 및 취소된 중재판정의 승인을 중심으로 -”, 사법 통권 57호, 2021
- 이춘원, “UNCITRAL 신속 중재의 도입과 전망”, 중재연구 제32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2
- 이호원, 『중재법연구』, 박영사, 2020
- 장문철, 『현대중재법의 이해』, 세창출판사, 2000
- 장복희,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기본원리와 구조”, 중재학회지 제7권, 1997
- 정선주, “중재법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 고려법학 제69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 조수혜, “사법정의접근권 보장을 위한 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정제도 활성화의 관점에서-”,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2020
- 최계영, “행정형 조정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통권 506호, 대한변호사협회, 2022

- 한국조정학회, 『국제상사조정 및 합의의 집행 관련 협약과 모델법의 국내 수용 및 동북 아시아 분쟁 조정 허브 도입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2018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박법계 의원실·국제조정센터·한국조정학회,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안 추진방향과 과제, 2022년 11월 10일, 입법정책 세미나자료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한종규, “국제중재산업의 국가 지원에 관한 연구 - 홍콩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5호, 2016
- 황현영,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정책분석 모델개발 보고서 2019-6, 국회입법조사처, 2019
- 법무부 보도자료,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한국의 국제중재 허브 시대를 열다!”, 2013.05.27.
- \_\_\_\_\_, “아시아 중재허브 도약을 위한 중재법 개정방향 모색”, 2013.09.24.
- \_\_\_\_\_, “국제중재 허브로의 도약을 위한 중재법 선진화”, 2015.08.03.
- \_\_\_\_\_,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2015.08.24.
- \_\_\_\_\_, “중재법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 공청회 개최”, 2015.10.14.
- \_\_\_\_\_, “새로운 분쟁해결 패러다임 중재! 대한민국을 국제중재 중심지로!”, 2016.05.19.
- \_\_\_\_\_, “[상사법무과] 분쟁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중재! 국제중재 허브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 2016.08.09.
- \_\_\_\_\_, “[상사법무과] 법무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허브 만들기 본격 시동!”, 2016.08.29.
- \_\_\_\_\_, “[상사법무과] 이제 국제중재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중재 산업 활성화의 토대 구축!”, 2016.12.08.
- \_\_\_\_\_, “[상사법무과]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2018.12.31.
- 법무부,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http://www.moj.go.kr/cvs/2726/subview.do>
- 리걸타임즈 2018.04.26., “서울중재센터, 트레이드타워로 이전”, <https://www.legaltimes>.

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55

법률신문 2021.03.10., “법무부, ‘싱가포르 조정 협약 이행 법률 제정 TF’ 발족”,

<https://www.lawtimes.co.kr/news/168524>

법률신문 2021.04.19.,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법률 제정 관련 제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69339?serial=169339&kind=BA04&key=>

<https://www.lawtimes.co.kr/opinion/169339?serial=169339&kind=BA04&key=>

조선비즈 2022.01.27., “대한상사중재원 찾은 박범계 “중재인 육성·확보 중요””,

[https://cbiz.chosun.com/svc/bulletin/bulletin\\_art.html?contid=2022012701515](https://cbiz.chosun.com/svc/bulletin/bulletin_art.html?contid=2022012701515)

701515

## [해외문헌]

Alkon, Cynthia. “Lost in translation: Can exporting ADR harm rule of law development.” J. Disp. Resol. (2011)

Christina G. Hioureas, The Singapo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A New Way Forward?, 37 Berkeley J. Int'l L. 215, 217 (2019)

Frank D. Emerson, History of Arbitration Practice and Law, 19 Clev. St. L. Rev. 155, 156 (1970)

Fabricio Fortese & Lotta Hemmi, Procedural Fairness and Effici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3(1) Groningen J. Int'l L. 110, (2015)

HONG KONG Department of Justice/Invest Hong Kong, “HONG KONG: DEAL-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HUB”, 2019

Jacqueline Nolan-Haley, Does ADR’s “Access to Justice” Come at the Expense of Meaningful Consent?, 33 Ohio St. J. on Disp. Resol. 373, 374 (2018)

James Scott Sledge, Mediating Copyright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6 No. 1 Lanslide 48, 50 (2013)

Loukas. “ADR in England and Wales: a successful cas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ADR Bulletin 6.3 (2003)

Nancy A. Welsh, The Place of Court-Connected Mediation in a Democratic Justice System, 5 Cardozo J. Conflict Resol. 117, 135 (2004)

SIAC, Annual Report 2020, [https://siac.org.sg/wp-content/uploads/2022/06/SIAC\\_Annual\\_Report\\_2020.pdf](https://siac.org.sg/wp-content/uploads/2022/06/SIAC_Annual_Report_2020.pdf)

SIAC, Annual Report 2021, [https://siac.org.sg/wp-content/uploads/2022/06/SIAC-AR2021\\_FinalFA.pdf](https://siac.org.sg/wp-content/uploads/2022/06/SIAC-AR2021_FinalFA.pdf)

Singapor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cademy, SIDRA Survey 2020

Stephen P. Anway, Mediation in Copyright Disputes: From Compromise Created Incentives to Incentive Created Compromises, 18 Ohio St. J. on Disp. Resol. 439, 442 (2003)

The Singapore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cademy,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Survey: 2020 Final Report; Attitudes to Mediation (June 2001) [http://www.cedr.co.uk/library/articles/CEDR\\_PCB\\_survey.pdf](http://www.cedr.co.uk/library/articles/CEDR_PCB_survey.pdf), Mistelis,

UNCITR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the “New York Convention”),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conventions/foreign_arbitral_awards)

\_\_\_\_\_, UNCITRAL Secretariat Guide on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958), (2016 Ed), 7-8,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2016\\_guide\\_on\\_the\\_convention.pdf](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2016_guide_on_the_convention.pdf)

\_\_\_\_\_,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1985), [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06-54671\\_ebook.pdf](https://uncitral.un.org/sites/uncitral.un.org/files/media-documents/uncitral/en/06-54671_ebook.pdf)

\_\_\_\_\_, Report of Working Group II(Dispute Settlement) on the work of its sixty-sixth session(New York, 6-10 February 2017)

\_\_\_\_\_,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the work of its fifty-first session(New York, 25 June-13 July 2018)

\_\_\_\_\_,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on the work of its thirty-second session(Vienna, 20 - 31 March 2000)

\_\_\_\_\_, Draft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Working Group II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hirty-fifth session(Vienna, 19 - 30 November 2001)

\_\_\_\_\_,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1985), with amendments as adopted in 2006,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modellaw/commercial_arbitration)

\_\_\_\_\_,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 paragraph 2, and article VII,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10 June 1958 (2006), [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explanatorytexts/recommendations/foreign\\_arbitral\\_awards](https://uncitral.un.org/en/texts/arbitration/explanatorytexts/recommendations/foreign_arbitral_awards)

\_\_\_\_\_,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New York, 2018)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https://uncitral.un.org/en/texts/mediation/conventions/international\\_settlement\\_agreements](https://uncitral.un.org/en/texts/mediation/conventions/international_settlement_agreements)

UNCITRAL, Expedited Arbitration Rules (2021), <https://uncitral.un.org/en/content/expedited-arbitration-rules>

Yun Zhao, The Singapore Mediation Convention: A Vers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for Mediation?, 17 (3) J. Private Int’l L. 538, 550 (2021)

法務省, 法制審議 第192回会議配布資料, 仲裁法の改正に関する要綱案, <https://www.moj.go.jp/content/001358284.pdf>

法務省, 国際仲裁の活性化に向けた政府の取組について, [https://www.moj.go.jp/kokusai/kokusai03\\_00003.html](https://www.moj.go.jp/kokusai/kokusai03_00003.html)



## Justice Policies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Mediation in Korea

Kim, Han-Kyun<sup>636</sup>, Kim, Myung Soo<sup>637</sup>, Park, Rhno-Hyung<sup>638</sup>

Kim, Se Jun<sup>639</sup>, Cho, Soo Haye<sup>640</sup>, Song, Byung Jun<sup>641</sup>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a study on policy measures to vitaliz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ystem. It aims to present concrete and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by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industry and the latest trends, and to review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domestic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and industry development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blem of lack of social awarenes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ystems in Korean society.

In special, this research project try to promotes empirical research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ystems. The survey is to study the necessity and expected effect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systems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actual situation and the analysis of the reality of the problem.

The comprehensive expert survey by KICJ and KIMC on the legal institution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South Korea has

---

636)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Justice

637) Research Fellow,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Justice

638) Professor of law, Korea University

639) Professor of law, Gyunggi University

640) Professor of law, Jeonju University

641) Attorney-at-law

targeted 81 Korean experts, including corporate executives or employees in the legal team, in-house counsels, law firm lawyers, government officials and law professors.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about 70% of respondent say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not invigorated in Korea. Respondents choose 'lack of social awareness' as top cause, followed by 'reliability of arbitrators'. Respondent point out that 'raising social awareness' and 'increase in reliability' should be considere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However, 40% and 42% of the respondents answer that they do not know about the New York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n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n a 3-member tribunal, party appointed arbitrators may have the same nationality as a party. 56% agree that choosing arbitrator of the same nationality is sensible because at least one member of the tribunal will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national practice and culture where the party from. They think when vetting a candidate as an arbitrator, wheter the candidate has biligual ability is not important. 73% of respondents say that it is beeded to be a lawyer as an arbitrator.

According to the results, specific legal or professional expertise are required for arbitrator, so the he/she can be appointed as the arbitrator best suited to the case. 53% of respondents are interested in becoming an arbitrator in ADR. As for the important factors in carrying out an arbitration proceeding, respondents choose enforce-ability, impartiality, cost and speediness, and as for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choice of arbitral seat, enforce-ability applicable law, existence of domestic law and procedural validity of the court in the seat of arbitr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preferred factors in selecting the arbitral institution are efficiency, professionalism of members, cost and reputation, and preferred factors in appointing arbitrators are expertise, career, cost and



command of language.

The survey result on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hows that to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t is necessary to promote social awareness, and the most pivotal element is enforce-ability for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choice of arbitral seat and appointment of diverse arbitrators are key issues for user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when selecting the arbitral institution or appointing arbitrators are speciality and expertise in specific cases.

72% of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arbitration cases as a person involved. 44% of them directly and indirectly handled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cases below 3. They also choose such dispute resolution mostly by the other party's request and contractual obligation. However, 91% of the respondents think mediation is not active in Korea regarding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The reason, according to the survey, are mostly lack of social awareness and internal limitations of mediation system. So raising social awareness and internal limitations of the mediation system are the factors necessary to act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in Korea.

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by Mediation signed in 2019 and entered into force in September 2020, but 32% of the respondents do not know about the Convention (Singapore Convention). 56% of the respondents think domestic implementation legislating is necessary to be a party to the 2019 Convention on Mediation. 43% of them think the Singapore Conven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domestic implementation law. 65% of them think legislation such as the Mediation Industry Promotion Act, like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is necessary to activate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system. 68% of the respondents agree that the u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when

signing a contract in the future.

72% of them think co-mediators based on the nationality of each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dispute are needed, and 58% of them think it is possible to designate a single mediator despite the differences in nationality of each of the parties. 65% of the respondents are willing to be a mediator in the future. 38% of them think there are not so much incentive there will be to choose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from a lawyer's point of view, compared to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uch as arbitration and litigation.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efficiency and enforce-ability are the important factors when carrying out international mediation cases.

According to the survey on international mediation, experts recognize the usefulnes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many of them want to resolve their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y means of mediation. However, even experts still seem to lack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ation, as well as the system including the 2019 Convention on Medi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quick implementation law or ratification of the Singapore Convention.

## 부록 | 중재 및 조정 전문가 설문

## 중재 및 조정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전문가 자문

안녕하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2년도 연구사업으로서 「국제 중재 및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를 사단법인 국제조정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던,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상사중재·조정 사건을 유치하여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국제 중재 및 조정에 관한 기업인, 법조인과 국민적 인식부족으로 인해 제도 활성화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설문은 관련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국내 국제중재 및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의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함입니다. 개인정보와 개별 답변내용은 엄격히 비밀이 유지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셔서 가급적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해 자문 자문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 관련법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 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9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02-3460-5163)

조사담당자 :

김명수 부연구위원(02-3460-5142)

김태훈 조사연구원 (02-3460-9220)

I. 통계분석을 위한 일반 설문

1. 국제상사조정 또는 국제상사중재 사건을 관련자로서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1-1.항으로
- ② 없음 : 2.항으로

1-1. 2020년 ~ 2022년 사이에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를 합하여 직·간접적으로 담당한 국제분쟁사건의 수는 몇 건입니까?

- ① 3건 미만
- ② 3건 이상 6건 미만
- ③ 6건 이상 10건 미만
- ④ 10건 이상 15건 미만
- ⑤ 15건 이상

1-2. 위 사건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증가 : 1-3.항 으로
- ② 감소 : 1-3.항 으로
- ③ 유의미한 변화 없음

1-3.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위 사건수 증감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기타 \_\_\_\_\_
- ④ 잘 모르겠다

1-4. 국제상사조정 또는 국제상사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순위별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소 =1, 가장 영향이 적은 요소 =7). 다만 영향이 전혀 없던 요소에 대하여는 순위를 매길 필요가 없고, 영향이 있었던 요소의 순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내변호사의 조언
- 법무법인의 조언
- 경영진의 조언
- 계약상 의무
- 상대방의 요청
- 고객의 요청
- 기타 \_\_\_\_\_

2.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2-1.항으로
- ② 없음 : 'II.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자문의견'으로

2-1. 교육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대학(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 포함)
- ② 정부 또는 공공기관
- ③ 민간기관(학회 또는 조정·중재센터 등 포함)
- ④ 기타 \_\_\_\_\_

2-2. 교육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 ① 조정·중재 제도(국내/국제 포함)
- ② 조정·중재 기법
- ③ 기타 \_\_\_\_\_

2-3. 교육을 받은 총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7시간 미만
- ② 7시간 이상 14시간 미만
- ③ 14시간 이상 21시간 미만
- ④ 21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 ⑤ 28시간 이상 : \_\_\_\_\_ 시간

II.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자문의견

1.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해 국내에서 조정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2.항으로
- ② 그렇지 않다 : 1-1.항으로

1-1. 다음 중 국내에서 국제상사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① 법제도상의 미비
- ② 사회적 인식의 부족
- ③ 기관 또는 조정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
- ④ 공정성에 대한 우려
- ⑤ 전문성에 대한 우려
- ⑥ 분쟁해결 효과에 관한 내재적 한계(예: 집행가능성 등)
- ⑦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
- ⑧ 기타(1) \_\_\_\_\_
- ⑨ 기타(2) \_\_\_\_\_
- ⑩ 기타(3) \_\_\_\_\_

1-2. 다음 중 국내에서 국제상사조정제도가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괄호안에 중요도 순으로 세가지 요소를 선택하여 1, 2, 3 숫자 기입)

- ① (    ) 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의 마련
- ② (    ) 사회적 인식의 제고
- ③ (    ) 기관 또는 조정인의 신뢰도 제고
- ④ (    ) 공정성 제고
- ⑤ (    ) 전문성 제고
- ⑥ (    ) 내재적인 한계의 극복(예: 집행가능성 등)
- ⑦ (    ) 효율성 제고
- ⑧ (    ) 기타(1) \_\_\_\_\_
- ⑨ (    ) 기타(2) \_\_\_\_\_
- ⑩ (    ) 기타(3) \_\_\_\_\_

2. 2019년 8월 서명되고 2020년 9월 발효한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 2-1.항으로
  - ② 잘 알고 있음 : 2-1.항으로
  - ③ 일부만 알고 있음 : 2-1.항으로
  - ④ 잘 알지 못함 : 3.항으로
  - ⑤ 전혀 알지 못함 : 3.항으로
- 2-1. 2022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이 동 협약에 따른 국제상사조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음
  - ② 잘 알고 있음
  - ③ 일부만 알고 있음
  - ④ 잘 알지 못함
  - ⑤ 전혀 알지 못함
3. 싱가포르조정협약 발효 이후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중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국제상사조정이 국제상사중재를 대체함
  - ② 국제상사조정이 국제상사중재를 보완함
  - ③ 서로 관계없음
  - ④ 기타 \_\_\_\_\_
4. 2021년 3월 법무부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검토하기 위한 T/F 를 구성·설치하였습니다.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당사국이 되기 위하여 별도의 이행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함 : 4-1.항으로
  - ② 필요하지 않음 : 5.항으로
  - ③ 기타 \_\_\_\_\_ : 5.항으로
  - ④ 잘 모르겠다 : 5.항으로

4-1. 이행법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내용
- ② UNCITRAL 조정모델법에 따른 내용
- ③ 기타 \_\_\_\_\_
- ④ 잘 모르겠다

4-2. 이행법률이 언제 제정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1년 이내
- ② 2년 이내
- ③ 2년 이후
- ④ 기타 \_\_\_\_\_
- ⑤ 잘 모르겠다

5.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제도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산업진흥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국제상사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산업진흥법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기타 \_\_\_\_\_
- ④ 잘 모르겠다

6. (국제상사조정을 경험한 경우만 답변) 계약서상 분쟁해결조항에 국제상사조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7. 향후 계약체결 시 분쟁해결조항에 국제상사조정의 활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기타 \_\_\_\_\_
- ④ 잘 모르겠다
8. 법무법인 내에서 국제상사조정과 국제상사증재에 관한 업무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제상사증재팀과 별개의 국제상사조정팀 설치 등)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국제상사조정에서는 분쟁당사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각 분쟁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공동조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기타 \_\_\_\_\_
- ④ 잘 모르겠다
10. 분쟁당사자의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정인이 양 당사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단일 조정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기타 \_\_\_\_\_
- ④ 잘 모르겠다
11.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중략)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후략)

현행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조정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필요함 : 12.항으로
- ② 필요하지 않음 : 11-1.항으로
- ③ 기타 \_\_\_\_\_ : 11-1.항으로

11-1. 누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소정의 조정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을 수여받은 사람
- ②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 ③ 대상 사건 분야의 실무 전문가
- ④ 외교관, 정부공무원, 기업인 등 협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기타 \_\_\_\_\_

12. 조정인이 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3. 변호사의 입장에서 중재나 소송과 같은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비교할 때, 수입료 등 기회비용에 관하여 조정을 선택할 유인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많다
- ② 많다
- ③ 보통이다
- ④ 적다
- ⑤ 거의 없다
- ⑥ 잘 모르겠다

14. 국제상사조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 지 않음
비용	①	②	③	④	⑤
신속성	①	②	③	④	⑤
비공개성	①	②	③	④	⑤
조정인 선택 등 절차적 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조정기관 선택의 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사업관계의 유지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분쟁해결에 관한 기회비용	①	②	③	④	⑤
중립성 및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집행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5. 국제상사조정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비용	①	②	③	④	⑤
효율성	①	②	③	④	⑤
기관의 조정규칙	①	②	③	④	⑤
규모 및 인지도	①	②	③	④	⑤
평판	①	②	③	④	⑤
사건처리 건수	①	②	③	④	⑤
소속 조정인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소속 조정인의 문화적 친밀성	①	②	③	④	⑤
소속 조정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선택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지리적 근접성	①	②	③	④	⑤
당사자의 국제·영업소와 의 위치적 차별성	①	②	③	④	⑤
ODR 등 기술적 지원의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6. 국제상사조정인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비용	①	②	③	④	⑤
산업·분쟁 관련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분쟁해결 경험	①	②	③	④	⑤
조정 관련 교육 여부	①	②	③	④	⑤
언어구사력	①	②	③	④	⑤
윤리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적 이해	①	②	③	④	⑤

17. 국제상사조정에서 다음과 같은 IT의 활용에 대해 생각하시는 유용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유용	유용	보통	유용하지 않음	매우 유용하지 않음
전자증거 제출 및 조사	①	②	③	④	⑤
비대면 심리의 운영 플랫폼	①	②	③	④	⑤
조정인 또는 대리인 선임의 분석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정인 추천 등)	①	②	③	④	⑤
예측 분석 도구(청구의 강점 또는 예상 결과의 예측 등)	①	②	③	④	⑤
클라우드를 통한 저장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기타					

### III.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자문의견

1.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에 관해 국내에서 중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2.항으로
- ② 그렇지 않다 : 1-1.항으로

1-1. 다음 중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가지 선택)

- ① 법제도상의 미비
- ② 사회적 인식의 부족
- ③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
- ④ 공정성에 대한 우려
- ⑤ 전문성에 대한 우려
- ⑥ 절차적 한계(예: 상소제도 등의 부재)
- ⑦ 분쟁해결 기간 및 비용에 대한 우려
- ⑧ 기타(1) \_\_\_\_\_
- ⑨ 기타(2) \_\_\_\_\_
- ⑩ 기타(3) \_\_\_\_\_

1-2. 다음 중 국내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괄호안에 중요도 순으로 세가지 요소를 선택하여 1, 2, 3 숫자 기입)

- ① (     ) 법제도 측면의 보완
- ② (     ) 사회적 인식의 제고
- ③ (     ) 기관 또는 중재인의 신뢰도 제고
- ④ (     ) 공정성 제고
- ⑤ (     ) 전문성 제고
- ⑥ (     ) 절차적 한계의 극복
- ⑦ (     ) 효율성 제고
- ⑧ (     ) 기타(1) \_\_\_\_\_

⑨ ( ) 기타(2) \_\_\_\_\_

⑩ ( ) 기타(3) \_\_\_\_\_

2.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다음의 국내·외 주요법제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알고 있음	잘 알고 있음	일부만 알고 있음	잘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중재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	①	②	③	④	⑤
중재법	①	②	③	④	⑤
중재산업진흥법	①	②	③	④	⑤

3. 중재산업진흥법의 시행 이후 국내에서 국제중재가 보다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 ⑥ 잘 모르겠다

4.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분쟁당사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각 분쟁당사자의 국적에 따른 공동중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기타 \_\_\_\_\_
- ④ 잘 모르겠다

5. 분쟁당사자의 국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재인이 양 당사자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단일 중재인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그렇다
- ② 그렇지 않다

③ 기타 \_\_\_\_\_

④ 잘 모르겠다

6.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중략)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후략)

현행 변호사법을 고려할 때, 중재인의 자격으로 변호사 자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함 : 7.항으로

② 필요하지 않음 : 6-1.항으로

③ 기타 \_\_\_\_\_ : 6-1.항으로

6-1. 누가 중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 ① 소정의 중재 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을 수여받은 사람  
 ②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③ 대상 사건 분야의 실무 전문가  
 ④ 외교관, 정부공무원, 기업인 등 협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기타 \_\_\_\_\_

7. 중재인이 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국제상사중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비용	①	②	③	④	⑤
신속성	①	②	③	④	⑤
비공개성	①	②	③	④	⑤
중재인 선택 등 절차적 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중재지 선택의 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중재기관 선택의 유연성	①	②	③	④	⑤
사업관계의 유지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분쟁해결에 관한 기회비용	①	②	③	④	⑤
중립성 및 공정성	①	②	③	④	⑤
집행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9.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지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중재판정의 집행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국제상사중재를 규율하는 국내법의 존재 (예: 임시적 처분 등)	①	②	③	④	⑤
계약에서 정하는 준거법	①	②	③	④	⑤
중재지의 평판 및 인지도	①	②	③	④	⑤
당사자의 국적·영업소와의 위치적 차별성	①	②	③	④	⑤
집행 비용	①	②	③	④	⑤
중재지 법원절차의 타당성	①	②	③	④	⑤



10. 국제상사중재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비용	①	②	③	④	⑤
효율성	①	②	③	④	⑤
기관의 중재규칙	①	②	③	④	⑤
규모 및 인지도	①	②	③	④	⑤
평판	①	②	③	④	⑤
사건처리 건수	①	②	③	④	⑤
소속 중재인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소속 중재인의 문화적 친밀성	①	②	③	④	⑤
소속 중재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선택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지리적 근접성	①	②	③	④	⑤
당사자의 국적·영업소와의 위치적 차별성	①	②	③	④	⑤
이의신청의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ODR 등 기술적 지원의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1. 국제상사중재의 중재인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요소에 대해 생각하시는 중요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비용	①	②	③	④	⑤
산업·분쟁 관련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분쟁해결 경험	①	②	③	④	⑤
중재 관련 교육 여부	①	②	③	④	⑤
언어구사력	①	②	③	④	⑤
윤리성	①	②	③	④	⑤
문화적 이해	①	②	③	④	⑤

12. 국제상사중재에서 다음과 같은 활용에 대해 생각하시는 유용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매우 유용	유용	보통	유용하지 않음	매우 유용하지 않음
전자증거 제출 및 조사	①	②	③	④	⑤
비대면 심리의 운영 플랫폼	①	②	③	④	⑤
중재인 또는 대리인 선임의 분석 (특정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인 추천 등)	①	②	③	④	⑤
예측 분석 도구(청구의 강점 또는 예상 결과의 예측 등)	①	②	③	④	⑤
클라우드를 통한 저장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기타					

#### IV. 통계분석을 위한 인적사항 설문

##### 1.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 2. 연령대

- ① 30세 미만
- ② 30세 이상 40세 미만
- ③ 40세 이상 50세 미만
- ④ 50세 이상 60세 미만
- ⑤ 60세 이상

##### 3. 소속(또는 소속했었던) 직역

- ① 기업 임직원
- ② 기업의 사내변호사
- ③ 로펌(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포함)의 국제분쟁 또는 국제중재팀
- ④ 로펌(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포함)의 기업자문관련 등  
국제분쟁/국제중재 이외의 팀
- ⑤ 정부 공무원(외교관 포함)
- ⑥ 대학/연구소
- ⑦ 기타 \_\_\_\_\_

- 감사합니다. -



연구총서 22-B-15

##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발행 | 2022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하태훈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http://www.kicj.re.kr)

정가 | 10,000원

인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I S B N | 979-11-91565-84-3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 KICJ

## 국제 중재 및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무정책 연구

Justice Policies on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Mediation in Korea

